

대구민단사

대구민단사(大邱民團史)

발행일 : 2020년 12월

발행처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편 찬 : 대구부 (大邱府)

옮긴이 : 최범순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감 수 : 김명수 (계명대학교 일본학전공 교수)

교 정 : 윤경애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ISBN 979-11-974007-0-4 93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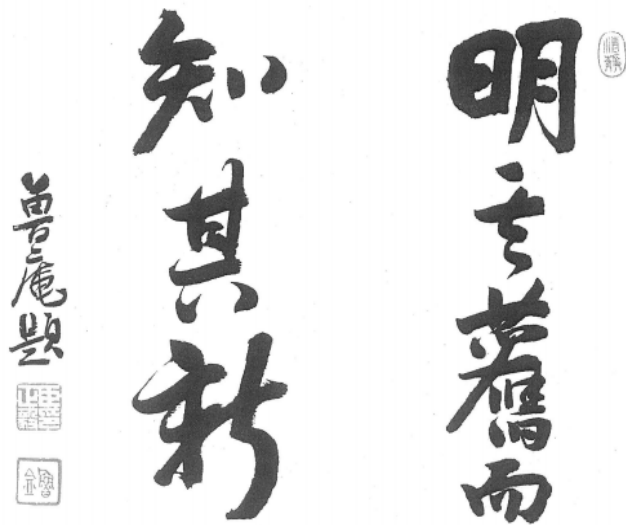
대구민단사

대구부 편찬

일려두기

- 『대구민단사』는 1915년에 당시 대구부(大邱府)가 간행한 일본어 자료이다. 따라서 일본 관점의 표현과 용어가 많다. 옮기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1차 자료의 의미를 고려해 원문 표현과 용어를 가급적 그대로 옮기고 필요한 경우 작은 따옴표(‘ ’)를 붙였다. 해당 표현과 용어 등은 옮긴이의 관점 및 역사 인식과 별개임을 밝혀둔다.
- 자료 내용은 1910년 이전과 이후에 걸쳐 있다. 자료 편집자는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1910년 8월 이전 국호는 ‘한국’으로, 1910년 8월 이후 국호는 ‘조선’으로 적었다. 옮길 때도 이 기준에 따라 구분해서 옮겼다. 단 일부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나 한반도를 통칭하는 부분은 ‘조선’으로 옮겼다.
- 약 500명에 달하는 자료 속 일본인 인명은 가능한 원문에 없는 이름까지 확인해 추가했다. 하지만 확인하기 어려운 인명도 적지 않았다. 이 경우 성은 가장 일반적인 읽기를 한글로 옮겼고, 이름은 음독 내지는 일반적인 읽기를 기준으로 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인 인명 읽기는 읽기 방법이 적혀 있거나 본인이 밝혀주지 않는 한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을 빌어 양해를 구한다.
- 원자료 인명에는 모두 ‘~씨(氏)’가 붙어 있다. 옮기는 과정에서 살리고자 했으나 가독성을 고려해 생략하거나 직책명을 이동시켜 대신했다.

- 원자료 한자 어휘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살리고자 했다. 이 또한 1차 자료의 측면을 고려해 1915년 당시의 어휘-언어 감각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단, 이해를 돕기 위해 각주에 뜻을 적었다.
- 기관 및 단체 명칭, 직책명, 신문-잡지 및 기록물 제목, 각종 단위 등은 최대한 원문 그대로 살리고 필요한 경우 각주에 설명을 덧붙였다.
- 당시 대구 시가지 지명은 일본인들이 정착한 구역은 일본식 정(町) 단위 지명을 새롭게 붙였고, 조선인 구역은 기존 지명에 정(町)을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지명 생성 배경의 차이를 고려해 일본식 지명은 일본어 발음으로, 기존 한국 지명을 살린 것은 한국어 발음으로 옮겼다.
- 최대한 원자료 문장 단위를 존중하려고 애썼으나 필요한 경우 가독성을 위해 문장을 끊어서 옮겼다. 옮기는 과정에서 원문에 있는 단어와 표현을 최대한 살리고자 했고 원문에 없는 단어나 표현을 더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단 한국어 어법상 맞지 않은 경우는 최대한 유사한 어휘로 대체했다.
- 일부 원문의 오류와 오식은 확인한 범위에서 모두 수정해서 옮겼다.



‘明其舊而知其新 魯庵題’*

“옛것을 밝혀서 새것을 안다. 노암 씀.”

* 위 제자(題字)는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 조선총독이 썼음.



大邱居留民團役所



大邱市街金景

서문 1

서(序)

우리 대구는 경성과 부산 간의 요로이자 경상북도의 중추에 위치하지만 원래 이곳은 한연락막(寒煙落莫)¹⁾한 일개 황촌(荒村)²⁾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요사이 10년 동안 어느덧 한반도 남부의 일대 도읍이 되었다. 돌아보면 누구나 금석지감(今昔之感)³⁾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위에 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웅덩이와 길 바닥에 핀 물을 떠내어 영토를 만들고, 여기에 감부(坎阜)⁴⁾를 만들어 초주(礎柱)⁵⁾를 고정하고, 새로 추종하게 된 백성을 계옥(啟沃)⁶⁾해서 천덕(天德)을 먼저 권하고, 동문(同文)⁷⁾이 흠뢰(翕賴)⁸⁾해서 자치의 규전(規典)을 베풀고 인도한 것은 대구거류민단의 공적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작년(1914년-음간이) 3월에 부제(府制)가 실시됨에 따라 체제를 혁신하고 업무를 부청에 넘긴 이후 문도(文度)가 날로 나아지고 면목이 더욱 새로워졌다. 그러므로 진오(陳吳)⁹⁾의 공은 당연히 이를

-
- 1) 가난하고 불충분함.
 - 2) 황폐하여 몹시 쓸쓸한 마을.
 - 3) 지금과 옛날을 비교하여 너무 변했을 때 일어나는 감개.
 - 4) 언덕, 산.
 - 5) 주춧돌과 기둥.
 - 6) 흠금을 털어놓고 상대방에게 일러 줌.
 - 7) 둘 이상의 민족이나 국민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일.
 - 8) 합하다, 의지하다.

인멸할 수 없다. 지인 미우라 쇼이치로(三浦庄一郎) 씨가 대구부의 위촉을 받아 『민단사(民團史)』를 편찬해 그야말로 인쇄에 부치는 시점에 나에게 서문을 요청했다. 미우라 씨는 대구의 선주자(先住者)로서 소식에 가장 밝고, 편찬해 수록한 내용 또한 크고 작은 것을 모두 아울렀다. 『민단사』는 실로 용감한 선봉군의 건투(健鬪)의 역사이자 자치단체 종언의 슬픈 기록이다. 팔달산의 봉우리는 만고(萬古)로 높고 금호의 물은 천세(千歲)로 맑지만 문헌이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강산은 무엇으로 우리 민단의 훌륭한 공로를 후대에 전하겠는가. 논어에서 말하길 추회(追懷)는 아름다운 시를 읽는 것과 같다고 했다. 몇 년 동안의 진전과 추이는 나로 하여금 더욱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이 책은 틀림없이 한층 더 묘운(妙韻)¹⁰⁾을 전할 것이다. 이상을 서문으로 삼는다.

1915년 1월

경상북도장관 정5위 이진호(李軫鎬)

9) 陳勝吳廣 : 어떤 일에 앞장서는 자나 맨 먼저 주창하는 자를 이르는 말.

10) 훌륭한 정취와 여운.

서문 2

서(序)

일찍이 적막한 일개 촌락에 지나지 않았던 대구는 최근 조선 남부의 도시로서 널리 세상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고 마침내 제반 체제가 운영됨에 따라 거리 설비도 그야말로 구태를 일신하고 있다.

무릇 일이 성사될 때는 반드시 성사된 시점보다 앞선 요인이 있다. 지난 1906년 11월에 거류민단이 처음 이곳에 조직될 당시 일본 제국 신민은 겨우 1,600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이 소수의 일본인은 용케 법령의 취지에 따라 자치 능력을 발휘해서 때로는 가시나무를 자르고 때로는 잡초 풀밭을 개척하면서 안으로는 동포끼리 서로 돕고 밖으로는 주위의 조선인을 계육(啟沃)했다. 오늘과 같이 지역이 번영하고 일본인과 조선인이 일가를 이룬 것은 병합 이전에 이미 수십 년 동안 그 기초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합이 이루어지자 일본인과 조선인의 일치 결합이 더욱 촉진되어 발전과 향상은 한 발 더 진전되고 제도는 단 하루도 느슨해지지 않게 갱신되어 지금은 8,000명의 일본인이 25,000명의 조선인을 포용하게 되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이 지역에 시행할 새 제도가 자연스럽게 요구되어 민단 폐지는 실로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

민단은 이미 폐지되었다. 그러나 폐지 이전에 있었던 일본인들의 필사적인 노력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민회는 1914년 3월에 민단의 마지막을 맞이해 『민단사』 편찬을 의결하고 새롭게 출범한

대구부는 유도(遺圖)¹¹⁾을 이어서 오랫동안 이 지역에 재류하면서 사정에 정통한 호슈(芳洲) 미우라 쇼이치로 씨에게 『민단사』 집필을 부탁했다. 얼마 전 원고가 완성되어 일독하니 그야말로 민단 관계의 주요 사항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거의 망라했다. 그러나 자료에 정조(精粗)¹²⁾가 있고 분량에 제한이 있다. 독자들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이 책이 민단의 공적 일반을 장래에 전하고 지방 발전의 소사(小史)로서 온고지신의 시초가 될 수 있다면 기대 이상의 행운이다.

1914년 설달(極月)

대구부윤 다케자키 로쿠지로(竹崎六次郎)

11) 남겨진 마지막 계획.

12) 정밀함과 거침.

서문 3

서(序)

1911년 5월에 임명을 받아 대구민단장 임무를 시작해서 1914년 3월에 민단제(民團制) 폐지에 따라 물러나기까지는 약 3년이었다.

민단이 폐지된 것은 병합의 결과이기에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 게다가 일본인 단체의 자치제도를 변경·개선해서 ‘내선(內鮮¹³⁾)의 공동생활로 이행한 것이다. 의회는 민단이 마지막에 이르자 그 발달 과정을 『민단사』로 기록해서 선인들의 개척 경과를 영원히 공표하고자 했다. 나는 민단의 마지막 임무를 맡았었기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역의 민단은 제도는 하나로 같지만 각자의 역사가 있고 특색이 있으며 대소의 차이가 있고 발달에 차이가 있다. 이 가운데 우리 대구민단은 가장 새롭고 최근에 발달했다. 대구의 지세와 발달 경로는 특이해서 민단의 근저에 항상 변화와 물의가 많아서 왕왕 세상이 ‘대구민단’이라는 이름을 거론한 것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건건(騫騫)¹⁴⁾한 것은 간간(侃侃)¹⁵⁾하게 노력하고 분분(紛紛)¹⁶⁾한 것은 악악(諤諤)¹⁷⁾하게 논의해서 공적인 큰일은 일단 모두

13) 당시 일본인과 조선인을 통칭하던 말.
14) 불쾌한 감정 따위로 얼굴이 일그러지다.
15) 성품이나 행실 따위가 꼳꼳하고 굳셀.
16) 어수선하게 뒤섞임.

협동해서 맹렬하게 민정의 발전을 꾀한 것은 용감한 국민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전임자와 선대가 공공사업에 공헌한 행적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시대 대구시민(일본인)의 중요한 노력을 여기에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시가지를 정리하고 도시적 환경을 진전시키고자 절규한 것은 우리 민단이다. 상수도틀 만들고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자 기획한 것은 우리 민단이다. 공동묘지를 만들어 식민지에 대한 영원한 신념을 만들고자 한 것은 우리 민단이다. 산업의 발달을 건전하게 하고 소박한 풍습을 일으켜 공애부조(共愛扶助)의 생활을 만들고자 기획한 것은 우리 민단이다. 공중의 오락을 청신(淸新)하게 하고 조국의 정신을 불리일으켜 공원과 신사를 건립한 것은 우리 민단이다. 게다가 식민지의 교육을 발달시켜 자제들을 풍교(風敎)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민단이다. 교통의 발달을 촉진시켜 경북의 진보를 회구하고 관련 기관 설립에 부지런히 힘쓴 것은 오로지 우리 민단이고 다른 민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었다. 이처럼 사업과 노력의 경과를 헤아려보면 대구민단이 조선 남부의 문화와 산업 개발에 공헌한 것은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야말로 다수의

17) 거리낌 없이 바른말을 논술하는 모양.

우리 민단 공헌자들이 한 것으로 나는 이들 공로자의 유적(遺蹟)을 포연(布演)¹⁸⁾했을 뿐이다.

민단의 기록은 이처럼 광대했으며 지금은 관부(官府)로 옮겨졌다. 생각하니 민족적 정신·신념·용기는 항상 민족 고유의 혈관에서 배태되는 결과이니 이를 계승한 관부가 민단 기록에 담긴 정신을 소화해서 제국이 조선을 통치하는 데에 선용하는 것은 후계자에게 열망하는 바이다.

우연히 내가 『민단사』 서문을 쓰는 영광을 짊어지게 되어 여기에 그 감상을 적었다.

1914년 8월

전 민장 기쿠치 겐조(前民長 菊池謙讓)

18) 펼쳐보이다.

서문 4

자서(自序)

거류민단이 폐지되자 대구거류민회는 그 마지막 시기에 『민단사』를 편찬해서 기념하기로 결의했고 이를 대구부가 승계했으며, 다케자키 부윤은 내가 민단법 실시 당시부터 시종 대구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민단사 편찬을 위임했다. 생각건대 저작은 원래 쉬운 일이 아니다. 일에 경솔히 임하면 아마도 두선(杜選)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는 동안에 또 생각해보니 나는 일찍이 문필로 먹고 살았다. 선택받은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나아서 교유(交遊)를 맺지 않았고 애써서 지기(知己)를 찾지 않았다. 대구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도 공사(公私) 모두에 초연해서 교섭하지 않았다. 이에 “어찌 나의 부재(不才)를 돌아보지 않고 방관자 같은 자세를 취해 왔던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촌탁(村탁)¹⁹⁾하고 응했는데 붓을 잡자 그 결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책 한 권을 편찬하는 것은 실로 쉽지 않다. 원고가 절반쯤 되었을 때 자료 수집의 어려움에 몇 번이나 망연자실했다. 원고를 완성해서 스스로 읽어보니 문장이 매끄럽지 않고 옛사람의 남은 필적(零墨)²⁰⁾을 단편적으로 늘어놓은 것 같았다. 하물며 독자는 어떻게겠는가. 그러나 출판 기한은 내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끝내 손질

19) 남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림.

20) 단편적으로 남은 옛사람의 흔적.

할 시간 없이 인쇄하게 되었다. 단 특정 일가(一家)의 평판을 더하지 않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였다. 만일 서술 방법이 규율을 벗어나고 문장이 창쾌(暢快)²¹⁾하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의 용서를 빌 뿐이다.

1914년 12월

호슈 미우라 쇼이치로(芳洲 三浦庄一郎)

21)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 씩 유쾌하고 시원함.

예언(例言)

1. 본 민단사 편찬법은 애초에 역사서 체제를 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절연(截然)²²히 민단 사적(事蹟)에 국한할 때는 오히려 민단 발전의 연혁을 상세히 적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관련 사실을 열거하고 이를 보완할 수밖에 없었다.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2. 본 민단사 편찬은 1914년 3월 말일의 거류민단 폐지 시점을 현재로 해서 집필했다. 그러나 당시 시점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성사될 사항으로 내용에 담기도 했다.
3. 본 민단사의 재료는 전적으로 관공서 및 기타 공공기관 기록과 1906년 이후의 신문기사를 섭렵하거나 관계자 혹은 당시 거류자에게 실화를 듣고 대구 및 경북에 관한 저서를 참고하며 사건을 조금도 보태지 않아 큰 과실이 없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은 편자가 잘못의 책임을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4. 처음에 가능한 사진을 많이 게재하려고 했지만 분량에 제한이 있고 구하지 못한 사진도 있어서 주요 인물 사진이 빠지기도 했으며 대상 폭을 좁혔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5. 경상북도청, 대구부청, 대구경찰서, 대구상업회의소, 조선민보사 및 기타 언론계의 여러분이 자료 수집을 많이 도와주었다. 각별히 감사를 표한다.

편자 씀.

22) 구별이 확연한 모양.

『대구민단사』 목차

제1장 민단제 이전의 대구 / 21
제2장 본기(本紀) / 28
제3장 임원 및 의원 / 52
제4장 대구관계사 / 76
제5장 상급 및 관계 관청 / 86
제6장 재정 / 96
제7장 교육 / 107
제8장 위생 / 112
제9장 종교 / 115
제10장 시구개정 / 117
제11장 교통운수 및 상하수도 / 120
제12장 금융기관 / 125
제13장 권업 시설 / 130
제14장 농업 / 138
제15장 공업 / 148
제16장 상업 / 157
제17장 시장 / 164
제18장 공원 및 명승지 / 167
제19장 적십자사 및 애국부인회 / 174
제20장 재판·경찰 및 수비 / 181
제21장 상업회의소 / 187
제22장 신문 및 통신 / 195
제23장 통신기관 / 198
제24장 수이출입 / 200
제25장 민단 폐지와 부제 시행, 학교조합 성립 / 203

부록

1. 지방행정 / 243
2. 폭도 / 244
3. 지방비 / 245
4. 지방금융조합 / 245
5. 지방창고 / 246
6. 토지조사 / 247
7. 토지수용 / 249
8. 신세(新稅) / 250
9. 토목 / 252
10. 경북의 경지 / 253
11. 국유 미개간지 / 254
12. 임업 / 254
13. 광업 / 255
14. 낙동강의 발전과 수력 / 256
15. 경편철도 / 256
16. 민력(民曆)의 편찬·배포 / 257
17. 국어 보급 / 258
18. 변호사 / 258
19. 집달리(執達吏) / 259
20. 민단 종료기 관아·학교 / 260
각종 통계 / 269

해제 / 281

인명색인어 / 298

제1장 민단제(民團制) 이전의 대구

조선은 1876년에 처음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고 1879년부터 1880년 사이에 개항장인 부산, 인천, 원산에 거류하는 일본인의 통상과 여행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조선과 일본의 무역은 매년 증가했는데 ‘간행이정취극서(間行里程取極書)’라고 하는 일본인의 여행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 지정 구역을 넘어선 경우 조선 정부가 보호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륙을 발섭(跋涉)²³⁾하는 일본인은 매우 드물어서 대구처럼 항만에서 멀리 떨어져서 내륙에 위치하는 지역은 당연히 일본에 알려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氏 吉 益 付 膝

일본인이 처음 대구에 이주한 것은 1893년 9월로 오카야마 현(岡山縣) 사람 히자쓰키(膝付)와 무로(室) 두 사람이었다. 남문 안에 집 하나를 빌려서 의약과 잡화를 판매했다. 이들이 대구 거류 일본인의 솔선이 되었다. 해를 넘겨 1894년에 전라도 방면에서 동학당이 봉기하고 그 세력이 창궐하여 관군의 패전 소식이 이어지자 일본인의 조선 내륙 거류가 매우 위험해졌다. 마침내 청일전쟁이 벌어져 대구는 남부 지역의 병참선이 되었고 히자쓰키와 무로 두 사람 모두 군대에 고용되어 통역과 의무를 맡았다. 현 대구복심법원 통역관 히자쓰키 마스키치(膝付益吉)는 앞선 히자쓰키의 친형으로 1894년 8월에 동생을 대신해 대구에 와서 점포를 재개했다. 청일전쟁 중 대구에는 2~3개 중대가 항상 주둔했고 통과하는 군대도 많았기 때문에 일본인이 점포

23)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길을 감.

를 여는 경우가 점차 증가해 약 10곳에 이르렀다. 이듬해 1895년 봄의 '마칸조약(馬關條約)'²⁴⁾ 체결로 군대는 일본으로 귀환하고 헌병만 전신(電信) 수비 명목으로 주류하게 되자 갑자기 적막해지면서 일본인 상점 폐점이 이어졌고 히자쓰키와 무라이(村井) 두 사람 가게와 어용상점(御用達) 두세 곳만 남았다.

1900년 11월 부산영사관 서기생(書記生) 다부치 쇼헤(田端正平)가 대구에 와서 대구의 일본인들과 상의해 일본인회(日本人會)를 창립했고 히자쓰키 마스키치가 회장이 되었다. 이것이 거류민단(居留民團)의 맹아이다. 그러나 인원은 겨우 10여명밖에 되지 않았고 가정을 꾸린 사람이 없었는데 이듬해 1901년에 히자쓰키, 우라하마(浦濱), 오쿠보(大久保) 세 사람의 처자식이 대구에 오면서 그 처들은 최초의 대구 거주 일본인 여성이 되었다.

당시 대구의 일본인은 부산영사관 관할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조선 외부(外部)가 각 도의 관찰부에 훈령을 내려 조약을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인을 몰아내려 해서 대구 거류 일본인은 어렵게 그 재난을 피하면서 불안한 가운데 몸 둘 바를 모르며 때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1903년 경부철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대구에 오는 일본인이 점차 증가해 요리점이 활기차졌다. 특히 대구정차장 부근의 토지를 매점(買占)하려는 사람이 많았지만 당시 관찰부가 일본인 몰아내기에 힘쓰면서 인민을 압박해 일본인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본인에게 가옥을 대여하거나 토지 및 가옥을 매도한 사람은 주선자까지 빠짐없이 조사해 투옥했다. 이로 인해 조선인들은 공포심에 일본인과 관계하는 것을 피하려 했고, 일본인 경영자들은 손을 대지 못했는데 1904년에 동양 미증유의 대전쟁인 러일전쟁이 터지자 군용 목적으로 '경부철도 속성공사' 명령이 내려

24) 시모노세키 조약.

저 대구에 건축사무소가 놓이고 일본인 유입이 활발해졌다. 개전 이후 일본군이 연전연승하자 조선 남부 지방은 위협이 적어지고 대구를 내왕하는 사람이 나날이 늘어나 남문 바깥부터 달성산 아래에 이르는 읍성 바깥 구역은 일본인 상점이 매우게 되었다. 철도 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거류민 숫자가 2천명 내외에 달하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1개 중대 병력을 배치하고 부산 경찰서 출장소를 설치했으며 별도로 헌병주둔소(屯所)가 있었다. 우편취급소도 신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는 모두 부산 영사관이 관할하고 철도는 여전히 전부 개통되지 않아 그 불편함이 심하자 유지들이 상의해 일본동포회(日本同胞會)라는 것을 조직했지만 회원이 겨우 130여 명이라 수지(收支)도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몇 차례 부산영사관과 교섭한 끝에 대일본인거류민회(大日本人居留民會)를 설립해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 영사의 허가를 받았다. 때는 1904년 8월로 이로써 대구의 일본인 자치가 시작되었다.

대일본인거류민회의 조직은 회장, 부회장, 의장 및 평의원 20명을 선거로 선출하고 여기에 서기 1명을 두었다. 회장 도쿠히사 요네조(徳久米藏), 부회장 이노 에스케(井野英助), 의장 이노우에 쓰네타다(井上常直) 세 사람이 당선되었고, 평의원 가운데 중요 인물은 도구라 주로쿠(戸倉十六), 미와 조테쓰(三輪如鐵), 마유미 마코토(眞弓忠), 시로타 신스케(白田新助), 가미야 도요카쓰(神谷豊功), 모리나가 소이치(守永宗一), 마스다 고타(増田虎太), 요시키 도시조(吉木利造), 스다 산페(須田三平), 시모다 고키치(霜田語吉) 등이었다. 대일본거류민회사무소는 서문 밖 조선인 가옥 한 칸을



氏藏米久徳長會民留居

빌려서 사용했고 회의를 할 때는 옆집인 요리점 야마토(大和)의 가건물 토방(土間)을 사용했는데, 우천 시에는 온몸이 젖는 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초창기 광경을 상상할 수 있다.



氏衛幸所田長會民留居

도쿠히사 요네조 회장이 부산으로 가면서 사임하자 이노 에스케 부회장이 대리를 맡았지만 마찬가지로 사임하고 도구라 주로쿠가 추천을 받아 회장 대리를 맡았다. 이때부터 회장을 민장(民長)으로 개칭했다. 이어서 평의회에서 다도코로 유키에(田所幸衛)를 민장으로 선출해 다소나마 자치 체제를 갖추었는데, 다도코로 유키에 민장에 반대하는 쇄신회(刷新會)가 일어나 민회에 강하게 반항을 시도했다. 그러나 시정에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 이때 민회 사무소를 북문 밖으로 옮기고 서기를 증원했다. 학교를 세우고 철도국 및 군대와 협의해 도로 공사를 계획해 측량에 착수했으며 위생 시설도 만들었다. 이와 같이 다도코로 유키에 민장은 열심히 임무를 양장(鞅掌)²⁵⁾했지만, 1906년 8월의 학교신축 문제로 『대구일일신문(大邱日日新聞)』의 공격이 거세지자 민회는 부산이사청의 재결을 구하는 진정을 몇 차례 했다. 하지만 요령부득으로 같은 달 29일에 의원 모두 사표를 제출했고 다도코로 민장은 자신의 사표와 함께 그것을 부산이사청에 제출하고 물러났다. 이렇게 해서 대일본인거류민회는 종언을 고하고 자치기관은 일시 중지되었다.

그런데 자치제의 기초는 이미 구축되었다. 민단만 그 기초를 다진 것이 아니라 일본제국 정부는 1905년 3월 법률 제41호로 거류민단법을 공포해 전관거류지(專管居留地), 각국 거류지, 잡거지, 그 밖의 지역에 주거하는 제국 신민의 상황에 따라 외무대신이 필요하

25) 매우 바쁘게 일함, 일을 맡아 봄

다고 인정할 때는 구역을 설정해 구역 내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거류민단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 법률은 통감부 설치 이전에 공포된 것으로 조선 내 일본인 거류민단을 목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었으나 한국에서는 같은 해 11월 17일에 이른바 ‘일한신협약(日韓新協約)’이 체결되면서 통감의 주차(駐筭)²⁶⁾를 결정하고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를 공포했다. 이듬해 1906년 2월 1일에 통감부가 사무를 개시하고 같은 해 11월 1일에 거류민단이 설립되어 통감의 시정과 함께 거류민단법의 의의를 한층 명료하고 견실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통감부가 설치되고 각 이사청도 순차적으로 개청했다. 이에 따라 1906년 7월 부령(府令) 21호로 거류민단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지와 시행 기일은 통감이 이를 정하는 것으로 했다. 같은 해 9월 15일에 대구이사청 개청식이 열려서 여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자인 오카모토 리헤(岡本利平) 부이사관은 “방금 통감부의 공전(公電)²⁷⁾을 접수했다”며 그 자리에서 일동에게 전보문을 낭독했는데 그 내용은 “11월 1일부터 대구에 거류민단법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전원이 변무(拵舞)²⁸⁾하며 만세를 외쳤다. 오카모토 리헤 부이사관은 곧바로 민단 설립 준비에 착수해 가게야마 히데키(影山秀樹)를 설립위원장, 도구라 주로쿠를 회계위원으로 하고 이하 12명의 위원을 뽑아 설립 업무를 맡겼다.

대구는 1893년에 일본인이 거류를 시작한 후 1906년의 민단법 실시까지 14년의 기간이 있었다. 이 동안 거류자의 증감이 있었지만 숫자가 점차 늘어난 것은 1903년부터이다. 그리고 1904년의 러

26) 외교사절로서 외국에 머물러 있음

27) 관청에서 치는 공무 전보

28) 손뼉치며 춤추다.

일전쟁 발발 때 급증해 다소 단체의 힘을 갖추었지만 그 발전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일본의 영향력이 아직 조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구는 일개 군으로 위로 관찰부가 있었다. 명칭은 군현이지만 실상은 봉건제도와 다르지 않았다. 군수조차 사법권을 갖고 있어서 민형사 재판을 마음대로 했으며 생사여탈은 그의 마음에 달렸다. 관찰사는 경상북도 41개군을 통할하면서 사법과 행정의 권위를 마음대로 누려 그赫赫함이 왕후장상을 능가했다. 특히 관찰사 선임은 별열(闊闊)²⁹⁾이 아니면 매관(買官)이었다. 어찌 2천석을 바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관찰사의 선임이 이러하고 군수의 임관 또한 마찬가지로이니 그 이하의 관료도 뇌물의 결과이거나 연줄로 얻은 것이다. 관리만 관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부 또한 관직을 팔아 국고에 충당했던 것도 사실이다. 예부터 조선은 관준민비(官尊民卑)의 현격함이 심각해 봉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관직을 절실히 원했다. 그 이유는 한 번 관직을 얻으면 평생 서민들 위에 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전 관직으로 현 관리에 대항할 수 있어서 능욕과 주구를 막을 수도 있었다. 서민이 부를 때는 옛 관명을 붙여서 경칭하기 때문에 부호의 자제는 보통 관직을 사서 품위를 만 들었다. 지금도 많은 경우 조선인들이 문패(門標)에 ‘이전 판관이나 이전 주사’ 등을 적는 것은 이 때문으로 이런 사람들과 시험 삼아 말해보면 관리 경력이 조금도 없다. 이는 조선에서만 볼 수 있는 기이한 일이다.

조선의 지방관은 위와 같다. 그러므로 인민을 흠이나 쓰레기처럼 하찮게 여긴다. 하물며 외국인은 어떻게 여기겠는가. 그런데 강대국에 자복(雌伏)³⁰⁾하는 것은 조선의 습관이다. 선천적으로 중국을

29) 나라에 공이 많고 벼슬 경력이 많은 집안.

30) 장래를 기하면서 지금은 남에게 굴종하여 때를 기다림.

승배해 ‘대국, 대인’이라고 부른다. 일본인이 대구에 처음 왔을 때는 청나라 세력이 왕성한 때였다. 청일전쟁의 결과 그 세력이 사라졌지만 러시아 세력의 침투는 해마다 그 토대를 굳혀 친러당이 조정(官府)에 넘쳐났고 조선인 관리가 일본인을 모멸하는 것이 심해서 지금 이야기하면 과장되었다고 웃음을 사겠지만 민단제도 이전에 일본인의 고통은 실로 필설(筆舌)로 다하기 어려운 참담한 상황이었어서 당시부터 거류한 사람은 격세지감이라고 말한다.

일본인이 조선의 관헌에게 학대받은 것은 앞서 적은 대로 일본의 세력이 아직 신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대구는 부산영사관의 관할 지역이었지만 대구의 거류민은 마치 부산의 일본인이 여행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본 관공서도 없이 오로지 전신 수비 담당 헌병에 기대어 겨우 생명을 보호했을 뿐이다. 덧없이 장대한 계획을 품고 쓸모없이 세월을 흘려보내는 가운데 1903년 11월 1일에 우편수취소가 설치되어 소포·우편·우편환 취급을 개시하는 동시에 순사 1명이 부산경찰서에서 파견되었을 때는 거류민 모두가 미친 듯이 기뻐하며 온 힘을 모아 환영회를 열었다고 한다. 이처럼 초창기에 잘도 견디며 14년 동안 민단의 기초를 다지는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조선의 통치권이 일본에 맡겨지고 통감부가 열리면서 이사청이 설치되고 대구이사청 개청에 이어 대구거류민단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제2장 본기(本紀)³¹⁾

1905년 3월 일본제국 정부는 의회의 협찬(協贊)³²⁾을 거쳐 법률 제41호로 거류민단법을 제정했고 이듬해 1906년 7월 거류민단법 시행규칙을 공포했으며 경성·평양·인천·부산을 시작으로 대구를 포함한 12개 개항장에서 시행했다.

법인인 거류민단은 관의 감독을 받으면서 법령 또는 조약의 범위 내에서 공공사무와 법령·조약·관례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고, 그 기관으로는 관리 및 거류민회를 두어 조직·임면·선거·임기·급여·직무 권한 등에 관한 사항과 거류민단의 재산, 부채, 시설물, 경비의 부과·징수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했다.

거류민단법 공포 당시에는 아직 통감부도 열리지 않았고 이사청도 설치되지 않았다. 따라서 영사·공사·외무대신의 순서로 거류민단을 감독했지만 거류민단법 공포 이후 ‘일한신협약’이 체결되면서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1명의 통감을 두어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직접 한국 황제를 내알(內謁)할 수 있게 했으며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양국 전권위원이 1905년 11월 17일에 조인을 마치면서 당초 외무성 소관이었던 거류민단은 통감부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0일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가 제정되어 거류민단의 직접 감독자는 이사관으로 결정되었다.

1906년 7월에 통감부령 제21호로 거류민단법 시행 규칙을 발표하고 시행에 따른 규정을 정했다. 이 통감부령은 이후 몇 번 개정

31) 기전체 역사책에서 제왕 일대의 사적을 기록한 부분.

32) 구일본 헌법에서 의회가 법률안 또는 예산안을 성립시키기 위해 의사 표시를 하는 것.

되었다. 이는 한국 통치권의 진전에 따른 결과로 통감부에서 총독 부로 진행되는 데에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이었다. 이 가운데 특별한 변경 사항은 민장을 관선으로 한다고 개정한 것 한 가지이다.

1906년 9월 15일에 통감부는 대구이사청에 전보를 보내 11월 1 일자로 대구거류민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음을 통지했다. 이에 부 이사관 오카모토 리헤 감독관이 거류민단설립위원 12명을 지명하고 가게야마 히데키를 위원장에 임명했다.

1906년 11월 1일 대구거류민단 사무소를 열어 가게야마 히데키 를 민장 대리로 하고 도구라 주로쿠를 대리 조역(助役)으로 임명했다. 12월 21일에는 제1회 민회의원 선거를 진행했다. 당시 거류민 인구는 1,600여명이어서 법정의원수 12명을 뽑아 거류민회가 성립 되었다. 이어서 같은 달 24일에 거류민회를 열고 임원 선거를 진행 해 민장에는 가게야마 히데키, 조역에는 도구라 주로쿠 두 사람이 당선되어 취임했다. 가게야마 히데키 민장 시절에는 성벽 철거 요 구가 민단의 가장 대표적 성과였다. 당시 관찰사 서리 겸 대구군수 였던 박중양은 성벽 철거를 흔쾌히 수락(快諾)하고 영단(英斷)으로 결행했다. 이로써 읍성 안팎의 교통이 열리고 성내에 거주하는 일 본인도 점차 증가해 일본인과 한인의 잡거(雜居) 상태가 되었으며 한인의 관념적 성곽이었던 배일사상(排日思想)도 점차 철거되었다.

성벽 파괴는 거류민단 설치 때부터 시작해 이듬해 1907년 4월까지 모두 마쳤다. 같은 해 2월 부산거류민 오이케(大池)는 대구 성 벽 터 개수공사 청원서를 이사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은 후 폭 5간 (間) 도로를 만들고 나머지 폭 2간은 99개년 동안 무상으로 대여받 아 평당 40전으로 거류민에게 임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단은 이것을 개인이 이익을 농단해 민단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하 고 민단사업으로 5천원을 투자해 7간 도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신식민지’에는 제사·장례 설비가 부족하고 국민성을 하나로 묶는 황조(皇祖)의 봉배소(奉拜所)가 없어서 달성산에 땅을 골라 대신 궁요배전(大神宮遙拜殿)을 건립했고 나아가 공원으로 만들자는 논의가 일어나 민단 유지들은 달성공원기성회를 만들고 복권(福引券)을 발매해 경비를 보충했다.

1907년 4월에 이사청을 동문 밖에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매입하자 민단은 동문에서 이사청에 이르는 7간 도로를 만들고 동문 밖 3간 도로를 5간으로 늘리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북문 밖 정차장에서 성벽터에 이르는 직선도로를 만들기로 결정했으며 지주들도 바로 승낙해 공사에 착수했다. 4월에 성벽 철거가 완료되자 박중양 군수는 경무서에 위촉해 성벽 쪽에 가옥을 소유한 한인을 타일러 대체할 땅을 주어 퇴거시키기로 했다. 한국의 도로는 협소할 뿐만 아니라 구불구불해서 교통과 운수의 불편이 심했지만 한인은 이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으므로 민단은 스스로 도로를 만들고 교통의 편리를 꾀했다. 또한 일본인 토지소유자들은 장래의 시가치를 예상해 각자 사설도로를 만들어 옛 동문과 북문 밖 땅은 보리밭과 채소밭조차 사통팔달의 도로를 갖추었다.

교육기관의 부족은 착실한 이주자를 유치하는 데에 장애가 되었다. 그리고 이미 정착한 거류민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바였다. 거류민이 적었을 때는 한인을 교육하는 달성학교에 위탁하려 했으나 그 폐해를 생각해 학교 건물은 임시변통의 설비로 충당하고 간신히 거류민 가운데 교육가를 1명 물색해 교편을 부탁했지만, 거류민이 증가함에 따라 온전한 학교가 필요함을 깨닫고 민단 설치 이전에 학교 신축계획을 세웠지만 실현하지 못했다. 민단 설립 후 곧바로 이에 착수해 유지 이와세 시즈카(岩瀬静)가 출선해서 열심히 임했고 오카모토 리헤 부이사관에게 억지로 위원장을 맡기는 한편 가게

야마 히데키 민장과 위원들이 분주히 기부금을 모아서 총 9천 3백 여 원을 투입해 1907년 3월에 낙성했다.

1907년 10월에 현 천황폐하가 아직 황태자일 때 고(故) 아리스가 와노미야다케히토 친왕(有栖川宮威仁親王)을 따라 황궁을 나와 멀리 한국에 행계(行啓)³³⁾하셔서 대구거류민단 위생비 700원, 대구민단립 소학교 교육장려비 200원의 은사금을 내려주셨고, 아리스가와노미야다케히토 친왕 전하는 위생비로 300원을 하사하셨다.

민단은 이때부터 점점 발전해 제일은행출장소, 대구석유판매조합, 대구곡물상조합, 대구해륙물산회사, 대구신탁회사, 한국제연합자회사³⁴⁾, 대구농회 등이 생겨났고 거류민이 두 배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수반한 민단 시설이 필요해졌다. 경비 증가도 피할 수 없게 되자 민단은 철도국과 교섭해 대구정차장의 철도용지를 빌려서 거류민에게 임대해 니시키초(錦町)와 사이와이초(幸町) 일부를 시가지로 조성하고 그 수익을 민단 재원으로 활용했다. 해당 용지는 원래 철도국 소유이므로 1913년부터 조금씩 돌려주었다. 민단 구역이 이처럼 확대되자 우지노 도쿠타로(氏野徳太郎) 이사관은 이사청령으로 청소 규칙을 발표해 대구거류민단에 적용했다.

1913년 11월 민회에서 민단립 소학교를 문부성 해외지정학교로 하는 안이 부결되자 거류민 사이에서 논의가 들끓었다. 이에 12월 17일 민회를 열어 같은 문제를 의안으로 삼고 마에다 아츠시(前田篤志) 교장을 특별 참석시켜 심의한 끝에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12월 17일 민회에서는 마스다 고타(増田虎太) 의원이 긴급동의를 제출했다.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의장은 제출안을 비밀히

33) 태황태후·황태후·황후·황태자·황태자비·황태손 등의 행차.

34) '한국제연합자회사'의 '제연(製筵)'은 돛자리 혹은 다다미 걸 제조를 의미.

의에 붙여 방청인을 퇴장시키고 토의했다. 채택(採決)은 했지만 해당 안건의 의사는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달 가게야마 히데키 민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우지노 이사관이 화해를 권했지만 번복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에 도구라 주로쿠 조역은 민회를 소집해 27일에 민장 사임에 관한 의사를 진행했다. 민회는 가게야마 히데키 민장의 사임을 인준하고 민장이 없는 동안에는 도구라 주로쿠 조역이 1908년 3월까지 대리를 맡기로 했다.

1908년 3월에 한국의 재판제도가 개정되어 고문제도를 폐지하고 사법권을 통감부에 위임했으며 3급심 및 합의제도로 고쳤다. 그 결과 전국 세 곳에 공소원(控訴院)을 두게 되자 부산도 소재지가 되기를 갈망하고 대구도 지리상 당연히 대구에 설치해야 한다고 믿으면서 결국 두 지역이 경쟁했고 지역 신문은 서로 논전을 펼쳤다. 이에 민단 유지 60여명은 24일 밤 민단 사무실에 모여 협의한 결과 위원 5명을 뽑고 그 가운데 2명을 상경 위원으로 정해서 통감부에 진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해당 건은 민단이 움직임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대구에 설치되었다.

1908년 3월 3일 민회에서 가와이 아사오(河井朝雄) 의원이 긴급 동의를 제출했다. 민장이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민장 후보자로 와타나베 무라오(渡邊村男)를 추천했다. 채택 결과 와타나베 무라오가 대다수의 찬성으로 당선되어 곧바로 취임했다. 민단은 이 시기에 가장 급속도로 발전해 민단 설치 당시와 비교하면 거류민이 11할 넘게 증가했고 건축도 많이 진행되어 도끼와 끌 소리가 끊이지 않아 신축 건물이 하루 평균 한 개씩 세워졌다고 한다.

거류민과 한인의 관계는 해를 거듭하면서 융화되었다. 한인은 거류민이 증가하면서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본인을 환영하는 경

향이 생겨났다. 일본과 한국은 각각 풍속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한인은 대개 여윌돈이 없어 구매력이 지극히 빈약했는데 다수의 일본인 거류민과 군인·관리는 모두 한인에게 구매자가 된 것이다. 일본인은 한국의 농산물과 가축을 식품으로 공급받고, 토지를 매수하고, 인부를 고용하고, 말·가마·수레를 타는 등 한인들에게 지출은 했지만 수익은 없었다. 얼마되지 않았지만 한인한테서 수익을 얻는 자는 한인을 상대로 한 몇몇 상점에 불과했다. 따라서 일본인의 증가는 한인이 기뻐하는 부분이었다. 일본인과 접촉이 빈번해짐에 따라 인정이 통하고 점차 융화되었다고 하지만 역시 민단이 항상 한인 지도를 자임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다는 공적은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한인은 위생 관념이 전혀 없었다. 소방 설비도 전무했다. 전적으로 일본인이 노력해서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민단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한인들도 보호한 것이다. 특히 화재는 비교적 한인 가옥에서 많이 일어났다. 민단 소방단은 항상 소방 임무를 맡았으며 일본과 한국을 구별하지 않았다. 공평한 재판과 엄격한 군대 등과 함께 한인은 점차 거류민단을 신뢰하게 되었다.

1909년 1월에 민단은 흔치 않은 성대한 사업과 조우했다. 1월 6일에 한국 황제는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궁중에 초대해 각 대신 이하에게 배식(陪食)³⁵⁾을 하사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남부 지역 순행을 결정해 다음 날 7일 대구에 행차(行幸)할 것이라는 전보가 갑자기 날아들었다. 대구의 일·한 관민 모두 뜻밖의 일에 놀랐다. 왜냐하면 조선의 법에서 왕은 백리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부 지역 순행이 사실이라면 한국 황제를 일본으로 파견시킬 것이라고 한인 다수가 의심을 품었다.

당시 한국 황제는 조선 반도 13개 도의 원수였다. 황제를 봉영

35) 귀인을 모시고 식사함.

(奉迎)함에 도리를 다해야만 했다. 민단은 이를 영광으로 여기고 일·한 각 관아와 함께 황급히 준비했다. 우선 일본인과 한인의 연합위원회를 설치해 대구 주둔 제12여단장 쓰네요시 다다미치(恒吉忠道) 육군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박중양 관찰사와 히사미즈 사부로(久水三郎) 이사관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구로카와 미노루(黒川) 검사장과 가와카미 쓰네오(川上常郎) 재무감독국장, 다케우치 간타로(竹内卷太郎) 도 서기관이 행재소(行在所)³⁶⁾ 설비 담당을 맡았다. 기쿠치(菊地) 연대장 이하는 숙사를 담당했다. 도이 요타로(土井庸太郎) 공소원장 이하는 연회를 맡았다. 연도 경비 담당은 유아사 히데토미(湯淺秀富) 경찰부장이 경부와 순사를 이끌고 이를 맡았다. 민단은 와타나베 무라오 민장과 마스다 고타 민회의장을 필두로 해서 서무, 숙사, 연회, 마차, 불꽃놀이 등 각 방면을 맡았다. 또한 민단은 시가지와 달성공원의 설비를 맡아 선배 거류민 유지들이 온 정성을 쏟아 제등행렬 등을 준비했다. 1909년 1월 7일에 민단은 와타나베 무라오 민장을 대표로 해서 중간까지 봉영했다. 오후 3시 25분 임시 궁정열차는 대구역에 정차했다. 일·한 각 학교 학생, 일본적십자사원, 애국부인회원, 각 관아와 관공서 관리, 각 단체 대표자는 정차장에서 봉영하고, 대구수비대는 경위 임무를 맡았다. 한국 황제는 관찰사 박중양이 선도해서 편전(便殿)³⁷⁾에서 잠시 휴식한 후 무개 마차를 타시고 이토 히로부미 통감과 무라타(村田) 무관이 함께 마차에 동승해 모셨으며 한국 조정의 각 대신과 궁내관 및 통감부의 문무관들이 이어서 호종(扈從)³⁸⁾해 니시키초를 횡단한 후 모토마치(元町)에서 동성정(東城町)에 이르렀다. 남

36) 임금이 궁을 떠나 멀리 나들이할 때 머무는 곳.

37) 왕과 왕후의 임시 휴식처.

38) 모시고 수행함.

성정(南城町)을 거쳐 관찰도 후당(後堂)의 행재소에 드셨다. 도시 전체에 일·한 국기가 게양되고 도로 전체에 하얀 모래가 깔렸는데 소요된 모래 양이 60만담(擔)에 이르렀다. 대구정차장과 달성공원에 는 대록문(大綠門)을 설치했고 대구신문사는 행재소 정로(正路)에 있어서 송영문(送迎門)을 만들었다. 연도에는 배관(拜觀)하는 사람 들로 울타리가 생겼고 승여(乘輿)³⁹⁾와 마차가 지나갈 때마다 만세 소리에 땅이 울렸다.

이날 밤 이토 히로부미 통감의 환영회는 달성관에서 열렸다. 배 빈(陪賓)⁴⁰⁾은 한국 황실의 황족인 의양군(義陽君), 내각총리대신 이 완용 이하 각 대신 등 일·한 고관 60명에 이르렀다. 시내에서는 제등행렬을 하면서 환호성이 거리(閭巷)에 가득했다. 때마침 부산에 정박 중이던 제2함대 사령장관 데와(出羽) 해군 중장은 특별히 와서 알현했다. 이는 한국 황제를 군함에 맞이해 해로로 마산항으로 봉영하기 위해서였다.

다음날인 1월 8일에 노부(鹵簿)⁴¹⁾는 전날처럼 대구를 출발해 부산과 마산을 순수(巡守)⁴²⁾한 후 11일에 다시 대구에 주련(駐輦)⁴³⁾하셔서 달성공원에 천가(遷駕)하셨다. 12일에 경성으로 회란(回鑾)하셨다.

한국 황제는 대구 일본인 거류민의 성의를 가상히 여겨 거류민단에 1000원, 교육비 500원, 대구동인의원에 500원, 민단구휼비 500원, 일본인 소방단에 200원을 하사하시고 이토 히로부미 통감은 민단비 500원, 교육비 300원을 기증하셨다.

39) 천자가 타는 수레.

40) 주빈과 함께 초대받은 손님.

41) 임금이 거동할 때의 행렬.

42) 천자가 여러 지방을 시찰함.

43) 천자가 연을 멈춤. 행행지에 머무름.

한국 황제의 주필(駐蹕)⁴⁴로 대구거류민단은 세상에 널리 소개되었다. 당시 각지의 신문사와 통신사는 사원을 특파했기 때문에 민단의 발전 상황이 유감없이 보도되는 기회를 얻었다. 이에 기자단 초대회를 열어 와타나베 무라오 민장은 민단을 대표하고 사카이 만지로(堺萬次郎) 상업회의소 부회두는 상업회의소를 대표해 발기인이 되었으며, 이나모토 신민(稻本新民)과 미와 조테쓰(三輪如鐵)는 유지들을 대신해 접대의 수고를 맡았다. 『경성일보(京城日報)』, 일본통신사(日本通信社) 지국, 『조선신문(朝鮮新聞)』, 『부산일보(釜山日報)』,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 『호치신문(報知新聞)』 등의 사장·기자·통신원을 초청해서 민단 및 상업회의소 의원과 유지 수십 명이 참석해 주객의 의견을 교환했다.

1910년은 한국의 혁명에 해당하는 해로 민단도 유신의 시기를 맞이했다. 8월 29일에 한국을 일본에 병합해 ‘조선’이라는 옛 이름을 되살리고 총독부를 열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통감이 새롭게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관찰도, 이사청을 폐지하고 경상북도청을 설치했으며 대구군을 부(府)로 바꾸고 군수 대신 부윤을 두었다.

거류민단은 원래 러일전쟁 후에 거류민이 증가하면서 설립된 일본인 자치단체로서 제국 신민이 조직한 것이기에 병합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지방 행정기관에 편입되어야 했지만 조선인은 아직 일본인과 함께 자치제를 운용할 능력이 없었다. 조선에서 지방행정제도는 아직 자치제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성급하게 거류민단을 지방 행정기관에 편입시키면 행정상 여러 지장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해체와 동시에 민단의 종래 역사와 효적(效績)을 완전히 상실할 터였다. 결국 거류민단체도를 대신해 조선의

44) 임금이 나들이 하는 도중에 거가를 잠시 멈추고 머무르거나 묵는 일.

상황에 맞는 자치제를 시행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총독부 설치와 동시에 제령(制令) 제1호로 거류민단 법과 그 시행규칙은 당분간 조선에서 효력을 지닌다고 인정하고 훈령(訓令) 제16호로 거류민단의 정리는 장래에 이를 대신할 지방행정제도를 완성하고 나서 착수하게 되었다.

‘일·한 병합’의 결과는 거류민단에 간접적 이익을 주었고 적지 않게 민단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첫째 종래에 각각 독립되어 있던 보통경찰기관과 헌병대 경비기관이 통일되면서 그 기능이 충실해지고 확실함이 더해져 종래에 아무 생업도 없이 양민을 괴롭히며 도식과 약탈을 일삼던 비도(匪徒)와 초적 같은 자들도 마침내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되어 지방 거류민의 발전을 도왔다. 둘째 수산(授産)⁴⁵⁾, 교육, 흉년 구제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전국 부·군에 임시 은사금을 배여(配與)⁴⁶⁾하고, 양반 유생 고령자에 대한 은사, 효자와 절부(節婦)에 대한 포상, 환과(鰥寡)⁴⁷⁾와 같은 고독한 사람에 대한 진휼(賑恤)⁴⁸⁾ 등의 성지(聖旨)⁴⁹⁾가 현실에서 이행됨에 따라 열복(悅服)⁵⁰⁾한 신부(新附)⁵¹⁾ 국민의 구매력이 늘고 일본인 거류민들과의 상거래도 증가했다. 셋째, 병합 이후 무역이 현저히 팽창해 수입·수출의 경우 대구에서 부산으로 수이출(輸移出)되는 것과 부산에서 대구로 수이입(輸移入)되어 각 지방으로 산포(散布)되는 것이 모두 급증해 대구거류민단의 상업이 은진(殷賑)⁵²⁾해졌다.

45) 실업자에게 일을 주어 생활의 길을 열게 함.

46) 뭇뭇이 나누어 줌.

47) 홀아비와 과부.

48) 가난한 사람이나 이재민을 구하기 위해 금전이나 물품을 줌.

49) 천황의 생각.

50) 기쁜 마음으로 복종함.

51) 새로 따르게 된 백성.

52) 번화하고 성함.

재무기관인 재무감독국과 재무서도 지방청으로 통일되어 도·부·군에 분장되었다. 임업사무소도 도청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모두 민단 소재지에 있었기 때문에 거류민의 편리에 영향은 없었다.

총독부 지방 관제는 1910년 9월 30일의 칙령으로 공포되어 도장관과 부윤이 거류민단의 감독관이 되었다.

1911년 3월에 와타나베 무라오 민장의 임기가 만료되자 거류민회는 기쿠치 겐조(菊地謙讓)를 새롭게 추천했다. 총독은 이를 바로 임명해 기쿠치 겐조가 민장에 취임했다.

거류민단은 ‘일·한 병합’의 결과 조만간 개폐되어야 할 존재였고, 총독부는 그 시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렸다. 각 민단 가운데는 민단 준치 운동을 벌이는 곳도 있었지만 대구거류민단은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 연연하지 않았다. 이 사이 3년 7개월여 동안 거류민은 해마다 증가해 호수(戶數)는 2,300여호 인구는 7,800여명에 이르렀다.

민단의 발전과 함께 제반 시설계획은 모두 도시적으로 진행되었다. 1913년에 대구정차장이 개축되자 역 앞의 12간 예정 도로를 급히 개수할 필요가 생겼다. 도·부(道府)와 민단은 힘을 합쳐 지주들과 타협하는 것에 힘썼다. 이 밖에 소학교 증축, 하수도 공사, 대구-포항 간 경편철도 부설 계획, 수도 부설 계획, 대구-안동 간 도로 속성공사, 공동묘지 선정, 위생설비 개량, 소방기관 완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많은 부분은 민단 후반기에 노력한 것이다. 특히 수도 계획은 민단의 숙원사업이었다. 총예산 48만 5천원 가운데 24만 5천원은 민단체(民團債)를 발행해 충당하고, 나머지 24만원은 국고 보조를 요청하는 형태를 갖추어 총독부에 청원했다. 총독부는 수원지와 기타 중요 조사를 진행해 민단의 희망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제31회 제국의회에 제출한 조선총독부 예산 안에 포함

시켜 양원(兩院)⁵³⁾의 협찬을 얻었다. 그런데 민단이 없어짐에 따라 수도사업도 대구부가 모두 경영하게 되었다.

대구거류민단은 1906년 11월 1일에 설치되어 1914년 3월 31일에 사라졌다. 7년 5개월 동안 존재했다. 이 동안 민장은 가게야마 히데키, 와타나베 무라오, 기쿠치 겐조 세 사람이 경임(更任)했고 조역은 도구라 주로쿠 1명이었는데 중간부터 조역은 두지 않았다. 민회의장은 나카에 고로헤(中江五郎平),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마노 세이치(麻野清一), 마스다 고타(増田虎太), 이와세 시즈카(岩瀬靜) 등 몇 사람이 역임했다. 민회의원은 초창기 이래로 당선자가 40여 명에 달했다.

대구거류민단은 다른 민단과 비교하면 상황이 많이 달랐다. 첫째 대구가 옛 도읍이나 개항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조선인과 잡거하면서 밀접히 접촉한다는 점이다. 셋째 정치적·무역적 관계가 없이 일찍부터 일본인이 거주하려 했다는 점이다. 넷째 전문 상업가 이외에 다른 실업가들이 거류민에 섞여 있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특히 농사 경영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여섯째 배후에 광활한 군부를 두고 있어 도비(都鄙)⁵⁴⁾ 발전의 관문이라는 점이다. 이상은 대구거류민단이 타 지역 민단과 상황을 달리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대구거류민단이 다른 지역에 두드러지는 것은 '경복'이라는 큰 지역의 경영자임을 자임하고 대구에서는 일본인의 몇 배에 달하는 조선인을 유액(誘掖)⁵⁵⁾하고 지도해서 함께 현재의 대구부를 대성시켰다는 점에 있다.

자치제 아래에서 인민이 정치적 주장을 달리하고 당파를 나누는

53) 중의원과 귀족원

54) 도시와 농촌.

55) 이끌어 도와줌. 손을 잡고 지도함.

것은 이해관계 상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을 보고 논의에 치우쳐 분쟁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대구거류민단은 7년여의 시간 동안 당파를 나누어 다툰 일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때문에 자치기관 운용을 저해한 일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연찬(研鑽)⁵⁶⁾해서 발전을 촉진시킨 사례가 역력하다. 당초에는 민단비 경감을 외치는 소극론자가 있었고 이에 대해 시설의 시급함을 주장하는 자도 있었다. 상업회의소 폐지론이 일어나자 함께 연구해서 반대로 그 유지에 노력하기도 했다. 공민회(公民會)라는 것이 생겨나 두 개 파벌이 양립하려 하자 곧바로 융화해 서로 제휴했다. 세 가지 세금을 새롭게 부과했을 때 민단은 당국에 진정을 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설명을 듣고는 유순해졌다. 민장 관선 반대론이 각 민단에서 기세를 올렸지만 대구거류민단은 초연하게 그 소용돌이에 뛰어들지 않았다. 자치제 존치론이 제기되었지만 대구거류민단은 대세를 살펴서 이에 뇌동하지 않았다. 민단 업무의 일부를 계승한 학교조합회 의원선거의 경우도 거의 경쟁이 없어서 정해진 후보자 숫자, 의원직 횟수를 넘지 않은 채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대구거류민단의 설치는 1906년이지만 일본인은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 이것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민단은 자치제를 펼치기 전에 이미 큰 자본을 사업에 투자하고 큰 노력을 들여 자치 시대에 이르렀으며 더욱 증자하고 노력해 진보·발전시켜 온 것이다. 경제상 민단의 주요 요소는 상업가, 농업가, 자본가, 관리, 군대이다. 이 가운데 가장 영구적인 경영자는 농업가이다. 이에 버금가는 것은 토지를 소유한 자본가이다. 이들은 초창기부터 차근차근 성공했다. 농가의 일본종 잎담배 재배와 같은 것은 조선 전체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성황이다. 그런데 1913년의 가격폭락으로 경작자는

56) 깊이 연구함.

대손실을 보았다. 파산에 허덕이는 사람이 적지 않은 상태였다. 시가지 토지소유자도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민단은 발전의 보무를 잠시도 멈추지 않고 있지만 자본 경색이 점점 금융을 꺾박하고 지가가 점차 하락하면서 경황(驚慌)⁵⁷⁾이 올 것을 예상해 토지매매는 거의 두절 상태이다. 이처럼 경제계는 현재 지극히 부진하다. 요컨대 사업에 필요한 자본 부족이 가장 주된 원인이다. 지금 민단 경제계는 결국 자본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급무라고 이야기한다.

거류민단이 폐지되자 총독부는 임원과 의원에게 상을 주며 공로를 표창했고, 민단은 민장과 역대 의원 및 임원에게 금품을 증정하며 보답했다. 나머지 내용은 각 장에 나누어 게재했다. 이상을 본기(本紀)로 한다.

〈거류민단법 : 1905년 3월 법률 제41호〉

제1조 전관거류지, 각국 거류지, 잡거지,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제국 신민의 상태에 따라 외무대신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제국 신민으로 조직된 거류민단을 설립할 수 있다.

거류민단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명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2조 거류민단은 법인으로서 관의 감독을 받고 법령 또는 조약의 범위 내에서 공공사무 및 법령, 조약 또는 관례에 따라 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거류민단에 임원 및 거류민회를 둔다.

제4조 거류민회의 조직, 거류민단 임원 또는 거류민회 의원의 임

57) 놀라고 두려워 허둥지둥함.

면, 선거, 임기, 급여 및 직무 권한 등에 관한 사항 및 거류민단의 재산, 부채, 영조물 경비의 부과·징수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명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5조 거류민단은 영사, 공사, 외무대신의 순서로 이를 감독한다.
단 지역의 상황에 따라 제2차 감독을 생략할 수 있다.

전항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6조 거류민단 설립 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제국 신민의 공동재산 및 부채의 처분, 기타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이를 정한다.

〈거류민단법 시행규칙 : 1906년 7월 통령(統令) 제21호〉

개정 (1908년 통령 제15호)
(1908년 통령 제23호)
(1910년 6월 총령(總令) 제28호)
(1910년 12월 총령 제60호)

제1장 총 칙

제1조 거류민단의 배치·분합 또는 구역 및 명칭 변경은 조선총독부가 이를 정한다.

앞항의 처분 중 재산처분이 필요할 때는 관계 거류민회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의견을 구해 도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2조 거류민단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는 거류민이라고 한다.

거류민은 거류민단의 재산 및 영조물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부담을 분임할 의무를 진다.

제3조 거류민단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4조 거류민단은 거류민의 권리·의무 및 거류민단의 사무에 관해 거류민단규칙을 둘 수 있다.

제2장 거류민단 임원(吏員)

제5조 거류민단에 민장 1명을 둔다. 민장은 조선총독이 이를 임명한다.

제6조 민장은 거류민단을 통할하고 대표하며 행정업무를 담임한다.

제7조 민장은 거류민단 관리를 지휘·감독하고 관리에 대해 징계를 가한다. 징계는 10원 이하의 과태금 및 견책으로 한다.

제8조 거류민단에 조역(助役) 및 회계담당 각 1명을 둔다. 단 거류민단규칙으로 조역의 정원을 2명으로 하거나 조역 및 회계담당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조역 및 회계담당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조역 및 회계담당은 민장의 추천으로 거류민회가 선정하고 도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조역은 민장을 보조하고 민장에게 사고가 났을 때 이를 대리한다.

제10조 회계담당은 거류민단의 회계사무를 맡는다. 회계담당을 두지 않은 거류민단은 도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장, 조역 또는 서기가 이를 겸장한다.

제11조 거류민회는 회계담당 또는 앞 조 제2항의 규칙에 따라 회계사무를 맡은 자에게 사고가 났을 때 이를 대리할 관리를 선정해 부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거류민단에 서기 및 필요한 기술원을 두고 민장이 임명한다.

서기 및 기술원의 정수는 거류민단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서기는 민장의 명령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조역을 두지 않은 거류민단에서 민장에게 사고가 났을 때는 회계담당이 대리하고, 회계담당이 없을 때는 수석서기가 대리한다.

제14조 거류민단 관리는 유급으로 한다. 단 민장이 임명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장 거류민회

제15조 거류민회 의원 정원은 8인 이상 30인 이하 내에서 부윤이 이를 정한다.

제16조 거류민 가운데 만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1년간 거류민단체 연액 5원 이상을 납부한 자는 선거권을 지닌다. 단, 금치산자 및 준금치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7조 선거권을 지니는 거류민은 피선거권을 지닌다. 단 아래와 같은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도·부의 관리 및 거류민단 관리
2. 신관(神官), 신직(神職), 승려, 기타 제 종교사
3. 학교 교원

제18조 거류민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거류민회 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 민장은 선거 기일 전 50일을 기해 해당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었지만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선거인 명부 작성 후에 선거 기일을 변경하더라도 작성한 명부를 사용한다.

선거인 명부는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의 선거에 이를 사용한다.

제20조 민장은 선거 기일로부터 적어도 7일 이전에 선거 장소, 투표일시 및 의원수를 고시해야 한다.

민장은 선거사무를 통할하고 선거 장소 관리에 임한다.

제21조 선거는 투표에 따라 이를 행한다. 투표는 의원 정원이 20인 이하일 때는 그 1/2, 24인 이상일 때는 그 1/3의 피선거인 성명을 기재하고 선거인 스스로 이를 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투표 때는 선거인 성명을 기재할 수 없다.

투표용지는 일정 양식에 따라 민장이 이를 작성해 배부해야 한다.

제22조 거류민회 의원 선거는 다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득표수가 다섯 표 미만은 안된다.

앞항 규정에 따라 당선자를 정하고자 할 때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연령이 같을 때는 민장이 추천해 이를 정한다.

민장은 당선자에게 당선을 고지해야 한다.

당선자가 당선을 사양할 때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보충할 당선자를 정한다.

제23조 민장은 선거록을 작성해야 한다.

선거를 마치면 민장은 바로 선거록 등본을 첨부해 이를 부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거류민회 의원 중 결원이 생기고 결원 숫자가 정수의 1/3 이상일 때는 보결선거를 한다.

보결의원은 전임 의원의 잔여임기 동안 재임한다.

제25조 거류민회는 민장이 제출하는 의안을 의결한다.

아래 사항은 거류민회의 의결을 거친다.

1. 거류민단규칙
2. 거류민단비로 지변해야 하는 사업
3. 세입출 예산
4. 세입출 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업무 부담 및 권리 포기
5. 재산 및 영조물 관리 방법
6. 부동산 취득 및 처분

7. 기본재산 및 적립금 설치 및 처분

8. 거류민단에 관한 소송 및 화해

제26조 거류민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 1명을 선거해야 한다.

의장에게 사고가 났을 때는 임시로 의원 중에서 임시의장(假議長)을 선거해야 한다.

제27조 의장은 회의를 통할하고 회의장 관리에 임한다.

제28조 거류민회는 민장이 이를 소집하고 개폐한다.

소집 및 회의 사항은 개회일로부터 적어도 3일 전에 이를 거류민회 의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단 시급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9조 거류민회가 성립되지 않은 때, 소집에 응하지 않는 때, 또는 회의규칙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열 수 없을 때는 민장이 부윤의 지휘를 청해 의결해야 할 사건을 처분할 수 있다. 거류민회에서 의결해야 할 안건을 의결할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거류민회가 의결해야 할 안건에 관해 폐회 중에 임시로 시급한 안건이 있을 때는 민장은 이를 전결 처분할 수 있다.

앞2항의 처분은 다음 의회에서 이를 거류민회에 보고해야 한다.

앞2항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거류민회는 부윤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 거류민회는 회의 규칙 및 방청인 관리 규칙을 만들어 부윤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회의규칙에는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게 거류민회 의결을 거쳐 5일 이내로 출석을 정지시키거나 5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산 및 수입

제31조 거류민단은 부동산 또는 적립금을 기본재산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32조 거류민단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제33조 거류민단은 거류민단세, 사용료, 수수료 및 부역 현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4조 거류민이 아니어도 거류민단 구역 내에 토지, 가옥, 물건을 소유하고 사용 혹은 점유하거나 영업하는 경우 또는 특정 행위를 하는 자는 그 토지, 가옥, 물건, 영업 혹은 그 수입과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거류민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도 마찬가지이다.

제35조 몇몇 개인 또는 거류민단 구역 내의 일부에게 특별한 이익이 생기는 사안에 관해서는 특별 부담을 지우거나 불균일한 부과를 할 수 있다.

제36조 거류민단세, 사용료, 수수료, 과료, 과태금, 기타 거류민단의 공과금을 정기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 민단장은 기한을 지정해 이를 독촉해야 한다. 그 지정된 기한 안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앞항의 경우에서 국세징수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경금고 또는 2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장은 납세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해 회계연도 안에서 납세 연기를 허락할 수 있다. 회계연도를 넘을 경우는 거류민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민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한해서 거류민회의 의결을 거쳐 거류민단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 본 규칙에 의한 징수금의 추징·환부 및 시효에 대해서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제38조 거류민단세, 사용료, 수수료, 영조물 또는 재산의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거류민단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이 규칙에는 25원 이하의 과료(過料)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민장은 과료를 부과하고 이를 징수한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윤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9조 거류민단세를 부과받은 자가 그 부과에 대해 위법 또는 착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납세고지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민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용료, 수수료, 부역 현금의 부과, 재산 또는 영조물을 사용할 권리에 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민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2항의 규정에 따라 민장이 행한 결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윤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0조 거류민단은 거류민회 의결을 거쳐 거류민단체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채(起債)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에 대한 의결을 동시에 거쳐야 한다.

거류민단은 예산 내 지출을 위해 거류민회 의결을 거쳐 일시적인 차입금을 쓸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해야 한다.

제5장 예산 및 결산

제41조 세입출 예산은 민장이 이를 작성하고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이를 거류민회에 제출해야 한다.

민장은 거류민회 의결을 거쳐 기정(既定)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更正)을 할 수 있다.

거류민단은 예비비를 둘 수 있다. 예비비는 거류민회가 부결한

용도에 충당할 수 없다.

거류민단은 계속비를 둘 수 있다.

거류민단은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예산의 요령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42조 회계담당은 민장의 명령이 없으면 지불할 수 없다. 또한 민장의 명령이 있어도 지출 예산이 없을 때 또는 예비비 지출 및 기타 재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앞항의 규정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담당을 겸장하는 관리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거류민단의 출납은 회계연도 중 4회 이상 검사해야 한다. 앞항의 검사는 거류민회에서 호선한 2명 이상의 위원이 한다.

제44조 결산은 거류민회의 인준에 부치고 인준을 거쳤을 때는 이도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요령을 고시해야 한다.

제45조 거류민단의 회계연도 지불금에 관한 시효 및 출납폐쇄 기한은 국고의 예를 따른다.

제6장 거류민단 행정의 감독

제46조 본 규칙이 규정하는 이의 제기는 처분일 또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단 본 규칙 중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의 제기가 있어도 처분의 집행은 정지할 수 없다. 단 도장관 또는 부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7조 부윤은 거류민회의 의결 혹은 선거가 그 권한을 넘어서서 법령 혹은 회의 규칙을 위반했다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의결 또는 선거를 취소할 수 있다.

제48조 부윤은 거류민단 행정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하고 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부윤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도장관에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제49조 거류민단 법령에 따라 부담하거나 도장관 또는 부윤의 직권으로 명령한 비용을 예산에 올리지 못했을 때 도장관은 이유를 제시하고 해당 비용을 예산에 추가할 수 있다.

제50조 조선총독은 거류민단의 해산을 명령한다. 이 경우 2개월 이내에 의원을 새롭게 선거해야 한다.

부윤은 기간을 정해 거류민회의 정회를 명령할 수 있다.

제51조 아래 제시하는 사항은 도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거류민단 규칙
2. 거류민단비로 지변해야 할 사업
3. 기본재산의 설치·처분 및 관리 방법
4. 특별 부담 및 불균일 부과 방법
5. 제32조에 따른 기부 또는 보조
6. 거류민단의 기채 및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7. 세입출 예산
8. 계속비
9. 특별회계
10. 세입출 예산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의무 부담 및 권리 포기

제52조 거류민단 행정에 관해 도장관 및 부윤의 인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도장관 및 부윤은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갱정하고 인가할 수 있다.

제53조 도장관은 거류민단 관리를 징계한다. 징계처분은 해직, 25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견책으로 한다. 단 민장에 대한 해직은

조선총독이 한다.

부 칙(附則)

제54조 거류민단을 설립할 경우 부윤은 조역 및 회계담당을 선임할 때까지 임시로 그 대리를 명한다.

제55조 거류민단을 설립할 경우 거류민회 의결 사항 중 시급한 것은 설립 때까지 민장이 도장관의 인가를 얻어 행한다.

제56조 거류민단은 그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류민회 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 및 피선거인 자격에 대해서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 거류민단 설립 전에 거류민 단체가 가졌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를 거류민단에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8조 거류민단 설립 전에 거류민 단체가 정한 예산이 있을 때는 거류민단은 도장관의 인가를 얻어 해당 회계연도에 한해서 그 예산에 따를 수 있다.

제59조 본 규칙은 발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08년 통령 제23호)

본 법령(令)은 발포일부터 시행한다. 본 법령을 시행할 때 민장은 규정에 따라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직에 있는 자로 한다.

제3장 임원 및 의원

[대구거류민단 민장]

* 가게야마 히데키(影山秀樹)



氏樹秀山影長民

시즈오카현(靜岡縣) 사람이다. 젊었을 때 자유민권(自由民權)⁵⁸⁾을 주장하며 정계에서 분주히 뛰어다녔고 중의원 의원에 선출되었다. 또한 시즈오카농공은행(靜岡農工銀行)의 대표를 역임했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한 국에 주목해 건너와 살면서 사문진 방면에 서 농사 경영을 시작했다. 거류민단법 실시 때 설립위원장으로 추천되었고 민장대리에 임명되었으며 민회에서 제1기 민장에 선출되었다.

가게야마 히데키 민장은 원래 정계에서 활동하던 사람으로 도필리(刀筆吏)⁵⁹⁾가 아니다. 그래서 성벽 철거 건의 같은 것은 당시 가게야마 히데키 민장과 같은 사람이 잘했다. 철도용지를 민단이 빌려서 민단 재정을 보완한 것은 특필해야 할 공적이다. 가게야마 히데키 민장의 동향 사람은 농사에 많이 종사했다. 이는 그의 장려 덕분이다.

가게야마 히데키 민장은 민회가 만족스럽지 않자 “나는 원래 민회가 추천해 민장이 되었다. 만일 민회가 나의 조치를 택하지 않는다면 어찌 일개 대구의 촌장에 연연하겠는가”라며 바로 사표를 제

58) 메이지시대 일본에서 일어난 헌법제정 및 국회개설을 위한 정치사회운동. 천부 인권설의 영향을 받아 메이지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천황제 중심의 국가 체제에 대항하고자 했던 정치사회운동.

59) 하급관리.

출했다. 우지노 도쿠타로 이사관이 이를 위로했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돌연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후임 민장이 정해지자 다시 돌아와서 동문 밖에서 안일(安逸)하며 스스로 쟁기를 드는 한편 풍월을 벗 삼아 때때로 시를 지으며 풍아한 마음을 펼쳤다. ‘히데야마(秀山)’라는 호가 있다. 그러나 그는 오류(五柳)⁶⁰를 키우고 소나무와 국화를 사랑하는 상황에 안주하지 않았다. 시즈오카 시(靜岡市)로 돌아가 『시즈오카신보(靜岡新報)』 사장에 부임해 언론계에서 당년의 용기를 떨치려 했는데 안타깝게도 천수를 거스르지 못하고 1913년 말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 와타나베 무라오(渡邊村男)



氏男村邊渡長民

후쿠오카현(福岡縣) 치쿠고(筑後)⁶¹ 태생으로 1885년에 구마모토중학교(熊本中學校) 일등 교원이 되었고 이어서 같은 현 정부에 임명된 후 시마네현(島根縣) 장학사 및 군장(郡長)을 지냈으며 오이타현(大分縣) 나오히리군(直入郡) 군장 및 미나미아마베군(南海部郡) 군장 등의 관리 경력을 쌓았다. 가게야마 히데키 민장이 사임하고 민장 결원이 발생하자 미카지리 추고(三ヶ尻忠吾)가 와타나베 무라오를 추천했고 의원 다수가 찬성했다. 1908년 3월의 민회에서 의원 가와이 아사오(河井朝雄)의 발안이 채택되어 다수의 찬성으로 당선되었고 임기를 채웠다. 와타나베 무라오 민장은 온후장자(溫厚長者)라는 칭호가 있었다. 민회의 의향을 잘 따르고 감독관청의 지휘를 준봉(遵奉)⁶²하여 이른바 충실하고 선량한 관리의 풍

60)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 도연명이 그의 집에 심어 가꾼 일에서 나온 말.

61) 현재의 후쿠오카 현 남부 지역.

모를 갖추었다. 와타나베 무라오 민장의 재직 시기는 거류민이 급증했던 때로 민단 초창기에 속한다. 따라서 항상 다망했는데 그는 약작같이 이를 양장(鞅掌)⁶³했다. 그가 임기를 마치자 민단은 민회 결의로 위로금을 전달해 근로에 답례를 표했다.

• 기쿠치 겐조(菊池謙讓)



氏讓謙池菊長民

구마모토현(熊本縣) 사람이다. 공부를 위해 일찍 도쿄로 나가 학업을 마치고 언론계에 들어갔으며 경성에 와서 신문과 통신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신문을 경영해 반도 개발의 경륜을 고취했다. 조선어가 능숙해서 조선인과 교제가 많고 조선 사정에 정통하며 조선에 관한 저술이 있다.⁶⁴

1911년 와타나베 무라오 민장의 임기가 만료되자 관선 민장으로 경성에서 부임해 왔다. 이는 민회가 추천해서 맞이한 것이다. 기쿠치 겐조는 부임 인사말로 “대구 인사들이 필요로 하셔서 민장의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용할 때는 즉시 파면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평범한 관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쿠치 겐조 민장의 재임 시기는 민단 창설기는 지난 때였지만 발전에 따른 각종 시설이 새롭게 대창업 시대를 열었다.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진취(盡瘁)⁶⁵했다. 수도 부설에 가장 힘을 쏟아서 민

62) 범람이나 교의를 따르며 지킴.

63) 매우 바쁘게 일함, 일을 맡아 봄.

64) 『조선왕국』(民友社,1896), 『대원군전 : 조선 최근 외교사 / 부록 왕비의 일생』(日韓書房,1910), 『통속 조선문고 제12집』(自由討究社,1922), 『근대조선사 상·하』(大陸研究所,1940) 등 다양한 조선 관련 조술과 평론이 있음.

65) 온 힘을 다해 일하는 것.

단의 여망을 받들었다. 그는 공직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업에도 아낌없이 힘을 보태주었다.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수용해 도량이 매우 넓다는 평을 들었다. 1914년 3월에 거류민단이 폐지되면서 퇴임했는데 민단은 민회 의결을 거쳐 기쿠치 겐조에게 후하게 답례를 했다. 그는 대구를 떠났지만 항상 내왕했다. 구포 경편철도는 그가 공인일 때보다도 오히려 개인으로서 부설에 진력했다.

기쿠치 겐조 민장은 원래 언론계 사람이다. 숙된 관리 같은 분위기가 없는 점이 민장 적임자라고 평가받았다. 붓을 들고 글을 쓰는 것이 원래 그의 본업이다. 호를 '장풍(長風)'이라고 한다.

[대구거류민단 조역(助役)]

* 도구라 주로쿠(戶倉十六)



氏六十倉戶役助

야마구치현(山口縣) 사람으로 대구거류민의 선배이다. 석유와 기타 무역품 상점을 경영한다. 대구에 대일본인거류민회가 설치되자마자 도구라 주로쿠는 평의원에 뽑혔다. 거류민단 설치에 큰 힘을 발휘했다. 1906년 민단 설치 때 조역대리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조역에 선출되었다. 가게야마 히데키 민장이 사직해 결원 상태가 되자 약 반년 동안 민장 업무를 대리하며 자치기관을 정체시키지 않은 것은 큰 공로이다. 그는 조역에서 물러난 후 민회위원을 맡았다. 이 밖에 공공사업 관련 각종 위원으로서 진력한 일이 매우 많다. 대구제분정미주식회사(大邱製粉精米株式會社) 발기인이 되었고 이어서 이사(取締役)를 맡았다. 민단 고참으로서 많은 것을 짚어준 공로가 크다.

대구거류민단은 중도부터 조역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조역은 도구라 주로쿠가 유일하다. 그는 의원으로서 실무에 정통했기 때문에

민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역 시절에는 회계담당도 겸장해서 세밀하게 그 임무를 완수했다.

[대구거류민회 의장]

* 나카에 고로헤(中江五郎平)



氏平郎五江中長叢會民

시가현(滋賀縣)에서 태어나 고향에 있을 때는 교육 방면에 종사해 장학사를 지냈다. 대구에 재류한 이후에는 실업에 투신했다. 1906년 12월 21일 초기 민회의원에 당선되고 제1회 의장에 선출되었다. 1907년 10월 28일 개인 사정으로 의원직을 사직했다. 대구제분정미주식회사가 설립되자 이사가 되었다. 나카에 고로헤는 조선의 농업이 차차 개량되어 비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바로 비료 판매 영업을 개시했다. 또한 보험업도 함께 했다. 그는 온순하고 건실하며 진지한 사람이다. 그는 겸손을 지켰지만 일에 임할 때 진중하고 질서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를 알아보고 공공사무가 그의 손에서 항상 떠나지 않았다. 의원이었던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항상 민단 경영에 힘을 썼다. 현재 상업회의소 부회두(副會頭)이다.

*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氏助之武倉小

치바현(千葉縣)에서 태어났다. 도쿄에서 성장했고 제국대학에 들어가 법과를 졸업해 법학사 학위를 받았다. 해상법이 전공이고 일본우선회사(日本郵船會社)에 용빙(傭聘)⁶⁶되어 고문 사무를 보았다. 대구에서 오로지 실업에 종사했다. 1907년 1월

14일 초기 민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의장이 되었다. 같은 해 12월 20일에 개인 사정으로 사직했다. 이후 인쇄소를 설립하고 한국제연합자회사(韓國製菸合資會社)를 세웠으며 대구전기주식회사(大邱電氣株式會社)도 창립해서 현재 사장이다.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개간과 식림을 영구적 경영 목표로 삼았다. 그의 부친 오구라 요시노리(小倉良則)는 치바현의 국회의원이었다. 조선에 온 이래로 부친은 오구라 다케노스케와 함께 개간사업에 종사해 경기도 임진강 유역에 큰 면적의 미개간지를 발견하고 이를 개척하는 동시에 식수를 해서 올해 완성에 이르렀다. 두 사람 모두 체육을 중요시해서 대구상무회(大邱尙武會) 설립에 힘쓰고 완비했다. 그리고 소학교 아동을 위해서 유도와 격감을 가르쳐 체육과 더불어 정신교육상 이로우이 적지 않았다.

* 마노 세이치(麻野清一)



氏一清野麻長議會民

도쿠시마현회(德島縣會) 의원으로 상임위원이었다. 은행업에 종사했고 제사업(製絲業)도 경영했다. 대구에 거류하면서는 재산 증식을 좇았다. 1907년 2월 5일 초기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었고 이어서 의장에 선출되었다. 1908년 11월 개인 사정으로 의원직을 사직했다. 1913년 1월 31일에 민회 의원 개선(改選) 때 또다시 선출되었고 의장에 선임되었다. 마노 세이치는 온건해서 많은 사람의 신망(衆望)을 얻었다. 민회 주재는 일본 본토에서부터 경험이 있었다. 온순하고 중요한 부분을 잘 알아 이를 맡았다. 민단이 없어질 때까지 직책에 힘썼다.

66) 사람을 쓰려고 맞아들임.

* 마스다 고타(増田虎太)



氏太虎田増長議會員

후쿠오카현(福岡縣) 구루메(久留米)에서 태어났다. 대구에 거류하며 상업에 종사했다. 미개척 시대에는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마산 방면으로 상품을 팔았다. 거류민회에서는 평의원이었다. 민단 설치 때 민회 의원이 된 이후로 계속 선출되어 의원을 지냈다. 이런 경우는 아마도 마스다 고타가 유일할 것이다. 그는 제4대 의장이었다. 의장 및 의원으로서 의사 진행이 노련해서 칭찬을 받았다. 부산일보사가 지국을 확장해 1913년 여름에 대구지사를 두고 『경북일간(慶北日刊)』을 발행할 때 주간 임무를 담당하고 이후 언론계에서 활동했다.

* 이와세 시즈카(岩瀬靜)

대구의 대표적 인물로서 추앙받는 인물이며 민단의 제반 공공사업에 이와세 시즈카가 관여하지 않은 것이 없다. 1906년 소학교 건축계획 때부터 민단을 위해 힘썼고, 지출과 의연 금액도 항상 그가 거벽(巨璧)⁶⁷⁾이었다. 치바현(千葉縣)에서 태어났고 경험한 지역이 매우 많았다. 조선에 건너온 이후 주로 토목사업에 종사했고 동시에 토지를 매수했다. 초기 민회 의원에 당선되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 후 1907년 1월 31일의 개선(改選)에서 당선해 의장에 선출되었다. 그가 관계한 대구상업회의소, 달성공원기성회 등은 각 장에 재록한다. 남한연초주식회사(南韓煙草株式會社), 대구제분정미주식회사가 창립됨과 동시에 사장이 되었다. 그는 민단 시가지 구역 제일의 대지주이다. 현재 경북선 추풍령 방면에서 석재 채취를 크게 계획하고 있다.

67) 으뜸. 엄지손가락, 남보다 뛰어난 사람.

[대구거류민회의원]

* 스다 산페이(須田三平)

미야기현(宮城縣) 사람이다. 대구 여관업의 선구자이다. 초기 의원에 당선되었지만 이듬해 1907년 6월 12일에 병으로 사직했다. 이후 농사를 경영하다가 현재는 나이를 먹어 은거하고 있다.

* 사카이 만지로(堺萬次郎)



氏 郎 次 萬 堺

처음에는 ‘후지이(藤井)’ 성을 썼다. 초기 의원에 선출되었고 1908년 12월 21일 개선타 때 재선되어 임기를 채웠다. 사카이 만지로는 미에현(三重縣) 사람으로 일찍이 부산에 이주한 후 대구로 옮겨왔다. 대구 과자 제조업의 선구자이다. 당초에는 군 지역 판로를 널리 개척했다. 상호는 ‘닛신도(日進堂)’이다. 이후에는 방침을 바꾸어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했고 널리 호평을 얻어 노포의 지위를 점했다. 별도로 신문 대리점을 함께 경영했다. 대구상업회의소 부회장으로서 오랫동안 회장 사무를 대행했다.

* 시모다 고키치(霜田語吉)



氏 吉 語 田 霜

도쿄 사람이다. 대구에 거류하자마자 요리점 야마토(大和)를 열어 일류로 칭찬받았다. 초기의원에 뽑혔지만 1907년 12월 16일 병 때문에 사임했다. 이후 북문 밖 교외 터에 지점을 신축해 ‘야마토카단(大和化壇)’이라고 이름을 붙여 대연회장을 제공했는데, 최근 히가시혼마치(東本町)의 달성관(達城館) 터로 이전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 가와이 아사오(河井朝雄)

오이타현(大分縣) 분고(豊後)⁶⁸⁾ 사람이다. 대구에 상업을 유입한 선구자이다. 옛 서문 밖과 남문 안에서 활발하게 조선인 대상으로 잡화를 판매하는 동시에 연초를 제조했다. 초기의원에 당선되었지만 사직했다가 이듬해인 1907년 2월 5일의 보결선거에서 재선되었다. 1908년 10월부터 대구신문사 이사로서 신문 경영에 종사한 이후로는 상업을 접고 오로지 신문사에 힘을 쏟았다. 이후 여러 번 민회 의원, 상업회의소 의원에 뽑혔지만 대구신문사 사장이 된 후에는 의원 추천에 응하지 않았다. “신문이 주장의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민단의 제반 시설에는 많은 경우 그가 반드시 참여했다. 신문 사업 성적은 제22장에 상세하다.

* 기도 다다지로(城戸唯次郎)

에히메현(愛媛縣)에서 태어났다. 고참 거류민의 한 사람이다. ‘다다야(唯家)’라고 이름을 붙인 여관을 경영했다. 제1기 의원에 당선되었지만 1907년 12월 19일에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고 영업에 전념했다.

* 스키하라 신키치(杉原新吉)



氏 吉 新 原 杉

오카야마현(岡山縣) 사람으로 목재 영업을 하면서 지점을 설치해 일용잡화를 판매하기도 했다. 총독부가 압록강 삼림 제재(製材)를 개시한 이후 활발히 수입해 공급했다. 대구는 건축재료가 부족해 오로지 일본 본토 목재에 의존했는데 최근 압록강 목재가 풍부해져 일본 본토 목재의 수입이 줄어들었다. 스키하라 신키치는 이 업

68) 현재 오이타현 대부분을 차지하는 옛 지명

중에서 대구의 노포로서 상업계에서 중요한 존재였다. 민회 의원에 당선된 것은 제1기인데 1907년 12월 16일에 사임하고 이후 사람들이 추천해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사업에는 항상 능력을 발휘했고 세상의 평판을 신경쓰지 않았다. 부업으로 벽돌 제조소를 경영했다.

*** 야스마쓰 구마키치(安松熊吉)**



氏 吉 熊 松 安

거류민회 사업과 다른 공공사업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단체조합 영업은 무엇이건 상관하지 않는다. 사사로운 일을 내던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에 임하는 사람을 묻는다면 틀림없이 야스마쓰 구마키치를 가장 먼저 꼽을 것이다. 그는 후쿠오카현에서 태어나 일찍이 해외무역에 뜻을 두고 중국 각지에 해산물을 수출하기도 했다. 대구에 거류한 이후에는 주로 미곡상을 하고 석유 판매를 겸하면서 곡물수출상조합과 석유판매조합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대구상업회의소 부회장으로서 힘을 쏟았다. 달성공원 조성 때에는 침식을 잇은 채 이를 돌보고 다른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오로지 공원의 완성만을 헤아렸다. 곡물개량, 도로개수, 철도운임 저감 등에는 매번 몸을 바쳐 일하고 술선행해서 나셨다. 대구거류민단의 공로자 중에서 으뜸이다. 야스마쓰 구마키치는 1907년 1월 14일의 초기 보결선거에서 당선되었고 1908년 12월 21일 임기 만료 후 재선되었으며 1911년 1월 31일 개선에서도 선출되어 다년간 의원직에 진력했다.

*** 와타나베 히사(渡邊比)**

오카야마현 청년으로 러일전쟁 전에 조선을 널리 살펴보면서 13



氏比邊渡

개 도의 요소요소에 족적을 남겼다. 1905년에 대구에 거류하기 시작했다. 1907년 1월 14일의 보결선거에 당선되어 임기를 채운 후 재선되었다가 1910년 5월 20일에 사임했다. 대구상업회의소 의원으로서 회장을 맡은 적이 있다. 최초로 육군에 납품했고 주류와 잡화를 판매했으며 보험업도 취급했는데 현재는 대구-경주 및 대구-포항 간 자동차 발착소(自動車發着所)를 주관하고 있다.

*** 사이토 요시조(齊藤芳造)**

치바현(千葉縣) 사람이다. 대구에 거류한 이후로 옛 서문 안에서 잡화상점을 운영했다. 그 후 대구제분정미주식회사에 종사했다. 서문 방면의 고참자로서 1908년 1월 14일의 보결선거에서 당선되어 같은 해 12월 21일에 임기를 마쳤고, 1909년 12월 18일의 개선에서 당선되어 임기 동안 일했다.

*** 하야시 진시치(林甚七)**

대구에서 양조업 원조로서 청주 제조업을 했다. ‘쇼에사(松榮舍)’라고 한다. 출생지는 야마구치현(山口縣)이다. 일찍이 미국 유학을 다녀와 소양이 있지만 도회(韜晦)⁶⁹⁾해서 자랑하지 않는다. 과묵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 1907년 2월 5일의 보결선거에서 당선되었다. 1908년 12월에 임기를 채운 후 재선되었지만 1909년 10월에 개인 사정으로 사임했다.

69) 자기의 재능이나 지위·본심 등을 숨기어 감춤.

*** 마유미 마코토(眞弓忠)**

미에현 이세(伊勢) 출신으로 고참 거류민이다. 거류민회 시대에는 평의원이었다. 민단법 실시 이후 초기 보결선거에 당선되어 1908년 12월에 임기를 마쳤다. 일찍이 시장정(市場町)에 약종점(藥種店)을 열었는데 가장 빠른 상점에 속한다.

*** 아오키 시게노부(青木重信)**



氏 信 重 木 青

오카야마현 사람으로 일찍이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중대함을 알고 갑자기 만주와 조선에 일이 생겨 조선어가 필요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 오카야마에 만한어학교(滿韓語學校)를 설립한 것은 발군의 선견이라고 할 수 있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마자 1905년에 대구에 건너와 형세를 시찰하던 중 전당포를 열었다. 1907년 2월 5일 초기 보결선거에서 당선되었고 이듬해 1908년 12월에 임기를 채운 뒤 재선되어 1910년 4월 7일에 사임했다. 대구상업회의소 부회장을 지냈다. 이후 전당포업을 그만두고 도량형 판매점을 열었으며 동시에 얼음 판매점을 부업으로 했다.

*** 마쓰모토 세이치(松本誠一)**

사가현(佐賀縣) 사람이다. 대구에서 일본 연초 제조를 처음 시작해 잎담배 재배의 기초를 다진 것은 마쓰모토 세이치의 공로가 가장 크다. 그는 영업에 한 번 실패했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이후 오로지 재배에 종사하는 동시에 연초구매판매조합(煙草購買販賣組合)을 만들어 그 일에 전념했다. 1907년 2월 5일 초기 보결선거에 당선되어 1908년 12월 21일에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다.

* 시부사와 슈조(澁澤周藏)



氏藏周澤澁

군마현(群馬縣) 사람으로 철도에 종사했다. 경부철도 속성공사 때 대구에 왔다. 이후 해동촌(解東村)에서 농사 경영을 개시하고 더불어 저빙고(貯氷庫)를 만들어 얼음 판매를 했으며 양복점도 열었다. 시부사와 슈조는 이전에 관찰도가 불용 관유물을 불하자 영귀정(詠歸亭)을 경락(競落)⁷⁰해서 이것을 원유(園圍)로 고쳐 '도스이엔(刀水園)'이라고 이름 붙였다. 개간 및 과수재배에도 종사했다. 대구산업조합(大邱産業組合) 창립에 진력했고 농업 제반 단체에서는 항상 간부로서 일을 맡아 보았다. 1907년 2월 5일의 보결선거에서 당선되어 이듬해 1908년 12월 21일에 임기를 마쳤다.

* 니시자와 사토시(西澤智)

오카야마현 사람이다. 왕년에 군 관리로 봉직했다. 러일전쟁 후 조선 경영에 뜻을 두어 민단이 설립된 해부터 대구에 거류했고 이듬해인 1907년 2월 5일 보결선거에서 당선되어 1908년에 임기를 마쳤다. 그리고 1909년 10월 18일의 개선에서 당선되었다. 신문 대리점과 전당포를 운영해서 재산증식의 성과를 거두었다. 니시자와 사토시는 성격이 치밀하고 용의주도해서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문조(文藻)⁷¹가 풍부해 원고가 적지 않다.

* 구로카와 엔지(黒川圓治)

시즈오카현 사람이다. 처음에 대금업을 했고 이후 창호와 다다미

70) 경쟁 입찰해서 낙찰함.

71) 시문을 짓는 재능.



氏 治 前 田 昌 文

제조·판매를 개시했다. 또한 국유 미개간지를 개척해 농장을 경영하고 과수원을 만들었으며 잎담배 재배에도 종사했다. 1908년 12월 21일에 당선되어 1910년 12월 20일의 임기까지 일했다. 그가 경영하는 과수원은 성적이 우량하다고 한다.

***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泰輔)**

도쿠시마현(德島縣)의 재산가이다. 대구에서 대금업을 했다. 1908년 12월 21일에 민회 의원이 되었지만 대부분 일본 본토에 거주하는 관계로 1909년 10월 11일에 사임했다.

*** 가토 이치로(加藤一郎)**



氏 郎 一 藤 加

도쿄에서 태어났다. 법률학을 공부하고 그 방면으로 나아가려던 차에 일본과 조선간의 정세가 일변해 통감 정치가 시작되고 대구에 이사청을 둔다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대구로 건너와 거류하면서 이사청 개시와 동시에 대서업을 시작했다. 이어서 법률사무소를 만들고 신탁사업을 함께 운영했다. 가토 이치로의 간결함과 성실함은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고 일이 아무리 바빠도 공직을 소홀히 한 적이 없다. 1908년에 공민회(公民會)를 주창해 그 해 『대구신보(大邱新報)』 발간의 주동자가 되었다. 기존 『대구일일신문사(大邱日日新聞社)』와 합병해 확장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대구신문사 이사에 뽑혀 가와이 아사오와 함께 신문사 경영을 맡았다. 이후 민단의 중요한 일에 반드시 참여했다. 공무에 정근한

것과 성격과 행동이 염담·결백(恬淡潔白)⁷²⁾한 것은 널리 칭찬받는 바이다. 1908년 12월에 당선되어 1911년 1월에 임기를 마쳤다. 재선되었지만 같은 해 5월에 다른 업무 때문에 사임하고 1913년 1월 31일의 개선에서 당선되어 민단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일했다.

*** 후쿠치 기사쿠(福地義作)**

시즈오카현 사람으로 군인 출신이다. 러일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고 귀농했다가 대구로 이주해 동문 밖 토지를 사서 농업에 종사했다. 과감하고 정근하며 일을 빨리 익혀서 대구 농업계에서 개량의 선두주자이다. 이후 옥산동으로 옮겨 대농원을 만들어서 잎담배, 과수, 채소 모두 우량품을 생산한다. 남한연초주식회사(南韓煙草株式會社)가 창립되자 상무이사에 뽑혔다. 현재 대구 굴지의 대농이고 농사에 정통해서 업계에서 추대받는다. 1908년 12월 21일에 의원으로 선출되었는데 1909년 4월 7일에 병으로 사임했다.

*** 우치다 로쿠로(内田六郎)**



氏 郎 六 田 内

사이타마현(埼玉縣) 사람으로 서문시장에 산큐상회(三九商會)를 열어 조선인 대상 무역업을 개시했다. 이어서 목장을 만들고 우유 개량을 꾀해 이를 판매했다. 1908년 12월 21일 민단의원에 당선되었고 회계검사원에 호선되었다. 이는 그가 면밀하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서부 지역의 유력자이다.

72) 조용하고 편안하고 담백함.

* 기무라 다케타로(木村竹太郎)



氏郎太竹村木

오카야마현의 부상(富商)으로 화연(花筵)⁷³⁾ 무역을 본업으로 했다. 조선에 건너온 후 대금업을 시작한 한편 조선 특유의 골풀(蘭草)인 왕골을 조사하고 일본 완초(莞草)의 조선 재배를 연구했다. 또한 인쇄업도 개시하고 관유리 판매도 시도했는데 현재는 대금업과 전당포업을 전문으로 한다. 기무라 다케타로는 두뇌가 명석하고 치밀하다. 재산증식은 가장 잘하는 것으로 대구의 일본인 부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1909년 1월 18일에 의원에 뽑혀 1911년 1월에 임기를 마쳤다. 재선되었지만 같은 해 9월 11일 개인 사정으로 사임했다.

* 후루쇼 미키노리(古莊幹實)



氏實幹莊古

구마모토현(熊本縣) 사람이다. 고향에서는 정계를 돌아다녔다. 대구 거류 후에는 실업 전습소를 창립하고 조선인 전습생을 모아 비단과 목면 기적을 가르쳤다. 농상공부를 위해 보조금을 내려주어 이를 보호했다. 1911년 1월 31일에 의원이 되어 1913년 1월까지 재임했다. 후루쇼 미키노리는 개간에도 뜻이 있어 국유 미개간지 척식 경영을 개시하려고 했지만 도중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73) 꽃놀이 자리에 끼는 돛자리. 다양한 그림 문양

*** 아코 기요키(赤穂清喜)**

에히메현에서 태어났다. 대구에 거류하면서 실업에 종사한다. 1911년 1월 31일 의원에 당선되어 1913년 1월에 재선되었고 민단이 사라질 때까지 일했다. 조선인들이 고려자기제조주식회사(高麗磁器製造株式會社)를 기획해 설립하자 아코 기요키는 유일한 일본인으로 참여해 요직을 맡았다. 상주 방면의 부원(富源) 개발을 위해 교통편에 투자하려고 마치다 규고(町田久吾)와 함께 자동차 운행 계획을 세워 총독부에 허가 신청 중이다. 과수재배를 하면서 수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이토 기치자부로(伊藤吉三郎)**



氏 郎 三 吉 藤 伊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났다. 대구 거류를 시작했을 때 혼마치(本町)에 종이 상점을 열어 문방구를 판매했지만 도로 개수 때 야마토초(大和町) 모퉁이로 신축 이전했다. 이토 기치자부로는 앞뒤의 의원들 가운데 연소자였다. 1911년 1월 31일에 당선되어 임기를 마친 후 개선에서 재선되어 민단이 사라질 때까지 함께 했다. 성격이 온건하고 의지가 굳으며 논의가 깊다. 기질이 풍아하고 시문을 좋아하며 독서에 빠져 때때로 소회를 기술한다. 아호(雅號)가 ‘고정(鼓汀)’이다.

*** 다무라 겐조(田村權藏)**

후쿠오카현 사람이다. 거류를 시작할 때 정미소를 열어 백미를 공급했다. 대구에서 석유발동기 정미를 처음 시작했다. 거류민단이 점차 발전하여 시가지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생기자 관민 모두 에



氏藏權村田

기·창기 구역을 명확히 해서 풍기를 쇠신하자는 여론을 제기했다. 이에 신설 유곽 구역이 결정되었으나 설계에 대한 관허 조건이 엄중해져 신축비가 많이 늘어났다. 이에 해당 업자들의 지속적인 영업과 자발적인 풍기 단속이 어려워 지자 다무라 겐조는 분개하여 전체 설계를 맡아 새로운 유곽을 만들고 해당 업자들에게 대여했다. 1911년 1월 31일에 의원에 뽑혔다. 민회에 참여해서는 한 점의 사심도 없이 당론(黨論)⁷⁴과 악의(謬議)⁷⁵로 회의장을 압도했다. 의협심이 강하고 맡은 일을 반드시 완수하며, 객(客)을 좋아하고 사(士)⁷⁶를 공경하는 모습에는 옛 무사의 기풍이 있다. 현재 광업에 착수해 채광과 야금(冶金)⁷⁷에 종사하고 있다.

*** 요시다 주이치로(吉田壽一郎)**

오카야마현 사람으로 일찍이 타이완에서 활동하다가 러일전쟁 중에 대구에 와서 옛 동문 밖을 보고 토지를 매수하면서 민단의 발전을 기대했는데 이 선견은 그야말로 주효했다. 1911년 1월 31일에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민회 때는 변론가로 인정받았다. 임기를 마친 후 작은 질병으로 정양하고 있다.

*** 오자키 시즈오(尾崎鎮雄)**

나가사키현(長崎縣) 사람이다. 대구에는 이토오복점(伊藤吳服店) 주인으로 거류를 시작했다. 1911년 1월 31일 의원에 당선되어

74) 이치에 바른 언론-말.

75) 끝은 말-주장.

76) 선비, 훌륭한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

77) 광석에서 금속을 골라내는 일이나 목적에 맞는 금속 재료를 만드는 일.



氏 雄 鎮 崎 尾

1913년 1월에 임기를 마친 후 재선되었는데 같은 해 2월 20일에 사임했다. 이에 앞서 1911년에 부산의 이토 진자부로(伊藤甚三郎)와 함께 대구에 상업은행 설립 계획을 세웠고 설립 후에는 이사를 맡았다. 지금의 전남상업은행(鮮南商業銀行)이다. 포목점은 대구의 대형 점포로서 물자가 풍부하고 고객이 많아 매일 성황을 이룬다.

*** 사토 슈조(佐藤周藏)**



氏 藏 周 藤 佐

돗토리현(鳥取縣) 사람으로 총포와 화약 영업을 했다. 화약류는 대부분 철도 공사에 공급했다. 러일전쟁이 벌어지자 쫓기해 조선으로 건너와서 경상남북도를 시찰한 후 대구의 전도에 속목(屬目)⁷⁸⁾하고 일단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1905년에 가족이 모두 이주했다. 1911년 1월 31일 의원에 뽑혀 1913년 1월 임기 때까지 부지런히 일했다. 사토 슈조는 조선에 건너왔을 때 각지를 시찰하던 중 시찰자 입장에서 여관의 부족과 나쁜 풍습에 불편을 느껴서 역 앞에 여관을 세워 실업여관을 표방하면서 시찰 온 여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현재는 총포와 화약, 목재 창호점을 주업으로 하면서 화약고 부근에 농장을 마련해 과수 재배를 겸하고 있다. 착실하고 부지런하며 공공사업에도 힘쓴다.

*** 요시타케 기네오(吉武甲子男)**

도쿄 사람이다. 일찍이 일본우선회사(日本郵船會社)에 종사했고 각지의 지점장을 지냈다. 대구에 거류하면서 오구라 다케노스케와 함

78) 눈을 쏘아 봄.



氏 男子 甲 武 吉

께 왕골 제연(製筵)이 유망하다고 보고 한국제연합자회사를 창립해 다다미 겉과 돛자리를 활발히 제조하는 동시에 직연기(織筵機)를 조선인에게 전습시켰다. 이어서 대구인쇄합자회사(大邱印刷合資會社)를 일으켜 인쇄 및 활자 주조·판매를 하여 사업이 점점 발전했다. 1911년 1월 31일 의원에 뽑혀 1913년 1월 임기까지 재임했다.

*** 사키사카 쇼키치(向坂庄吉)**



氏 吉 庄 坂 向

고치현(高知縣) 사람으로 육군 장교였다. 대구에 거류한 이후로는 대금업을 했다. 사키사카 쇼키치는 재향군인회가 대구에 설립되자 간부로서 단체 일을 맡아보았다. 1911년 1월 31일 의원에 당선되었고 1913년 1월에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다. 그는 원래 무인이지만 시항(市巷)⁷⁹⁾의 사람이 되고 나서는 말과 행동이 완곡(婉曲)해서 조금도 모나지 않고 공공의 문제에서는 '원만주의'를 표방했다.

*** 나카하라 후사이치(中原房一)**

야마구치현 사람으로 대구 농업계의 선배로 칭찬받는다. 농원을 시작해 연구와 조사에 시간을 쏟았다. 최근 또다시 교외에 땅을 골라 과수원을 만들고, 시내에는 농기구·비료·종묘 판매점을 열어 널리 공급하는 것을 꾀했다. 나카하라 후사이치는 진지하고 강직하며 과감함이 넘치는 동시에 경솔한 행동을 싫어한다. 따라서 일을

79) 저자거리. 가게가 죽 늘어서 있는 거리



氏 一 房 野 中

말으면 반드시 수행한다. 그는 불가능한 것에 대해 만일의 요행을 바라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대구농회, 남한연초제조주식회사, 대구과수조합, 기타 실업단체에서는 빠짐없이 수뇌로 추천받았다. 1911년 1월 31일 의원에 당선되어 1913년 1월에 임기를 채울 때까지 회의장에서 기탄없이 말했는데 경청할만한 것이 많았다.

* 가나모리 리키자부로(金森力三郎)



氏 郎 三 力 森 金

시즈오카현 사람으로 본업은 토목건축 청부업이다. 협기를 받드는 기질과 성격이고 호당하며 뇌락(磊落)⁸⁰⁾한 분위기가 있다. 부하들은 소방조직 조장인 그를 심복했고, 그는 풍기를 개혁하며 작업을 지휘했다. 청부업자로서는 책임을 중시해 기한을 어기지 않았다. 이에 크게 신용을 얻어 근래 대구 방면의 대공사는 가나모리 리키자부로 손으로 이루어낸 것이 많다. 1911년 1월 31일 의원에 당선되어 1913년 1월에 임기를 마친 후 재선되어 민단이 없어질 때까지 재임했다.

* 이시하라 지로(石原次郎)

오카야마현 사람으로 1904년부터 대구에 거류하면서 달성산 북쪽에 농원을 열어 과수를 재배하는 동시에 화초를 키웠다. '반코엔(萬光園)'이라는 이름이다. 광업에 뜻이 있어 스스로 조사와 연구에 노력했다.

80) 마음이 활달해 작은 일에 구애하지 않음.

온순하고 착실해서 일을 계획할 때 상세하고 주도면밀하다. 같은 현
사람들로부터 위풍당당(濟濟)하다고 칭찬을 받으면서 많은 존경과 추
대를 받는다. 1913년 1월 31일 당선되어 민단의 마지막까지 재임했다.

*** 사카모토 슌스케(坂本俊資)**



氏 資 俊 本 坂

아마구치현 사람으로 마쓰마에상점(松前
商店) 대구지점을 주관한다. 마쓰마에상점
은 대구 제일의 무역상이다. 조선인 대상
화물을 주로 하고 경북 지방 상인에게 공
급하기 때문에 거래망이 매우 넓다. 이를
지휘·정리하고 점차 번영시킨 것은 사카모
토 슌스케의 수완이다. 1913년 1월 31일 의원에 당선되어 임기 때
까지 재임했다. 대구상업회의소 의원이자 상임위원이었다.

*** 미카지리 추고(三ヶ尻忠吾)**



氏 吾 忠 尻 ヶ 三

후쿠오카현 사람으로 관리를 역임하고
홋카이도 아바시리(網走) 지청장으로 승진
했다. 대구에 거류하면서 석유무역에 종사
했고 일본 규슈에서 석탄을 이입했으며 중
국 푸순탄(撫順炭)을 수입·판매했다. 1907
년 민단 혁신을 외치며 니시키좌(錦座)에서
두 차례 단독 연설을 했다. 동안과 백발과 자염(鬚髯)⁸¹⁾의 품모이
며 모두가 대구 일본인의 원로로 칭찬했다. 게다가 정력이 넘쳐 향
상 일본과 조선을 왕래했다. 1913년 1월 31일 의원으로 당선되어
민단이 사라질 때까지 일했다. 민단의 주춧돌로 여겨졌는데 민단

81) 콧수염과 구렛나루.

폐지 후에도 중진의 한 사람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 하라다 다카히로(原田隆弘)**

후쿠오카현 사람이다. 제국대학 출신의 법학사이고 대구지방재판소 판사로 근무했는데 사직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1913년 1월 31일 의원에 뽑혀 자치기관에 참여했다. 이후 민단이 폐지될 때까지 재직했다. 오로지 법률 사무에 종사했다. 대구상업회의소 특별의원으로 추천되었다.

*** 와카마야시 세스케(若林誠助)**



氏助誠林若

오사카(大阪) 사람이다. 술선해서 대구 거류를 시작해 곡물상을 운영하는 동시에 술과 간장을 판매하면서 상호를 '와카마야 시상회(若林商會)'라고 붙였다. 이후 청주 양조업을 개시하여 일본 술을 제조했다. 와카마야시 세스케는 성실해서 일을 맡으면 지치지 않았다. 오랫동안 대구상업회의소 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했다. 1913년 1월 31일 의원에 당선되어 임기 때까지 근속했다.

*** 마치다 규고(町田久吾)**



氏吾久田町

니이가타현(新潟縣) 사람으로 약제사이다. 대구의 일본인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약포를 열었다. 당시 약제사가 있는 약포는 오직 '마치다상점(町田商店)'뿐이었다. 상호를 '회춘당(回春堂)'이라고 붙였다. 대구상업회의소 의원으로 선출되어 부회장을

지냈다. 1913년 1월 31일 의원에 당선되어 민단이 폐지될 때까지 재임했다. 가까운 사람이 말하길 김천-상주 간 자동차 운수를 계획 중이라고 한다.

*** 하타모토 기헤(畑本儀平)**

구마모토현 사람이다. 1905년~1906년 거류민회 시대에 오랫동안 상석서기(上席書記)였다. 이후 대서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하고 있다. 1913년 1월 31일의 개선에서 의원으로 당선되어 민단 폐지 때까지 재임했다. 하타모토 기헤는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는 성격이고 욕심이 적다. 부하에게 따뜻하고 스스로 쫓는 경우는 적다. 동료들한테 추천받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 오사카 쇼헤(麻坂正平)**



氏 正 坂 麻

도쿠시마현(德島縣) 사람이다. 대구에 거류하면서 전당포를 시작해 재산을 형성했다. 평소 실업에 뜻이 있어서 금호강 부근에 농장을 열고 과수재배에 종사했다. 성격이 온후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다. 근검하여 재산증식의 성과를 올렸다. 1913년 1월 31일 의원에 당선되어 민단이 폐지될 때까지 정근했다.

제4장 대구관계사

대구는 원래 ‘大丘’라고 썼다. 삼한 가운데 진한의 땅으로 영남에 속하고 경상도였다. 한나라 무제는 조상의 여위(餘威)⁸²⁾를 휘둘러 조선을 병탄해 4군을 두었다. 소제(昭帝)⁸³⁾ 때에 또다시 2부(府)로 합쳤다. 이것은 관리를 파견해 통치하기 위한 편의 때문이었다. 중국 역대 황조의 성쇠와 맞물려 동쪽 반도를 통할·감독할 여유가 없자 자립을 꾀하는 자가 하나들이 아니었다. 그 주요 세력이 신라, 고구려, 백제였다. 이른바 ‘삼국’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다. 대구는 신라의 영역이었다. 원래 신라는 여러 국호가 있어서 ‘서라벌(徐羅伐)’이라고도 했고 ‘사라(斯羅)’라고도 했으며 ‘사로(斯盧)’라고도 했다. 시조는 성이 박, 이름이 혁거세이다. 타고난 자질이 영매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 6부의 장이 되었고 재위 61년 동안 나라는 부유하고 백성은 잘 따라서 천년의 기초를 다졌다. 경행천황 때인 4대 탈해왕 9년에 국호를 계림으로 고쳤다. 이어서 무열천황 때인 22대 지증왕에 이르러 신라 국왕이라고 칭했다. 그러나 신라는 일제가 아니다. 박, 석, 김의 세 성씨 중에서 왕위 계승자를 세웠다. 고려에 항복할 때까지 56대 왕이 있었고 992년에 망했다.

조선은 그 지세 때문에 삼국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마치 유럽의 발칸반도와 같았다. 각자 수립을 위해 강대국의 원호를 부탁했다. 이른바 사대주의 인습이 오래되었다. 백제는 일찍이 일본에 의지하고 신라는 중국의 신하가 되었다. 임나의 경우는 순전히 일본의 통감정치 아래에서 평안을 유지했는데 일본 황조가 일이 많아 바깥일을 소홀히 하자 마침내 신라에 멸망되었다. 백제와 고구려가

82) 어떤 위엄을 부리고 난 뒤의 나머지 위엄.

83) 전한 시대 8대 황제.

공수동맹을 맺어 여러 번 신라를 침략하자 신라는 중국에 보호를 요청했다. 이때 중국은 당 태종이 수 나라의 뒤를 이어 사실상 시조로서 창업이 왕성할 때이다 보니 백전연마의 병사를 끌고 수륙으로 침입했다. 당시 조선의 판도는 매우 넓어서 남만주는 모두 조선령에 속하고 요하(遼河)를 경계로 중국과 경계를 이루었다. 당나라 군대는 두 방향으로 진군했다. 하나는 요하를 건너 요동으로 나왔고, 또 하나는 전함을 띄워서 바로 평양으로 다가갔다. 이때 신라는 모든 군인을 모아 함께 협공해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고 이어서 고구려도 멸망시켰다. 그 후 당의 고종은 신라가 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에 노해서 군대를 더 늘려 신라를 정벌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고려는 이미 나라를 세웠고 세력이 날로 융성해졌다. 신라 말기의 경순왕은 나라의 기운이 점차 쇠약해지자 스스로 지탱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마침내 고려왕에게 항복문서를 보냈다. 고려왕이 이를 받아들이자 신라왕은 백료(百僚)를 이끌고 도성을 출발해 개경으로 향했다. 수레와 말이 3리에 걸쳐 이어졌고 연도의 인민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이를 배웅했다. 개경에 가까워지자 고려왕은 성을 나와서 영접했고 성의를 다해 위안했으며 환대는 모자람이 없었다. 장녀를 경순왕과 결혼시켜 부마로 삼고 낙랑왕에 봉했다. 동시에 신라의 국호는 없어지고 경주가 되었으며 그 식읍(食邑)⁸⁴⁾으로 동쪽은 울산-장기계, 남쪽은 언양계, 서쪽은 청도계, 북쪽은 영일-청송-영덕계를 경계 지워 내려주었다. 이때부터 대구는 고려의 땅이 되었다.

고려는 건국 이후 500년이 지나자 쇠미해지고 권신 이성계(李成桂)⁸⁵⁾가 중망을 얻어 마침내 왕위에 오르고 고려를 대신해 국호를

84) 조세를 개인이 받아쓰도록 공신에게 내려준 고을.

85) 『대구민단사』 원문에는 이성계의 한자가 '李世桂'로 되어 있다. 이는 원문의 오

조선으로 바꾸었다. 그가 곧 조선 이조의 선조이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즉위한 것은 기원(紀元)⁸⁶⁾ 2,052년 고카메야마천황(後龜山天皇) 원중(元中) 9년 임신(壬申)년으로 서력으로 1392년에 해당하며 중국의 명 태조 홍무(洪武) 25년이였다. 제3대 태종 3년에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해 활자를 제조한 것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태종 8년 부녀자의 재혼을 금지하고 태종 13년에 8도를 정했다. 제4대 세종 원년에 쓰시마를 침략했다. 그러나 원래 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어를 위해 공세를 취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어서 세종 25년 쓰시마와 약정해 상호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약을 맺었다. 세종은 문무의 자질이 있었다. 언문 창제도 세종 28년의 일이다. 세종의 조락 후 60년 중종 원년에 이르러 쓰시마조약은 점차 느슨해져 쓰시마에서 노략질을 하는 일이 있었다. 그로부터 80년이 경과한 선조 22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길을 빌려 명국을 정벌하겠다고 조선에 요구했고 몇 해 지난 선조 26년에 바다를 건너 공격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을 막는 것에 힘을 써 경상, 전라, 충청 3개 도는 재신(宰臣)⁸⁷⁾을 순찰시켜 성지(城池)를 만들고 병기를 갖추었다. 특히 경상도에 가장 많은 성을 쌓았다. 대구, 청도, 영주, 성주, 안동, 상주의 성은 새로 쌓거나 증축한 것이다.

일본군이 진군하자 예봉을 맞아야 했다. 대구성의 경우 싸우지 않고 궤주(潰走)⁸⁸⁾한 사실은 조선인 류성룡이 스스로 기록한 바로 일본군의 일진은 양산, 밀양, 청도를 거쳐 대구로 들어와서 인동, 선산을 거쳐 상주를 답파하고 경성으로 향했다. 이 전쟁에서 조선

자로 판단됨.

86) 일본 건국일 기준.

87) 임금을 돕고 관원을 지휘·감독하던 이품 이상의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88) 싸움에 져서 흩어져 달아남.

왕은 몽진(蒙塵)⁸⁹⁾해서 경성을 버리고 의주로 달아났다. 때는 선조 26년 고요제천황(後陽成天皇) 시대로 이것이 이른바 ‘분로쿠의 전쟁(文祿の役)’이다.

다음 해 선조 27년에 이여송이 총사령관으로 명의 원군 10만명을 이끌고 와서 조선을 도왔다.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평양을 버리고 일본군은 모두 경성으로 퇴각했는데 이때 유명한 고바야카와 다카가케(小早川隆景)가 벽제리 기슭으로 큰 공을 세워 명군을 몰아낸 것이다. 선조 29년에 일본은 게초(慶長:1596~1615)로 연호를 바꾸었다. 명의 사신 심유경(沈惟敬)은 일본에 왔지만 도요토미다이코열봉책(豊臣太閤裂封册)⁹⁰⁾의 춘사(椿事)⁹¹⁾가 있어서 화의(和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듬해 선조 30년, 즉 게초 2년에 일본군은 또다시 바다를 건넜고 명나라 군대도 또다시 와서 조선을 도왔다. 선조 31년에 일본군은 군대를 되돌리고 이듬해 선조 32년에는 일본 스스로 화의를 청했다. 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종할 때의 유명으로 천고(千古)의 영웅도 천수를 거스르기 어려워 이 해에 홍서(薨逝)⁹²⁾하고 도요토미 히데요리(豊臣秀頼)가 상속했다. 선조 33년에 명나라 군대도 돌아가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 선조 37년, 즉 게초 8년에는 일본의 통수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에게 귀속되었고 선조 39년에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 때에 일본과 조선은 완전히 친교를 맺기에 이르렀다.

개국 400년 순조 원년에 기독교도를 벌하는 일이 있었고, 개국

89) 임금의 피란.

90)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에 봉하는 고명(誥命).

91)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을 일본 국왕에 봉하는 고명에 격분하여 국서를 찢어 버린 사건을 가리킴.

‘춘사’는 뜻밖에 생기는 불행한 일.

92) 귀인의 죽음.

448년 현종 5년에 기독교도를 많이 주륙했다. 이때부터 조선은 다사다난한 시대에 접어들어 개국 473년 이태왕(李太王)이 왕위에 즉위하고 대원군이 정병을 잡았다. 이는 일본의 겐지(元治:1864~1865) 원년이다. 이태왕 3년, 게이오(慶應:1865~1868) 2년에 민비를 받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이 해에 프랑스 군함이 침범했다. 이태왕 8년, 메이지(明治:1868~1912) 4년에는 미국 군함을 포격했다. 이태왕 10년, 메이지 6년(1873)에는 대원군이 정치를 그만두었다. 일본 조정에서는 정한론이 일어났다. 이태왕 12년, 메이지 8년(1875)에 일본 군함을 포격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듬해 이태왕 13년, 메이지 9년(1876)에 최초로 일본과 조약을 체결했다. 이태왕 19년, 메이지 15년(1882)에 대원군의 난이 있었다. 이태왕 21년, 메이지 17년(1884)에 김옥균의 난이 있었다. 이태왕 25년, 메이지 21년(1888)에 러시아와 육로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이 사이 조선은 미·영·독·러와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이태왕 31년, 메이지 27년(1894)에 동학당이 봉기해 소요가 일어났다. 일본과 청나라 사이의 국교는 조선에서 깨지고 평양 대전에서 청나라 군대는 패북(敗北)⁹³⁾했다. 이태왕 32년, 메이지 28년(1895)에 일본과 청 사이에 '마칸조약(馬關條約)⁹⁴⁾이 성립되어 평화를 회복했다. 이 해에 민비가 해를 당하고 경성에서 요란이 일어났다. 이듬해 이태왕 33년, 메이지 29년(1896)에 국호를 '한국'으로 칭하고 연호를 건양(建陽)으로 했다. 이로써 완전히 청나라의 속박을 벗어나 독립국이 되었다. 이듬해에 연호를 광무(光武)로 바꾸었다. 이 이후 한국의 변천은 사람들 기억에 생생해서 러시아가 거둬 남하를 꾀해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절충은 전쟁터에서 끝을 보기에

93) 패배함.

94) 시모노세키 조약.

이르렀다. 광무 8년, 메이지 37년(1904)에 한국 전토는 러·일 교전의 땅이 되었다. 이에 앞서 일본은 경성-부산 간 철도부설권을 획득해 대구는 그 중계역이 되었고 이주하는 일본인이 날로 증가했으며 경부선 전선이 개통되고 동시에 평화가 회복되자 대구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잡거하는 대도회지가 되었다. 이 시기 정치에 관한 것은 제2장 본기에 기술한 대로이다.

지금까지 편술한 역사에서 신라의 발전은 대구민단에 앞선 가장 오래된 전례로서 참고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대구는 경상북도의 수부(首府)이고 경주는 신라의 고도로서 문화의 연원이다. 특히 신라가 조선의 발달에 가장 공이 크다는 것은 만사가 증명한다. 이에 신라 발달의 흔적을 약술하며 본 장을 끝맺고자 한다.

경상도는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온화하다. 지역의 경계는 산악지대가 겹쳐 있고 천험(天險)은 외적을 방어하기에 편리하다. 이는 신라가 백제, 고구려보다 오래 유지되고 동시에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한 이유이다.

* **종교** : 유교는 기자 이후라고 하지만 은나라 이후 약 천년 동안은 조선에 보급되지 않았다. 고구려가 흥하면서 점차 맹아가 싹텄다. 신라의 김내물 때 고구려의 소수림왕이 처음 대학을 설립해 그 세력이 배로 왕성해졌다. 이때 중국의 진왕 부견(符堅)은 특별히 사신을 파견해 부도(浮屠), 순도(順道)⁹⁵⁾, 불상·불경을 보냈다. 이것이 조선 최초의 불교 전래이다. 이후 불교가 왕성해지자 각 지역에 큰 사찰을 짓고 사료를 내려 승려를 양성했기 때문에 신라 영지 내에도 대가람이 현존한다. 진평왕 때(일본의 스이코(推古)천황 때) 당나라 고조는 도사에게 명해서 친존상과 불법을 가지고 조선

95) 고구려 소수림왕 때에 중국 전진에서 귀화한 승려. 소수림왕 2년(372) 불상과 경문을 가지고 고구려에 들어와 처음으로 불교를 전파하였다.

에 들어가 노자경을 강의하게 했다. 이로써 유(儒), 석(釋), 불(佛) 3개 종교가 함께 하게 되었다.

* **문학** : 신라인의 시조는 원래 중국 진한의 유민이다. 문학의 발달은 매우 늦었다. 건국 300년 후 첨해왕(沾解王) 때에 서산(書算)⁹⁶에 능한 사람이 나왔지만 그 후 300년이 지난 진흥왕 6년, 일본의 긴메이(欽明)천황 때에 처음 국사를 편찬했다. 신무왕, 일본 덴무(天武)천황 때에 설총이라는 자가 박학하고 글을 잘 지어 방언 문자를 창작해 후진을 가르쳤다. 후대에 이를 이도(吏道) 또는 이문(吏文)⁹⁷이라고 불렀다.

* **천문** : 선덕여왕은 일본 조메이(舒明)천황 때에 첨성대를 만들었다. 현재 경주 남문 부근에 있다. 이후 경덕왕 8년, 일본 쇼무(聖武)천황 때에 천문박사를 두었다. 이어서 혜공왕 15년, 일본 쇼토쿠(稱徳)천황 때에는 사천대박사(司天大博士)를 두었다.

* **시계(時辰)** : 성덕왕 17년, 일본 겐쇼(元正)천황 때에 처음 물시계(漏刻)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 누각전(漏刻典) 박사를 두었다.

* **의술** : 신라 의사 김파진(金波鎭)과 한나라의 무기(武紀)라는 인물이 일본에 온 적이 있다. 효소왕 원년, 일본 지토(持統)천황 때에 의학박사 2명을 두고 의학생을 교수했다. 교육 과정은 본초(本草), 갑을경(甲乙經), 소문(素問), 침경(針經), 맥경(脈經), 명당경(明堂經), 난경(難經) 등이었다.

* **서화** : 서는 신라 승려 김생을 조선 제일로 꼽는다. 예서, 행서, 초서 모두 신의 경지에 들었다고 칭찬한다. 김생이 쓴 창림사(昌林寺) 비석은 중국 원나라의 조우조(趙孟頫)⁹⁸가 보고 감탄했으며 당

96) 서도와 산술.

97) 이두(吏讀, 吏頭)를 가리킴.

98) 중국 원나라 초기의 문인·유학자·서화가.

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좀처럼 이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평했다. 회화는 솔거라는 승려가 있어서 사람들이 신화(神畵)라고 칭찬했다. 노승과 불화가 뛰어났다고 한다.

* **음악** : 일찍부터 악보와 음률이 있어서 유리왕(儒理王) 때 국내 순행을 하면서 음악으로 환과고독(鰥寡孤獨)⁹⁹⁾을 위로한 것은 오랜 옛날의 대표적 사례에 속하는 일이었다.

* **요업** : 태고에 아메노히보코(天日槍)를 따라 입조한 도공이 있었다. 도기 기술 발달이 매우 빨랐음을 알 수 있다. 일본 해당 지역 고분에서 발굴되는 조선 토기는 이 방법에 따라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설은 사실에 가깝다.

* **주조** : 진흥왕, 일본의 긴메이(欽明)천황 때에 높이 6척 불상을 주조했다. 당시 조선은 불교가 융성한 시대여서 백제가 일본 켄코지(善光寺)에 여래상을 바친 때이다. 큰 종을 주물로 만드는 일도 빈번해서 현재 경주의 대종들은 모두 당시 제작된 것들이다.

* **조각** : 신라의 조각은 지극히 정교하고 치밀하다. 지증왕은 나무를 활용해 사자 형태를 만들어 전함에 실었다. 신라가 일찍이 당나라 조정에 바친 만불산은 침단을 조각하여 주옥을 박아 넣었고 전당 누각 뒷면에 무수한 불상이 있다. 그 정교함은 눈길을 빼앗았다고 한다.

* **기직(機織)** : 고래로 잠업이 발달해 기직은 일찍부터 발달했으며 일본은 이를 배웠다. 생산품은 면백(綿帛), 청포(靑布)¹⁰⁰⁾, 세포(細布)¹⁰¹⁾, 종포(綜布)¹⁰²⁾, 금총포(金總布), 능라(綾羅)¹⁰³⁾, 금주(錦

99)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100) 푸른 빛깔의 베.

101) 곱고 가늘게 짠 삼베.

102) 삼베.

103) 무늬가 있는 두껍거나 얇은 비단.

紬)¹⁰⁴, 어아주(魚牙紬)¹⁰⁵, 조하주(朝霞紬)¹⁰⁶, 하금갈(霞錦褐)¹⁰⁷ 등이 있다. 조하주와 하금갈은 당나라와 일본에 공헌한 물품이다.

* **조선(造船)** : 일본이 신라의 조선 기술을 채택한 것은 사실이다. 옛날에 조선은 수군 운용이 매우 훌륭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 때 일본의 용장도 이순신 때문에 해전에서 고전한 사실은 역사에 분명히 남아 있다. 결국 조선술의 우열로 인한 것이다.

* **우경(牛耕)** : 지증왕은 인민을 장려해서 널리 우경을 하도록 했다. 오늘날 조선 농민의 경작술이 세계의 진보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경 하나는 발달해서 밭 기는 소가 많고 소를 다루는 방법이 숙련된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 **잡업** : 양잡업은 신라가 가장 발달했고 이것을 일본에 전했다. 현재 조선의 양잡업이 경상북도에서 가장 융성해 13개 도에서 으뜸인 것은 당국자가 장려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양잡업 발달이 이미 오래되어서 신정(新政)의 보호와 장려로 재흥하고 있는 것이다.

* **차** : 근대 조선인은 차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차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랜 옛날에는 많이 마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는 선덕여왕 시대에도 있었고 흥덕왕 3년에는 대림이라는 사람을 당나라에 사신으로 보냈는데 차자(茶子)를 얻어서 돌아왔다. 이것을 지리산에 심은 때부터 차를 마시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일본이 차를 시식한 때와 같다.

* **목축** : 고귀한 사람은 우마와 돼지를 도서 지역 산에서 키우고 식용할 때는 직접 사냥해 손님에게 대접했다고 한다.

* **상업** : 조선 최초의 상업은 곡물을 면으로 바꾸는 것으로 시작했

104) 비단 명주.

105) 명주의 한 종류.

106) 옛 비단의 한 종류.

107) 토끼털로 짠 고급 직물의 한 종류.

다. 소지왕은 시사(市肆)¹⁰⁸)를 두어 사방의 재화를 유통시켰고 지증왕은 전감(典監)¹⁰⁹)을 두었다. 무관(質販)¹¹⁰)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부분 부녀자였다고 한다.

* **노예** : 죄가 있는 자를 몰입(沒入)¹¹¹)해서 노비로 삼는 것은 태고의 관례이다. 신라 시대에는 미곡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는 사람을 노비로 삼는 것이 허락되었다.

* **순사(殉死)** : 국왕이 죽으면 남녀 5명을 순사시키는 것을 관례로 했는데 지증왕 때에 이를 금했다.

* **상복** : 상을 치를 때의 복식은 자세하지 않다. 보통 소복을 입고 곡을 하거나 가무를 한다.

* **능묘** : 묘지에는 반드시 수호(守戶)를 두었다. 문무왕이 유언(遺詔)으로 화장을 하게 한 이후 효성왕, 선덕왕 등은 모두 관을 태우고 뼈를 동해에 던졌다.

* **의관** : 의관·공복(衣冠公服)은 법흥왕 30년, 일본 기원 1180년에 백관의 공복을 정해서 자의(紫衣), 비의(緋衣), 청의(青衣), 황의(黃衣) 각각에 계급을 맞추었다. 비의 이상은 아홀(牙笏)¹¹²)을 사용하고, 관은 모두 당나라에서 만든 것으로 정했다.

108) 상설 시장.

109) 시장을 감독하는 관리.

110) 시장에서 재물을 사고파는 일.

111) 죄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가족을 관아의 종으로 잡아들이던 일.

112) 조선시대에 일품에서 사품까지의 벼슬아치가 몸에 지니던 임금을 만날 때 손에 쥐던 수판. 무소뿔이나 상아로 제작.

제5장 상급 및 관계 관청

* 대구이사청(大邱理事廳)

이사청은 거류민단의 감독관청이다. 이사청 설치는 1905년 11월 17일에 ‘일한협약’으로 결정되었고, 대구이사청은 1906년 8월에 그 설치를 공포해 같은 해 9월 15일에 개청식을 거행했다. 이 시점에는 아직 이사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오카모토 리헤 부이사관은 개청에 앞서 그 준비를 담당했다. 처음에는 청사가 들어갈 곳이 없어서 관찰부의 일부인 선화당(宣化堂)을 빌려 충당했고 나중에 징청각(澄淸閣)으로 옮겼다. 신청사가 지어진 것은 1909년 9월로 부지 약 5천평을 통감부 용지로 매수하고 신청사로 통하는 도로 부지는 민단 유지들의 기부로 마련했다. 소재지는 동운정(東雲町)으로 현재 대구부청 자리이다.

이사청의 권한은 영사관을 확장해서 내륙에 미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행정과 사법을 겸하고 경찰과 감옥을 갖고 있으며 정·부이사관은 때때로 재판관이 되었다. 경찰부장은 검찰관으로서 검사 직무를 수행했다. 관할 지역은 영일만 입구의 여러 군(현재 영일군)을 부산이사청 소관으로 한 것을 제외하고 경상북도 전체 및 충청북도의 황간과 영동 2개군을 포함한다.

개청에 1년 앞서 이사청 관제가 공포되었을 당시에는 대구가 이사청 소재지가 될지 불분명했다. 만약 이전의 영사관 관할 구역을 답습할 경우 대구는 28리 밖에 있어서 그 불편함을 견딜 수 없었다. 이에 대구거류민은 쫓기해서 1906년 1월에 대구대일본거류민회(大邱大日本居留民會) 대표자를 경성에 보내어 통감부에 이사청 설치를 청원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통감부는 대구에 신설한다고

결정해 발표했다.

오카모토 리헤 부이사관이 대구이사청 개설과 그 전후 시기에 거류민단을 위해 세운 공로는 잊어서는 안된다. 오카모토 리헤가 부임했을 때는 민장 이하 평의원 전원이 총사직한 때로 자치기관은 중단되고 중요한 학교 건축안도 방치되어 있었다. 오카모토 리헤가 부임하자 유지들이 다시 논의해 계획을 새로 세우고, 달성산 황조요배전(皇祖遙拜殿) 건설에 노력했으며, 교통이 필요해 사설 통로를 여는 등 항상 거류민 지도에 힘을 쏟았다. 오카모토 리헤가 장관 사무를 맡은 것은 5개월이고 이후 1907년 1월에 나카오지 마사오(仲大路正雄)가 이사관에 임명되어 더욱 치적을 쌓았다. 나카오지 이사관은 얼마 후 목포로 옮겨갔고 오카모토 부이사관도 함흥으로 전근해 갔다. 나카오지 이사관을 대신해 우지노 도쿠타로(氏野德太郎)가 왔다. 이어서 히사미즈 사부로(久水三郎)로 바뀐 후 노세 다츠고로(能勢辰五郎)가 그 뒤를 이어 관제 개혁과 이사청 폐지 때까지 임무를 수행했다.

각 이사관의 치적을 상세히 서술하는 것은 본 민단사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이사청이 존재한 기간의 절반 이상은 관하의 군 지역에 거류하는 일본인이 적어서 이사청 사무의 대부분은 거류민단에 관한 것이었다. 각 이사관이 거류민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특별히 부기해야 할 사항이다.

이사청 폐지는 관제 개혁의 결과이다. 그리고 관제 개혁은 ‘일한 병합’의 결과이다. 1910년 8월에 한국을 일본에 병합하고 명칭을 ‘조선’으로 되돌렸으며 대구이사청 관할 지역은 조선인관 일본인 모두 경상북도청 관할에 들어갔다.

* 경상북도 관찰도

관찰도는 당초 ‘관찰부’라고 불렀고 조선 8도 시대에는 경상도 71개 군을 관찰했다. 그 장관을 ‘관찰사’라고 했다. 관찰사의 경질은 빈번했다. 1903년 정부터 이용직(李容直)을 시작으로 조병호(趙秉鎬), 이중하(李重夏), 이직현(李稷鉉), 이헌영(李憲永), 조승원(趙承遠), 이유인(李裕寅), 이윤용(李允用), 신태휴(申泰休), 윤현(尹瀟), 이용익(李容翊), 이근호(李根濤), 한진창(韓鎭昌), 이충구(李忠求) 등 다수가 역임했지만 기록할 만한 치적은 없고 모두 이른바 조선식 대관(大官)에 지나지 않는다. 오직 한 사람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도미(掉尾)¹¹³의 걸출한 인물이 박중양(朴重陽)이다. 그는 마지막 관찰사이다.



氏陽重朴使察觀前

관찰도청은 성내 중앙에 있다. 성의 남문이 정문이고 ‘영남제일관(嶺南第一關)’이라고 한다. 지금의 교마치(京町)는 문 안의 종로이다. 누문 밖 오른쪽으로 가면 ‘절도사 이하 하마(下馬)’라는 표석이 있다. 당시의 엄한 의장(儀仗)¹¹⁴과 경필(警蹕)¹¹⁵의 위엄을 생각하게 만든다. 선화당과 징청각은 정청이다. 대구의 모든 관아는 관찰부 아래에 중영(中營), 신군남영(新軍南營), 도호부(都護府), 전보국(電報局) 등이 있다. 관찰사는 도 전체의 사법과 행정의 대권을 장악했다. 중영은 경무청(警務廳)으로 수령을 영장(營將)이라고 했다. 신군남영은 수비대이다. 3~400명의 병사가 있고 영관(領官)이라는 주장(主將)이 이들을 인솔한다. 도호부는 이전의 군아이다. 새로운 경무

113) 마지막, 최후.

114) 나라의 의식에 쓰이는 무기나 물건.

115) 임금을 경호하기 위해 통행을 금함.

서가 설치되면서 증영은 폐지되었다. 신군남영도 진위대(鎭衛隊)로 개칭되었다. 도호부는 대구군이 되고 관관을 군수로 개칭했다.

관찰사 권력이 강하고 권위가 광대한 것은 일본의 봉건시대 제후와 같아서 그 사치·교만과 가렴주구는 변읍(采邑)¹¹⁶⁾을 세습하는 제후한테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이다. 그들은 원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엽관(獵官)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한 번 관직을 얻으면 당초 목적으로 삼았던 치부(致富)의 술수에 급급하고, 만일 파면되면 금전과 재화를 챙겨서 물러나는 모습이 마치 여관의 과객 같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재임 중 출입할 때는 군병을 거느리고 하관과 하인을 호종(扈從)¹¹⁷⁾하게 하며 오가는 사람들을 전가(殿呵)했다. 앞길을 횡단하는 자를 베는 것은 일본의 옛날 다이묘(大名)가 했던 ‘키리스테고멘(斬捨御免)’¹¹⁸⁾과 같았다. 문관 출신은 가족에 용을 그린 것을 행렬 선두에 들게 했고, 무관은 호랑이를 그렸다. 관찰부 안에는 수백 명의 관기와 비복이 있었다. 모두 조세로 이들을 거느리면서 한 명의 관찰사를 받들었다. 위복(威福)¹¹⁹⁾을 마음껏 누리고 뇌물을 줄지어 받았다. 따라서 군수도 이것을 모방했다. 군수 한 명이 왕래하는 데에도 수 십 명의 종자들이 족용(簇擁)¹²⁰⁾했다고 한다. 도도하게 관습을 행했고 인민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옛날에 관찰사가 각 군수를 만나면 대구 성내는 은진(殷賑)이 극에 달했고, 뇌물과 주찬을 바치려는 자들이 물건을 머리에 인 채로 거리에 가득했다고 한다. 조선이 쇠약해진 것은 우연이 아

116) 변경에 있는 지역, 지방.

117) 뒤따르게 함.

118) 무사가 무례한 것을 했다고 판단한 양민을 칼로 베어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던 것.

119) 사람을 마음대로 복종시킴.

120) 뺨뺨이 둘러싸고 보호함.

니다.

통감부가 설치되자 악정은 나날이 개혁되었다. 그러나 배일사상이 여전히 왕성할 때는 천천히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본인을 관리에 임명하는 것은 소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통감부는 우선 고문제도를 채택했다. 즉 재무, 사법, 경무에 일본인 보좌관을 두었다. 이어서 차관제도를 시행해 관찰사에게 서기관을 내무부장으로 부치고 경시를 경찰부장으로 부쳐서 이 양자가 관찰사를 '감독적'으로 보좌하게 했다. 이 두 부장이 자연스럽게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를 중개해 거류민단과 연락하고 일·한 간 공동사업의 진척과 인심의 융화에 현저한 효과를 발휘했다. 거류민단은 잘 인내하며 조선인 지도 임무를 맡았다.

거류민단 실시 이전의 보좌관은 마쓰시타 나오미(松下直美)가 범무를 맡았다. 재무는 이토 쓰네조(伊藤恒藏), 경무는 이이다 아키라(飯田章)가 맡았다. 거류민단 실시 이후에는 시오카와 이치타로(鹽川一太郎)와 다케우치 간타로(竹内卷太郎) 두 사람이 서기관을 역임했고, 경무부는 나가타니 다카시(永谷隆志), 시마다 후미노스케(島田文之助), 유아사 히데토미(湯淺秀富), 오카다 요시카즈(岡田宜壽) 경시 등이 역임했다. 거류민들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관계한 이는 박중양 관찰사와 다케우치 간타로 서기관이다. 두 사람은 1908년에 동시에 부임해 관찰도 폐지 때까지 함께 재임했고 거류민단의 발전에 정말 많이 진력했다. 두 사람이 대구를 떠날 때 거류민단 유지는 기념품을 증정하여 그 공로에 감사를 표했다.

박중양 관찰사는 경기도 양주 출신이다. 1895년 21세의 나이로 일본에 유학해 갖은 고생을 겪었다. 경찰학은 일본 현지에서 배웠다. 일본식 이름은 야마모토 신(山本信)이다. 1906년 7월에 대구 군수로 부임해 관찰사 서리를 겸했다. 그는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으

로서 조선의 적폐를 혁신하는 데에 마음을 다잡았다. 우선 불필요한 인력을 걷어내고 관기를 폐지했으며 하인을 줄여서 단번에 200여명을 감원해 남은 재원을 새로운 시설에 투자했다. 박중양은 일본 사정에 정통해 시기와 의심을 품지 않았다. 일본인과 교류할 때 사사로운 차별을 두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야마모토 군수’라고 불렀다. 그가 대구에 임관하자 성벽을 무용의 장물로 여기고 이를 철폐했다. 당시 대구성은 장벽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획했다. 서문 안에 일본인 상점이 일부 있었다. 오카모토 리헤 부이사관과 가게야마 히데키 민장이 시가지 공사를 대구성 파괴(破毀)¹²¹⁾부터 시작하려고 박중양 서리에게 상의하자 그는 분연히 수락하고 내부대신의 허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 앞서 파괴를 시작했다. 당시 그는 비난을 혼자 짊어질 각오로 임했다. 내부대신의 불인가 명령서를 접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을 파괴했다. 때는 1906년 11월이었다. 이에 조선 내각에서는 박중양을 징계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이를 구호해 무사했다. 그러나 얼마 후 사직하고 대구를 떠났다. 이후 박중양은 1908년 7월에 경상북도 관찰사로 영전했다. 2년 동안 쥐 죽은 듯이 고요했던 박중양은 권토중래(捲土重來)하여 관찰사로 부임했다. 중단된 사업이었던 성벽 철거는 그 자리가 정리되어 네 개의 큰 도로가 되었다. 지금의 모토마치(元町), 동성정(東城町), 남성정(南城町), 서성정(西城町)은 바로 성벽의 옛터이다. 박중양은 이 도로들을 연결하기 위해 십자형 간선도로도 개수했다. 지금의 교마치(京町), 야마토초(大和町), 혼마치(本町), 가미마치(上町)이다.

박중양 관찰사가 부임한 1908년 7월에 사법권은 통감부에 위임되고 재무는 재무감독국으로 옮겨졌다. 관찰도는 오로지 지방 개발

121) 깨뜨려 헐어버림.

에 종사하여 박중양 관찰사는 다케우치 서기관과 함께 일·한 관민을 결속시키며 대구 발전에 힘썼다. 1910년에 한국을 일본제국에 합병시키고 관찰도를 폐지하여 경상북도가 되자 박중양 관찰사는 충청남도장관으로 영전해 현재 공주에 있다. 이따금 대구에 와서 거류민단의 지인들과 옛정을 나누고 대구 북부 침산에 있는 귀거래 땅에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다. 다케우치 간타로 서기관은 나가노현(長野縣) 사람으로 경기도 서기관에서 경상북도 서기관으로 왔다가 관제 개정으로 폐관되자 고질적인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도쿄로 돌아갔다. 그가 재직 중 목표로 한 것은 일본인·조선인을 하나로 묶어 일본화하는 데에 있었다. 조금도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 관찰사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했다. 아래 관료를 대할 때에는 그 사람을 믿고 일을 맡겼으며 사무의 간첩(簡捷)¹²²⁾을 중시하고 번문육례(繁文縟禮)¹²³⁾를 가장 싫어했다. 거류민단에 대해서는 거류민단의 의지를 잘 살펴서 희망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에 힘썼다. 다케우치 간타로 서기관 재임 중에 지방관의 일대 도태가 진행되어 동요가 일어나자 거류민단 유지 110여명이 연서해서 그의 유임을 희망하는 진정서를 당국에 제출했다. 그리고 와타나베 무라오 민장의 임기가 다해 후임자를 찾아야 하는 시점에 거류민단의 일부 유지들은 다케우치 간타로 서기관을 영입해 민장으로 추대하고자 의향을 물었으나 눈병이 아직 낫지 않아 정양해야 한다며 고사했다. 이를 통해 거류민단이 다케우치 간타로 서기관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 있다.

122) 간단하고 빠름.

123) 번거롭고 까다로운 규칙, 예절, 절차.

* 경상북도청

병합 이전의 지방 행정기관은 13도·11부·317군 이외에 일본인
거류자 행정사무를 주관하는 이사청이 있었다. 그리고 재무기관은
일반행정기관과 분리해 재무감독국과 재무서를 설치했다. 그



慶尙北道廳

런데 새로운 관제는 이 기관
모두를 지방청으로 통합했
다. 도청에 새로 재무부를
설치하여 재무감독국 사무를
관장하게 했으며 재무서 사
무는 부·군에 인계했다. 기
존에 농상공부 소관이었던

임업사무국과 종묘장은 도 소속으로 했다. 또한 임업사무국과 종묘
장의 순회교사와 축탁원 등은 소속을 도로 옮겨서 기사(技師)와 기수
(技手)로 임명했다.

새로운 관제는 1910년 9월 30일 칙령으로 공포되었다. 도장관의
권한과 겹치는 것은 1) 조선총독을 좇아 법령을 집행하고 관내 행
정사무를 관리하며 소속 관리를 지휘 감독한다. 2) 도행정의 집행
과 관련해서는 관내 경찰관을 활용하고 지방경찰사무에 관해서는
도경무부장이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지시한다. 3) 관내 행정사무
에 관해서는 직권 또는 위임 범위 내에서 도령(道令)을 공포할 수
있다. 4) 부윤 또는 군수의 명령과 처분 가운데 규정에 어긋나고
공익을 해치거나 권한을 침범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명령이나 처
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5) 도장관은 직권에 속하는 사
무 일부를 부윤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관내 공공단체
즉 거류민단, 일본인 학교조합 혹은 수리조합(水利組合)의 행정을
감독한다. 7)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병력이 필요할 때는 이를

조선총독부에 구장(具狀)¹²⁴⁾해야 한다. 단 긴급 비상시에는 즉시 사령관에게 출병을 요구할 수 있다.

도장관의 자문기관으로 각 도에 조선인 참여관(參與官) 및 참사관(參事官)을 두었고, 참여관은 자문에 응하는 것 이외에 임시령으로 사무에 복무할 수 있었다. 참사는 명예직으로 한 개 도의 정원을 3명으로 제한했다. 사무관은 정원이 2명이었는데 이후 이를 증원했다. 이진호 도장관은 개척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일본어가 능숙하고 일본 사정에 통달해 있다. 참여관은 최정덕(崔廷德)이 임명되었고, 이어서 신석린(申錫麟)이 대신했다. 사무관인 내무부장은 사이토 레조(齊藤禮三), 재무부장은 사사키 쇼타(佐々木正太)가 최초로 임명되었다. 사이토 레조가 충청북도에서 전임해 오자 사사키 쇼타는 재무에서 내무로 옮기고 요시무라 겐이치로(吉村謙一郎)가 재무부장이 되었다. 이어서 무토 분고(武藤文吾)가 사무관으로 임명되어 세 명의 사무관을 두게 되었다.



氏 鎬 李 守 官 長 道

* 대구부청

대구부는 원래 317개 군의 하나였는데 새로운 관제에서 12개 부에 들어갔다. 부윤의 권한은 도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법령을 집행하고 관내의 행정사무를 정리하는 것이다. 각 부·군은 참사를 2명 두었지만 행정사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참사는 지역의 산업, 토목, 수리, 기타 지역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한해서 자문한다. 부윤은 이전에 이사관에 재직한 사람 또는 일본인 고등

124) 어떤 일의 내용을 상세히 적어 보고하는 것.

관 중에서 임명했다. 대구 부윤은 부 설치 이래로 다케자키 로쿠지로(竹崎六次郎)였는데 거류민단이 폐지되면서 대구거류민단의 사무를 승계해 새로운 대구부의 서정(庶政)¹²⁵⁾을 주재하는 동시에 대구 학교조합 관리자 역할을 했다.

125) 여러 방면에 걸친 정무.

제6장 재정

거류민단은 일본 본토의 시·정·촌(市町村)과 같이 오래된 단위의 조직이 아니다. 각 거류민단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은 부산, 원산, 인천인데 이조차 완전한 단체가 된 것은 최근이고 법인 자치체가 된 것도 같은 시기이며 겨우 월·일에서 조금 차이가 날 뿐이다. 대개 1906년 후반기부터 1914년 사이에 존재했으니 그 짧은 시간 안에 재정의 기초를 확립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고유 자산은 없고 단지 민단세 부과를 통한 세계(歲計)¹²⁶를 유지했다. 대구거류민단은 철도용지를 대여받아 그것을 다시 빌려주면서 받는 임대수익으로 일부 세입을 보충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었다. 교육에 관한 하사금과 기부금은 교육기본금으로 보관했다.

민단 발전에 따라 필요한 새로운 설비가 점점 늘어나고 거류민의 부담이 매년 누적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는 당연한 발달의 과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구거류민 부담액의 평균 비율은 다른 지역 민단과 비교하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민단이 시설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실행할 수 없는 것은 거류민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고려하고 민단 재정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민단비의 대부분은 교육비가 차지한다. 그리고 학교 부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은 민단의 자산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민단은 이 자산을 남길 수 있어서 교육기본금과 함께 대구학교조합에 인계를 마쳤다.

1906년 11월 1일부터 1913년까지 기간의 대구거류민단 세출입은 다음과 같다.

126) 한 회계 연도나 한 해의 세입과 세출을 계산함.

〈1906년도 세출입 총결산〉

일금 5,338원 52전 경상부(經常部) 수입액
일금 12,221원 9전 임시부 수입액
합계 17,559원 61전
일금 5,852원 77전 경상부 지출액
일금 10,968원 90전 임시부 지출액
일금 340원 전년도 인계 부채 상각액(償却高)¹²⁷⁾
합계 17,161원 67전
결산 잔액 397원 94전

〈1907년도 세입출 총결산〉

일금 11,419원 6전 경상부 수입액
일금 2,737원 86전 임시부 수입액
합계 14,156원 92전
일금 10,214원 15전 경상부 지출액
일금 3,371원 51전 임시부 지출액
합계 13,585원 66전
결산 잔액 571원 26전 차년도 이월액

〈1908년도 세입출 총결산〉

일금 19,318원 73전 경상부 수입액
일금 3,731원 26전 임시부 수입액
합계 23,049원 99전
일금 13,187원 8전 경상부 지출액
일금 5,401원 38전 임시부 지출액

127) 받을 수 없는 부채액을 포기하는 것. 재정에서는 지출로 처리함.

합계 18,588원 46전

결산 잔액 4,461원 53전 차년도 이월액

<1909년도 세입출 총결산>

일금 24,927원 3전 경상부 수입액

일금 11,431원 53전 임시부 수입액

합계 36,358원 56전

일금 20,742원 71전 경상부 지출액

일금 14,781원 48전 임시부 지출액

합계 35,524원 19전

결산 잔액 834원 37전 차년도 이월액

<1910년도 세입출 총결산>

일금 29,333원 20전 경상부 수입액

일금 4,109원 37전 임시부 수입액

합계 33,442원 57전

일금 24,908원 74전 5리 경상부 지출액

일금 6,441원 34전 임시부 지출액

합계 31,350원 8전 5리

결산 잔액 2,092원 48전 5리 차년도 이월액

<1911년도 세입출 총결산>

일금 30,949원 11전 경상부 수입액

일금 3,712원 43전 5리 임시부 수입액

합계 34,661원 54전 5리

일금 32,278원 34전 5리 경상부 지출액

일금 2,027원 32전 임시부 지출액
합계 34,305원 66전 5리
결산 잔액 355원 88전 차년도 이월액

〈1912년도 세입출 총결산〉

일금 35,221원 84전 5리 경상부 수입액
일금 22,102원 98전 임시부 수입액
합계 57,324원 82전 5리
일금 33,530원 11전 5리 경상부 지출액
일금 22,871원 69전 임시부 지출액
합계 56,401원 80전 5리
결산 잔액 923원 2전 차년도 이월액

〈1913년도 세입출 총결산〉

(세입)

일금 38,359원 경상부 기정 예산액
일금 8,162원 경상부 추가 예산액
일금 3,544원 임시부 기정 예산액
일금 200원 임시부 추가 예산액
합계 50,265원

(세출)

일금 36,956원 경상부 기정 예산액
일금 1,600원 경상부 경정(更正)¹²⁸⁾ 추가 예산액
일금 4,947원 임시부 기정 예산액

128)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에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일

일금 9,962원 임시부 경정 추가 예산액
합계 50,265원

거류민단은 1914년 3월 31일자로 폐지되어 대구부에 인계되면서 해당일 현재 기준으로 각 종목을 다음과 같이 구별·열거해 인계를 종료했다.

〈1913년도 대구거류민단 세입출 중단 결산 (1914년 3월 31일 현재)〉

(세입부)

일금 35,082원 59전 5리 경상부 결산액
일금 3,716원 2전 임시부 결산액
합계 38,798원 61전 5리

(세출부)

일금 31,896원 26전 경상부 결산액
일금 6,222원 96전 임시부 결산액
일금 60원 34전 세입출 외 취급액
합계 38,179원 56전
결산 잉여금 619원 5전 5리

(재산목록)

토지

소재	지목	평수	적요
대구부 미나미아사히초(南旭町)	대지(垵)	2,143.02평	공립심상고등소학교 부지
상동	대지	353.81평	유치원 부지
합계		2,496.83평	

건물

소재	구조	동수	건평	적요
대구부 미나미아사히초	목조기와지붕 2층	2	229,100	공립심상고등소학교 건물
상동	목조기와지붕 1층	1	130,000	상동
상동	목조함석지붕 1층	1	84,000	상동
상동	목조기와지붕 1층	2	24,000	건물 부속 승강구 (목조기와지붕 2층 건물의 1층과 접속)
상동	목조기와지붕 1층	1	8,000	쓰레기장 (목조기와지붕 2층 건물의 1층과 접속)
상동	목조함석지붕 1층	1	21,500	창고 (위 목조기와지붕 1층 건평130평 건물과 접속)
상동	목조기와지붕 1층	1	8,000	위 건물 복도
상동	목조함석지붕 1층	1	3,500	
상동	목조기와지붕 1층	1	6,000	위 건물 급수실
상동	목조함석지붕 1층	2	33,600	위 건물 창고
상동	목조기와지붕 1층	3	20,000	위 건물 화장실
상동	목조함석지붕 1층	1	10,000	상동
상동	목조기와지붕 1층	1	63,780	유치원 건물
상동	목조기와지붕 1층	1	2,000	위 유치원 창고
합계		18	639,480	

(현금목록)

일금 185원 48전

내역

일금 49원 18전 5리 보통기본재산

일금 92원 10전 소학교 기본재산

일금 44원 20전 유치원 기본재산

차지(借地)

소재지 : 대구부 니시키초(錦町) 1정목

토지 명목(地目) : 철도용지

평수 : 2,500.00 평

적요 :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빌림

(부채)

인가 연월일	기채(起債) 목적	차입처(借入先)	이율
1912년 10월 19일	소학교 건물 증축비	주식회사 조선은행	연 7보(步) ¹²⁹⁾

차입액	상환액	미상환액
17,000.000	2,956.141 (2,956원 14전 1리)	14,043.859 (14,043원 85전 9리)

(비고) 본 공채는 분할 차입한 것으로 각 시기별 차입액은 다음과 같다.

1913년 2월 10일 7,000원

1913년 3월 13일 5,000원

1913년 3월 31일 1,000원

1913년 4월 1일 4,000원

129) 이율 단위. 분(分)과 같음

(재산목록 : 대구부에 속하는 분)

토지

소재	토지 명목(地目)	평수	적요
대구부 남산정(南山町)	밭(田)	679.11	격리병원 건물 부지
달성군 수성면 대명동	밭	473.41	묘지
상동	밭	370.58	묘지
상동	임야	1,678.00	묘지
합계		3,201.10	

건물

소재	구조	동수	건평	적요
대구부 남산정	목조 기와지붕 1층	1	19,831	격리병원 병실
상동	목조 함석지붕 1층	1	3,750	위 병원 화장실 및 욕실
상동	상동	1	20,300	위 병원 복도
상동	목조 초가지붕 1층	1	12,000	위 병원 사무실
상동	조선식 목조 초가지붕 1층	1	12,150	위 병원 병실 및 창고
상동	목조 초가지붕 1층	1	14,750	위 병원 계야(下屋) 화장실 및 욕실
상동	목조 함석지붕 1층	1	2,250	위 병원 소독실
대구부 달성정 (달성공원 안)	목조 초가지붕 1층	1	830	대신궁요배전 (大神宮遙拜殿)
상동	목조 기와지붕 1층	1	14,015	대신궁요배전 부속 사무소
대구부 혼마치(本町) (대구경찰서 구내)	목조 함석지붕 1층	1	4,000	소방기구 보관소

(현금목록)

위생 기본재산	구휼 기본재산	소방 기본재산	합계
9원 73전	12월 89전	34원 80전	57원 42전

대구 지역 조선인의 생계는 실로 단순해서 농산물 이외에 여분 축적이 없다. 지주는 벼의 발아를 보고서 보리를 베고 보리 수확을 확인한 후 쌀을 팔기 때문에 가장 착실한 경제를 행하고 있다. 빈민은 소작한 곡물로 식량을 충당해서 가을·겨울에는 쌀을 먹고 봄·여름에는 보리를 먹는다. 중간중간 무를 생식하며 한 끼를 때우는 일이 일상적이다. 주거는 무릎만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좁은 집에 만족하고 의복은 하얀 목면 옷을 두른다. 이런 상태이다 보니 일본인 경영자가 조선인만 의지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경우는 전무하다. 일본인은 서로 매매·교환해서 공존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 본토의 자본을 조선으로 가져와서 서로 경쟁하며 이를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구는 수비(守備) 본부가 되었다. 동시에 각 고급 관아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군사비와 민간에 뿌려지는 ‘지방정비(地方政費)’가 매년 증가해 거류민의 소득을 윤택하게 만들었고 나아가 농업, 양조업, 연초제조업, 과자제조업 등의 실업이 융성해져 소득이 늘었다. 조선인 사회도 일본산 일용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매년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조선인의 구매력이 늘어났다. 더불어 조선인 사회는 금융기관이 없어서 일본인 대금업이 활발하다. ‘이자제한령’ 이전에는 폭리에 가까운 고율로 대차(貸借)했다.

거류민이 대구 지방에 투자한 자금과 조선에서 증식한 수익은 부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해보니 첫째 창업비로 소비하고, 둘째 토지·가옥·대금(貸金)에 고정되며, 셋째 제반 경영 및 상업 자금 등으로 유통되고, 넷째 일본에 송금된다. 예금과 저금은 일시적인 것으로 각 은행 예금 통계가 높은 액수를 보여주지만 결코 장기에금이 아니다. 은행은 대금업, 전당포업, 상점의 금고 역할을 할 뿐이다.

대구 지방에 투자된 일본인 자본은 계량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구시가 일본인에 의해 구축되었고 시가지 주요 토지가 대부분 일본인 소유가 되었으며 일본인이 시가지 바깥의 농원을 연면상접(連綿相接)해서 경영하는 것을 보면 일본인 자본금이 거액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경영이 방대한 것을 보면 거류민의 자금 뿐만 아니라 각 은행회사 및 다른 지방의 유통 자본 또한 많다는 것이 분명하다. 각종 부동산은 매년 가격이 상승해 민단 구역의 총 자산은 현저한 이익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거류민단 존속 기간에 공사를 불문하고 재계의 발달을 지도·장려한 은인으로 거류민이 잊어서는 안 될 사람이 가와카미 쓰네오(川上常郎)이다. 그는 에히메현(愛媛縣) 사람으로 오쿠라쇼(大藏省) 서기관으로서 통감부 서기관을 겸하다가 1908년 1월에 대구재무감독국이 설치되자마자 국장으로 선발되어 왔다. 이후 그가 유치한 수준의 민단 경제계를 부축해서 발전시킨 것은 모두가 기억하는 바이다. 1910년에 관제를 개정하면서 재무기관도 개폐(改廢)되었다. 그는 평안북도 도장관으로 영전했음에도 항상 대구 재계에 주목해 거류민 중에는 멀리까지 가서 그의 의견을 듣는 사람이 적지 않다.



氏 郎 常 上 川

민단 재계는 발달하다가 민단 말기에는 쇠미하고 부진한 상황이 되었다. 그 원인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주된 원인은 일본 본토의 재계가 긴축주의로 기울고 소극적 방침을 취했기 때문으로 자금 이입이 단절되어 금융을 꺾박했다. 게다가 전체적인 경영 상황은 여전히 창업기라서 자금 수요가 점점 늘어났다. 이에 더해 곡물 가격 폭락은 조선인의 수입을 심각하게 감소시켜 구매력 저하가 상업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다. 일담배 재배자의 실패도 대구 재계의 일부

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팽창에 따른 사치와 허세의 풍습은 타성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나가는 것을 제어하는 것은 최상의 경제 기술이지만 기반 시설이 필요한 과도기의 대구는 자금을 가지고 발전의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안된다. 거류민단 말기에 관민의 유지들은 대책을 거듭 연구하면서 일본 본토 재계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제7장 교육

(조선인 교육)

대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아직 적었을 때는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한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보통학교 교육을 실시해 문명개화로 인도하고자 한 일본인이 있었다. 그는 히자쓰키 마스키치(膝付益吉)이다. 그는 일·한의 친교를 위해 양국 국민이 우선 언어를 통해 소통하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 1899년 7월에 달성학교를 창립했다. 여기에 힘을 보탠 사람은 신타니 마쓰스케(新谷松助)이다. 한인 가운데는 윤필오(尹弼五)가 가장 진력했다. 관찰사 김직현(金稷鉉)을 설득해 관사 1개동, 부지 700평을 사용할 수 있었다. 김직현 관찰사 또한 사재 100원을 기부해서 달성학교 창립을 지원했고 한인 유지들이 속속 찬조해 의연(義捐)¹³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히자쓰키 마스키치는 사재를 털어 교비에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1900년에 한국의 학부(學部)가 열리면서 이때부터 매년 20원(元)을 보조하라는 지령이 내려졌다. 이 밖에 부산의 5개 사원이 연합해서 정기 기증을 약속했고, 동아동문회(東亞同文會)는 1901년부터 매년 420원을 보조했으며, 부산영사관도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찬동하는 후원자들이 계속 생겨나 마침내 학교의 기초를 다졌다.

달성학교의 간부직은 히자쓰키 마스키치가 감독을 맡고 윤필오가 교장을 맡았으며 샤쿠오 순조(釋尾春仍)가 주관을 맡았다. 세 사람 모두 교사를 겸했고 별도로 교사 3명을 두었다. 히자쓰키 마스키치

130) 공익을 위해 금품을 기부함.

가 통감부 철도관리국에 봉직하게 되자 기쿠카와 게운(菊川溪雲)이 교사로 재직했고 그에게 교무를 위탁했다. 1909년 4월에 협성학교(協成學校)와 합치면서 기쿠카와 게운 또한 협성학교로 옮겼다. 운필오는 군수가 되고 샤쿠오 순조는 언론계에 들어갔지만 달성학교는 술선해서 한인 교육을 맡아 많은 자제를 양성했다. 현재 총독부 관리 가운데 달성학교 출신자가 많은 것은 위와 같은 인물들의 공적이다.

(민단립 소학교(民團立小學校))



大邱公立小學校

1905년 8월에 대일본거류민회는 일본인 자제 교육을 달성학교에 위탁하고자 했다. 월 40원의 교육비 지출을 결정하고 달성학교와 교섭했다. 그러나 히자쓰키 마사키치는 일·한 아동이 섞이는 것의 폐해

를 설명하며 일본인 소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논했다. 거류민회도 이에 수긍해 같은 해 12월에 임시 건물에서 수업을 개시했다. 구리타 에자부로(栗田英三郎)에게 교장 겸 교원을 부탁하고 보조 여교사 1명을 두었다. 당시 각 학년을 합쳐 학생수는 38명에 불과했다.

구리타 에자부로는 효고현 사람으로 정식 교원 자격을 가지고 대구에 와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거류민회는 억지로 교편을 잡게 했지만 그가 일본으로 귀국하자 마에다 아쓰시(前田篤志)를 초빙했다. 1906년 5월에 거류민회는 일본인이 증가하고 일본인 아동도 늘어나자 교사 건축의 필요성을 인정해 새로운 건물을 설계하게 되었다. 마침 이와세 시즈카가 있었다. 거류민회가 이와세 시즈카

의 진력을 요청하자 그는 “대구는 장래에 큰 발전을 이룰 땅이다. 거류민 숫자는 매년 배로 늘어날 것이다. 추측하건대 학교도 매년 증축이 필요할텐데 그것은 너무 번거롭다. 애초에 광활한 부지를 준비해서 여유 있게 건축하는 것이 좋다. 경비는 내가 1/10을 기부 하겠다. 만약 넓은 부지를 장래에 못쓰게 되면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인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모두 왕성한 기세로 분발하여 일을 추진했다. 다도코로 유키에(田所幸衛) 민장과 평의원 등은 다른 위원들과 함께 기부금 모집에 착수했다. 그런데 『대구일일신문(大邱日々新聞)』은 학교 건축과 관련해 당국자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것처럼 논설을 써서 기부금 모집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거류민회 당국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해당 관청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진정위원을 부산이사청에 출두시켰지만 우유부단해서 요령부득이 되자 이와세 시즈카는 일을 내려놓았다. 다도코로 유키에 민장 이하 평의원이 총사직하면서 자치기관이 멈추는 동시에 학교건축운동도 정지되었다. 이는 교육 설비상의 큰 좌절이었다. 『대구일일신문』 주필은 사카모토 준(坂本淳)이었다. 그는 이듬해 1907년 2월에 ‘퇴한처분(退韓處分)’을 받으면서 민단에서 퇴거했다.

1906년 9월 15일에 대구이사청이 설치되자 오카모토 리헤 부이사관은 개청 전부터 대구에 와서 준비했는데 학교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 민장과 평의원, 이와세 시즈카, 가게야마 히데키 등을 소집하고 협의회를 열어 신축계획을 계속하도록 결의했다. 이에 이와세 시즈카는 다시 분기해서 자발적으로 800원을 의연하고 일반 기부금 모집에 착수했다. 각 위원의 진력으로 7,000여원을 거금해 공사 진척을 밤낮으로 독촉해 1907년 3월에 완공했다. 총 소요경비는 9,300여원이었다. 1907년 12월에 문부성 해외 지정학교가 되었고 같은 해 12월 9일에 천황·황후 폐하의 진영(眞影)을 배수

(拜受)했다. 거류민 아동이 해마다 증가해 교실이 협소해지자 1908년에 증축했으며 1913년에 재증축했다. 이것이 현재 대구거류민단 심상고등소학교이다.

마에다 아쓰시 교장에 이어서 핫토리 유키(服部友規)가 교장이 되었다. 그가 군으로 전근하자 치바 기사쿠(千葉喜作)가 후임으로 와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학생수 증가는 현저해서 창립 당초부터 연도별 통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05년 10월 개교	38명
1905년 12월 말일	76명 (38명 증가)
1906년 12월 말일	113명 (37명 증가)
1907년 12월 말일	175명 (62명 증가)
1908년 12월 말일	292명 (117명 증가)
1909년 12월 말일	484명 (191명 증가)
1910년 12월 말일	535명 (52명 증가)
1911년 12월 말일	706명 (171명 증가)
1912년 12월 말일	780명 (74명 증가)
1913년 12월 말일	900명 (120명 증가)
1914년 3월 말일	907명 (7명 증가)

민단립 소학교가 교육기금으로 하사·기증받은 것은 모두 특별기본금으로 축적했다. 그 주요 내역은 천황 폐하가 황태자로 계실 때 조선에 건너와 특별히 하사한 교육비 200원, 전 한국황제가 500원,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300원, 쓰네토시 다다미치(恒吉忠道) 제12여단장이 200원, 소네 아라스케(增禰荒助) 통감이 120원, 와타나베(渡邊) 파견대 사령관이 50원, 오쿠보 하루노(大久保春野) 조선주둔군

사령관이 30원을 각각 기부했다.

민단에는 심상고등소학교만 있다. 따라서 졸업생이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을 방법이 없다. 이에 거류민 자체 졸업생은 경성중학교, 부산중학교 또는 고등여학교, 기타 일본 본토의 각급 학교를 골라 유학하고 있다. 교육가 및 유지들 가운데는 중학교와 고등여학교 또는 보수전문학교(補修專門學校)를 대구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유치원)

대구유치원은 1907년 4월에 창립해서 대구부인회의 계획으로 시작해 이후 거류민단으로 계승되었다. 당초에는 소학교 빈 교실을 임시로 사용했는데 원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장소가 협소해졌다. 건물을 빌려 보육했지만 경비가 나올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폐쇄했는데 히사미즈 사부로(久水三郎) 이사관이 부임하면서 히사미즈 부인이 재흥에 힘써 1908년 12월에 연예회를 열고 그 수익금을 유지비로 제공했다. 히사미즈 집안은 부인과 따님이 열심히 유치원 재흥에 힘써 크게 찬동을 얻었고 이와세 시즈카 또한 힘을 발휘했다. 가와카미 쓰네오 재무감독국장이 돕고 관민 유지들이 4,000원을 모금했다. 이에 소학교 남쪽 옆 땅에 신축공사를 착수해 1910년 5월에 완공하고 같은 달 9일에 개원식을 거행한 것이 현재 대구유치원이다.

1914년 3월에 거류민단이 폐지되면서 대구학교조합이 신설되었다. 총독부령에 따르면 학교조합 관리자는 대구 부윤이고 조합회 의원을 선출해서 세계(歲計)에 대한 협찬(協贊)¹³¹⁾을 한다. 이렇게 해서 종래에 민단사업이었던 교육 시설은 독립해서 완전한 기관이 되었다.

131) 구일본 헌법에서 의회가 법률안 또는 예산안을 성립시키기 위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

제8장 위생

대구거류민단 설치와 함께 위생구장(衛生區長)을 두어 관청이 일반인들에게 내리는 하달 및 각 구역 위생 사무를 시내의 일본인들이 관장하게 했다. 그리고 거류민단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개인 분뇨 및 쓰레기를 수거할 기관이 없음을 고려해 해당 계획을 세우려던 때에 거류민 마쓰다 만로쿠(松田萬六)가 단독으로 해당 사업을 시작하자 그에게 의뢰했는데 수거 의뢰가 점차 많아져 그 숫자가 200여호에 이르렀다. 청구자는 업체 및 가족수에 따라 한 달에 20전 이상 1원 이하의 요금을 받고 1911년 8월까지 해당 사업을 지속했는데, 인구 증가에 따라 도저히 일개 개인 청구업자가 대구 시내의 위생 상태를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1911년 8월에 대구경찰서장 안도 쇼지로(安藤正次郎)는 다케자키 로쿠지로 부윤 및 기쿠치 겐조 민장과 발기해서 대구 시내 일본인과 조선인 전체의 위생 상태 개선을 꾀하고자 각 관청 및 민간 수뇌부를 회원으로 하는 '대구위생회'를 조직했다. 이진호 도장관을 회장으로 추천하고 평의원 36명 및 실행위원을 각 정·촌·동마다 두어 평의회가 평결한 것을 실행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비는 일본인 월 5전, 조선인 월 2전을 호구별로 징수해 충당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인 전체의 오물 수거를 통일하기 위해 유지들이 발기해 '대구청결조합'을 조직하고 기존에 영업을 하던 마쓰다 만로쿠의 사업을 매수해 대구위생회의 위탁을 받아 분뇨와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었다. 개선 실적을 올리려는 계획이었지만 그 성과 여부는 실행위원들의 움직임에 달려 있었고 아쉽게도 효과가 적어 유명무실해졌다. 일본인 거류민 2,000여호 가운데 겨우 200여호만 의뢰했다. 나머지는 각자가 처치하는 상황이라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거류민은 날로 증가하고 시가지는 점점 발전함에 따라 일대 위생 개선을 해야 하는 추세였다.

1913년 6월에 대구경찰서장 고무타 주타로(小牟田十太郎) 경시는 이러한 상황에 주목해 다케자키 로쿠지로 부윤과 협상해서 대구거류민 중 주요 관민에게 자문해 기존 위생회를 개량해 실행력 있는 조합으로 개선하고자 유지들과 거둬 회합했다. 일본인과 조선인을 아울러 대구위생조합을 조직하고 조합장은 나카에 고로헤(中江五郎平), 부조합장은 이일우(李一雨), 이사는 이토 기치자부로(伊藤吉三郎), 나가이 고타로(永井幸太郎), 사토 슈조(佐藤周藏), 고타마 이타로(兒玉伊太郎), 최만달(崔萬達), 서병조(徐丙朝), 정해봉(鄭海鵬), 이병학(李柄學)을 선임했다. 사무소를 대구경찰서 내에 두고 오물 처리와 도로 청소, 하수구 준설, 시가지 살수 등의 작업을 했다. 연간 경비는 16,000여원을 계상해서 실행에 착수했는데 소기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해 대구 시내의 위생 상태를 혁신했다.

대구의 도살장(屠獸場)은 종래에는 개인이 경영했고 설비가 매우 불완전했다. 이를 개선해 영업자의 권리를 매수하기 위해 9,000원의 채권을 모집해서 차례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시의 달서면 원대동에 용지를 매입해 설비가 완전한 도살장을 신설했다.

위생 시설을 감독할 때 기존에 각자 임의로 불완전하게 하던 인습은 위생 감독의 장려를 어렵게 했는데, 대구경찰서는 많은 힘을 원조해 유감없이 시행되도록 했다. 그리고 1914년 4월 1일에 부제가 실시되면서 위생사업은 대구부로 옮겨졌다. 대구위생조합은 도살장 경영을 포함한 위생사업을 대구부에 승계했다. 대구위생조합은 오래 존재하지 않았지만 창립 이후의 공적은 사라질 수 없다. 이에 대한 경찰과 관헌의 노력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대구위생조합의 해산에 따라 관계 공로자에게 응당의 상여를 했

다. 또한 대구부에 아래 재산을 인계하고, 대구부는 이에 대해 14,000원을 보상으로 교부했다.

(재산 목록)

일금 6,900원 도살장 일식

일금 1,788원 67전 4리 위생조합 일식

토지 1,929평 41

(건적가격 금 570원)

건물 10개 동. 기타 기물, 차량 등 전부

대구에는 민단립 격리병사(避病舎)가 세워졌고, 이와 별도로 철도 국에 속한 격리병사가 있다. 민단 격리병사는 협소하고 설비가 불완전해서 거류민 증가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류민회는 2,000원의 신설 비용을 결의하고 남산동에 격리병사를 신축했고 이후 증축해 각종 전염병 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경상북도 자체의 원도 격리병사를 증축했는데, 두 기관이 협력하여 조선인과 일본인 환자를 지장 없이 구호할 수 있게 되었다.

제9장 종교

구미 열강은 해외에 자국의 세력을 부식(扶植)하거나 신식민지를 열고자 할 때 반드시 선교사를 먼저 파견하고 상당한 보수를 주어 포교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일본제국은 신교(信教)의 자유가 넓어서 간섭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힘을 빌려서 정치적 발전을 꾀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일본의 각 종교 세력은 해외에서 영향력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대구거류민단 설치 전부터 민단에 포교소를 연 것은 본파 혼간지(本願寺)이다. 1904년 4월에 후카와 히로데츠(府川廣哲)를 특파해서 야마토초(大和町)에 별원을 열고 신도 세력에 의지해 사원을 건립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정토종이다. 1905년 혼마치에 집을 빌려 개교하고 슈도 시즈야(首藤靜也)가 와서 살았다. 포교를 하면서 조선인 자제를 모아 야학을 열고 일본어를 가르쳤는데 단도(檀徒) 유지의 회사로 지금의 어행정(御幸町)에 사당을 지었다. 어행정은 한국 황제의 남부지역 순행 뒤에 붙여진 이름으로 당시 정토종 분원의 소재지는 곡물과 채소를 경작하는 전답 한가운데에 있었다. 슈도 시즈야를 대신해서 사토 겐쇼(佐藤玄性)가 건너와서 교원을 특별히 초빙해 조선인 교육 성과가 해마다 올라갔다. 이 밖에 진언종, 일연종, 조동종이 연이어 포교소를 설치해서 현재는 각 종파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조선의 불교파는 팔공산의 거찰인 동화사 출장소가 있다. 1911년 남산동에 설치했다. 이어서 파계사도 출장소를 설치했다.

일본기독교회는 1910년부터 상임 목사를 파견하고 이어서 교회를 신축했다. 그러나 신도수는 매우 적어 여전히 개척 시기와 같다.

프랑스 천주교는 옛 남문 밖 계산동에 있었다. 외연(巍然)¹³²⁾한

고층 건축은 이론의 여지 없이 대구의 장관이다. 1910년에 개교했고 선교사 폴¹³³⁾이 주재했다. 신자는 2,000여 명이 있다고 한다. 로마가톨릭파이다.

미국 기독교파는 장로교회가 있다. 이 교회의 창설은 가장 빨라서 1899년에 개교했다. 병원을 갖추고 중학교 수준의 학교를 세워 조선인을 교육해 왔다. 4,000여명의 신도가 있다.

조선에 있는 기독교 선교사 가운데는 일찍이 조선인의 배일사상을 고취한 행적이 없지 않다. 동시에 일본제국의 시설을 오해해서 상상으로 쓴 보고서를 본국에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대구는 시종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선인의 풍습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대구는 비교적 토착인이 적고 투안(偷安)¹³⁴⁾하는 무리가 많아서 타성에 젖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 신자가 품행이 방정하고 조선인들의 일반적 습관인 창기에 취하거나 도박에 빠지는 일이 적은 것은 전도(傳道)가 큰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32) 높은 솟은 모양, 뻐어나게 위대한 모양.

133) 대구 계산성당의 폴 로베르 아실(Paul Robert Achille, 1853~1922)로 추정됨.

134) 안락을 취하고 장래를 생각하지 않음.

제10장 시구개정(市區改正)

조선의 시가지는 지극히 협소하고 불규칙하다. 왕도(王都)인 경성조차 그러하므로 다른 지역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시가지의 설계는 도회부터 군·읍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채 방식으로 네 개의 벽을 두르고 누문을 세워서 출입한다. 민가는 집집이 울타리를 치는데 휘거나 둥근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온돌에 굴뚝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마른 풀과 솔잎을 태우는 연기가 도로로 분출해 행인을 울게 만든다. 대구 또한 예외가 아니다. 성벽을 없애고 십자 도로를 만들었지만 다른 곳은 여전히 별집 같다. 이에 반해 민단이 만든 시가지는 정연하고 직선이지만 조선인 시가지와 부딪쳐 막히는 상황이다. 특히 성내에 건축한 일본인은 좌충우돌로 불편함이 실로 심하다. 어찌 쉽게 시가지 건축을 바랄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시구개정은 민단의 숙원사업이 되었다.

1911년 11월에 민단은 시구개정조사회를 조직해 우선 예정선을 만들었다. 경상북도청은 이것을 다소 수정해서 총독부에 인가를 요청했다. 원안은 일등 도로 폭을 8간(間)으로 하고, 그 이하는 5간 내지 3간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이를 수정해 각각 12간, 7간, 5간으로 확장해서 인가했다.

시구개정조사회의 예정선 확정은 조선인과 일본인 지주 및 토지투자자, 신경영자에게 귀향(歸向)¹³⁵⁾할 곳을 알려주었다. 시구개정 공사는 그 전도가 여전히 요원하지만 조사회가 유효했음은 특별히 기록할 일이다. 시의 구획이 조만간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예정선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땅값이 상상에 따라 등락했고

135) 어떤 방향으로 마음이 향함. 또 그 향하는 방향.

이로 인해 매매와 담보를 정할 때 불안할 뿐만 아니라 전도를 예측할 수 없어서 건축공사를 주저하는 사람이 생겨났으며 나아가 투기적 매매가 심각해져 경제계를 어지럽혔다. 혹은 지주의 연락여당(聯絡與黨)을 낳아 지가 폭등을 피하고자 사설도로를 건설하는 이들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시구개정 예정선이 확정되면서 위와 같은 불안과 폐해는 제거되었다.

시구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개정에 필요한 경비는 거액이다. 더욱이 국비 및 지방비로 지변하는 1-2-3등급 도로 이외의 도로를 개축하는 비용이 가장 많다. 이 비용은 민단



通 町 本

이 부담하거나 지방비 보조 및 기부에 의지한다고 방침이 정해졌다. 하지만 민단의 존치 시기가 짧았기 때문에 숙제로 남긴 채 민단은 종언을 고했다. 총독부가 지정한 원표와 도로는 다음과 같다.

● 대구 원표 및 도로 등급

- 원표 위치 : 야마토초(大和町)과 혼마치(本町)의 교차점
(경찰서 앞)
- 1등 도로 : 원표에서 야마토초 및 니시키초(錦町)를 경유해 경성으로 향하는 도로
원표에서 교마치(京町), 동성정 및 봉산정을 거쳐 부산으로 향하는 도로
원표에서 혼마치, 시장북통 및 달성리를 거쳐 천안으로 향하는 도로

원표에서 가미마치(上町)을 거쳐 대구정차장에 이르는 도로



通 町 城 東



通 町 元

- 2등 도로 : 대구정차장 앞에서 사이와이초(幸町)를 거쳐 경주로 향하는 도로
- 서문시장 모퉁이에서 천주교회당 연못 동쪽을 거쳐 통영으로 향하는 도로
- 대구정차장 앞과 가미마치의 교차점에서 동문정을 거쳐 부청에 이르는 도로

제11장 교통운수 및 상하수도

(도로)



대구는 경상북도 1부 40개 군의 수도로서 교통의 집중지이다. 그러나 도로가 불완전한 것은 조선의 다른 도시들과 다르지 않다. 이에 민단은 자발적으로 시가지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개수했다.

그리고 성벽 터 도로와 옛 성내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간선, 이른바 십자도로를 완성하면서 조금이나마 시가지 구획의 큰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군(郡) 지역과 연결된 교통운수는 옛날 그대로이다. 이로 인해 여행에 많은 시일이 걸리고 운반에 많은 비용이 필요해 도농 간에 교환되어야 할 재화와 물품을 움직일 수 없다. 민단은 일찍이 도로 공사를 생각했지만 민단 재원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민단은 오로지 관계 관청에 하소연해서 도로 공사의 시급함을 설득하는 데에 힘썼다. 통감부도 주요 도로 공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1907년에 대구-경주 간 도로를 개수하고 이어서 영일만까지 연장했다. 이로써 대구-포항 간은 평탄한 길이 되어 마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에 부산에서 동해안 해운에 의지했던 포항과 경주의 수송품은 대구에서 육로로 공급하게 되었고, 영일만 방향의 해산물은 대구로 모인 후 각 지방으로 공급되었다. 이후 교통이 점점 빈번해져서 대구-포항 간 20여리(80여km)¹³⁶⁾를 자동차를 이용해 하루 안에 왕복하는 교통편이 생겼다.

136) 일본의 경우 1리(里)=4km.



場車停邱大

안동은 대구에서 25리(약100km) 떨어져 있고 대구가 41개 부·군의 중심인 것처럼 부근 10여개 군의 도읍이다. 그런데 25리에 달하는 악로(惡路) 때문에 안동의 물산을 대구에 내다 팔 수 없었다. 도로가 험악해서 막대한 운임

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909년경에는 대두값이 폭락해서 대구 거래 시장에서 1석(石)에 4원 이하로 떨어졌다. 그런데 대구-안동 간 운임은 3원 이상이 들었다. 설령 안동 혹은 안동 방향의 벽지에서 대구로 대두를 반출해 대구 거래시장에서 판매한다고 해도 판매액의 대부분은 운임을 지불하는 데에 쓰였을 것이다. 이런 상태로는 당연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지방 농업이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단은 상업회의소를 중심으로 대구-안동 간 도로 공사를 계획했다. 시찰단을 조직해 답사를 진행하자 연도의 각 군은 이를 환영하면서 협력 일치해 당국에 도로 공사를 청원했다. 당국도 이를 받아들여 대구-안동 도로 공사에 착수했다. 이 밖에 현풍 가도가 있다. 하나는 대구에서 현풍을 거쳐 마산에 이르는 길이고, 또 하나는 고령에서 진주에 이르는 길이다. 이 또한 일부 개수를 마쳤다.



路道東安

총독부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도로 개수가 산업 개발의 제일 첩경임을 인정하고 국고 보조와 함께 지방비도 지면해 각 군의 도로는 크건 작건 수리에 착수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특히

교량은 불완전하다. 큰비가 내릴 때마다 추락·유실되어 도시와 시골 간 교통이 두절되는 일이 빈번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철도)

경부철도 대구역의 설치는 1904년 8월 1일이고, 영업을 개시한 것은 1905년 1월 1일이다. 초량-남대문 전 구간 개통은 1904년 12월이었고, 1906년 7월에 철도국유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해 통감부 철도관리국에 인계했다.

대구역의 면적은 광대하다. 총 68,997평이다. 이에 민단은 시가지에 면한 땅을 일부 빌려서 희망하는 거류민에게 임대했는데 정차장이 확장되면서 환수했다. 니시키초, 사이와이초 주변 일대 땅은 모두 철도국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1908년 4월부터 역내 가관을 허용했고 같은 해 12월부터 수하물 운반부를 두었다. 1914년 1월에 3등 대합실에 출점영업자를 허가했고 인력거를 두어 여객 송영의 편리함을 꾀했다.

화물의 집산이 점차 증가해서 1907년 6월에 일본우선회사(日本郵船會社), 같은 해 8월에 오사카상선회사(大阪商船會社) 등과 동해안 발착 화물 연대 운반을 개시하고 동시에 전신 기술주임을 두었다.

1910년 ‘일한병합’의 결과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운영되었다. 이후 인천-부산은 오사카상선회사의 남만선(南滿線)과 여객 수하물 연대 운수를 개시했고 압록강 가교가 낙성되자 남만주철도회사(南滿鐵道會社)와 여객·화물 연대 운수를 개시했다.

1913년 12월 10일에 역 개축공사 준공으로 승강장 등이 눈에 띄게 고쳐져 면목을 일신했다.

(수도)

대구는 원래 우물물이 풍부해서 집집이 우물이 있는데 인구가 증가하면서 한여름에 혼탁과 고갈이 자주 발생했다. 대구의 지하수는 대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 이는 지형 때문일 것이다. 대구에서 양질의 맑은 물을 얻으려고 착정(鑿井)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수천 척 밑의 암반층을 뚫는 것은 일반 개인이 하기 어렵다. 현재의 우물은 순연한 지하수가 아니라 산의 연못이나 하천에서 스며든 것이다. 모든 우물은 물이 바닥에서 분출하지 않고 측면에서 흘러나온다. 수량이 부족한 것은 당연하고 비가 내리거나 눈이 녹을 때는 진흙이 섞여 물이 항상 탁해진다. 특히 하수구가 없는 곳은 사용한 오염수가 또다시 침윤해서 우물물에 섞이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조선인의 우물 사용법은 매우 불결해서 우물가에서 변기를 닦는 것이 보통이다. 이로 인해 오래된 우물에는 사방에서 침입하는 불결한 분자가 많아 그 분석 결과는 놀랄만한 함유물을 보여준다. 민단이 수도 시설을 서두른 것은 결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11년 1월에 민단은 수도 관련 의결을 한 후 실행을 서둘렀다. 기쿠치 겐조 민장은 부임하자마자 이에 힘써 총액 485,000원의 예산을 책정해 3년 계속 사업으로 삼았다. 예산의 절반은 민단채로 마련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 보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총독부에 청원하는 동시에 차관 교섭에도 힘썼다. 이 숙제는 민단 폐지와 함께 대구부로 이관되어 총금액과 기간을 다소 수정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하수)

대구는 원래 하수구를 설치한 적이 없어서 상하수도와 오수 모두 땅속에 침윤되기 때문에 각종 병균을 양성해 위생상 위험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큰비가 내리면 도로로 흘러넘쳐서 마루 밑까지 침수되어 거류민들이 가장 힘들어했다. 다행히 성벽 터를 큰 도로로 만들고 십자 도로로 만들면서 하수도 공사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니시키 초처럼 역 앞에는 조금 그럴듯한 하수구가 생겼지만 시 전체를 놓고 보면 아직 많은 시설이 부족하다. 하수도 공사는 시구개정과 함께 필수 설비이므로 기대가 된다.

제12장 금융기관

신식민지 실업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금융기관인데 가장 갖추어지지 않은 것도 금융기관이다. 일본인 경영자들은 우선 집을 마련하고 생활 집기를 갖추어 살림에 필요한 설비를 마련한 후에 사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본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구비를 바라는 마음은 마치 큰 가뭄에 운예(雲霓)¹³⁷⁾를 바라는 것과 같다. 대구에서 은행의 선구자는 현 조선은행의 전신인 제일은행 출장소이고, 이어서 농공은행이 설치되었으며, 나아가 전남상업은행(鮮南商業銀行)과 대구은행의 설립을 보기에 이르렀다. 여전히 개인의 익명조합 또는 부호의 대금(貸金)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단의 발전 정도에 비해 자본 공급이 충분하지는 않다. 농가와 상인 모두 금융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제일은행 대구지점)

1905년 1월에 제일은행은 부산지점 출장소를 대구에 설치하고 영업을 개시했다. 같은 달에 곧바로 총지점 직할 출장소가 되었다. 당시에는 송금 방법이 없어서 대구 사람은 부산까지 출장을 가야만 했는데 출장소가 생기면서 환업무를 취급했기 때문에 거류민들은 비로소 거래상 편의를 얻었다. 주임은 야마모토 간자부로(山本勘三郎)로 같은 해 10월까지 근무했다. 이어서 이즈미 스에지(泉未治)가 대신하다가 출장소가 지점이 되면서 그는 지점장이 되었다. 1908년 1월에 이즈미 스에지 지점장이 부산지점으로 옮기고 다케가와 세지(武川盛次)가 부산지점에서 온 후 거래가 크게 늘었다.

137) 구름과 무지개.

제일은행은 한국 정부와 체결한 계약에 기초해 1905년부터 한국의 국고금 취급사무 및 화폐 정리 사무 위탁을 받았고, 한국에서 발행하는 은행권은 법화(法貨)로 승인을 받아 중앙은행 업무를 보는 동시에 경성에 총지점을 두고 각 지점과 출장소를 통할하게 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가 점차 발전하면서 특히 은행권 발행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중앙은행 임무를 오랫동안 사립은행 지점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농공은행, 수형조합, 지방금융조합 등은 모두 정부 시설로 하고 하나의 중앙은행을 특설해 이를 통일할 필요성이 생겼다. 일본제국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1909년 10월에 한국 정부와 한국중앙은행에 관한 각서를 작성해 한국 정부의 중앙금융기관인 한국은행 설립을 승인했다.

(한국은행 대구지점)

한국 정부는 일본제국 정부의 승인을 얻는 동시에 한국은행 조례를 공포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본점을 경성에 두고 자본금을 1천만원으로 하며 그 3/10은 정부가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한인과 일본인에 한해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은행원은 모두 이전 제일은행원을 채용하면서 다케가와 세지(武川盛次)는 한국은행 대구지점장으로 재임한 후 1910년 6월에 본점으로 가고 이케다 가키치(池田嘉吉)가 대신 왔다.

(조선은행 대구지점)

한국이 병합되자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 소유 주식은 당연히 일본제국 소유가 되어 총독부로 옮겨졌다. 기존에 제일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은 후속 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조선은행으로 명칭



店支邱大行銀鮮朝

이후 나카니시 기쿠오(中西喜久男)가 와서 현재 지점장이다. 다케가와 세지, 이케다 가키치, 이이즈미 겐타 지점장 다음에 시오카와 고고(鹽川幸吾)가 있었다. 그는 거래인을 직접 응대하여 민단 사회에 널리 알려졌는데 1913년에 봉천(奉天) 지점으로 옮겨갔다.

조선은행은 중앙은행인 동시에 상업은행이다. 일찍이 상인과 전적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농업 자금 등은 일체 대출하지 않는 방침을 취했다. 이에 대구 지역에서 농업 경영자가 많은 곳은 격화소양(隔靴搔癢)¹³⁹⁾의 상황이었지만 견실하고 유일한 상업금융기관이라는 사실은 널리 존중받았다.

(경상농공은행)

한국 정부는 고문제도 시대에 재무고문관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 지방에 농공은행 설치를 계획하고 1906년에 이를 실행했다. 조직 방법은 모두 일본의 농공은행에 준하는 형태로 했고, 주주는 한인으로 한정했다. 처음에 대구농공은행(大邱農工銀行)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경남·진주를 병합하면서 현재 명칭으로 바꾸었다. 초대 지배인은 쓰치야 히코타로(土屋彦太

138) 가사와 바리때. 스승이나 선배로부터 전해 받은 것.

139) 신을 신고 밭을 긁는 것과 같이 성에 차지 아니함.

郎)였고, 이시이 미츠오(石井光雄)가 뒤를 이었으며, 1909년 3월에 야스카와 와사부로(安川和三郎)가 와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行銀工農尙慶

농공은행은 영업 규정상 농공업자에게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하고, 공공단체에게는 신임대부(信任貸付)를 하며 연부상환(年賦償還)¹⁴⁰⁾ 방법으로 성붕대부(成崩貸付)¹⁴¹⁾를 하고 있다. 이처럼 상업자금 유통은 본 은행의 방침이 아니다. 초창기에는 대구에서 농공과 상업의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상업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대출도 적지 않았지만 이후 각종 금융기관이 구비되면서 오로지 농공 방면에 한정하는 방침을 취했다. 그러나 수요는 배로 증가해 총독부는 동양척식회사로 하여금 원자(原資)¹⁴²⁾를 공급하게 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아직 그 실행을 볼 수 없어서 유감이다.

(동양척식회사)

대구에는 동양척식회사 출장소가 있어서 토지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동시에 본사 금융부 사무도 일정 범위 내에서 취급하게 되었다. 향후 본사가 대규모 자금 유입 계획을 실행하면 대구 지방 농공업자도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140) 부동산 감정평가에서는 유한기간에서 상각된 자산에 대해 기한 말기에 발생하는 일정 금액(연이율에 따른 운용이자와 상각액의 합계액)을 정할 때 이용한다.

141) 빌린 돈을 한 번에 갚지 않고 조금씩 갚는 것.

142) 투자나 융자의 기초가 되는 자금.

(선남상업은행)

부산의 부호 이토 진자부로(伊藤甚三郎)가 중심이 되어 1911년에 창립해 대구 모토마치에 본점을 두었다. 자본금은 30만원이고 이토 도시오(伊藤敏生)가 상무 취체역(取締役)을 맡았고 지배인은 다카 구마오(高熊男)이다.

(대구은행)

주식회사 조직으로 조선인 주주를 중심으로 하는 유수의 은행으로 꼽힌다. 주로 조선인 대상 거래를 영업 방침으로 한다. 자본금은 50만원이고 전무취체역은 대구의 부호 정재학(鄭在學)이다.

이 밖에 대구지방금융조합이 있다. 전적으로 소농을 위한 금융기관이지만 자본금이 적어서 함께 거론하기에 부족하다. 대금업자는 매우 많아서 풀려있는 돈 액수도 수십만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사적인 경영에 속하는 것이라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13장 권업 시설

농공업 장려는 통감부 때부터 이어지는 방침으로 총독부 시대에는 특히 권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대구는 지역 농업의 중심이다. 대지주, 정주자, 제반 시설은 대구에서 형성되어 놀라운 속도로 진보·발달하고 있다. 거류민단은 특별한 권업 자원이 없어서 구체적 시설을 만들 수는 없지만 개량과 진보를 성원(聲援)한 경우는 결코 적지 않다. 민단이 존재했던 시기에 관부(官府) 시설에 관한 해당 지역 권업 성적을 다음과 같이 약술한다.

일반 농사 개량 장려를 위해서 권업모범장 대구지장(大邱支場)을 두었고 도 종묘장을 설치했으며 지방청에는 기술원을 배치해 실험과 조사, 기술 지도를 맡겼다. 지역마다 모범전(模範田)과 채종전(採種田)을 마련해 재배의 모범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량종묘를 육성해 이를 배부했다. 또한 품평회와 단기 강습회 및 전습회를 개최하고 농산물 공동판매와 비료·농기구 공동구입을 독려했으며 건실한 농가를 표창하는 등 유도와 계발에 힘썼다. 1912년에 총독부는 중요 농업인 쌀농사, 면작, 잠업 및 축우에 관한 훈령을 발표해 개량을 장려하는 방침을 명시하고 철저함에 힘쓰는 동시에 쌀, 면, 누에의 수이출세(輸移出稅)를 철폐했다.

쌀농사는 조선의 농업생산에서 수위를 점하고 생산량도 다량이어서 전국의 수요를 충당한다. 또한 그 잉여분을 일본 본토 및 외국에 수이출한다. 그러나 수확량을 일본 본토와 비교하면 큰 격차가 있다. 일본 본토의 특수 개량 수전(水田)은 1단보(段步)¹⁴³⁾에서 현미 4석(石) 5두(斗) 내지 5석¹⁴⁴⁾을 생산하고, 보통 상전(上田)에서

143) 약 300평. 1단보(段步)는 1반보(反步)와 같이 쓴다.

144) 1석(石)은 10두(斗). 1두(斗)는 무게로 15kg에 해당. 따라서 1석은 150kg이다.

도 평균 약 3석 5두를 산출한다. 이에 반해 조선의 논은 대구 지역에서 최상급 수전이라도 겨우 2석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그 원인은 관개 및 배수 설비 부족과 비료를 주지 않는 것 때문이다. 그리고 종자를 선별하지 않고 못자리를 개량하지 않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이에 우선 종자 개량 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 대구 지방에 적합한 벼 종류는 다카치호(高千穂)와 고쿠료미야코(穀良都)임을 파악했고, 대구 이북 지역은 하야신리키(早神力), 시로이시(白石), 다마니시키(多摩錦)가 적당하다. 발벼(陸稻)는 일반적으로 ‘오이란(オイラン)’종 성적이 우량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해당 관청은 해당 종자 무상배부 또는 교환을 진행했으며 농가 전체에 그 효과가 현저해 종자 개량은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었다. 개량종과 재래종의 수확량을 비교하니 개량종은 8할 내지 10할의 수확량 증가를 보였고 수익이 거의 배로 증가해서 지주와 소작인 모두 나서서 개량종을 재배하기에 이르러 신속히 발달했다.

비료에 관한 조선 농가의 지식은 실로 유치하다. 예부터 뽕짚을 기와나 너와 대용으로 지붕에 사용하기 때문에 비료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땀감이 부족해 그루터기까지 모두 캐내어 연료로 공급한다. 이를 대신해 퇴비, 쇠두엄, 분뇨를 비료로 공급하는데 거름 제조법과 거름주기 방법이 모두 불완전해서 효과가 매우 적다. 농가 인구에 비해 경작 면적이 너무 넓어 도저히 거름을 충분히 줄 수 없다. 집 부근의 경우 일부를 제외한 다른 곳은 거의 비료를 주지 않은 상태이다.

대구 지역의 수전은 대개 이모작이다. 그리고 퇴비를 만들어 보리 경작 때 거름을 주는 것에 그친다. 이렇게 한 해에 두 번 수확하므로 지력(地力) 감소로 당연히 수확이 줄어든다. 따라서 당국자는 빈번히 거름주기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먼저 녹비 재배를 가르

치고 퇴비와 쇠두엄의 개량을 촉구했다. 또한 판매 비료에 관해서는 농업단체와 지방 금융조합을 이용하고 대지주를 권유해 콩깻묵과 들깻묵 사용 방법 등을 가르쳤다.

일본인 농업 경영자가 증가해서 실적을 보이자 조선인 농민도 이에 크게 감화되고 최근에 지주들도 점차 각성된 것은 농사 방면에서 반가운 현상이다. 원래 농사 개량은 지주와 소작인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많은 조선인은 타조(打租)¹⁴⁵⁾를 관행으로 해서 수확에 즈음해 절반을 나누기 때문에 소작인의 수확 증가는 지주의 수확 증가가 된다. 일본인 지주는 조선인을 소작인으로 삼을 때 거름주기를 권하지만 대다수 소작인은 가난해서 여유가 없고 선조 전래의 인습으로 쉽사리 비료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 갑자기 이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미리 면적을 나누어서 소작인에게 한쪽을 선택하게 하고, 다른 한쪽을 지주의 경작지로 정해서 여기에 적절히 비료를 주었다. 벼농사와 보리농사 모두 이러한 방법을 취했는데 지주 부분 땅에서 아주 특별한 옥토처럼 풍작을 이루자 소작인들도 비료 소 거름주기의 큰 효과를 알게 되었다. 이후로는 지주에게 요청해서 비료를 빌리고 수확물로 비용을 상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점차 늘어나 조선인 지주도 이를 따르게 되었다.

일본인 지주의 증가에 따라 소작 방법은 점차 개량되었다. 그러나 낡은 습관은 쉽게 혁신하기 어렵다.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것을 기록하자면 대구 지역에서 논은 타조, 집호(執穗), 도조(賭租) 세 종류로 징수한다. 타조는 수확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하고 벼짚은 소작인이 갖지만 벼짚과 보리짚을 절반으로 하는 곳이 있다. 조세는 소작인 부담이다. 집호는 타조로 하기 어려운 먼 곳의 토지에

145) 소작료 액수를 정하지 않고 분배율만 정했다가 생산물을 놓고 분배율에 따라 나누는 소작 관행.

서 수확 전에 수확량을 예상해서 절반 또는 30/100 내지 40/100을 징수하고 조세는 소작인 부담으로 한다. 도조는 국유지 또는 향교 토지에서 행한다. 전체 수확의 40/100을 징수하고 조세는 마찬가지로 소작인이 부담한다. 밭은 모두 도조로 하고 전체 수확량의 50/100을 징수하는데, 열 두락(斗落)¹⁴⁶마다 옛날 되로 보리 40두(斗), 대두 12두를 평균 수확으로 해서 보통 보리 20두를 징수한다. 20두는 1석(石)이다. 조세는 모두 소작인 부담이다.

보리는 관개 설비가 있는 논외 이작(裏作)으로 경작한다. 6월 전에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침수지에서 재배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당국은 미개간지 이용을 장려한다. 권업모범장 및 도종묘장(道種苗場)은 선종(選種) 시험을 해서 보리는 골든메론(ゴールデン・メロン)과 만무트(マンムート), 밀은 매칭스암바(マートンスアムバー)와 후르츠(フルツ)와 캘리포니아(カリフォルニア), 귀리는 클라이드즈테일(クライデスデール)을 채택했다. 조선 재래종이라고 해도 선종과 경작에 주의를 기울이면 맥주 원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일찍이 일본맥주회사 기사가 현지 조사에서 보고한 바 있다. 더욱 개량해서 맥주 원료로 공급하고, 밀을 개량해서 제분업을 일으켜 밀가루 수입을 막고, 보리짚을 가공해 모자제조업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유리한 사업이다. 귀리는 녹비로 공급할 수 있고 동시에 축우에 매우 유용하므로 식료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 현저한 발달은 볼 수 없다.

대두는 보리 다음 가는 농산물이다. 일본 본토에서는 ‘경산 대두, 김천 대두’ 등의 이름으로 팔리는데 이는 단지 두 지역에서 이출된 것에 기인할 뿐이다. 대구가 점차 운송의 중심지가 되면 경상북도

146) 한 두락은 벌써 한 말의 모 또는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로, 지방마다 다르나 논은 약 150~300평, 밭은 약 100평 정도.

의 많은 대두는 대구에서 집산될 것이 분명하다. 조선 대두는 언뜻 보기에 알이 작고 일정하지 않지만 품질은 결코 불량하지 않다. 된장·간장 제조원료, 두부 제조원료로 쓰기에 모두 좋다. 최근 종자 개량과 파종 때 선별 작업을 하게 되었다.

주요 산물 이외에 잡업은 부업으로 대구 지역에 가장 적합하다. 그 현저한 성적은 다음 장에 기술했다. 이 밖에 과수재배는 판로가 유망하므로 각자 나서서 경영하는 동시에 경상북도와 대구부 당국 자도 열심히 장려한다. 대구의 과수원은 그 시작이 오래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발전을 이룬 것은 결국 기후와 토질이 맞기 때문이다. 애초에는 관상 및 오락용 원예 형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모두 대농원 경영 형태이고 생산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과수 종류는 처음에 수밀도를 많이 재배했지만 저장에 어려워 대규모 경영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과, 배, 포도 성적이 좋고 판로도 넓어져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구거류민 가운데 농업 경영자는 업무에도 열심히고 연구와 조사에도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다. 관청도 잘 지도하고 장려한다. 전문기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현장 지도를 받거나 다른 지역을 시찰해 모범사례를 채택한다. 혹은 각종 품평회를 열어 연구 재료로 제공하거나 각종 조합을 설립해 판로 확장과 경영 통일을 꾀하는 등 부지런히 노력한다.

통감부는 조선의 농사 개량 기관으로 권업모범장을 경기도 수원에 설치했는데 1909년 4월에 대구에 지장(支場)¹⁴⁷⁾을 세웠다. 시설에서는 논의 경우 배부(配付), 용수(用水), 도종자(稻種子) 육성, 우량종 모범재배, 품종 비교, 유효 비료 용량, 대두 비료 사용법, 들깨묵 가루 사용의 득실과 사용 시기, 가래질 시기, 정리 방법, 모내

147) 수원 권업모범장의 지점 권업모범장.

기 시기와 포기당 개수의 관계, 논농사 용수량·강수량과 볏독 응덩이 수량과의 관계, 논벼 침수에 따른 피해 정도, 도열병 예방법, 벼뿌리 식염층의 습성, 논벼의 품종과 벼멸구 피해의 관계, 벼멸구 구제 등을 조사했다. 이와 별도로 소작 밭을 설치해서 모범 소작농을 양성하고, 농작물 품평회를 열어 벼의 생육 상황과 관리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진행하며, 우수자에게는 상을 수여해 장려했다. 밭의 경우는 주요 작물의 모범재배 및 품종 비교 시험을 행하고 별도로 보리 이식기, 밭벼의 빗물 이용 재배, 가뭄을 견디는 힘, 질소 비료의 효과 비교, 고구마의 연작, 밭두렁 재배 이식기와 포기 간격, 씨감자 흙덮기 두께, 종자용을 위한 늦은 파종(晩蒔) 등의 실험, 비료 성분이 대두에 미치는 영향, 사탕수수의 당 함유 비율, 종묘용 고구마 저장법 등을 조사하고 시행했다. 잡엽에 관해서는 뽕나무 재배 실험 및 조사 이외에 춘잡종의 발육, 급상(給桑)¹⁴⁸⁾ 회수가 고치 품질에 끼치는 영향, 가을 잠생종의 냉장, 추잠의 발육과 고치 품질, 사료가 산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험했다. 축산에 관해서는 소의 경우 서양종인 시멘탈(シムメンタル)종과 에어셔(エアシャー)종 및 조선종을 사용해 젖 분비량(泌乳量) 조사 및 중간 교배를 하고, 조선소의 사료 소비 실험 및 조선 남부지역 소의 외모를 조사했다. 돼지는 서양종인 파라셔(パーラシャー)종과 요크셔(ヨークシャ)종 및 조선종을 사육해 태어난 씨돼지를 교배했다. 양은 서양종인 메리노(メリノー)종과 슈롭셔(シュロップシャ)종 및 몽고종의 사육을 실험하고, 산양은 잡종인 마르타(マルタ)종을 조금 사육했다. 가금은 개량종 닭과 잡종 칠면조, 오리, 거위를 사육해서 종금과 종란을 교배했다. 이렇게 민간 담당자들이 모든 의뢰에 응하면서 오로지 지도에 힘쓰고 있다.

148) 누에에게 뽕잎을 주는 것.

대구 지장(支場)¹⁴⁹⁾은 당초 고라이 히데타로(戶來秀太郎) 기사가 주임이었는데 이어서 미우라 나오지로(三浦直次郎) 농학사가 지장장이 되었다. 이후 미우라 지장장이 개인 사정으로 은퇴한 후에는 기시 히데지(岸秀次) 농학사가 후임으로 왔다. 그리고 올해 4월에 경상북도 종묘장으로 바뀌었다.

1907년 4월에 대구에 설치된 수묘양성소(樹苗養成所)는 민유지 8정(町) 8단보를 매수해서 종묘 배부 및 식림에 종사했고 1908년 1월에 대구임업사무소(大邱林業事務所)로 바뀌면서 모리타 로쿠오(守田六男)가 줄곧 전담하다가 1910년 10월에 도청 산하에 놓였다. 식림 사업은 비슬산 북면 150정보(町步)¹⁵⁰⁾에 소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심어서 대략 삼림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대구잡업전습소는 1904년에 창립되었다. 관련해서는 다음 장 ‘잡업’ 부분에서 상세히 서술하겠다. 대구잡업전습소는 1911년에 경상북도 잡업전습소 개시와 함께 해산되었다. 이후 잡업강습소는 전습생 양성 및 잡종 제조, 기타 모든 잡업 장려를 맡았다.

이 밖에 대구에는 연초시작소(煙草試作所)와 면화시작소(棉花試作所) 등을 설치해 실험적 재배에 종사하게 했다. 그리고 잎담배는 민간 해당 업자들이 스스로 발전시켰지만 판로가 경색되어 쇠퇴했다. 면화 재배는 사탕무(甜菜)와 마찬가지로 아직 연구 단계에 있다.

대구에서는 품평회, 공진회, 농작물 품평회를 자주 열었다. 1911년에 실업간화회(實業懇話會) 주최로 원예품평회를 열어 국비 및 지방비에서 400원을 보조받았는데 같은 해 9월에 개최해 1,117점의 출품이 있었다. 1912년 2월에 과수재배조합(果樹栽培組合)을 조직해 조합 주최로 품평회와 시식회를 열었다. 이와 별도로 경북실업회

149) 각주 147)과 같음. 수원의 본 권업모범장에 대해 지점과 같은 지방 모범장.

150) 1정보는 약 9917.36㎡로 약 3,000평이다.

(慶北實業會)라는 것이 있다. 경상북도의 조선인들이 조직했고 이진호 도장관이 회장이다.

1913년에 경상북도청은 경북의 물산을 널리 소개하고 실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대형 공진회를 개최했고 대구 시민이 협찬회를 구성해 사업을 응원하면서 성황리에 치러져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

대구에는 조선농회(朝鮮農會) 경북지회가 있다. 1909년에 발족식을 하고 농상공부 대신을 대리해 나카무라(中村) 농무과장이 참석해 농산물 증식에 관한 강연을 했다. 이후 많은 회원이 생겼지만 모임을 열지는 않았다. 단 본회 회보를 살펴서 조사연구 재료로 제공하는 정도의 활동을 했다.

제14장 농업

대구거류민단의 소재지는 경상북도의 중추에 위치한다. 경성에서 60여리, 부산에서 28리, 경주에서 16리 지점에 있다. 북위 35도 50분, 동경 128도 36분에 있고 일본 본토의 간토(關東) 지방과 위도가 같다. 기후는 농업에 적합하고 토질도 기름지다. 북쪽은 팔공산의 연봉이 파도처럼 하늘을 차단하고, 남쪽은 비슬산 준령(峻嶺)이 현풍과 고령 방면으로 병풍을 이루었다. 주위 아홉 개 군에 포위되고 가리어진 일대 평야를 이루어 예부터 대구 들판으로 불렸다.

금호강은 하양에서 대구로 흘러들어와 유역을 관개하고 사문진에 이르러 낙동강과 합쳐진다. 사문진은 수운이 편리해서 배가 항상 다닌다. 육로 운송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사문진이 물자의 집산지로서 대구의 주요 나루터로 꼽혔기 때문에 대구는 3리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낙동강 연안 지역으로 보았다.

대구의 농업 상황을 서술하자면 자연스럽게 경상북도 전체의 형세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대구는 경상북도의 자원지이자 농산물의 집산지이고, 대구의 부호는 많은 경우 각 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여서 일본인 거류민들도 대구를 근거로 군 지역을 경영하면서 연락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이다.

(결수)

조선의 지조(地租)는 '결세'라고 한다. 결(結)은 마치 일본의 지가금(地價金)처럼 세율부과의 표준이 된다. 10파(把)를 1속(束)으로 하고, 10속을 1부(負)로 하며, 100부가 1결이 된다. 토질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도 일본에서 지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과

같다. ‘1결’이라고 할 때 그 면적은 원래 일정하지 않다. 1913년 현재 경상북도의 결수는 논이 79,241결이고 밭이 51,882결이며 대지(垓)가 6,078결이고 잡지가 127결로 합계 137,328결이다. 이에 대한 세금은 898,485원이다. 경상북도의 결수는 전국 13개 도 가운데 1위이고 세금은 2위이다.

답(畓)은 조선 글자로 수전(水田)이다. ‘전(田)’이라고 칭하는 것은 밭(畑)을 의미한다. 대(垓)는 택지이다.

(결의 등급 및 환산 면적)

결은 등급에 따라 1결 100부의 정수 이하 순차적으로 체감한다. 이를 일본의 지가금처럼 설명하자면 1등 단가가 100원일 경우 2등은 85원 아래인 것과 같다. 옛 측지척(測地尺) 1척은 주척(周尺)이 5척, 곡척(曲尺)이 3척 3촌(寸)에 해당한다. 1주척은 곡척 6촌 6분(分)¹⁵¹⁾에 해당한다.

(결 등급 및 환산 면적)

등급	부수(負數)	1결의 평방척(平方尺)	환산 평수	환산 단별(段別) ¹⁵²⁾
1등지	100	10,000.0	3,025.0	1정 0025보
2등지	85	11,764.7	3,558.8	1정 1단 8무(畝) 18보
3등지	70	14,285.7	4,321.4	1정 4단 4무 1보
4등지	55	18,181.8	5,499.9	1정 8단 3무 9보
5등지	40	25,000.0	7,562.5	2정 5단 2무 2보
6등지	25	40,000.0	12,100.0	4정 3무 10보

151) 분(分)은 길이 단위일 경우 120cm이다.

152) 보(步)=평(坪). 무(畝)는 30평. 10무가 1단(段=反) 즉 300평이고, 100무가 1정(町) 즉 3000평이다.

(논밭 환산 면적)

1결의 평수는 등급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단순히 몇 결이라 하더라도 실제 면적을 알기 어렵다. 두락은 1두의 벼를 파종할 수 있는 면적으로 일본에도 ‘두시(斗蒔)’라는 호칭이 있는 것과 같다. 일경(日耕)은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논밭을 가는 범위로 1일경, 2일경 등으로 말한다. 이를 평균하면 1결의 평수는 논인 경우 5,199평으로 단별(段別)로 1정(町) 7단(段) 3무(畝) 9보(步)에 해당한다. 밭의 경우는 6,024평으로 2정 24보¹⁵³⁾이다. 또한 1두락의 평균은 논인 경우 138평이고, 단별로 4무 18보이며 밭의 경우는 187평으로 단별로 6무 7보이다.

(지세)

결에 대한 세율은 1결이 최고 8원이고 이하 등급에 따라 차감한다. 총독부는 지세령(地稅令)을 개정해 1914년부터 8원에서 11원으로 증액 징수할 예정이다. 종래에 지세는 소작인이 납부하는 것이 관습이었지만 현재는 지주 납세로 이미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강제하지 않는 것은 이전의 습속을 쉽게 지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작인은 실제로 자기가 납세하는 것을 이익으로 여긴다. 그 이유는 조선의 소작법이 대개 타조(打租)라는 절반 분배 방식이어서 소작인이 납세를 부담하면서 벼짚을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평의 벼짚은 약 1전의 가격이기 때문에 1단보의 가격은 3원에 해당한다.¹⁵⁴⁾ 그런데 납세액은 경상북도 평균으로 징수하면서 1단보에 최고 60전(지세를 증액하더라도 82전 5리의 본세(本稅))이기 때

153) 6,024평=6,000평+24평=200무+24평=2정+24평(=보)가 되는 것이다.

154) 1단보(段步/段/步)=300평이므로, 300평×1전=300전=3원이 된다.

문에 지주는 자신이 납세하고 벳짚을 절반으로 나누면 그 수익은 1 단보에 1원 50전이 되어 90전의 차익을 얻는다. 이것이 소작인 납세가 오랫동안 행해진 원인이다.

(토지매매 가격)

대구민단 이전의 일본인회, 동포회, 대일본인거류민회 때에는 현재 민단 지역의 토지 가격은 매우 저렴하고 오히려 경지였던 논이 고가였는데, 민단이 발전하면서 시가지 지가가 잇따라 양등해 일정 평균 수준을 넘어버렸다. 경작용 논은 수익 측면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티무니없이 폭등하지 않았지만 대구 부근의 경지는 가격이 현격히 높아졌다. 이는 농사 경영인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대구가 농업에 매우 적합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최근 경상북도 1단보 매매 가격을 다른 도의 최고·최저 가격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상등지	중등지	하등지
경상북도	논	125원	66원	40원
	밭	50원	30원	8원
경상남도	논	160원	60원	50원
	밭	70원	40원	30원
함경북도	논	36원	21원	8원
	밭	50원	13원	7원
전국 평균	논	109원 769	59원 070	33원 384
	밭	59원 723	42원 984	13원 032

(경상북도는 대구 해동촌면(海東村面) 방촌동(芳村洞)을 표준지로 한다)

앞 표에 따르면 대구 방면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매매 가격이 높다. 더욱이 최저가 지역인 함경북도와 비교하면 3배 이상의 고가이다. 경상남도가 경상북도보다 가격이 높은 것은 농산물 반출의 편리함, 기후 및 토질의 적합도가 그 요인이다.

(토지임대가격)

소작료는 앞서 서술했지만 일본인 가운데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대차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많은 경우 임대료를 책정해 금전으로 계산하게 되었다. 최근 논 1단보의 임대가격은 5원 내지 12원이고 밭은 3원 내지 8원 29전이다. 잎담배 재배 경쟁 상황으로 12원까지 높이 오른 적도 있지만 해당 업자의 실패 후 다시 하락해서 7~8원을 최고가로 한다.

(기후)

사계절 및 추위·더위는 농업과 지대한 관계가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대구 지역은 추위와 더위가 모두 심하지만 사계절과 밤낮의 조화가 좋아서 농업에 가장 적합하다.

● 대구 지방 평균 기온 (섭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12년	1.5	3.2	6.7	12.9	17.0	22.3	25.3	26.6	20.2	13.6	4.6	0.2
여러 해 평균	0.0	0.1	5.3	12.1	18.0	22.3	24.4	25.8	21.2	14.5	7.4	0.1

(일본인 농업자 수)

대구를 중심으로 해동촌 및 기타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일본

인 숫자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507호이고 인구는 1,703명에 달한다. 그리고 일본인이 경작하는 곳은 대부분 일반 곡물이 아니라 잎담배, 과수, 채소, 뽕나무 농원이다. 상세는 각 항에 기술한다.

(잎담배)

일본종 잎담배 재배는 1905~6년경부터 일본인 농가가 착안한 것으로 그 경작 면적은 해마다 증가했다. 조선의 잎담배 제조는 자유영업이었으므로 일찍이 일본 본토의 담배 전매법 시행 전에 건너온 제조업자들이 먼저 그 제조를 시험했다. 시험 원료가 조선종이고 조선인이 재배하는 것이어서 품질이 조악하고 맛이 신랄해서 조선인 대상 판로만 있었을 뿐이다. 이후 일본종 담배의 시험 재배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양호하자 잎담배 제조업이 발흥해 경작자도 갑자기 늘어났다. 당초 잎담배 재배에 필요한 경비는 1단보당 약 30원에 불과한데 수확되는 생산량은 평균 30관(貫)이고 가격은 1관당 평균 2원이다. 1단보에서 30원의 수익은 충분히 얻는 것이다. 당시 토지매매 가격이 저렴해 1년 수익으로 해당 토지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잎담배 재배는 비할 바 없는 유리한 일로 여겨져 거의 투기적으로 종사하면서 한 집에서 10정보(町步) 이상을 경작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그런데 경작 면적 증가는 생산 과잉을 초래했다. 또한 관제품 및 수출품과의 경쟁으로 제조업자가 차질을 겪었고 시장가격이 하락했다. 한편 밭의 지가가 폭등하고 임대료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패하는 경작자가 나타나 업계는 놀라고 당황했다. 그러나 제조업자의 기량 또한 진보해서 관제품과 호각을 다투게 되었다. 일본인의 증가와 조선인의 기호가 더해져서 제조가 다시 촉진되면서 자본가도 안심하고 투자하게 되었고 쇠퇴를 만회해 경작자 숫자도 급증했다. 시비법(施肥法)과 건조법 모두 개량되어

경상북도의 일대 산업으로 자리 잡으려는 기세가 보인다.

잎담배 재배는 1912년이 전성기여서 대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으로 퍼졌고 경상남도 밀양과 삼랑진까지 포함해 300정보에 달했다. 그런데 1913년에 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어 일패도지(一敗塗地)의 상태가 되었다. 같은 해에 잎담배는 성적이 우량하지 않았다. 그 수량은 평년에 비해 6분작에 그쳤다. 게다가 전년도 생산품 여분도 많지 않았다. 유력한 제조회사는 수용을 서둘지 않았다. 소규모 제조업자는 자금 융통이 곤란했고, 경작자는 생산품을 떠안은 채 먹을거리 구하기도 어려운 참담한 상황에 처했다. 민단 유지들은 이것을 구제하는 데에 부심하며 당국 관청에 보호책을 요청했지만 시가의 대폭락에 금융을 투여할 방법이 없었고, 겨우 동아연초회사가 일부를 매수해 임시변통의 구제를 실시했지만 가격은 1관 평균 60전 정도에 불과했다. 경지 임대료를 지불하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인지라 농가의 곤돈(困頓)¹⁵⁵⁾은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특히 금융 전체의 팽박은 점차 경작자를 괴롭혀 잎담배 재배자수가 갑자기 줄었고 건실한 농업자만이 계속할 뿐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반대로 생산품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수원)

대구 지역의 잎담배 재배지는 동시에 과수 재배자이자 채소 재배자이기도 하다. 원래 과수원은 지속적인 장기 계획이어서 잎담배로 연도 단위 수입을 만들고 채소를 부업으로 하는 것은 농사에서 좋은 배합이다. 게다가 대구는 과수에 가장 적합한데 이 가운데 사과,

155) 피로하여 쓰러짐, 곤핍.

배, 포도 성적은 매우 이례적이다. 포도의 경우는 일본의 노련한 농부가 일본 본토에서 아무리 고심해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던 서양종이 대구의 미숙한 시험 재배자 손에서는 좋은 결실을 맺어 일본 본토의 해당 업자를 놀라게 했다. 사과 재배 결과 또한 매우 양호해서 '대구 사과'는 만주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배도 성적이 좋아서 사과와 함께 쌍벽을 이룬다. 생산 과잉으로 실패한 앞담배 농업지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뎡 보고 놀란 상태였다. 이 세심한 경계는 판로 조사로 이어졌고 만주, 포항, 상하이, 광둥(廣東) 방면으로 시험 판매를 겸한 수요 조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대구에서 생산한 사과가 외국에서 성과를 얻으면서 무한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농업자들의 의향은 흡연(翕然)히¹⁵⁶⁾ 과수재배로 기울어 앞담배를 대신해 일대 생산물이 되었다. 과수원 면적도 수백 정보를 넘는다.

(채소)

대구 농가가 당초 수익을 올린 것은 채소이다. 그런데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투어 이에 종사하자 판로가 좁아져 큰 손실을 초래한 일도 있다. 그 이후로 농가의 방침은 견실해졌다. 부업인 채소를 과잉 생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배 종류를 늘리고 저장에 견딜 수 있는 종류를 골라 가격을 보고 매출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는 그야말로 농업 경영상의 일대 진보라 할 수 있다.

(양잠)

조선의 양잠은 최근 눈에 띄게 발달했다. 발달이라기보다 오히려

156) 많은 것이 합하여 한 곳으로 향하는 모양.

부흥이 타당하겠다. 왜냐하면 양잠은 조선의 오래된 부업으로 특히 신라의 영토였던 대구 지역은 예부터 매우 왕성했다.

대구 양잠업의 비조(鼻祖)¹⁵⁷⁾는 대구잠업전습소인데 이는 단지 대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조선 전체 양잠전습소의 효시이다. 창립은 1904년이고 소장은 현 영일군수 이종국(李鍾國)이다. 그는 일찍이 일본으로 건너가 잠업의 가장 중심지인 나가노(長野)와 군마(群馬)에서 직접 수양한 후 조선에 돌아오자마자 대구의 유력자 서상돈 등 몇 사람과 함께 오로지 전습생 양성에 힘썼다. 1907년에 통감부는 이에 상을 주면서 연간 500원을 보조하며 장려했다. 이어서 교사 오가노 세이조(小賀野清藏)를 특별 파견하고 보조금을 1,500원으로 늘렸다. 원래 영리를 위한 경영이 아니어서 세계(歲計)가 부족하고 여러 번 운영자가 바뀌었지만 이종국 소장은 한결같이 전습생 양성에 매진했다. 그가 관직에 임명되자 서병조가 대신 소장을 맡았다. 1911년에 경상북도청이 잠업강습소를 설치하자 대구 잠업전습소는 잠구 및 기계 전부를 도청 잠업강습소에 인계하고 해산했다. 많은 졸업생은 경상남북도 각 군에서 양잠교사로 종사하고 있다.

일본인 가운데 양잠을 시도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대부분은 경험은 없었지만 성적이 양호한 것을 보면 대구 지역이 양잠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잎담배는 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쌀·보리·대두 등의 곡물 가격은 하락했다. 이후 농업 종사자들이 양잠을 부업으로 삼으려는 기운이 보이지만 아직 만족스러운 모습이 안보이는 것은 양잠이 연초 재배와 함께 할 수 없고 뽕나무 발·잠실·잠구의 준비는 단기간에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선이 양잠에 적합한 것은 무엇보다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으로

157)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

조선의 고치는 광택이 뛰어나고 해서(解舒)¹⁵⁸⁾가 편해서 일본 제사업자에게 환영받는다. 대구는 각 군에서 생산한 고치의 이출지(移出地)이다. 조선의 잠업이 제사 단계까지 나아가는 데는 전도가 요원하지만 지가와 임금이 저렴하고 기후가 적합한 것이 어우러져 대구가 큰 산출지가 될 것에 틀림이 없다. 1913년도 양잠 호수는 33,970호, 소립¹⁵⁹⁾ 잠종수는 35,291장, 수견(收繭)¹⁶⁰⁾량은 7,751석인데 올해는 호수 37,023호, 잠종 39,460장으로 증가해서 심각한 기후 이변이 없으면 약 1만석의 수견량을 예상할 수 있을 만큼 호황이다.

158) 고치를 풀어서 생사를 뽑아내는 것.

159) 알에서 깨어 나온 누에를 누엣자리에 떨어 놓는 일.

160) 누에가 숲에 고치를 따는 일. 고치따기.

제15장 공업



大邱電氣株式會社

대구거류민단 지역 내에는 특필할만한 공업이 없다. 원래 경상북도는 농업이 생활의 기초였다. 민단의 일본인 가운데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이다. 공업으로 첫 번째 꼽을만한 것은 대구전기주식회사(大邱電氣株式會社)이다. 사장은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이고 전등을 전문으로 하지만 본 목적은 널리 전력을 공급해서 각종 공업을 진흥시키려는 기획에 있다. 이밖에 제연(製筵), 제지, 제분, 제도, 벽돌, 연초 제조 등은 회사나 단체의 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아직은 모두 발달하지 못했다. 연초제조업에서 다소 볼 만한 것이 있다. 그것은 뒤에 서술하겠다.

(제연업)

제연업에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볏짚을 원료로 해서 명석이나 가마니를 제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초(蘭草)를 원료로 해서 다다미 겉이나 돛자리를 제조하는 것이다. 조선은 새끼줄 가마니를 일본 본토에서 수입하는데 만약 조선에서 나는 짚을 이용하고 제연기와 제송기를 사용하여 저렴한 인부를 쓴다면 임금이 비싸고 운임이 필요한 일본 본토를 바라보는 것보다 이익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생각은 피상적이어서 대구에서 제송·제연업에 착수한 사람은 중도에 폐업했다. 조선에 논이 많은 것을 보

고 벗짚이 저렴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조선은 일본과 비교해서 벗짚이 몇 배나 비싸다. 그 원인은 조선의 가옥은 관아나 진신(摺紳)¹⁶¹의 건축을 제외하면 모두 벗짚을 옥상 지붕덮개로 이용하고 매년 가을 수확 후에 항상 새 벗짚으로 보수하기 때문이다. 벗짚은 기와 혹은 너와 대응으로 모두에게 귀중하므로 땀값이 부족해서 마른 풀, 소나무 잎, 풀뿌리까지 연료로 써도 벗짚을 태우는 일은 결코 볼 수 없다. 설령 새끼줄 제조에 사용한다고 해도 조선의 벗짚은 불량하다. 이는 품종에서 비롯된 요인도 있겠지만 주로 비료를 주지 않아 유인력¹⁶²이 부족하다. 이에 더해 수확할 때 도급기¹⁶³를 사용하지 않고 난봉으로 타격하기 때문에 벗짚 마디가 부서져서 직연(織筵)이나 새끼줄에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결점은 농사 개량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싼 것은 공업원료로 공급하기에 불합격이다.

인초는 ‘왕골’이라고 부른다. 삼각형의 두꺼운 왕골로 수전이나 습지에서 키운다.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베어낸다. 이것을 곧바로 세로로 잘라서 6등분이나 8등분 한다. 간간이 통줄기 그대로 짜는 경우도 있다. 왕골의 특징은 강인해서 내구력이 좋은 점, 광택이 뛰어나서 미관이 좋다는 점에 있다. 대구에서는 오구라 다케노스케와 요시타케 기네오(吉武甲子男) 등이 한국제연합자회사(韓國製筵合資會社)를 설립해 왕골을 원료로 다다미 깔, 깔개 돛자리, 방석을 만들었고 나아가 짚신이나 작은 세공품을 제조해 호평을 받으며 판로가 갑자기 트였는데 원료가 비싸서 현재 수요에 응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돛자리 종류 제조는 거의 멈춘 상태이다. 이후 만일

161) 관위·신분이 높은 사람.

162) 부드러우면서도 질감.

163) 벼를 훑는 기계.

일반 농가에 장려해서 염가로 재배할 수 있다면 제연업은 유망하다.

(제사업)

목면 방적은 조선인이라고 해도 과거의 업에 속한다. 제사는 고치를 원료로 한 생사이다. 조선의 양잠은 최근 점차 부활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생산액이 13도에서 가장 많다. 원료가 풍부하다고 해도 고치를 일본 본토로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조선으로서는 쌍고치(同功繭) 또는 찌끼고치(屑繭)를 이용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경상북도청은 여기에 주목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지업)

닥나무 껍질을 원료로 하는 조선지(朝鮮紙)는 그 용도가 좁아서 개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료가 많지 않아 발달할 여지가 없다. 만일 황무지에서 저아(楮樞)¹⁶⁴ 종류를 재배하면 장래에 유리하겠지만 대구에서는 아직 보지 못했다. 양지(洋紙) 제조업자는 조선인이 경영하는 제지장을 민단 토지 안에 건축했지만 개업하지도 못한 채 화재 피해를 입었다. 건물과 기계가 화재로 모두 타버려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것 같다.

(제분)

이전에 대구제분합자회사(大邱製粉合資會社)가 어행정에 있었다. 그런데 조선은 밀 경작이 적어 생산량이 적고 품질이 불량하다. 이에 온전한 제분업은 밀 개량 이후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사정으로 회사는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164) 닥나무 가장귀, 가장귀, 나뭇가지의 갈라진 부분.

(도자기 제조)

대구의 조선인과 일본인, 그리고 각 군 지역에 공급되는 도기는 사가현(佐賀縣)과 아이치현(愛知縣) 방면에서 수입된다. 그런데 조선 또한 도자기용 흙(塗土)¹⁶⁵이 부족하지 않다. 최근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양질의 도자기용 흙이 발견되면서 고려자기제조주식회사(高麗磁器製造株式會社)가 생겼다. 그러나 아직 널리 판매할 만큼의 제조력을 갖추지 못했다. 시제품은 충분히 고급 도자기의 가치가 있다.

(벽돌)

대구 지역에는 점토가 많다. 동시에 금호강의 흐름이 있어서 모래흙도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벽돌 제조에서 중요한 장작 재료가 비싸서 이 업종이 발전하지 못한다. 겨우 스키와라 재목점(杉原材木店)이 부업으로 조금 생산할 뿐이다.

(연초제조)

대구의 일본중 연초 재배는 비약적으로 발달했다. 따라서 연초제조업은 대구에서 발흥했다. 마쓰모토 세이치(松本誠一), 마에노소노상회(前之園商會), 오이시상회(大石商會), 후지상회(富士商會), 가나모리상회(金森商會) 등이 주요 업자이다. 이 업종은 때때로 성쇠가 있지만 대구 공업계의 중요 사업이다. 이 밖에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인 제조업자도 적지 않다.

이상 열거한 것 이외에 제면과 냉동 두부 제조 등은 소규모 영업자가 있다. 한천 제조는 기후상 대구가 적합한데 아직 종사하는 사람은 없다. 참고로 경상북도 공업 통계를 제시한다.

165) 고령토나 백색점토.

〈제1표 직물 1913년도〉

	수량	가격	호수
면포(綿布)	(일본인) 781반(反) ¹⁶⁶⁾	718원	3
	(조선인) 285,314필(疋) ¹⁶⁷⁾	475,855원	106,024
저포(苧布) ¹⁶⁸⁾	(일본인) 4반	3원	1
	(조선인) 127,571필	261,405원	66,898
견포(絹布)	(일본인) 124반	596원	3
	(조선인) 30,971필	185,548원	8,407
교직물 ¹⁶⁹⁾	(일본인) 197반	593원	3
	(조선인) 1,582필	7,344원	403

〈제2표 종이 1913년도〉

	수량	가격	호수
조선종이	(일본인) 0	0	0
	(조선인) 19,394연(連) ¹⁷⁰⁾	203,952원	1,399
일본종이	(일본인) 100관	250원	2
	(조선인) 379관	1,183원	4

〈제3표 종이 제품 1913년도〉

	수량	가격	호수
종이 상자	(일본인) 200,000개	3,000원	1
	(조선인) 1,100개	250원	4
철부채(扇子)	(일본인) 0	0	0
	(조선인) 1,160개	2,458원	8
부채(团扇)	(일본인) 9,000개	360원	1
	(조선인) 1,600개	96원	6
우산	(일본인) 50개	25원	1
	(조선인) 0	0	0
제등	(일본인) 1,570개	370원	2
	(조선인) 0	0	0

166) 직물 단위일 경우, 1반(反)=36cm×22m전후.

167) 2반(反)=1필(疋)

168) 모시.

169) 두 종류 이상의 실을 섞어서 짠 직물.

170) 서양 전지 500장 한 묶음.

〈제4표 요업 1913년도〉

	수량	가격	호수
도자기	30,000점	600원	1
	768,811점	65,395원	239
질그릇(素燒)	7,750점	775원	2
	126,690점	15,250원	24
토관, 벽돌, 기와	313,400개	14,820원	9
	178,000개	5,545원	10

〈제5표 금속제품 1913년도〉

	수량	가격	호수
주철 제품	(일본인) 100개	160원	2
	(조선인) 9,614개	35,033원	70
금은기	(일본인) 2관 320문(匁)	7,446원	3
	(조선인) 361점	1,722원	9
백동 제품	(일본인) 0	0	0
	(조선인) 1,000개	400원	8
칼 제품	(일본인) 3,570개	514원	3
	(조선인) 3,051개	338원	16
놋쇠 제품	(일본인) 36관문(貫匁)	180원	3
	(조선인) 85,742개	38,785원	74
기타	(일본인) 불명	6,170원	6
	(조선인) 530개	53원	1

〈제6표 대나무 제품 1913년도〉

	수량	가격	호수
대나무 세공	(일본인) 2,056개	411원	2
	(조선인) 48,370개	3,521원	344

〈제7표 돛자리 1913년도〉

	수량	가격	호수
벗짚 돛자리	(일본인) 900장	72원	40
	(조선인) 100,387장	11,006원	25,006
왕골 돛자리	(일본인) 0	0	0
	(조선인) 64,062장	38,812원	18,817
갈대 돛자리	(일본인) 0	0	0
	(조선인) 59,782장	10,103원	740

〈제8표 농잠(農蠶) 기구 1913년도〉

	수량	가격	호수
농구	(일본인) 15,550점	4,916원	3
	(조선인) 88,723점	34,481원	3,242
잠구	(일본인) 0	0	0
	(조선인) 29,905개	716원	2,092

〈제9표 차량 1913년도〉

	수량	가격	호수
집차(荷車)	(일본인) 200량(輛)	4,000원	4
	(조선인) 0	0	0

〈제10표 음식료품 1913년도〉

	수량	가격	호수
청주	(일본인) 1,543석(石)	59,690원	19
소주	(일본인) 74석 5두(斗)	4,725원	11
	(조선인) 281석	20,675원	341
과실주	(조선인) 30석	1,200원	2
일본 간장	(일본인) 651석	19,585원	7
	(조선인) 50석	1,250원	1
청량음료	(일본인) 6,903타(打)	1,421원	6
일본 된장	(일본인) 49,962관(貫)	4,590원	8
	(조선인) 1,200관	600원	2
보리 가루	(일본인) 0	0	0
	(조선인) 83,150관	45,457원	27,802
건면	(일본인) 46,663관	23,812원	14
	(조선인) 35,280관	19,533원	14
	(중국인) 260관	156원	1
병·통조림	(일본인) 85,980타(打)	206,360원	6

* 병·통조림 원료는 주로 계와 전복으로 대부분 영일만에서 생산.

〈제10표 마른김 1913년도〉

	수량	가격	호수
마른김	(일본인) 1,330첩(帖)	359원	150
	(조선인) 120,550첩	4,436원	796

〈제11표 연초 1913년도〉

	수량	가격	호수
살담배(刻莖)	(일본인) 2,310관	3,140원	16
	(조선인) 11,170관	17,000원	101
궤련(卷莖)	(일본인) 231,50만 개비	300,950원	5
	(조선인) 0	0	0

〈제12표 제혁(製革)·기름류〉

	수량	가격	호수
제혁(製革)	(일본인) 0	0	0
	(조선인) 2,900관	6,735원	52
동물성 지유	(일본인) 0	0	0
	(조선인) 50,180관	225,220원	449
식물성 지유	(일본인) 0	0	0
	(조선인) 3,467석(石)	164,845원	6,668
양초(蠟燭)	(일본인) 2,005상자	30,075원	2
	(조선인) 1,420타(打)	236원	91

경상북도의 공업 생산액 합계는 2,901,001원이고 이 가운데 대구부의 생산액은 60,4374원이며 달성군의 생산액은 45,630원이다.

제16장 상업

대구는 예전에 경상남북도가 한 개 도였을 때 72개 군을 통할하는 관찰부의 소재지로서 지방행정의 중심인 동시에 달리 비교할 수 없는 영시(令市)가 섰다. 이로써 상업지역으로서도 영남의 주축이 되어 지극히 융성했다. 그러나 이는 조선 차원의 상업일 뿐이었고 무역이 발달하고 수이출입이 활발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 현저한 진보는 놀랄만하다. 상업의 연혁을 적자면 먼저 순수한 조선 시대의 상업부터 현재에 이르는 순서로 해야 한다.

(한국의 상업 습관)

한국에는 상설점포가 없고 장날을 정해 매매하는데 이는 일본의 중고시대와 비슷하다. 그리고 상인들도 진정한 상인이 적다. 장날에 자신의 농산품을 팔아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사서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물물교환과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장날 상인이 한 달 6회의 장날 이외 시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니 보통 출시(出市) 준비를 한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백미를 파는 사람은 장날 전에 벼를 뺏아서 정미하고 이것을 소나 말에 실어서 반출한다. 그리고 다음 장날 때까지 쓸 일용품을 사서 돌아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간간이 매입해서 출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들은 자신의 생산품과 자산이 없는 무리가 장날 한 번에 필요한 자금을 겨우 빌려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일 뿐이고 오히려 중산층 이상의 농민이 진정한 상인인 점은 진기하다.

(장날 및 시장)

조선은 전부 시장에서 매매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장날은 예부터 일정불변이다. 그래서 출품 구역도 일견 평범한 노점처럼 보이지만 경계가 엄해서 서로 침범할 수 없다. 대구에는 동문과 서문 두 시장이 있다. 동시(東市)는 4·9일에, 서시(西市)는 2·7일에 장이 선다. 모두 음력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다. 서시는 동시보다 구역이 넓고 사람도 많다. 이 밖에 ‘영시(永市)’라고 칭하는 봄·가을 두 번의 대시(大市)가 있는데 옛 남문 안팎(현재 남성정, 교마치(京町))에서 열리고 기간은 30일이며 상품은 약품을 주로 판매한다. 영시는 원래 약품 개량과 보급을 꾀하기 위해 정부 법령으로 대구에서 열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었다. 이전에는 평양과 경성 등 멀리서 와서 매우 왕성했었는데 철도와 기선이 편리해지자 일본 약을 널리 이용하게 되었다. 지금은 영시의 전성기 풍경을 볼 수 없다.

(엽전)

조선의 통화는 엽전으로 일본의 옛날 보조화폐였던 간에이통보(寬永通寶) 종류이다. 이것을 민전(緡錢)¹⁷¹⁾으로 해서 큰 거래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 일본인이 유입되면서 일본 은화를 사용하고 동시에 제일은행은 태환권(兌換券)¹⁷²⁾을 발행하며 한국 정부도 은화와 백동화를 주조했다. 그러나 원래 엽전을 본위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항상 변동할 뿐만 아니라 벽촌 지역은 일본 화폐와 새로운 화폐를 믿지 않아 여행할 때는 반드시 엽

171) 웨미에 펜 엽전.

172) 정부나 발권은행이 발행하여 소지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정화(正貨)로 바꾸어 주도록 되어 있는 지폐.

전이 필요했다. 1906년 이전에는 대구의 동·서 두 시장에서조차 엽전이 아니면 상품을 살 수가 없었다. 이에 재정고문부는 이혁(釐革)¹⁷³⁾ 대책을 강구해서 엽전 정리 방법을 정하고 조세로 징수한 엽전은 다시 유통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엽전은 법정 가격을 20할로 결정했다. 또한 지방 금융조합은 새로운 은화를 교부해 통용의 원만함을 꾀했다. 계산상의 계수(計數)에도 새로운 화폐 명칭을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화폐를 정리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인과 조선인의 거래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인의 기호)

당초 대구에서 일본 상품의 판로는 협소했다. 이는 상품이 조선인 취향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인이 일찍이 애용한 일본 상품은 유리 기구, 시계, 양산 종류이다. 담배는 러일전쟁 전에는 무라이제(村井製) ‘히어로’만 알았다. 따라서 조선인들은 히어로를 궤련을 의미하는 일본어로 생각했다. 그러나 점차 일본인과 접촉하면서 의식주 기구를 일본제품으로 구매하는 것의 편리함을 깨닫는 동시에 농산품 가격 상승과 노동임금 수입 증가 등으로 매년 구매력이 늘어나 생활 상태가 향상되면서 점점 일본식을 따르는 경향이 생겼다.

(거류민의 상업)

조선인을 수요자로 하는 일본인의 상업은 초기에 이례적인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있는 동시에 대실패를 맛본 사람도 많았다. 초창기에 조선인의 수요와 물품 종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력이 약

173) 규칙과 제도 등을 뜯어 고치어 정리함.

하다는 것을 모른 채 상품을 방만하게 수입한 사람은 당연히 실패했다. 단발령이 내려지자 이발기를 수입하고 백의(白衣) 제도가 없어지자 염색 연료를 수입한 사람들은 모두 경솔함에 실패했다. 성냥 하나를 2전에 파는 폭리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상인의 예측은 어긋났다. 이에 자연스럽게 일본인 상호 간 상업을 주로 하게 되었다. 순수하게 조선인만 상대하는 상점은 일부 무역상, 막과자(馱菓子) 제조업자로 한정된다. 반대로 순수한 일본식 상점은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일본인 거류민의 급증, 군대와 관리의 증가는 수요를 크게 늘려 상점을 번성하게 했다.

(상업 세력 범위)

당초 대구의 상품은 모두 부산에서 공급되었다. 따라서 부산 상인이 도매상, 대구 상인은 소매상과 같았다. 이에 부산과 대구의 소매 가격은 차이가 심해 부산 상인은 항상 점원을 파견해 행상을 시키거나 임시 매점을 열어 경품을 붙이는 형태로 할인하는 상업전략을 펼쳤다. 또한 거류민 중에는 부산에 출장을 가서 공동구매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비가 들더라도 부산에서 사는 것이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초창기 대구는 부산의 상업 범위 안에 있었던 것이다.

(무역의 발전)

1907년에 일본 본토와 연계된 수송이 처음 시작되자 대구는 마침내 부산의 상업권 밖으로 벗어나 일본 본토와 직거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무역이 발전함에 따라 철도 수송을 활용한 수입 화물 및 보세 창고 사무를 취급하게 되었고 이것이 대구세관출장소로 이

어졌다. 게다가 수이입 화물 및 소포 우편물의 통관사무도 취급하면서 대구는 개항장과 동일한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상업계는 일대 발전을 보였다.

(무역품 종류)

일본 본토에서 이입하는 주요 상품은 면포, 옥양목, 석유, 성냥, 방적사, 소금, 설탕, 주류, 밀가루 및 기타 잡화이다. 조선에서 이출하는 것은 쌀, 보리, 대두 및 잡곡, 소가죽, 소뼈 및 생우이다. 이밖에 조선 내부에서 이입되는 상품 가운데 해산물은 부산, 마산, 영일만에서 전부 가져오는데 이 가운데 명태어업은 조선인 전체 수요에 대응해 원산에서 부산을 거쳐 이입된다. 외국 무역은 블라디보스토크 방면의 벼 수출, 만주 방면의 쌀 수출 등이다. 만주 조는 쌀과 교환되어 수입된다. 이 밖에 생과 수출은 전도가 유망해 해당업자는 각지를 조사하면서 시험 판매를 하며 수출을 꾀하고 있다.

(물가)

식민지의 물가는 보통 수이입품이라서 가격이 비싸다. 그런데 조선의 일용품은 일본 본토에 비해 오히려 싸거나 비교적 싼 것이 있다. 이것은 여세(屐稅)¹⁷⁴⁾ 또는 할인 비율이 많은 결과로 담배나 설탕은 일본 본토보다 싸고 청주 같은 것은 거의 동일 가격이다. 쌀값은 1906년 민단 설치 때에는 백미 1석의 시가가 8원 내지 9원이었는데 등귀울 거듭해 최근에는 일본 본토와 거의 비슷해져서 1석이 22~23원에 달한다. 그런데 올해 접어들어 일본 본토 쌀가격도 모두 폭락해 수이출 경로가 단절되었다. 기타 물가도 금융 팽박과

174) 반려세 또는 환급세.

시장 상황 부진으로 인해 현재는 줄곧 하락 추세이다.

(상업기관)

금융기관은 조선은행, 경상농공은행, 전남상업은행, 대구은행, 대구지방금융조합이 있고 운수기관은 경부철도, 대구우차조합 및 각종 운송점이 있다. 통관취급소와 담군이 많은 것은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다. 보관 기관은 철도창고, 농공은행 창고, 한국은행 창고, 사설 창고, 보세 창고가 있다. 조사기관은 대구상업회의소가 있다. 대구의 상업인들이 조직해 민단과 동시에 창립했다.

(상업단체)

상업조합 숫자는 매우 많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대구수형조합 (大邱手形組合)	대구곡물수출상조합 (大邱穀物輸出商組合)
대구미곡동업조합 (大邱米穀同業組合)	대구간장특약판매조합 (大邱醬油特約販賣組合)
대구무명끈특약판매조합 (大邱眞田紐特約販賣組合)	대구미유조합 (大邱米油組合)
효고센스이사대구특약조합 (兵庫清燧社大邱特約組合)	대구영유조합 (大邱英油組合)
대구방물상조합 (大邱小間商組合)	대구고물상조합 (大邱古物商組合)
대구재목상조합 (大邱材木商組合)	대일본맥주대구특약조합 (大日本麥酒大邱特約組合)
대구주류동업조합 (大邱酒類同業組合)	대구약업회 (大邱藥業會)

(상거래)

일본 본토에서 이입되는 상품은 발송 후 30일 기한으로 연거래

(延取引)¹⁷⁵⁾가 이루어진다. 이출품은 서문시장에 나오는 곡물, 소가죽 등을 상인이 매입하거나 조선인 객주를 거쳐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벼는 조선인 대지주 또는 동양척식회사의 소작 벼를 매입한다. 일본 본토 이출을 위해서는 조선은행에 화물 환어음 매입을 한다. 객주는 일본 본토에서 말하는 중개인이다. 또한 위탁매매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당연히 현금거래이고 상점은 신용판매가 보통인데 최근 현금 판매 방침을 취하는 곳이 많아졌다. 그리고 조선인 사이의 소매 거래는 여전히 일본의 도쿠가와막부 시대처럼 이른바 음력 7월 보름과 연말 ‘두 시기 지불(二季払)’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175)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외상거래.

제17장 시장

조선은 기존에 상설점포가 없어서 시장은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중요한 교환장이자 상업상의 대기관이다. 전국의 시장 숫자는 850여개이고 경상북도에는 160여개가 있다. 예부터 모든 시장은 행정청의 허가 혹은 지정으로 열렸고 관의 감독을 받았다. 1909년 한국 정부는 지방비법(地方費法)을 공포해 같은 해 10월부터 각 지방청에서 지방비를 부과했다. 서울은 매매 가격의 1/100로 정했다.

지방비 부과 전부터 기이한 습관이 하나 있었다. 곡물 매매는 상인이 직접 계량하지 않고 반드시 정해진 승취인(秤取人)이 양을 측정했다. 측량이 끝나면 한 되가 안되게 남은 곡물을 수수료로 받았다. 조선의 되는 일본의 약 5승(升)에 해당한다. 따라서 5승 이하의 쌀이나 대두는 승취인의 수수료가 된다. 게다가 한 되마다 잔여분을 거두기 때문에 상인은 이것이 매우 고통스러웠다. '일한병합' 후에 이 수수료 표준을 일정하게 해서 5승 되마다 1전으로 새로 정했지만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수수료를 대신해 잔액을 수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전의 승취인 수수료는 모두 승취인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수수료 곡물을 매각한 대금 일부는 관청에 납입하고 일부는 감독 관리의 소득이 되었다. 1912년도에는 그 수치가 1,100여 원에 달했다. 1년간 화물 방매액(放賣高)은 9,338만여원으로 추산되었다. 경상북도는 방매액이 2,405,000원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대구 지역은 옛 대구군에 6개의 시장이 있었고 이 가운데 2개는 대구 시가지에 있었다. 집산물 가격은 가축류(주로 생우)가 1위를 점했고 수산물이 뒤를 이었으며 곡물은 3위였다. 생우는 가격이 비싸고 수산물(주로 건어물)은 전량을 시장에서 구매했으며 곡물은

농업자 이외의 식량이어서 수이출 관계지는 대부분 지주와 직접 거래했다.



大邱西門市場

대구의 양대 시장은 동문 시장과 서문시장인데 동문시장은 원래 서문시장의 보조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서문시장은 대시(大市)로서 장날마다 멀리 10여리¹⁷⁶⁾ 떨어진 곳에서 오는 상인도 있어서

수만 명이 출입했다. 조선인의 일본제품 수요가 늘어나자 시장에 모인 군중이 시내로 흩어져 구매하는 장날은 시가지 전체가 변화했다. 대구 양대 시장의 1년간 화물 방매액은 1912년도에 495,596원이었고 그 세액은 4,955원 96전이였다.

종래의 지방 관현은 시장에 관해 종종 연구를 거듭했다. 시장은 조선에서 중요한 상업기관인 반면 장날 이외에는 물건을 사는 것이 불편했다. 시장의 불편함은 상업 기회를 크게 잃어버리는 것이어서 상설점포의 전환 여부가 토의되었다. 그러나 오래된 습관은 하루아침에 개혁할 수 없다. 상설점포설은 당사자들 사이에 아직 속제로 존재할 뿐이다.

거류민단 유지들은 시장개량에 관해 큰 힘을 발휘했다. 거류민단의 선구자들은 대부분 서문시장 쪽에 거주했다. 그리고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시장도 발전하자 일본인과 접촉이 점점 긴밀해졌다. 특히 지금은 일본인 가운데 출시(出市)하는 사람도 생겨 편리성과 위생상의 문제는 시장개량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게다가 눈비가 오는 날에 대비한 설비가 없어서 허무하게 시장이 쉬는 것은 이해

176) 여기서 '10여리'는 40여km이다. 일본의 1리=4km이다.

득실과 적지 않게 관계된다. 조선인은 장날 간격을 한 주기로 해서 매매하기 때문에 만약 시장이 쉬면 쌀, 탄, 쌀, 소금을 살 곳이 없어 현금을 가지고도 기갈(饑渴)¹⁷⁷⁾을 참아야 한다. 이것이 상설점포 설치를 주장하고 시장개량 운동을 시작한 이유이다. 일본인 시장은 야채 시장이 거류민단 설립 전에 동문 밖(현재의 사카에초(柴町))에 설치되어 야채 경매를 했다. 이곳은 순전한 일본인 시장으로 생산물은 일본인 농가에서 경작·재배한 것이며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일본인이었다. 그러나 거류민단 설치를 전후한 때에는 수요와 공급이 정말 미미했다. 구매자들은 대부분 요리점 영업자 또는 여관이었고 순수 상인은 매우 적었다. 대구 지역의 일본인 농업이 발달함에 따라 대구의 야채가 주로 군대용으로 환영받게 되면서 경성, 용산, 부산, 마산 방면으로 보내졌고, 생산력이 크게 촉진된 나머지 생산 과잉을 초래해 실패한 농가도 적지 않다. 한편 대구의 일본인 시장은 이를 계기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인구의 증가와 운수의 편리는 수요와 공급을 증진시켜 농가가 생산한 채소와 부산·마산에서 이입되는 해산물로 매일 2회 정각에 시장이 열리는 성황을 이루었다.

177) 굶주림과 목마름.

제18장 공원 및 명승지

(달성공원)

달성은 대구의 옛 명칭이다. 현재의 공원은 처음에 성 연못으로 설계되었다고 한다. 산의 요상(凹狀)¹⁷⁸⁾ 주위는 층벽을 이루고 동쪽으로 한 줄기 길과 성문이 위치한다. 전체 면적은 13정보(町步)의 넓은 땅으로



關 公 城 遺

구릉 위에 서면 대구평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가까이는 비슬산이 있으며 멀리는 팔공산 봉우리와 마주한다. 금호강은 동북쪽에서 서쪽으로 돌아 흐르고 뱃사공의 뱃노래가 발아래서 들린다. 봄·여름에는 맥농연면(麥隴連綿)해서 바람에는 취록(翠綠)이 넘치고 그 사이를 점철하는 유채는 그야말로 황금색이 절정을 이루어 황록이 서로 뒤섞인다. 가을에는 달이 밝게 떠올라 성을 가득 비추고 겨울에는 봉우리에 눈이 쌓여서 그 동운(凍雲)과 같은 경치는 달성산에서 영겁무진(永劫無盡)할 조망이다.

청일전쟁 때 일본군은 이곳에서 노영했다. 일본인 거류민이 대구에 모여들자 1905년 4월 대일본인거류민회 부회장 도구라 주로쿠(戶倉十六)는 히자쓰키 마스키치(膝付益吉) 및 기타 유지들과 도모하고 히다카(日高) 수비대장의 조력을 얻어 당시 관찰사였던 이용익과 교섭해 한일 공동의 공원 예정지로 승인하게 했다.

1906년 5월 대신궁요배전(大神宮遙拜殿) 건립을 설계하고 경내

178) 오목한 모양.

지적은 관찰사 서리 박중양이 이를 승인했으며 기부금으로 조영하기로 결정하고 10월 1일에 기공했다. 그리고 11월 3일 천장절(天長節)¹⁷⁹⁾ 가진(佳辰)¹⁸⁰⁾에 낙성식을 거행했다. 건축위원장은 오카모토리헤(岡本利平) 부이사관, 회계위원은 이와세 시즈카(岩瀬靜)였으며 건축비는 2천여원이었다. 공원 설계는 1907년에 착수했다. 우선 창설기관으로서 달성공원기성회를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취의서를 발표했다.

(달성공원 기성회 취의서)

대구는 남한의 대도시로서 경부철도 연선의 최대역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은 실로 3만여 명이며 현재 정치와 경제 기관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말이 달리듯이 문화가 매일 진보하는 상황은 사람들이 잘 아는 바이다. 지금 만일 이 땅의 번영 방법을 찾는다면 많은 제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세우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번영에 있어서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즉 공원을 완비하는 것으로 하나는 주민의 공락지(共樂地)를 조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 이곳에 내유(來遊)하는 사람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 (중략) 대구성 서쪽에 달성산이 있는데 이곳에는 예부터 전설이 있어서 지금도 영산으로 불린다. 1906년중에 이곳에 재류하는 일본인들이 1,700여원을 거출해 아마테라스황태신궁요배전(天照皇太神宮遙拜殿)을 이곳에 만들고 공원을 조성했다. 그 이후 달성산은 더욱 한 줄기 광명을 비추어 이곳에 이르는 사람들이 고귀한 신사를 올려다보면 자연스럽

179) '천장절'은 일본에서 천황 탄생을 축하하는 날. 메이지 시대 초기(1873년)에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1948년에 '천황탄생일'로 개칭되었다.

180) 좋은 일이 있는 날.

게 숙연히 옷깃을 바로잡으면서 일종의 고결한 감정에 휩싸이는데 돌아서서 주위를 보면 어떤 설비도 없고 어떤 화초도 없고 어떤 수목도 없어서 거의 황무지에 가깝다. 이로 인해 춘양태당(春陽臺蕩)¹⁸¹⁾의 기후에도 꽃과 나비를 쫓는 즐거움이 없고 염열(炎熱)이 쏟아지는 가운데 시원한 바람을 쐬 녹음도 없어서 살풍경에 말을 잃게 된다. (중략) 요컨대 여기에 공원을 설비하는 것은 발전상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달성산 일대 지역을 가공해서 단지 조선 남부뿐만 아니라 조선 전체에서 제일등 공원으로 만들 것을 기약하고자 여기에 ‘달성공원기성회’라는 명칭으로 본 모임을 만들었다.

달성공원기성회는 위와 같은 취지로 조직되었다. 설비비 거출 방법으로 복권을 발매했다. 이 방법은 대체로 성공했다. 조선인은 원래 사행심이 많아서 복권을 사는 사람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고 제1회 이래로 항상 성황을 이루어 추첨 당일마다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자연스럽게 일·한 공동 공원의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

기성회 사무소는 처음에 이와세 시즈카의 집에 두었다가 상업회 의소 안으로 옮겼다. 임원은 회두(會頭) 이와세 시즈카(岩瀨靜), 부회두 서병오(서병오(徐丙五), 간사 나카에 고로헤(中江五郎平)·쓰치야 히코타로(土屋彦太郎)·니시모토 다미시로(西本民城)·이석진(李錫珍), 회계 나카자와 텐노스케(中澤傳之助)·스다 산페이(須田三平)이다. 같은 해(1907년) 12월에 기존 임원 이외에 회계감사 2명, 간사 4명을 증원하고 같은 달 18일 총회 선거에서 감사로 도구라 주로쿠와 마사다 고타가 선출되고 간사로 우치다 로쿠로, 야스마쓰 구마키치, 사카이 만지로,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선출되었다.

181) 크고 자유롭고 화창함.

이후 공원 조성은 착착 진행되어 가시덤불을 잘라내고 억새풀을 베어내었다. 그 자리에 벚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종류를 심어 원유(園圍)를 정리하고 도로를 만들어 큰 공원이 조성되었다. 완성하는데에 몇 년이 걸리고 묘목을 보호하고 양성하는 데에 상당한 감독이 필요했지만 야스마쓰 구마키치 간사는 항상 스스로 나서서 일을 맡았다. 오늘날 공원의 미관은 야스마쓰 구마키치의 노력 덕분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그 노고를 인정하는 바이다.

1908년 1월에 대한제국 황제가 이토 히로부미 통감의 보좌를 받아 이곳에 등임(登臨)해서 경상북도의 큰 들판을 전망하신 성사는 달성공원의 명예이다. 계획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500원을 하사하였다. 이후 관광·시찰의 단체여행자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대구를 방문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곳을 찾는다. 민단은 공원을 유일한 유람·오락장으로 삼아 각종 축하 행사, 제반 행사, 기타 운동회 등은 대부분 공원에서 연다. 일요 대제(大祭) 등에는 가족을 거느리고 노니는 사람이 많고 잔디를 깔개로 삼아 행주(行廚)¹⁸²를 연다. 휴식소와 요리점도 두었다.

대신궁요배전이 건립되고 신관(神官) 대기소가 설치되면서 이와 사키 다미야(岩崎田實也)가 이를 맡게 되었다. 민단 신사로서 우지코소다이(氏子總代)¹⁸³를 뽑아 기도 다다지로(城戸唯次郎), 오카다 기하치(岡田喜八), 가미야 도요카쓰(神谷豊功), 사이토 요시조(齊藤芳造), 스다 산페이(須田三平), 가와이 아사오(河井朝雄), 스키하라 신키치(杉原新吉), 사카이 만지로(堺萬次郎)가 뽑혔다.

공원이 점차 체제를 갖추어 제축일에는 수만 명의 군중을 수용하기에 이르자 요배전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올해(1914년)

182) 임금의 음식을 맡아 보던 임시 주방. 음식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의미도 있음.

183) 같은 씨족신(氏子)을 모시는 사람들의 대표.

별도로 높은 땅을 선정해서 장엄함을 지니도록 요배전 신축계획을 세웠고 정면 높은 곳에 건축해서 참배자가 첨앙(瞻仰)¹⁸⁴하는 곳이 되었다. 현재 신관은 후지이 유지(藤井勇次)가 봉사한다.

대구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따라서 명승지로 특필하기에 족한 것이 적다. 그러나 근고(近古)의 사료로서, 그리고 민단 발전의 연혁으로 참고할 만한 것이 없지는 않기에 다음에 그 개략을 적는다.

(망경루)

옛 성벽 북쪽 경성 가도와 면하는 곳에 있다. 성벽철거와 함께 도로 개수가 진행되어 지금은 기념건축물로서 달성공원에 이축했다.

(철성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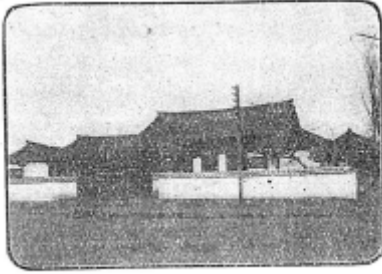
니시키초(錦町)의 한 면으로 철도용지 안에 있다. 7개의 큰 돌이 노목 사이에 흩어져 있는데 마치 거암 같다. 조선인의 전설에 따르면 북두칠성의 유운(流隕)이라고 한다. 이곳을 ‘칠성리’라고 부른다. 민단은 ‘철성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니시키초 유지들이 보존·수리를 꾀했지만 철도 확장으로 철폐되었다.

(공자묘)

공자묘는 각 군 여러 곳에 반드시 세워서 봄가을로 두 번 대제를 올리는데, 그 유지비는 토지를 부여해 그 수익금으로 충당하게 했다. 이는 조선 전체 13개도 모두 같다. 대구 공자묘는 건축이 장엄하고 규구준승(規矩準繩)¹⁸⁵에 맞는다고 한다. 송나라 주희가 북

184) 우러러 봄.

185) 사물의 준칙.



廟子孔

으로 쓴 명륜당(明倫堂)의 편액을 걸었다.

(영귀정)

경주 가도와 철도노선 사이에 있다. 예부터 유생들의 풍영강문(諷詠講文)의 장소로

제공되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름이다. 천원(泉源)¹⁸⁶이 연연(涓涓)¹⁸⁷하게 지소(池沼)¹⁸⁸에 가득 차서 유수한 아취가 있다. 관유물 경매 때 일본인 소유가 되었고 지금은 ‘도스이엔(刀水園)’이라는 이름이다.

(동화사)

팔공산 안의 고찰로서 보존 건축물로 지정되었다. 대구 시외로 5리나 떨어진 곳임에도 지팡이를 짚고 찾는 사람이 많다. 경내는 넓고 나무가 우거져서 금수들이 많고 균심(菌蕈)¹⁸⁹이 난다.

(우록동)

부산 가도 팔조령 밑에 있다. 합촌 모두 김씨 성으로 동족이다. 종가가 창설한 모하당(慕夏堂)이 있다. 『모하당문집』 원본을 지금도 소장하고 있다. 문집에 기술된 계보와 전기에 선조 김충선은 일본인이고 ‘분로쿠의 전쟁(임진왜란)’ 때 조선에 투항했다고 하는데

186) 샘의 근원.
 187) 시냇물 따위의 흐름이 가늘.
 188) 연못과 늪.
 189) 버섯.

그 말하는 바가 황당해서 견주어 논의할 방법이 없다.

(용연사)

비슬산에 있다. 맑은 샘물이 솟아나서 한여름 납량에 좋다. 조선인은 이 물을 약수라고 부르면서 마시기도 하고 목욕을 하기도 한다. 경내는 임조(臨眺)¹⁹⁰의 경치가 뛰어나고 대구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대구는 원래 신라에 속했고 신라는 경주를 도성으로 삼아 ‘동경(東京)’이라고 불렀다. 이에 역사상 고적은 경주가 제일이다. 대구를 거쳐 가는 많은 사람이 반드시 경주를 탐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를 운행해 탐승(探勝)¹⁹¹이 매우 편리해졌다.

190) 높은 곳에서 바라봄.

191)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님

제19장 적십자사 및 애국부인회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 대구지부)

1906년 12월에 일본적십자사 한국특별위원부의 대구위원지부로서 창립된 것이 대구적십자사 사업의 효시이다. 때는 거류민단 설치 다음 달이고 이사청 안에 사무소를 두고 업무를 개시했다.

1907년 1월에 위원장으로 나카오지 마사오, 위원부장으로 오카모토 리헤, 가게야마 히데키 세 사람이 취임했고 같은 해 2월에 아래 인물들이 협찬위원으로 뽑혔다.

스다 산페이(須田三平), 도구라 주로쿠(戸倉十六), 이와세 시즈카(岩瀨靜), 이노우에 다츠지로(井上達次郎), 와타나베 히사사(渡邊比), 시모타 고키치(霜田語吉),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마에카와 도모지(前川知二), 사카이 만지로(堺萬次郎), 쓰치야 히코타로(土屋彦太郎), 구로카와 원지(黒川園治), 박중양(朴重陽), 나카에 고로헤(中江五郎平), 마스다 고타(増田虎太), 이즈미 스에지(泉未治), 마치다 규고(町田久吾), 나카자와 덴노스케(中澤傳之助), 가와이 아사오(河井朝雄), 쓰지 원지로(辻圓次郎), 후지나와 분준(藤蠅文順)

1907년 8월에 나카오지 마사오 이사관이 목포로 전임하면서 후임 우지노 도쿠타로(氏野德太郎) 이사관이 위원장이 되었다. 1908년 4월에 기존 위원부 규칙을 개정해 통감부 소재지에 한국총위원부를 두고 이사청 및 관찰도 소재지에 위원부를 두면서 위원지부는 대구위원부로서 총위원부에 예속되었다. 그리고 같은 달 28일에 제 1회 사원총회를 열었다.

1908년 6월에는 우지노 이사관이 전임하면서 신임 히사미즈 사부로(久水三郎) 이사관이 위원장이 되었다. 기타 임원도 새롭게 선출해서 부원장으로 박중양, 다케우치 간타로, 유아사 히데토미(湯淺秀富) 세 사람이 취임했고 협찬위원은 아래와 같았다.

스다 산패, 도구라 주로쿠, 마에카와 도모지, 나카에 고로헤, 나카자와 텐노스케, 이와세 시즈카, 사카이 만지로, 마스다 고타, 가와이 아사오, 쓰지 원지로, 시모타 고키치, 구로카와 원지, 마치다 규고, 후지나와 분준, 와타나베 히사, 오구라 다케노스케, 이시이 미츠오(石井光雄), 다케가와 세지, 시부사와 슈조(澁澤周藏), 무카이 자카 쇼키치(向坂庄吉), 야스마쓰 구마키치, 가토 이치로(加藤一郎)

1909년 6월에 히사미즈 사부로 이사관이 전임하면서 후임으로 온 노세 다츠고로(能勢辰五郎) 이사관이 위원장이 되었고 부위원장은 다케우치 간타로, 오카다 센쥬(岡田宜壽), 최린용(崔麟溶) 세 명이 취임했다.

1909년 7월 23일 한국적십자사관제규칙 폐지의 칙령이 공포되면서 경성일본적십자사 한국본부를 설치하고 대구위원부는 대구지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1910년 3월에 협찬위원을 새로 선출해 다음과 같이 당선되었다.

마에카와 도모지, 시라타 신스케(白田新助), 이와세 시즈카, 가와이 아사오, 후지나와 분준, 와타나베 히사, 가토 이치로, 다케가와 세지, 야스카와 와사부로(安川和三郎), 이케가미 시로(池上四郎), 야스마쓰 구마키치, 오자키 시즈오(尾崎巖雄), 사카이 만지로, 기무라 다케타로, 마스다 고타, 고레자와 신이치로(是澤眞一郎), 와타나베

무라오, 가와카미 쓰네오, 이쿠하시 요네지로(生橋米次郎), 히구치료(樋口亮), 기타무라 고시치로(北村五七郎), 마츠시타 나오미(松下直美), 고이케 쇼자부로(小池鐘三郎)

1910년 5월 24일에 제2회 사원총회를 대구이사청 구내에서 열었다. 이날 본사 간부 가운데 이시구로 다다노리(石黒忠憲) 군의총감이 조선으로 건너와 입장했고 조선 총위원부에서 후지타 히데아키(藤田嗣章) 군의감이 출석했다. 동시에 애국부인회 회원총회를 열어 이시구로 군의총감 및 후지타 군의감의 유익한 강연이 있었다. 적십자사 사업 및 애국부인회 사업의 신성함과 인자함을 천명해 사원 및 회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면서 성황을 이루었다.

1910년 8월 '일·한병합'과 함께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 대구지부를 신설하고 경상북도청 안에서 사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조선본부 대구지부는 대구위원부(大邱委員部)로서 종전과 같이 대구부청 안에서 사무를 보았다.

같은 해 12월에 다케자키 로쿠지로(竹崎六次郎)가 대구위원부 위원장이 되었고 이진호(李軫鎬)가 대구지부 지부장이 되었으며 사이토 레조(齊藤禮三)가 지부부장(支部副長)이 되었다.

1911년 8월에 대구지부는 대구위원부 사무 전부를 승계하고 대구부를 직할하며 각 군에 위원부를 설치해 각 군수들에게 위원부장을 맡게 하는 동시에 지부장 이하를 임명하게 했다. 그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부장 : 이진호

지부부장 : 가사오카 마스지로(笠岡増次郎), 다케자키 로쿠지로, 마츠모토 시게마사(松本繁正), 사사키 쇼타, 오츠키 미마로(大槻三鷹)

지부사무위원 : 다카다 간고(高田官靑), 다카하시 유자부로(高橋又三郎), 아리가 도요노신(有賀豊之進)

협찬위원 : 기쿠치 겐조, 야스카와 와사부로, 가와이 아사오, 이와세 시즈카, 오구라 다케노스케, 요시타케 기네오, 고무로 류노스케(小室龍之助), 신석린(申錫麟), 스와 겐타로(諏訪善太郎), 후지나와 분준(藤蠅文順), 이케가미 시로(池上四郎), 에사키 쓰네토(江崎恒人), 가나모리 리쿠사부로(金森力三郎), 오자키 시즈오, 야스마쓰 구마키치, 이토 기치자부로, 이토 겐타로, 나가이 고타로(永井幸太郎), 우타바라 코(歌原恒), 미카지리 추고(三ヶ尻忠靑), 하라다 다카히로(原田隆弘), 하야시 세사쿠(林清作), 가토 이치로(加藤一郎), 정재학, 이일우, 정해봉, 이종면(李宗勉), 최만달(崔萬達), 박기돈(朴基燾), 진희규(秦喜葵), 장상철(張相轍), 서상규(徐相奎), 박성환(朴星煥), 모리시마 야시로(森島彌四郎), 하야카와 도쿠이치(早川篤一), 고무타 주타로(小牟田十太郎), 서병조, 하야시 다케조(林武三), 서병규(徐丙奎), 깃카와 가즈히코(橘川克彦), 마루야마 도시코(丸山利寅), 와키노 요시오(脇野義雄), 나카니시 기쿠오(中西喜久男), 최중윤(崔鍾允), 우에마츠 세이치(植松正一)

1913년 11월 16일에 이전 한국총위원부 대구지부를 조선본부 대구지부로 갱신한 이래로 제1회 사원총회를 열었다.

적십자사 지부는 원래 본사에 통일되어 사업을 대성(大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부 경비 전체의 50%를 각 군위원부 경비에 충당하고 있다.

대구지부가 직접적으로 군대나 그 밖의 것에 대해서 진력한 사항을 꼽자면 1908년 3월 고(故) 고마즈미야(小松宮) 전하의 동상 기부금 모집에 진력해 건설비에 금전을 기부하고, 1909년 3월에 한국

황제 폐하에게 기념 그림엽서 2천장을 헌상했으며, 같은 달 육군기념일에 마찬가지로 군대에 기부했다. 이 밖에 매년 주차(駐筭)·과건 군대를 송영하고 이를 위문하는 데에 노력했다. 사원수는 매해 증가해 현재 각종 사원 통계는 다음과 같다.

***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 대구지부 사원 수, 1914년 3월말 조사**

종별	특별사원	수신사원	정사원	계
일본인	4	178	496	678
조선인	5	24	477	506
합계	9	202	973	1,184

(애국부인회 조선본부 대구지부)

1907년 3월에 애국부인회 한국특별위원회 대구위원지부를 창립하고 적십자사에 수반해서 행동했다. 총회도 항상 적십자사 대구지부와 함께 열었다. '일·한병합'과 함께 '한국'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을 '조선'으로 고친 것은 적십자사와 마찬가지로 수입·지출 상의 출처 및 지불도 동일하다. 1911년 8월에 임원을 새롭게 선출한 이후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임원 성명은 다음과 같다.

지부장 : 나가시마 히사코(永島ひさ子)

상담역 : 사사키 쇼타, 다케자키 로쿠지로

부지부장 : 사사키 사치코(佐々木幸子), 마츠모토 사다코(松本貞子), 다케자키 코코(竹崎郷子), 요시무라 다에코(吉村玉枝子)

사무위원 : 다카다 간고, 다카하시 유자부로, 아리가 도요노신

협찬위원 : 오카모토 스테코(岡本ステ子), 요시무라 치요코(吉村知世子), 가와이 치카코(河井チカ子), 사사오카 히사노코(笹岡ヒサノ子),

아사다 기쿠코(淺田キク子), 야나기사와 테이코(柳澤テイ子), 야스카와 나나코(安川七代子), 기타무라 미츠코(北村光子), 기쿠이케 우메코(菊池梅子), 후지나와 야에코(藤蠅八重子), 도쿠라 다미코(戸倉民子), 아리마 나루코(有馬ナル子), 고다마 소시코(兒玉ソシ子), 무토에즈코(武藤悦子), 모리시마 미츠코(森島美津子), 가츠라 요시코(桂ヨシ子), 사이토 이와오코(齊藤いはほ子), 아라카와 구니코(荒川くに子), 시모야마 마사코(下山昌子), 하라다 후지코(原田フジ子), 다카라 쓰네코(高羅恒子), 기무라 마사코(木村満佐子), 스기하라 히사코(杉原ひさ子), 다카다 요시코(高田芳子), 히구치 도미코(樋口とみ子), 다니 리마코(谷リマ子), 엔다 긴코(圓田銀子), 시게토미 세키코(重富セキ子), 다카하시 유리코(高橋ゆり子), 나카지마 소메코(中島そめ子), 고무타 고토코(小牟田琴子), 다케무라 미사오코(竹村ミサヲ子), 아카이 유에코(赤井由恵子), 스와 후미코(諏訪フミ子), 이토 테즈코(伊藤テツ子), 요시다케 모토코(吉武モト子), 우에마츠 사에코(植松覺榮子), 니시자와 아사코(西澤あさ子), 치바 기쿠요코(千葉久代子), 야코 하루이코(赤穂はるい子), 야마모토 데루코(山本照子), 구보타 루이코(久保田類子), 오쿠보 후사코(大久保フサ子), 깃카와 쓰네코(橘川ツネ子), 최숙자(崔淑子), 박강자(朴康子), 정남표(鄭藍表), 서주원(徐周原)

(애국부인회 조선본부 대구지부 회원 현재 숫자. 1914년 3월말 조사)

종별	유공장패용 (有功章佩用)	특별종신	특별	통상수신	통상	계
일본인	3	26	77	23	280	409
조선인	-	-	11	-	10	21
합계	3	26	88	23	290	430

애국부인회는 적십자사와 제휴해서 군대 및 기타 사업에 매진하던 중에 1908년 10월에 폭도 토벌에 종사한 군대·헌병·경찰관을 위문하고 1909년 3월 함경남도의 기근에 구휼금을 기증했다. 1910년 8월에 파견대 대구주둔군의 병든 병사를 위문하고 매년 수비병 교대 때는 친절하게 송영하여 거류민 부인들의 모범이 되었다.

제20장 재판·경찰 및 수비

(재판)

조선의 재판은 한국시대에 고문제도에 따라 사법권이 위임되었고 이후 총독부 재판소로 변천했다. 한국시대에 거류민에 대한 재판은 이사청에서 제1심을 진행하고 경성의 법무원에서 종심(終審)¹⁹²⁾을 진행했다. 이사청 재판은 이사관과 부이사관을 재판관으로 했고 이사청 직원을 검찰관으로 했다. 부이사관은 많은 경우 법학 출신자들이었지만 이사관은 대부분 외무성 출신, 즉 영사 또는 공사관원이었고 가끔 일본 본토 지방행정관에서 등용된 사람이 있어서 당시 재판은 종종 격화소양(隔靴搔痒)¹⁹³⁾의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사청 재판은 일본 본토의 옛 치안재판소 분위기가 있어서 대부분 권해주의(勸解主義)¹⁹⁴⁾를 취했는데, 이것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 가운데 하나의 장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사법권을 통감부에 위임한 후 4종 재판제도로 바뀌어 고등법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구재판소(區裁判所)를 두었는데 1912년 제령(制令)으로 조선총독부 재판소령을 개정해 지방법원, 복심법원, 고등법원 3단계로 줄이고 별도 부지가 필요함에 따라 지방법원 지청을 두기로 했다. 제1심 재판은 모두 지방법원, 제2심 재판은 모두 복심법원, 제3심 및 특별사건에 한해서 고등법원의 관할 하에 두었으며, 제1심 재판은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특정 주요 사건에 한해서 3인의 판사로 조직된 부(部)에서 합의재

192) 법원의 최종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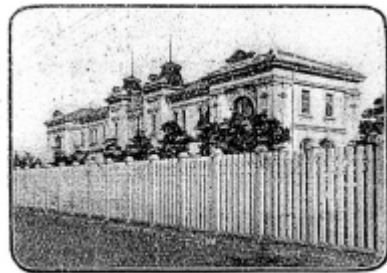
193)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여 매우 안타까운 상태. 답답하여 안타까움.

194) 메이지시대 전기 민사재판 제도. 프랑스법의 conciliation을 도입한 것인데, 일본 전근대 시대의 내제(內濟)의 요소도 있다. 제3자가 분쟁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참작하면서 쌍방을 설유해서 화해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함.

판(合議裁判)을 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대구는 처음에 구 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원을 열었다가 재판소령 개정 후에 복심법원, 지방법원 두 체제로 되었다.

조선에서 시행하는 법률은 병합 후에 당연히 제국의회 협찬을 거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본토와 조선은 문명과 야만의 차이가 있다. 또 민의 정서가 달라서 1910년 칙령으로 조선에서 법률이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제령’이라고 칭하여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칙재(勅裁)¹⁹⁵⁾를 청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일본 본토 현행 법률은 조선에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조선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대구복심법원은 경상남북도
와 전라남북도 4개 도를 관할
하며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
법원, 광주지방법원의 제2심
재판소이다. 따라서 민형사
상소 사건은 조선 남부 모든
지역에서는 대구로 상소했고,



大邱覆審法院

그 때문에 대구감옥은 항상 2천명 이상의 수인을 수용했다. 공소원 시대에 원장은 도이 요타로(土井庸太郎), 검사장은 구로카와 조(黒川穰)가 맡았다. 이후 도이 원장은 나가시마 이와오(永島巖)로 교체되었고 이어서 현재 복심법원장인 나카야마 가즈노스케(中山勝之助)가 임명되었다. 현재 지방법원장은 야나기사와 사고로(柳澤佐五郎)이고 오무라 오시로(大村大代)가 검사장이다.

195) 입금이 옳고 그림을 가림. 이 경우는 천황.

(경찰)



大邱警察署

조선의 경찰 연혁은 참고할만한 기록이 없어서 대구 경찰 사무 이전 상황은 판단할 수 없지만 1894년까지는 진영(鎭營)¹⁹⁶이 경찰 사무를 담당했고 관찰도의 직할이었다. 1895년에 대구부 경무서 및 7개 지소를 설치했고 1905년 3월에 대구경찰서로 개칭했다. 1905년 7월 경무고문부 설치와 함께 경무보좌관, 경무보좌관보, 경무보좌보조원을 배치하고 같은 해 8월에 대구경무서를 경상북도경무서로 바꾸면서 1906년 1월에 경무보좌관사무소를 경무고문지부로 개칭했다. 그리고 거류민 보호를 위해 이사청경무서가 존재했는데 1907년 7월에 '일한협약'을 체결하면서 보좌관 이하의 일본인은 통감의 추천으로 순연(純然)한 한국정부 관리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이사청 경찰을 폐지하면서 해당 사무는 한국정부 용빙(傭聘)¹⁹⁷의 경찰 관리가 이를 다루게 되었다. 1909년 6월 사법권 위임과 함께 경찰사무도 일본제국에 위임되었고 1910년의 '일한병합'에 따라 현재 제도로 바뀌었는데 경찰부 소속이 된 것은 병합 이전인 1910년 6월이다.

(청사)

이씨 조선 개국 502년 무렵에 중영으로 건설된 가옥이 제승당(制勝堂)인데 이곳이 바로 전 거류민단 사무소였다. 1908년 10월 십자

196) 조선 시대에 각 도의 감영이나 병영, 수영의 관할 하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둔 군영.

197) 사람을 쓰려고 맞아들임.

로 요지에 현재 청사를 신축 기공하고 1909년 5월에 낙성해 6월 24일에 이전했다. 같은 해 12월에 개소식을 거행했다.

1907년 3월에 통감부에서 북문과출소를 설치하고 대구이사청경찰서 과출소로 했는데 이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 서문 수문(守門)의 직방(直房)도 경무서에서 수용해 순검지소로 사용했는데 현재는 서문과출소이다.

1907년 10월 조선 탁지부(度支部)가 건설한 관사를 1908년 7월에 인계해 서장관사로 쓰다가 같은 해 11월에 증축했다. 이어서 1909년 11월 경무관사를 신축하고 별도로 조선 구관사를 순사 숙소로 충당했다.

(직원)

1905년 7월 이이다 아키라(飯田章) 경시가 경무보좌관으로 부임했다. 같은 해 7월에 장우근(張宇根) 경무관이 대구 경무부장에 보해졌다가 같은 해 11월 경무청으로 전임했다.

1906년 8월 박준효(朴準孝) 경무관이 대구 경무서장에 보해졌다.

1907년 7월 이이다 아키라 보좌관이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고 나가타니 다카시(永谷隆志) 경시가 보좌관에 임명되었다.

1908년 1월 나가타니 다카시 보좌관은 경시청으로 전근을 가고 시마다 분노스케(島田文之助) 경시가 보좌관에 임명되어 대구경찰서장을 겸했고, 박준효 서장은 하급 관료가 되었다.

같은 해 7월에 시마다 분노스케 경시가 전임하고 유아사 히데토미(湯淺秀富) 경시가 이를 대신했다.

같은 해 8월에 아마노 쇼시로(天野章四郎) 경부가 대구경찰서장으로 전임했다.

같은 해 10월에 아마노 쇼시로 서장이 경시 승진과 동시에 전임

하고 고레사와 신이치로(是澤眞一郎) 경시도 전임하면서 안도 쇼지로(安藤正次郎) 경부가 서장에 보해졌다.

1912년 4월에 안도 쇼지로 서장이 경시로 승진해 전임하고 고무타 주타로(小牟田十太郎) 경시가 서장에 보해져 지금에 이른다.

고무타 주타로 서장은 민단을 위해 섬세하게 진력하면서 위생조합과 소방조(消防組) 등의 사업에 전력을 경주하면서 그 완성을 위해 노력했다.

(경무부)



部令司除遣派朝鮮時臨

구 한국경찰은 기존에 주차(駐筭)¹⁹⁸한 제국헌병대(帝國憲兵隊)와 함께 치안 임무를 맡았지만 그 계통은 달라서 보조를 맞추기가 어려웠다. 한편 비도, 초적, 상섬(尙職)이 소멸하지 않

은 시대에 경무기관의 통일은 급무여서 1910년 6월 조선의 경찰사무를 제국정부에 위임했다. 동시에 제국 정부는 칙령으로 신경찰제도를 제정하고 경무총장은 조선주차헌병의 장관인 육군장관 아카시(明石) 소장이 맡도록 했다. 경무통감부를 총독부에 두고 각 도에는 경무부를 두었다. 헌병의 장인 좌관(佐官)을 임명하였고 이시이 소좌(石井少佐)가 함흥에서 내임했다. 같은 해 12월에 미네(三根) 소좌가 이를 대신했고 1911년 12월에 가사오카(笠岡) 소좌가 새로 부임했다. 가사오카 소좌는 1912년 11월 중좌(中佐)에 임명되어 현재 경무부장으로 열심히 치안 임무를 맡고 있다.

198) 외국에 직무 상 주재함.

(수비)

거류민 보호기관이 없던 시대에는 전신 및 철도 보호 헌병에 겨우 기대어 구안(苟安)¹⁹⁹⁾을 지켰다. 이후 주둔군이 처음 대구에 온 것은 1904년 7월로 1개 소대를 두었다가 8월에 중대가 되었다. 히다카(日高) 대위가 대장이었다. 1907년에 한국 군대가 해산되고 일본제국 군대가 폭도 토벌을 담당했으며 대구는 제12여단이 파견되어 사령부를 두면서 남한 폭도 토벌의 중심기지가 되었다. 요다(依田) 소장이 내임했지만 병으로 귀환하고 쓰네키요시 다다미치(恒吉忠道) 소장이 이를 대신했다. 제14연대장은 기쿠치(菊地) 대좌가 맡고 제10중대장은 다카야나기(高柳) 대위가 맡아서 수비 임무를 담당하면서 민단 경영을 잘 도왔다.

1909년 7월 제12여단이 귀환 명령을 받으면서 재임 2년간 민단을 지켜주던 장졸은 대구를 떠났다. 이어서 새롭게 임시 조선파견대 사령부를 두면서 와타나베(渡邊) 소장이 사령관으로 내임했고 1910년에 만기 퇴역했다. 이시다(石田) 소장이 제2사령관으로 파견되어 왔고 이어서 구노(久能) 소장이 왔으며 현 사령관이다.

경찰 및 수비 임무는 그 직책이 중대한테 과도기 시대에는 어려움이 보통이 아니었다. 조선인은 미개한 구습으로 문명사회의 시설을 몰라 오해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회유하는 동시에 다른 한 편에서는 징계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은혜와 위엄이 함께 이루어져 조선인이 잘 복종하고 현재의 정밀(靜謐)²⁰⁰⁾을 보게 된 것은 당국이 다년간 노력한 덕분이고 그 공적은 치안상 특별해야 할 사항이다.

199) 한때 겨우 편안함

200) 고요하고 편안함.

제21장 상업회의소

대구상업회의소 창립은 1906년 12월 7일이며 ‘대구일본인상업회의소’라고 이름 붙였다. 창립 위원은 대구이사청에서 지정해 정관 작성 및 설립 준비를 담당했고 아래 13인을 축탁했다.

이와세 시즈카, 이노 에스케(井野英助), 이즈미 스에지, 오키타 스테지로(沖田棄次郎), 가미모리 겐자부로(神守源三郎), 와타나베 히사사(渡邊比), 가미야 도요카쓰(神谷豊功), 쓰치야 히코타로(土屋彦太郎), 나카자와 덴노스케(中澤傳之助), 나카에 고로헤, 야스마쓰 구마키치, 마스다 고타, 스기하라 신키치

창립위원의 호선으로 쓰치야 히코타로가 위원장이 되고 오키타 스테지로가 사무주임을 맡아 정관을 작성했다. 오카모토 리헤 부이사관의 인가를 거쳐 상업회의소 성립을 알리고 서문 안(현재 혼마치(本町) 1정목)에 설치했다. 오키타 스테지로가 임시사무주임, 고미야 히코지(小宮彦次)가 임시사무원으로 일했다.

1907년 1월 22일 제1기 의원선거를 실시하여 27일에 특별의원을 선출했다. 의원 전원이 취임했기 때문에 임원 선거를 해서 이와세 시즈카가 회두(會頭), 아오키 시게노부(青木重信)가 부회두에 취임했다. 31일에 이노우에 슈노스케(井上宗之助)를 서기장에 선임했다.

1907년 4월 30일에는 대구곡물수출상조합(大邱穀物輸出商組合) 사무소를 병치해 사무 축탁에 응했다. 같은 해 8월 1일에 달성공원기성회의 희망에 따라 기성회 사무소를 병치하고 그 사무를 보조했다.

1908년 2월에 이와세 시즈카 회두가 사직함에 따라 아오키 시게노부 부회두가 회두 업무를 집행(攝行)²⁰¹했다. 이어서 임원 선거에

서 다케가와 세지(武川盛次)가 회두에 당선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하고 부회두인 사카이 만지로(堺萬次郎)가 1909년 3월까지 대리했다.

1908년 7월에 이노우에 슈노스케 서기장이 불신임으로 사직해 고미야 히코지 서기를 서기장 직무대리에 임명했다.

1909년 3월에 사카이 만지로 부회두가 사직하면서 정·부회두 모두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두 보결선거를 실시해 와타나베 히사사(渡邊比)가 당선되었다. 같은 달 의원 반수의 개선과 임원선거를 실시해서 다케가와 세지가 회두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그는 제일은행 대구출장소 지배인으로서 은행 규칙이 용인하지 않아 취임하지 못하고 부회두 당선자인 야스마쓰 구마키치가 회두 대리가 되었다. 같은 달 고미야 히코지 서기장 직무대리를 서기장으로 승진시켰다.

1910년 임원선거 결과 이와세 시즈카가 당선·취임했고 이후 거듭 선출되어 중임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10년 6월 21일 모토마치(元町) 4정목으로 이전해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민단 폐지 후 민단 사무소 터로 이전을 내정했다.

본 상업회의소는 '대구일본인상업회의소'라고 부르는데 '일한병합' 후에는 그 명칭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1910년 9월 3일 이사관의 인가를 거쳐 '대구상업회의소'로 개칭했다.

1911년 12월 고미야 히코지 서기장이 사직하면서 쓰쓰미 야스시(堤保) 서기를 서기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201) 일이나 통치 따위를 대신 행함

(대구상업회의소 중요 사항)

(1907년)



氏 靜 瀨 岩 頭 會

3월 17일. 동아연초주식회사(東亞煙草株式會社) 아카마(赤間) 경성지점장은 관연특약 판매점(官煙特約販賣店) 설치에 관한 요건을 가지고 대구에 왔다. 이와세 시즈카 회두는 절실하게 설치 필요성을 설명했고 아카마 지점장도 승인했다.

4월 5일. 대구보세화물창고(大邱保稅貨物倉庫) 설치를 탁지부에 청원해서 7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희망을 관철했다.

6월 4일. 이와세 시즈카 회두는 나카오지 마사오 이사관, 가게야마 히데키 민장, 오바타케(大畠) 경찰서장 일행과 함께 현풍, 고령, 성주의 상업 및 운수 상태를 시찰했다.

10월 16일. 현 천황 폐하가 아직 황태자이셨을 때 조선에 건너와 경성에 도착하자 이와세 시즈카 회두는 송영(送迎)을 위해 경성으로 갔다. 당시 재조선상업회의소연합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업전통용금지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1908년)

1월 21일. 임시상업회의소연합회를 도쿄에서 열었다. 이와세 시즈카 회두가 출석했다.

9월 26일. 위조 엽전의 유통이 빈번하자 재무감독국에 구장(具狀)²⁰²을 제출해서 단속에 관한 의견을 개신(開申)²⁰³했다. 재무감독국은 곧바로 경찰서 및 각 재무서에 통첩해서 단속에 대한 주의

202) 상세하게 적어 구신하는 글.

203) 내용이나 사정을 밝혀 이야기함.

를 주었다.

10월 24일. 재조선일본인상업회의소 연합회를 경성에서 열었다. 사카이 만지로 부회두, 고미야 히코지 서기장 직무대리가 출석했다.

11월 7일. 대구곡물수출조합 야스마쓰 구마키치 부조합장, 고미야 히코지 서기장 직무대리는 야마오카(山岡) 부산세관장이 세관장 회의로 상경하는 것을 청도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구에 세관출장소 설치를 희망한다고 설명하고 9일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1909년〉

1월 7일. 한국 황제의 남순행(南巡) 때 대구에 주필(駐蹕)²⁰⁴하였다. 상업회의소는 향로 한 기를 헌상했다. 같은 달 13일에 궁내부(宮內府)에서 500원을 하사한다는 목록을 수령했다.

5월 13일. 임시총회 결의를 거쳐 한국정부가 신세로 부과할 가옥·주조·연초 세 가지 세금에 대한 면제청원운동을 개시했다. 거류민단 위원들과 힘을 합쳐 오자키 시즈오 의원을 위원으로 해서 같은 달 16일 소네 아라다케 통감이 도쿄로 돌아가는 것을 추풍령에서 맞이해 진정했다.

8월 4일. 대구이사청을 거쳐 세관출장소 설치 청원서를 제출했다.

9월 14일. 이날부터 경성에서 재한일본인상업회의소 연합회가 열렸다. 고미야 히코지 서기장이 출석했다.

10월 20일. 『대구상업월보(大邱商業月報)』를 발행했고 이후 매월 정기 간행되었다.

〈1910년〉

대구와 경제적 관계가 깊은 안동 방면 도로의 개수 필요성을 인

204) 임금이 나들이하는 도중에 거가를 잠시 멈추고 머무르거나 묵는 일

정해 야스마쓰 구마키치 부회두, 구로카와 엔지 의원과 가토 이치로 의원, 고미야 히코지 서기장, 기타 유지 10여명이 대구-안동 간 도로를 시찰하기 위해 2월 16일 대구를 출발해 같은 달 23일 다시 대구로 돌아왔다. 이어서 '대구-안동도로기성회(邱安道路期成會)'를 조직했다.

3월 16일. '대구-안동도로개수청원서'를 내부(內部)에 제출하자 4월에 기사를 파견해 조사한 후 10월에 공사를 시작했다.

경상북도 관찰도는 조선인 유력자들의 일본관광단을 조직해 상업회의소에 지도를 위촉했다. 이와세 시즈카 회두, 고미야 히코지 서기장이 일행에 참가했다. 5월 30일에 출발해 나고야, 도쿄, 교토, 오사카를 둘러보고 6월 14일에 대구로 돌아왔다.

11월 11일부터 교토에서 개최된 항례 상업회의소 연합회에 아래 의안을 제출했다.

- 1) 조선총독부 철도국 관내 화객 운임률 인하를 당국에 청원하는 건
- 2) 곡물 및 종자에 대한 이출입세 면제를 당국에 청원하는 건

〈1911년〉

4월 20일. 전국 상업회의소연합회가 경성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와세 시즈카 회두, 고미야 히코지 서기장이 출석했다.

〈1912년〉

2월 26일. 연료에 대한 철도운임 경감 청원서를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 오야(大屋) 철도국 장관에게 제출했다. 4월 16일부터 석탄과 코크스 운임 인하가 실시되었다.

4월 3일. 대구신문사와 공동 주최로 점원 위안을 목적으로 운동회를 열었다.

7월 26일. 경성에서 상업회의소연합회를 열었다. 쓰쓰미 야스시 서기장 심득이 출석해 아래 2개 안건을 제출해 가결되었다.

- 1) 조선철도 주요역에서 조선간 왕복 할인승차권을 발매할 것을 당국에 요망하는 건
- 2) 시장세금 전폐에 관한 건의 건

9월 19일. 대구-안동간 도로 개수를 신속히 실행할 것을 총독 부 및 경상북도청에 청원하는 동시에 관계 지방의 경제조사서를 첨부해 설명했다.

〈1913년〉

7월 15일. 총회 결의를 거쳐 점원 공로·표창 규칙을 제정했다.

11월 10일. 『대구요람(大邱要覽)』에 부록으로 첨부할 상공인 인명록을 발행해 대구의 발전 상황을 회사에 소개했다.

◎ 임원, 직원 및 사무원

대구상업회의소 회두는 1년을 임기로 한다. 제2기에 이와세 시즈카가 당선되었다. 그가 사직하자 다케가와 세지(武川盛次), 와타나베 히사(渡邊比) 두 사람이 보결로 제2기 회두가 되었다. 제3기는 회두가 결원인 채 부회두가 대리했다. 제4기부터 이와세 시즈카 회두가 연이어 재임했다.

부회두는 아오키 시게노부(青木重信), 사카이 만지로(堺萬次郎), 야스마쓰 구마키치(安松熊吉), 야스마쓰 구마키치 중임, 마치다 규고(町田久吾), 야스마쓰 구마키치 중임, 나카에 고로헤(中江五郎平)였다. 상설위원은 나카자와 텐노스케(中澤傳之助), 오노 미네지로(大野峰次郎), 와카바야시 세스케(若林誠助), 기무라 다케타로(木村竹太郎), 가와이 아사오(河井朝雄), 구로카와 원지(黒川圓治), 마에

카와 도모지(前川知二), 사카이 만지로, 오자키 시즈오, 사토 슈조(佐藤周藏), 마치다 규고, 야스마쓰 구마키치, 무카이자카 쇼키치(向坂壓吉), 나카에 도미주로(中江富十郎), 미즈하시 에타로(三橋榮太郎), 미카지리 추고(三ヶ尻忠吾), 사카모토 순지(坂本俊資)가 교대로 맡았다.

특별위원으로 취임한 사람은 쓰치야 히코타로(土屋彦太郎), 이즈미 스에지(泉末治), 다케카와 세지, 이시이 미츠오(石井光雄), 야스카와 와사부로(安川和三郎), 이케다 가키치(池田嘉吉), 이즈미 겐타(飯泉軒太), 나카에 고로헤, 하라다 다카히로(原田隆弘), 가토 이치로(加藤一郎)였다.

의원은 제1기 이후 제8기에 이르렀다. 중임자가 매우 많았다. 의원 성명은 다음과 같다.

이노우에 다츠지로, 아오키 시게노부, 기무라 다케타로, 와타나베 히사, 이와세 시즈카, 오노 미네지로, 다무라 도미조(田村富藏), 나카자와 덴노스케, 나카에 고로헤, 야스마쓰 구마키치, 가와이 아사오, 와카바야시 세스케, 요시다 사시치(吉田佐七), 오구라 다케노스케, 후쿠나가 도쿠지로(福永徳次郎), 우에다 겐스케(上田謙助), 사카이 만지로, 와게 헤지로(和氣平次郎), 가토 이치로(加藤一郎), 구로카와 엔지(黒川圓治), 마에카와 도모지, 사토 슈조, 무카이자카 쇼키치, 마치다 규고, 후루카와 분노스케(古川文之助), 오자키 시즈오, 시라타 신스케(白田新助), 쓰지 원지로(辻圓次郎), 미즈하시 에타로, 나카에 도미주로, 구로다 후쿠마쓰(黒田福松), 기무라 산시로(木村三四郎), 고다마 이타로(兒玉伊太郎), 나가이 고타로(永井幸太郎), 미카지리 추고, 이토 기치자부로(伊藤吉三郎), 사카모토 순지, 히라노 세키조(平野石造), 마에조노 간자에몬(前之園甚左衛門), 마쓰모토 기

로쿠(松本喜六).

서기장은 이노우에 소노스케(井上宗之介)와 고미야 히코지 두 사람 가운데 고미야 히코지가 서기로서 창립 이래로 1911년까지 근무했다. 그가 사직한 후 쓰쓰미 야스시가 서기장 심득으로 일하다가 민단이 끝나는 올해에 이르러 서기장에 임명되었는데, 잇따라 사직하면서 우메자키 다다후미(梅崎忠文)가 서기장 사무를 보았다.

제22장 신문 및 통신

대구에서 신문의 효시는 1901년 6월 일본인회에서 주간신문으로 발행한 『달성주보(達城週報)』인데 당시는 인쇄 기계가 없어서 등사판을 이용했다. 발간 후 겨우 4호로 폐간했다. 이후 4년이 지난 1905년 1월에 야쿠오 슌조(釋尾春仍)가 『조선(朝鮮)』이라는 이름의 주간신문을 발간했지만 6월에 휴간하고 같은 해 9월에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잇따라 폐간되었다.

1905년 3월 시모즈 사부로(下津三郎)는 하타모토 잇페이(畑本逸平), 이즈카 쇼이치(飯東昇一)와 협의하고 조선인 유력자의 찬성도 얻어 『대구실업신문(大邱實業新聞)』을 발행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마키노 슈(牧野周)가 신문 경영을 이어받아 1906년 1월에 『대구신보(大邱新報)』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때 오키타 스테지로가 입사했지만 2개월만에 그만두어 약 한 달 동안 휴간했다. 이어 사내 정리를 마친 후 이전까지 격일로 간행하던 것을 일간으로 바꾸고 한글판도 발행했는데 한글판은 도중에 중지하고 일본어판에 전력을 쏟으면서 이름도 『대구일일신문(大邱日々新聞)』이라고 붙였다. 그런데 마키노 슈는 달리 뜻을 둔 것이 있어서 사카모토 준(坂本淳)이 신문사 경영을 이어받았지만 1907년 2월에 퇴한처분을 받아 오키타 스테지로가 경영을 대신했다. 이에 앞서 야쿠오 슌조는 30여명의 찬조자를 얻어 1906년 12월에 『대구일보(大邱日報)』를 발행했지만 겨우 2호에 그쳤다. 1908년 5월 오키타 스테지로도 퇴한처분을 당해 일본으로 돌아갔다. 같은 해 7월에 대구거류민단 유지들이 출자해 『대구신보』 일본어판과 조선어판 발행 계획이 세워지고



氏 雄 朝 井 河

같은 해 9월에 발행하려던 때에 대구일일신문사도 합류하면서 10월 1일에 두 신문을 합쳐 『대구신문』으로 새롭게 하고 가토 이치로와 가와이 아사오 두 사람이 이사로 선출되어 신문사 경영을 맡았는데, 조직을 새롭게 하면서 가와이 아사오가 사장이 되어 전담했다.

1913년 9월에 『대구신문』은 『조선민보(朝鮮民報)』로 이름을 바꾸고 규모를 크게 확장했다. 『조선민보』는 경상북도에 본사를 둔 유일한 일간 신문이다. 지국을 도쿄, 부산, 경주, 포항, 김천, 안동, 대전, 경성 등 각지에 두고 기타 통신원을 각 군에 배치했다. 가와이 아사오 사장이 의연히 이를 주재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각 분원, 경상북도청, 대구부청, 대구거류민단의 공문은 『조선민보』를 통해 공포되었다.

대구에 지국을 둔 신문사는 『경성일보(京城日報)』(주임 구마이하루오(熊井晴雄)), 『조선신문(朝鮮新聞)』(주임 하시모토 추조(橋本丑三)), 『조선시보(朝鮮時報)』(지국장 치바 호지로(千葉包次郎)) 등이다. 『부산일보(釜山日報)』는 1913년에 지사를 두고 「경북일간」을 발행했으며 마스다 고타(増田虎太)가 주간이었다. 이 밖에 『오사카 마이니치신문(大坂毎日新聞)』, 『오사카아사히신문(大坂朝日新聞)』, 『오사카신보(大坂新報)』 등은 모두 대구에 통신원을 두었다.

신문 발행 부수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조선민보』 이외에 시종에서 구독하는 것은 서로 엇비슷한 상황이다. 일본 본토 신문 중에는 『오사카아사히신문』과 『오사카마이니치신문』 두 신문이 가장 많이 배포되고 있다. 도쿄 발행 신문이 비교적 적은 것은 우송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 구독자가 많은 것은 『호치신문(報知新聞)』과 『요로즈조보(萬朝報)』이고 『시사신보(時事新報)』가 뒤를 잇는다.

대구에 들어오는 일본 본토 각 신문은 그 수가 적어서 거의 없는 것에 가깝다. 이는 거류민이 각 부현에서 집합했기 때문으로 『후

쿠오카일일신문(福岡日々新聞)』, 『규슈일보(九州日報)』, 『가고시마신문(鹿兒島新聞)』, 『산요신보(山陽新報)』 등이 다수를 점한다.

신문에 대한 단속은 한국 정부가 1909년 2월에 출판법 법률을 공포하는 동시에 신문지법도 개정해 외국에서 발행했거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에 기초해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선인이 발행하거나 경성에서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 가운데 조선의 치안을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신문을 압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인에 대해서는 통감부령 신문지규칙을 적용했다.

일본 본토 및 만주에서 발행하는 신문 가운데 조선에 유입되는 것은 그 수가 매우 많아서 하루 평균 480종 33,800부에 이른다. 조선에 관한 기사는 왕왕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심한 경우는 취마역측(揣摩臆測)²⁰⁵⁾이 언론을 그릇되게 해서 신식민지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발매금지 당하는 경우가 조선에서 발행되는 신문보다 많다.

신문지규칙은 1908년 4월 통감부령으로 공포한 이후 두 번의 개정을 거쳤다. 그 대강은 일본 본토 신문지법과 다르지 않다.

205) 어림 짐작.

제23장 통신기관

조선의 근대적 통신기관 제도의 맹아는 1896년에 조선 정부가 일본인을 우정고문(郵政顧問)으로 초빙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곧 이를 폐지하고 1898년에 프랑스에서 고문을 초빙했다. 1900년 만국우편연합에 가맹하고 국내외 공통의 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겨우 서신 인쇄물과 서적의 집배, 등기우편 및 배달증명 종류만을 다루었고 다른 우편법의 특수취급 경우는 어떤 시설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전신의 창설은 일본제국 정부가 덴마크 대북부전신회사(大北部電信會社)에 부여한 면허장에 입각하여 1883년 이 회사가 나가사키-부산 간 해저 통신선(1910년 11월에 일본제국이 매수)을 부설해 1884년 2월부터 부산에 있는 일본제국 전신국에서 통신을 개시한 것이 최초이다. 1885년 11월 경성-인천 및 경성-의주(이 구간은 중국 정부의 출자로 경영) 사이에 통신선을 가설했다. 1888년 7월 경성-부산 간 통신을 개통했다. 1894~1895년의 청일전쟁 때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제국 정부는 경성-부산, 경성-인천 사이에 군용전신선을 가설하고, 경성-의주와 경성-원산 두 통신선은 전쟁 중에 일시적으로 점령했다가 '평화 극복' 후 1896년 7월에 환부했다. 1898년 2월 대구-전주 간 통신이 개통되었지만 전화는 당시 경성과 인천 두 곳에만 가설되어 있었고 1906년이 되어서야 대구, 원산, 마산, 진남포도 개통되었다.

대구의 통신기관은 경성-부산 간 전신이 일찍부터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03년 11월 1일에 부산우편국 대구수취소를 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집배 업무를 하지 않고 일주일에 1회 스스로 수취소에 출두해서 우편물의 도착 여부를 물어서 도착한 우편을 수령하는 상태였는데 1904년 8월 경부철도 속성공사가 진척되

어 건축용 열차를 운전하기에 이르러 우편이 매일 도착하게 되었다. 다음 해 1905년에는 수취소가 부산우편국 대구출장소가 되었고, 1906년 6월에 건물이 완성되면서 대구우편국이 되어 우편, 전신, 전화를 취급하게 되었다. 같은 해 조선의 통신 기관은 통감부 관리 아래에 둔 이후 일본인이 증가하고 조선인이 편리함을 알게 되면서 점점 사무를 확장해 혼마치(本町)와 다츠오카초(龍岡町)에 우편소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전화 가입자도 5백명 이상에 달했다. 1911년 장거리 전화를 개시했고 기타 우편 사무는 일본 본토와 동일한 정도로 발달했다.

대구와 인근 군부의 통신은 매우 불편했는데 최근 각 군은 우편국 혹은 우편소를 설치하고 공중전화도 취급하며 상당수 군은 우편환업무를 취급하는 동시에 우편대체저금도 취급하기 때문에 우편 사무가 유감없이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

대구와 각 지역 간의 우편, 전신, 우편환의 편리함은 이미 보급되었다. 현재 대구와 전화 접속하는 주요 지역은 다음과 같다.

부산, 절영도, 초량, 부산진, 동래, 울산, 기장, 창원, 마산, 진해, 진주, 사천, 고성, 장생포, 방어진, 삼천포, 예산, 장기, 포항, 경주, 흥해, 경산, 청도, 하양, 영천, 자인, 왜관, 김천, 성주, 개녕, 약목, 선산, 칠곡, 삼랑진, 경화동, 안동, 의성, 청송, 예천, 군위, 영덕, 봉화, 창녕, 진동, 순흥, 인동, 대전, 경성, 용산, 개성, 인천, 강경

제24장 수이출입(輸移出入)

조선의 무역은 러일전쟁 전후부터 그 추세가 촉진되어 교통기관의 발달, 광업의 발전, 철도와 도로 등의 수축(修築)²⁰⁶⁾ 및 관아 건축, 제반 기업의 발흥에 따른 여러 재료의 수입, 보호정비(保護政費), 임금 산포(散布)에 따른 조선인 구매력의 증진, 일본인 이주의 증가에 따라 해외 물품 수요도 더해져 1907년 이후의 무역은 1902년에 비해 2배 이상이 되었다. 게다가 '일한병합' 이후 지방 교통은 안전해져 제반 산업의 진흥과 함께 개항 이래 미증유의 성황을 이루었다.

일본과 조선의 무역은 다른 외국에 비해 항상 탁월했다. 일본 이외의 통상국은 중국, 러시아, 아시아, 아메리카 합중국, 영국, 독일 등이다. 일본은 수출입 모두에서 다수를 차지했는데 1912년 3월에 밀, 대두, 소두, 들깨, 생우, 우피, 석탄, 철광 8개 종류를 제외하면 모두 수이출세를 철폐해 조선의 산업 및 무역 발전에 보탬이 되었고 일본 정부도 조선 쌀 및 벼 이입세(移入稅)를 완전히 철폐했다.

대구는 1907년 7월에 '대구보세화물취급소'로서 철도 연대 운송에 관한 외국화물 및 보세창고 사무 취급을 개시했고 1910년 10월에 '대구세관출장소'로 개칭했으며 1911년 12월부터 소포 우편물 및 수이출입 화물의 통관사무 취급을 개시했다. 조선 전체의 무역이 수이입 초과인 것과 마찬가지로 대구도 매년 수입 초과이다. 이는 조선이 '건설시대'여서 많은 물자를 일본에서 구하는 것과 산업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수이입 초과는 오히려 경영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구 지역이 장래에 수이출이

206) 수리하거나 고쳐 짓거나 쌓거나 함.

증가해 무역에서 수출입과 이출입의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농산물 수입 증가, 광업의 발전, 잠업의 보급 때문이다. 농산물 가운데 특히 쌀, 보리, 대두 개량은 매년 효과를 발휘해 수입 증가가 현저하다. 잠업은 그 진보가 가장 신속하고 양질의 고치를 생산해 일본 제사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1913년에 이미 일본 제일의 제사 지역인 스와(諏訪) 지역에 이출을 시도해 그 성적이 양호하므로 올해 생산한 고치는 모두 생사 원료로 이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곡물, 광산물, 누에고치에 이어서 전망이 밝은 것은 생우, 우피, 우골이다. 조선소의 털은 색이 담갈색이어서 육군 병졸의 배낭 제조에 빼놓을 수 없다. 일본제국 육군이 1년에 필요로 하는 배낭수는 평균 10만개라고 한다. 게다가 생우는 식용으로, 우피는 제혁용(製革用)으로, 우골 및 중건혈(中乾血)은 비료로서 일본 본토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수이출품 가운데 대구의 생과일은 가장 촉망받는다. 특히 사과, 배, 포도는 해외에서 일품으로 칭찬받고 있으며, 시험 판매도 결과가 좋아 향후 주요 수이출품으로 여겨지고 있어 재배 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 대구의 무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조사해보니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는 세관 경유와 철도역 발착이 수치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가장 확실하게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조선은행 대구지점이 조사한 '대구역 발착 화물 톤수'를 시가로 환산한 것이다. 이에 아래에 표로 제시한다.

● 대구의 연도별 누적 수이출입표 (단위:원)

〈발송액〉

	1909년	1910년	1911년	1912년	1913년
총액	2,004,184	1,466,573	2,335,219	1,945,410	1,839,447
주요물품 내역					
쌀	230,887	135,252	178,184	125,436	101,788
연초	135,864	145,659	154,836	301,920	280,010
우피	54,450	77,480	165,900	162,817	194,448
약초·약재	172,125	137,625	83,250	158,250	277,125
옥양목(紵巾)	35,840	47,360	91,840	92,500	71,280
방적사	15,932	31,004	45,260	35,040	40,880
면포	81,043	84,902	133,155	142,746	125,500
마포(麻布)	48,960	40,320	66,240	97,920	58,000
대두	31,318	72,542	19,790	31,746	21,234
생과	7,492	4,725	2,970	5,884	61,530

〈도착액〉

	1909년	1910년	1911년	1912년	1913년
총액	3,122,782	3,768,748	4,625,395	5,248,199	4,904,551
주요물품 내역					
면포	208,396	378,201	681,782	835,842	670,700
옥양목	348,160	423,960	579,600	511,750	542,520
방적사	129,163	245,336	339,450	269,370	222,650
종이류	39,000	76,830	91,260	152,070	98,343
염건어	247,320	311,610	408,445	433,735	195,330
명태	107,310	154,250	151,965	188,144	212,190
설탕	33,399	52,963	70,353	86,520	95,644
소금	56,394	45,017	60,101	74,686	73,773
주류	74,496	74,648	93,695	106,528	108,144
연초	63,036	111,728	138,924	241,740	235,800
약품·약재	81,750	105,750	82,125	126,970	207,375
목재	103,680	190,040	118,240	123,240	136,910
금속기류	65,600	94,720	82,400	154,080	131,930

제25장 민단 폐지와 부제 시행, 학교조합 성립

거류민단은 마침내 폐지되었다. 그리고 새롭게 부제(府制)가 시행되고 학교조합이 성립되었다. 시간을 돌아보면 1906년 11월 1일부터 1914년 2월 31일까지 7년 5개월이고, 그 이전 일본인이 최초로 거주를 시작한 1893년부터 계산하면 실로 22년이 흘렀다. 그 연혁은 제1장과 제2장에서 약술한 바와 같다. 이제 민단이 폐지되고 신부제로 바뀌는 동시에 새롭게 학교조합이 성립하게 된 전말을 서술하고자 하는데 조선에 대한 일본제국의 정치적 변천을 역사적으로 서술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과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904년 2월 일본제국은 러시아와 전쟁을 개시했고 한국은 만주와 함께 시국의 중심이 되었다. 마침 일본제국 정부는 경성에 있는 일본제국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정부와 중요한 협상을 추진해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일신했다. 당시의 ‘일한협정서’는 6개조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일본제국의 충고를 받아들일 것, 제3국의 침해 혹은 내란으로 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이 위협할 경우 일본제국 정부는 임시 조치를 취하고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편의를 제공할 것, 일본제국 정부가 군사상 필요한 장소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 등은 일본제국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탁월하게 만들고 일본인들에게 한국 척식(拓殖)²⁰⁷⁾의 뜻을 분기(奮起)²⁰⁸⁾시켰기 때문이다. 이어서 1905년 9월에 포츠머스조약이 체결되고 러시아 정부는 일본제국이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보호 및 감리 조치에 간섭하지 않고 정치, 경제, 군사상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앞

207) 외국의 영토나 미개척지를 개척하여 자국민을 이주·정착하게 함.

208) 떨쳐 일어남.

서 일영동맹의 약관은 일본제국의 우월권을 인정해 한국에 대한 조치에 관해 열강이 용훼(容喙)²⁰⁹⁾할 것이 없어졌다.

일본제국 정부는 이 새로운 관계에 기초해 1905년 11월 17일에 ‘일·한신협약’을 체결해 외교권을 수수하는 동시에 통감을 주차시키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재경성공사관을 철폐하고 통감부를 두어 통감이 주차하기로 하였으며 1905년 12월 20일에 통감부 관제 및 이사청 관제를 공포했다. 이듬해 1906년 2월 1일에는 통감부 사무를 개시하고 대구이사청 개청에 이어 대구거류민단이 설치되었다. 1907년 여름에 헤이그밀사사건이 발생해 한국황제 직위를 새 황제에게 양도하는 동시에 통감의 권능을 확장하고 일본인을 한국 정부에 임용하게 했으며 재정고문을 폐지하기로 했다.

1909년 7월에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제국 정부에 위탁하기로 약속하고 이듬해 1910년 6월에 경찰 사무를 위탁했다. 이로써 일본인 거류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확실해지고 일본인의 한국 경영은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아직 완전한 치안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해서 일대 혁신이 필요하므로 일본제국 정부는 한국을 병합해 시대의 요구에 응하고자 양국 전권위원회를 열어 8개조의 조약을 맺고 같은 해 8월 22일에 조인을 완료한 후 같은 달 29일에 공포했다. 이 조약 및 관련된 각종 법규는 공포한 날 즉시 실시되었다. ‘한국’이라는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는 옛날 명칭으로 바꾸고 새롭게 조선총독부를 설치해 천황 폐하의 명을 받들어서 육·해군을 통할하면서 제반 정무를 총괄한다는 사실을 내외에 선언한 것은 제국이 한국에 대해 내린 최종의 대영단이었으며 이로써 한인은 제국 신민이 되었다. 13도의 촌토라 할지라도 일본제국의 영지이므로 제국의 영토에 제국 신민의 거류단체가

209) 말참견함.

특별히 설치될 이유가 없으므로 거류민단 폐지는 당연한 조치로서 폐지가 결정되었다.

거류민단의 폐지는 병합의 결과로서 당연하다고 해도 어떤 형식으로 폐지할지, 종래의 자치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헌정의 본의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등이 중요 문제로 연구되었다.



大邱府廳

그러나 일본과 조선은 이미 한 나라가 되어 인민을 구별해서는 안 되었다. 억지로 이를 구별하는 것은 옛 조선 인민을 문명으로 인도해 제국 신민으로 대우하는 길이 아니다. 그런데 구 한국인의 문화 수준은 일본인과 손을 맞잡고 자치제를 운영할 수준이 아니다. 이에 총독부는 새로운 제도를 펼치는 데에 시간을 두는 한편 새로 따르게 된 국민을 화육(化育)²¹⁰하는 동시에 거류민단의 기존 및 계속 사업을 완성하게 하면서 민단 폐지에 대응할 준비 시간을 부여했다. 이렇게 해서 병합된 지 3년 7개월이 지난 후에 새로운 부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1913년 10월 30일에 부제가 총독부 제령 제7호로 공포되어 기존의 대구부는 구역이 시부(市部)로 한정되었다. 명칭은 옛날처럼 대구부이지만 실제로는 이전 대구거류민단 지역 가운데 시가지만을 구획해 일본인과 조선인 시민을 포용하는 법인으로서 조직을 새롭게 했다.

부제는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다케자키 로쿠지로 부윤은

210) 하늘과 땅의 자연스런 이치로 모든 것을 만들어 기름.



氏 郎 次 六 崎 竹 尹 府

옛 대구부의 시작 때부터 재임해서 새로운 부의 시정을 담당했다. 부는 협의회를 두고 부윤 및 협의회원을 조직해 부 사무에 관한 부윤의 자문에 응했다. 부협의회원은 10명을 정원으로 해서 일본인과 조선인 가운데 각각 5명을 선임했다.

거류민단은 민장 이하 2년 이상 재직한 관리에 대해 위로금을 건네는 동시에 초창기부터 마지막까지 일한 의원의 공로에 대해 기념 은쟁반을, 현역 의원에게는 기념 금시계를 증정하기 위해 4,461원을 지출했다. 총독부는 이를 보조하고 현 재직자의 공로를 표창하기 위해 은쟁반을 하나씩 하사했다.

거류민단 사무 및 권리·의무 이속 처분에 관한 표준 (1914년 1월 총독부 통첩)

제1. 현재 공용 또는 공공 용도에 제공하는 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부 또는 학교조합에 이속시킬 것.

현재 공용 또는 공공의 용도에 제공하는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성격에 따라 또는 기준에 정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용도가 정해진 것 또한 전항과 동일.

앞2항의 재산 중 거류민단 폐지로 인해 공용을 폐지하거나 예정된 용도에 제공할 필요가 없어진 것은 학교조합에 이속시킬 것.

특정 목적이 있는 기본재산 적립금곡(金穀)²¹¹⁾ 등은 그 목적에 따라 구분해 부 또는 학교조합에 이속시킬 것.

특정 목적이 있는 기본재산 및 수익재산 일체를 학교조합에 이속시

211) 지방 자치 단체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해 두는 금전, 유가증권, 곡식 등의 재산.

킬 것. 단 부가 계승해야 할 부채의 상환에 상당한 재산 및 부가 계승해야 할 부채로 취득한 재산은 부에 이속시킬 것.

앞5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부에 이속시킬 것.

1913년도 예산 집행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앞 6항의 예에 따라 부 또는 학교조합에 이속시킬 것.

제2. 민단체(民團債)는 기채 목적에 따라 구분해 부 또는 학교조합이 승계하도록 할 것.

학교 사업과 기타 목적으로 모집한 민단체는 그 목적에 상당한 금액에 따라 안분(按分)²¹²⁾해서 부 또는 학교조합이 승계하도록 할 것.

몇 개의 부채를 합쳐 차환(借換)²¹³⁾한 민단체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차환 전 각 부채의 목적에 따라 구분해 차환 당시의 미상환액에 따라 안분해 부 또는 학교조합이 승계하도록 할 것.

앞3항에 의거할 수 없는 민단체는 적당히 구분해 부 또는 학교조합이 승계하도록 할 것.

제3. 부제 시행 전에 체결한 공사 청부 물품 구입, 노동력 공급 등의 계약, 기타 사유로 인해 발생한 권리·의무로서 출납 폐쇄 때까지 소멸되지 않은 것 가운데 교육사업에 관한 것은 학교조합이, 나머지는 부가 승계하도록 할 것.

제4. 수업료, 보육료 및 학교조합에 이속한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출납 폐쇄 때까지 수납을 완료하지 않은 것은 학교조합에 이속시킬 것.

212) 미리 정해진 대로 고르게 나눔

213) 새로 꾸어서 먼저 끈 것을 반환함.

앞의 항 이외의 민단 수입으로 출납 폐쇄 때까지 수입을 완료하지 않은 것은 부에 이속시킬 것.

제5. 민단체 수입, 국고보조금, 기타 용도를 특정한 수입의 사용 잔액은 그 용도에 따라 구분해 학교사업에 관한 것은 학교조합, 나머지는 부의 수입으로 할 것.

특별회계에 속하는 세계(歲計) 잉여금은 부의 수입으로 할 것.

앞2항에서 뽑은 것을 공제한 세계 잉여금의 잔액은 제3항의 채무 및 제4항의 미납금 중 확실한 수입 예상액을 참작해 적절히 부와 학교조합에 이속시킬 것.

부제(府制)

제1조 부는 법인으로 한다. 관의 감독을 받고 그 공공사무 및 법령에 따라 부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조 부의 폐치(廢置) 및 부의 구역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부의 폐치 또는 경계 변경에 따라 재산처분이 필요할 때 도장관(道長官)은 부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그 처분 방법을 정한다.

제3조 부 내에 주소가 있는 자를 그 부의 주민으로 한다.

부 주민은 본령에 따라 부의 영조물(營造物)²¹⁴⁾을 공용할 권리를 갖고 부의 부담을 분임(分任)할 의무를 지낸다.

제4조 부는 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부 사무에 관해 부 조례를 만들 수 있다.

부 조례는 일정한 공고 방식에 따라 이를 고시해야 한다.

214) 건축하여 만든 것을 통틀어 일컫는 말.

제5조 부윤은 부를 통할하고 이를 대표한다.

제6조 부에 부 관리를 둘 수 있다.

부 관리는 부윤이 이를 임면(任免)한다.

부 관리는 부윤의 명령을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제7조 부 관리는 유급으로 한다. 단, 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명예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부윤은 부 관리에 대해 징계를 줄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은 견책 25원 이하의 과태료 및 해직으로 한다.

제9조 부에 부 출납 관리를 두며 부윤이 관리 또는 부 관리 가운데 이를 명한다.

부 출납 관리는 출납사무를 관장한다.

제10조 부윤은 관리를 부 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무 관계는 국가의 행정 관련 직무 관계의 예를 따른다.

제11조 부에 협의회를 두고 부윤 및 협의회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협의회는 부윤을 의장으로 한다.

협의회원 정수는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제12조 협의회는 부의 사무에 관해 부윤의 자문에 응한다.

협의회에 자문할 사안은 다음과 같다.

1. 부 조례를 만들거나 개폐하는 것
2. 세입출 예산을 정하는 것
3. 부채(府債)에 관한 것
4. 세입출 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에 새롭게 의무 부담을 하거나 권리 포기를 하는 것
5. 기본재산, 특별기본재산 및 적립 금곡 등의 설치 또는 처분에 관한 것

6. 제2조 2항의 재산처분에 관한 것

7. 앞 각호 이외에 부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14조 협의회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도장관이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제15조 협의회원 및 명예직 부 관리는 직무에 필요한 비용의 변상을 받을 수 있어서 명예직 부 관리에게는 비용 변상 및 근무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유급 부 관리에게는 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은퇴금, 퇴직급여, 사망급여금 또는 유족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수익을 위한 부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서 이를 유지해야 한다. 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특별 기본재산을 만들거나 금곡 등을 적립할 수 있다.

제18조 부는 영조물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부는 특히 한 개인을 위한 사무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부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제20조 부는 그 필요한 비용 및 법령에 따라 부의 부담에 속하는 비용을 지변(支辨)²¹⁵할 의무를 지닌다.

부는 그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사용료, 수수료, 기타 부에 속하는 수입으로 앞항의 지출에 충당하고 부족할 때는 부세 및 부역·현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3개월 이상 부 내에 체재하는 자는 그 체재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부세(府稅)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22조 부 내에 주소가 있거나 3개월 이상 체재하지 않았지만 부 내에 토지, 가옥, 물건을 소유하고 사용하거나 점유해서 부 내에

215) 빚을 갚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을 내줌.

영업소를 설치해 영업하거나 부 내에서 특정 행위를 한 자는 그 토지, 가옥, 물건 영업 또는 그 수입이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23조 부세, 사용료, 수수료 및 부역·현품 및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제24조 부세, 사용료, 수수료 및 영조물의 사용 방법에 관해서는 앞 조 규정에 의거한 경우 이외에는 부 조례로 이를 정해야 한다. 그 부 조례에는 10원 이하의 과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제25조 부세 부과에 관해 필요할 경우 해당 관리는 가택 또는 영업소를 임검(臨檢)²¹⁶하거나 장부와 물건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6조 부세나 기타에 속하는 징수금은 지방비 징수금 다음으로 선 취특권을 갖고 그 추징 환부 및 시효에 관해서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제27조 부는 부채를 상환하거나 부의 영구 이익을 위한 지출 또는 천재지변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부채를 모집할 수 있다.

부는 예산 내의 지출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차입금을 할 수 있다.

앞항의 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해야 한다.

제28조 부는 매 회계연도 세입출 예산을 작성할 수 있다.

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 부비(府費)로 지변해야 할 사안으로 수년에 걸쳐 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은 그 기간의 각 연도 지출액을 정해 계속비로 할 수 있다.

제30조 부는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다.

216) 행정 기관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에 가서 검사함.

제31조 부의 지불금에 관한 시효에 관해서는 정부의 지불금 예를 따른다.

제32조 부의 재무에 관한 규정 및 부 관리의 복무규율, 배상책임, 신원보증,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부칙(附則)

제33조 본령의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제34조 거류민단, 각국 거류지회 및 한성위생회(漢城衛生會)에 관한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5조 거류민단의 사무 및 권리·의무 가운데 교육에 관한 것은 학교조합이 이를 승계하고 나머지는 부가 이를 승계한다.

앞의 항 학교조합 및 부현이 승계해야 할 것의 구분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도장관이 이를 정한다.

각국 거류지회의 사무 및 권리·의무는 성진(城津) 각국 거류지회 이외에는 부가 이를 승계한다. 단 각국 거류지 내에 있는 외국인 묘지 및 인천 각국 거류지회의 적립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성위생회의 사무 및 권리·의무는 경성부가 이를 승계한다.

앞의 4개항에 규정한 것 이외에 재산 및 부채를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도장관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처분 방법을 정한다.

제36조 본령 시행에 따라 필요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부제시행규칙(府制施行規則)

제1조 부의 구역은 행정구획한 부의 구역을 따른다.

제2조 협의회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경성부 16인, 인천부 10인, 군산부 6인, 목포부 8인, 대구부 10인, 부산부 12인, 마산부 8인, 평양부 12인, 진남포부 8인, 신의주부 6인, 원산부 10인, 청진부 6인

제3조 부세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시가지세의 부가세
2. 가옥세의 부가세
3. 특별세

부가세는 균일한 세율로 이를 부과해야 한다. 단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 제한을 따르지 않는다.

제4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용으로 제공하는 토지, 가옥, 물건, 영조물에 대해서는 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유료로 이를 사용하는 자 및 사용 수익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사금(恩賜金)²¹⁷⁾ 사업의 용도에 제공하는 토지, 가옥, 물건에 대해서도 앞의 항과 같다.

국가에 대해서는 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신사, 사원, 사우(祠宇)²¹⁸⁾, 불당 용도로 제공하는 건물 및 경내지와 교회소 설교소 용도로 제공하는 건물 및 기타 구내지(構內地)에 대해서는 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단 유료로 이를 사용하는 자 및 주택을 교회소·설교소 용도에 충당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묘지 및 외국 정부 소유에 속하는 영사관과 그 부지에 대해서는 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 납세자가 부 밖에 소유하고 사용하고 점유하는 토지, 가옥,

217) 은혜롭게 베푸는 돈이라는 뜻. 임금이나 상전이 내려 준 돈을 일컫는 말.

218) 신주를 두기 위해 따로 지은 집

물건 혹은 그 수입 또는 부 밖의 영업소 영업 혹은 그 수입에 대해서는 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6조 시가지세 부가세는 시가지세의 2분의 1, 가옥세 부가세는 가옥세액을 넘을 수 없다.

다음의 경우는 특히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앞항의 제한을 초월해 부과할 수 있다.

1. 부채상환을 위해 필요할 때
2. 영구 이익이 되는 지출을 위해 필요할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할 때
4.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할 때

제7조 영대차지(永代借地)²¹⁹⁾ 및 그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차지료(借地料)²²⁰⁾에서 국세 및 지방비 부과금을 공제한 금액이 부세 금액과 같은 때, 또는 이를 초과할 때는 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차지료에서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금을 공제한 금액이 부세액보다 작을 때는 그 차액을 부세로 부과할 수 있다.

제8조 부윤은 납세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해 납세를 연기하거나 또는 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부세를 감면시키고자 할 때 또는 연도를 넘어서서 납세를 연기시키고자 할 때는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부역·현품은 특별히 필요한 때에 한해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단 학예, 미술 및 수공예 관한 노무를 부과할 수 없다.

부역·현품은 이를 금액으로 산출해서 부과해야 한다.

219) 한 정부가 소유한 토지를 조약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일정한 값을 치르고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토지.

220) 땅을 빌려 쓰는 대가로 주는 돈.

부역을 부과받은 자는 적당한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

부역·현품은 금전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2항 및 앞항의 규정은 급박한 경우에 부과한다. 부역·현품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급박한 경우에 부과한 부역·현품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이를 새롭게 금액으로 산출해 기한을 지정해서 납부를 명해야 한다.

앞항의 명령을 했을 때는 부세 독촉의 예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제10조 몇 명 또는 부의 일부에 특별히 이익이 있는 사안에 관해서는 부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불균일한 부과를 하거나 몇 명 또는 부의 일부에 대한 부과를 할 수 있다.

제11조 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 부윤은 납세자에 대해 그 납금액, 납기일,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부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관리가 납입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단 즉납(卽納)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2조 부세의 징수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4조 1 및 제4조 3, 내지 제4조 8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부세의 부과를 받은 자가 그 부과에 대해 위법 또는 착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납세고지서 교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윤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앞항의 규정은 사용료, 수수료, 과료·과태금 징수 또는 부역·현품의 부과에 관해 이를 준용한다.

조영물을 사용할 권리에 관해 이견이 있는 자는 이를 부윤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앞 3항의 이의에 대해 부윤이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

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도장관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앞 각 항의 이의 제기 및 그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한다.

제14조 부윤은 매 회계연도 부세와 기타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해서 세입세출예산을 작성해 연도 개시 전에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산은 제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예산에는 예산설명서 및 재산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5조 부윤은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존 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 특별회계에 속하는 세입과 세출은 제1호 양식에 준하고 별도 예산을 작성해야 한다.

제17조 계속비의 연한 및 지출 방법은 제2호 양식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부윤은 예산 허가를 받은 후 곧바로 그 요령을 고시하고 예산 등본을 부 출납 관리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9조 세입의 연도 소속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납기가 일정한 수입은 그 납기 말일에 속하는 연도
2. 임시 수입으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발송일이 속하는 연도
3. 임시 수입으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은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단 보조금, 기부금, 기채(起債)²²¹⁾ 수입은 연도를 경과했다라도 출납 폐쇄기까지는 이를 예정한 연도의 세입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 세출의 소속 연도는 다음 구별에 따른다.

221) 국가, 지방 공공단체, 회사 등이 예산 상 필요에 의해 국채, 지방채, 사채 등을 발행함.

1. 비용 변상, 보수, 급여, 기타 제 급여 및 고용인 비용 종류는 그 지급해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단 지불 기일이 정해진 것은 그 지불 기일이 속한 연도
2. 통신운반비, 토목건축비, 물품구입 대가, 기타 계약에 의한 지불금은 계약일이 속한 연도. 단 계약에 따라 정한 지불 기일이 있을 때는 그 지불 기일이 속한 연도
3. 앞 2호에 적은 것 이외는 모두 지불명령을 발송한 날이 속한 연도. 단, 보조금, 결손 보전은 그 결정이 있었던 날이 속한 연도의 세출로 할 수 있다.

제21조 각 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수입으로 이를 지변할 수 있다. 연도 경과 후에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기 부족할 때는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 차년도 세입을 앞당겨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22조 예산에서 정한 각 항목의 금액은 여러 가지로 유용할 수 없다. 예산 각 항의 금액은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유용할 수 있다. 예산비의 지출은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지출은 채주(債主)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제24조 부의 출납 관리는 부윤의 명령이 있을 때가 아니면 지불할 수 없다. 명령을 받아도 지출 예산이 없거나 예비비 지출, 비목 유용, 기타 본령 규정에 따라 지출을 할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제25조 원격 지역에서 지불이 필요한 경비는 현금을 전도(前渡)²²²⁾ 할 수 있다.

앞항의 현금 전도는 부 관리 이외의 자에게 이를 할 수 있다.

제26조 다음의 경비는 개산불(概算拂)²²³⁾을 할 수 있다.

222) 돈이나 물품을 정하여진 문만큼 먼저 내어줌.

1. 여비

2. 소송 비용

제27조 관보, 기타 전금(前金)지불이 아니면 구입 또는 차입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에 한해서 전금지불할 수 있다.

제28조 세입의 오납과 과납 금액의 환불은 각각 이를 수입한 세입에서 지불해야 한다.

세출의 오불(誤拂)과 과도 금액, 현금 전도, 전금불, 개산불 또는 대체불(繰替払)의 반납은 각각 이를 지불한 경비의 정액에 여입(戻入)²²⁴⁾해야 한다.

제29조 부의 출납은 차년도 6월 30일에 폐쇄한다.

부운은 출납폐쇄 후 3일 이내로 도장관에게 결산을 보고하는 동시에 그 요령을 고시해야 한다.

제30조 출납폐쇄 후의 수입과 지출은 이를 현 연도의 세입과 세출로 해야 한다.

제28조의 환급금, 환입금의 출납 폐쇄 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제31조 각 연도의 세계(歲計)에 잉여가 있을 때는 차년도 세입에 편입시켜야 한다. 단 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에 편입할 경우에는 이월할 필요가 없이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32조 계속비는 매 연도의 지불잔액을 계속연도가 끝날 때까지 순차적으로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 공사 청부물건의 매매 대차 및 노동력 공급은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단 임시로 급한 시행이 필요한 때, 또는 부 조례에

223) 대강 어림잡아 한 셈으로 지불.

224) 일단 지출한 예산을 어떤 이유로 본디 세출 예산 과목에 되돌려 넣음.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4조 부 출납 관리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및 장부는 매월 1회 부윤이 검사할 수 있다.

부 출납 관리를 정질했을 때는 부윤은 현금 및 장부를 검사해야 한다.

제35조 다음의 사안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부 조례를 만들거나 개폐하는 일
2. 부채(府債) 모집에 따른 기채 방법, 이자 정률 및 상환 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일

제36조 다음의 사안은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
2. 특별기본재산 및 적립금곡(積立金穀) 등의 설치, 관리, 처분에 관한 일. 단 적립 금곡 등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것
4. 기부 또는 보조를 하는 일
5. 연도 내의 수입으로 지변해야 할 일시 차입금을 얻는 일
6. 계속비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일
7.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일
8. 세입출 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에 새롭게 의무 부담을 주거나 권리 포기를 하는 일

제37조 부는 그 세입세출에 속하는 공금의 수불(受拂)은 우편환저금(郵便振替貯金) 법에 따를 수 있다.

제38조 부는 현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해 부 금고를 둘 수 있다.

금고 사무를 취급할 은행은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윤이 이를 정한다.

제39조 금고는 출납 관리의 통지가 있지 않으면 현금 출납을 할 수 없다.

제40조 금고 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이 보관하는 현금은 부의 세입과 세출에 속하는 것에 한해 지출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부운은 그 운용을 하락할 수 있다.

앞항의 경우에 금고 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부운이 정하는 것에 따라 이자를 부에 납부해야 한다.

제41조 부는 금고 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담보를 징수해야 한다. 그 종류, 가격, 정도에 관해서는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운이 이를 정한다.

제42조 부운은 정기 및 임시로 금고의 현금 및 장부를 검사해야 한다.

(부칙)

본령은 부제 시행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조선총독부는 1913년 12월 30일 제령 제8호로 학교조합령을 공포했다. 이는 거류민단 폐지의 결과로 종래의 민단이 설립한 심상고 등소학교 및 이에 부속하는 모든 사업을 학교조합에 이관하기로 했다. 제령에 따르면 학교조합은 구역을 정하고 조합규약을 만들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구학교조합은 전 민단구역과 대동소이해서 성내(城內) 일본인으로 조직한 법인이다.

〈학교조합령〉

제1조 학교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관의 감독을 받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일본인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조 학교조합을 설치하고자 할 때 발기인은 구역을 정하고 조합 규약을 만들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규약은 조합 구역 내에 주소가 있고 독립 생계를 꾸리는 일본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제3조 학교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일본인은 그 조합원으로 한다.

조합원은 본령에 따라 영조물을 공용할 권리가 있고 조합의 부담을 분임할 의무를 진다.

제4조 학교조합의 분합과 폐지 또는 구역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관계 조합은 그 조합회의 의결을 거치고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조합규약의 설정 혹은 변경 또는 재산처분이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학교조합의 구역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을 조합의 구역에 편입시키고자 할 경우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해서 조합원의 동의를 새로 얻을 필요가 있다.

제5조 학교조합에 조합회를 둔다.

제6조 조합회 의원은 이를 선거한다.

조합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조합회 의원의 선거인 및 피선거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으로 이를 정해야 한다.

제7조 조합회는 조합에 관한 사안을 의결한다. 조합회가 의결해야 할 사안의 대략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조합규약을 변경하는 일

2. 세입출 예산을 정하는 일
 3. 결산보고를 인정하는 일
 4. 기본재산, 특별기본재산 및 적립 금곡 등의 설치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
 5.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
 6. 재산 및 영조물의 관리 방법을 정하는 일. 단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7. 법령이 정한 것 이외의 사용료, 조합비 및 부역·현품과 그 부과·징수에 관한 일
 8. 조합채(組合債)에 관한 일
 9. 세입출 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에 새롭게 의무 부담을 지우거나 권리 포기를 하는 일
 10. 조합에 관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일
- 제8조 조합회의 권한에 관한 사안의 일부는 그 의결에 따라 관리자가 이를 전결처분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 앞4조에 정한 것 이외에 조합회 및 조합회 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 제10조 학교조합에 관리자를 둔다.
- 관리자는 조합원 중에서 도장관이 이를 명한다.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관리자는 명예직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유급으로 할 수 있다. 부의 구역을 포함하는 학교조합에서는 부윤이 그 관리자 직무를 행한다.
- 제11조 관리자는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모든 사무를 담임한다.
- 제12조 조합회의 의결과 그 권한을 넘어서서 법령 혹은 조합규약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쳤다고 인정될 때는 관리자는 도장관의 지

회를 청해 그 의결을 취소하고 그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

조합회가 성립되지 않을 때, 회의를 열 수 없을 때 또는 의결해야 할 사안을 의결하지 않았을 때 관리자는 도장관의 지휘를 청해 의결해야 할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학교조합에 유급 또는 명예직 관리자를 둘 수 있다.

담당 직원은 관리자가 이를 임면한다.

제14조 관리자는 조합 관리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은 견책, 25원 이하의 과태금 및 해직으로 한다.

제15조 관리자 직무를 행하는 부원은 부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학교조합의 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무 관계는 국가의 행정에 관한 직무 관계의 예를 따른다.

제16조 조합회 의원, 명예직 관리자 및 담당 직원은 직무에 필요한 비용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명예직인 관리자 및 담당 직원에게 비용 변상 외에 근무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비용 변상액, 보수액 및 지급 방법은 조합회 의결을 거쳐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정한다.

제17조 유급 관리자 및 담당 직원의 급여액, 여비 금액 및 그 지급 방법은 조합회 의결을 거쳐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정한다.

제18조 유급 관리자 및 담당 직원은 조합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은퇴금, 퇴직급여금, 사망급여금 또는 유족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수익을 위한 조합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

조합은 특정 목적을 위해 특별 기본재산을 만들거나 금곡 등을 적립할 수 있다.

제20조 조합은 영조물 사용에 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조합은 일본인 교육에 관해 필요한 경우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제22조 조합은 필요한 비용 및 법령에 따라 조합의 부담에 속하는 비용을 지변할 의무를 진다.

조합은 그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기타 조합에 속하는 수입으로 앞항의 지출에 충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때는 조합비 및 부역·현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조합비의 부과에 관해 필요한 경우 해당 관리는 조합원의 가택 혹은 영업소를 임검하거나 장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24조 조합비 또는 부역 현품의 부과를 받은 자가 그 부과에 대해 위법 또는 착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조선총독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제25조 조합비 및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규약 중에 5원 이하의 과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제26조 조합비, 기타 조합에 속하는 징수금은 지방비 징수금 다음으로 선취 특권을 지니며 그 추징, 환부 및 시효에 대해서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제27조 조합은 그 부채 상환이 필요할 때, 조합의 영구 이익이 되는 지출을 할 때, 또는 천재지변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조합채를 모집할 수 있다.

조합은 예산 내에 지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차입금을 만들 수 있다.

앞항의 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내 수입으로 상환해야 한다.

제28조 조합은 매 회계연도 세입출 예산을 작성해야 한다.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 조합비로 지변해야 할 사안으로 수년에 걸쳐 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은 그 기간의 각 연도의 지출액을 정해 계속비로

할 수 있다.

제30조 조합지불금에 관한 시효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불금 예를 따른다.

제31조 조합지불금은 1차로 군수가 이를 감독하고 2차로 도장관이 이를 감독하며 3차로 조선총독이 이를 감독한다. 단 부윤 관리자가 직무를 행하는 경우는 1차로 도장관이 이를 감독하고 2차로 조선총독이 이를 감독한다.

조합 구역이 몇 개 군에 걸쳐 있을 때 그 감독관청은 조선총독이 이를 지정한다.

감독관청은 조합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발송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조 아래 사안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조합규약을 변경하는 일
2. 조합채를 모집하거나 기채 방법, 이자 정률 및 상환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일. 단 그 연도 내 수입으로 상환해야 할 일시적인 차입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3조 아래 사안은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
2. 특별기본재산 및 적립금곡 등의 설치, 관리, 처분에 관한 일. 단 적립금곡 등을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
4. 기부 또는 보조를 하는 일
5. 사용료, 조합비 및 부역 현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일
6. 일시적인 차입금을 하는 일
7. 계속비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일

8. 세입출 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에 새롭게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일
- 제34조 감독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감독관청은 허가 신청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서 허가할 수 있다.
- 제35조 감독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의 직권을 하급 감독관청에 위임하거나 경이한 사안에 한해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제36조 도장관은 조합관리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은 견책 25원 이하의 과태금 및 해직으로 한다.
- 제37조 조합 재무에 관한 규정과 조합관리자 및 조합관리의 복무규율, 배상책임, 신원보증 및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부칙)

- 제38조 본령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 제39조 본령 시행 시 현존하는 학교조합은 본령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0조 청진(淸津) 이외의 부윤은 법령 시행 직후에 학교조합의 구역을 정해 조합규약을 만들고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학교조합을 설치해야 한다.
- 앞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학교조합은 본령 시행일에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1조 본령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학교조합령 시행 규칙)

제1장 설치 및 폐지

제1조 학교조합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발기인은 그 원서에 동의자 서명을 날인한 조합규약 및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조합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일본인의 직업별 호구표
2. 입학해야 할 학년별 아동 숫자표
3. 교사 설비 예정서
4. 조합원인 자의 자금력 조서
5. 세입세출 개산
6. 조합구역 및 인접지 약도

제2조 조합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구역
2. 조합회 의원 선거 및 피선거인 자격
3. 조합관리에 관한 규정
4. 조합비, 사용료 및 부역·현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
5. 앞 각호 이외에 필요한 규정

조합규약은 조합관리자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3조 조합 창립에 관한 비용은 조합 성립 후 조합비로 지변해야 한다.

제4조 학교조합령 제4조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관계 조합원의 회의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학교조합령 제4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할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제5조 조합의 설치, 분합, 폐지 또는 구역의 변경은 조선총독이 이를 고시한다.

제2장 조합회

제6조 조합회 의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원 500명 미만 6인
2. 조합원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8인
3. 조합원 2,000명 이상 5,000명 미만 10인
4. 조합원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12인
5. 조합원 10,000명 이상 20,000명 미만 14인
6. 조합원 20,000명 이상 40,000명 미만 16인
7. 조합원 40,000명 이상 18인

앞항의 조합원 수는 도장관의 승인에 의한다. 의원 정수는 총 선거를 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증감하지 않는다.

제7조 조합이 성립되었을 때 조합관리자는 지체없이 조합회 의원선거를 해야 한다.

제8조 새롭게 조합을 설치했을 경우 조합회 성립 때까지는 의원선거가 필요하므로 조합회가 결정해야 할 사건은 관리자가 이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 조합회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 조합회 의원 중 결원의원이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었을 때는 보결선거를 해야 한다. 결원의원이 정수의 3분의 1에 이르지 않더라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결선거를 할 수 있다. 보결의원은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재임한다.

제11조 관리자는 선거 기일 전 50일을 기해서 그날 현재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관리자는 선거 전 30일을 기해서 그날로부터 7일 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조합사무소 또는 고시한 장소에서 선거인 명부를 관계자가 종람(縱覽)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관계자는

이의가 있을 때는 종람 기간 안에 이를 관리자에게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종람 기간 만료 후 3일 내에 조합회의 결정에 부쳐야 한다. 조합회는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결정해야 한다.

앞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3일 내에 이를 도장관에게 제기할 수 있다. 관리자가 이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앞2항의 경우에 조합회의 결정을 확정하거나 도장관이 결정한 바에 따라 선거인 명부의 수정이 필요할 때는 관리자가 그 확정 기일 전에 수정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 기일 3일 전에 확정한다.

선거인 명부는 도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하는 선거에 이를 이용한다. 단 명부 확정 후 도장관 결정에 따라 명부의 수정이 필요할 때는 선거를 마친 후 다음 선거기일 전 4일까지 이를 수정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를 수정했을 때 관리자는 곧바로 그 요령을 고시해야 한다.

확정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선거인 명부에 등록할 도장관의 결정서를 소지하고 선거 당일 선거장에 도착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정 명부에 등록된 자가 선거권이 없을 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단 명부는 이를 수정하지 않는다.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결정에 따라 명부 무효가 되었을 때는 다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그 명부의 작성, 종람, 수정, 확정 및 이의 결정에 관한 기일과 기한 및 기간은 제1차 감독관청이 정한 바에 따른다. 명부를 상실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선거인 명부 작성 후에 선거 기일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명부를 이용해 총람, 수정, 확정 및 이의 결정에 관한 기일, 기한, 기간은 이전 선거 기일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총람에 관한 기일, 기간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조합 규약으로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항 또는 제3항의 이의 제기는 문서로 해야 한다.

제12조 관리자는 선거 기일 전 적어도 7일간 선거 장소, 투표 일시 및 선거해야 할 의원수를 고시해야 한다.

제13조 관리자는 선거회를 개폐하고 그 단속에 임한다.

관리자는 선거인 중에서 2인 내지 4인의 선거 입회인을 선임해야 한다.

선거 입회인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4조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 선거인은 선거 장소에서 투표 용지에 직접 선거할 의원수에 상당하는 피선거인의 성명을 연기(連記)하고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단 의원 정수 10인 이상의 학교조합에서는 피선거인 1인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관리자가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양식을 이용해야 한다.

제15조 아래 투표는 무효로 한다. 단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1. 규정 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현재 조합의원직에 있는 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
3. 기재한 인원이 선거해야 할 정수를 넘어선 것 또는 제14조 2항의 단서 조항에서 1표 2인 이상의 피선거인의 성명을 기재한 것
4. 피선거인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
5.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

6. 피선거인의 성명 이외에 다른 것을 기입한 것. 단 작위, 직업, 신분, 주소 또는 경칭 종류를 기입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6조 투표 거부 및 효력은 선거 입회인의 의견을 듣고 관리자가 이를 결정한다.

제17조 조합회원의 선거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으로 한다.

당선자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취하고 연령이 같을 때는 관리자가 추천해서 이를 정한다.

제18조 관리자는 선거록을 작성해서 선거의 전말을 기재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 이를 낭독해 선거 입회인과 함께 이에 서명해야 한다.

선거록은 투표와 기타 관계 서류와 함께 선거 및 당선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보존해야 한다.

제19조 당선자가 정해졌을 때는 관리자는 곧바로 당선자에게 당선 취지를 고지해야 한다.

당선자가 당선을 사양하고자 할 때는 당선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관리자에게 제기해야 한다.

제20조 조합회원의 당선에 사양하는 자가 있을 때는 관리자는 곧바로 이를 보충할 당선자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는 제17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선거를 마쳤을 때는 관리자는 곧바로 선거록 등본을 첨부해 이를 제1차 감독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제2항의 기간을 경과했을 때는 관리자는 당선자의 주소, 성명을 고시하는 동시에 이를 제1차 감독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22조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는 선거 결과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한해 도장관은 선거 또는 당선을 취소해야 한다.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선거인은 당선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도장관에게 제기하고
앞항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선거 또는 당선 취소가 있을 때는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단 착오로 인해 당선자를 정하거나 당선자가 피선거권이 없어서
당선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리자는 제17조의 예에 따라 당선자를
다시 정해야 한다.

제24조 조합의원으로서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그 직을 잃는다. 선
거권의 유무는 조합회가 이를 결정한다.
앞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제1차 감독관청에 제기할 수 있다. 관리자에게 이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앞항의 이의 제기는 문서로 해야 한다.

제25조 조합회 의원은 선거 혹은 당선 취소가 있을 때까지, 또는
앞 조 제1항의 이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회의에 참석해 의사에
참여하는 권한을 상실한다.

제26조 도장관은 선거 혹은 당선을 취소하고 제11조의 이의가 결정
되었을 때는 곧바로 이를 고시해야 한다. 조합회 제11조의 이의
결정을 했을 때는 관리자는 곧바로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27조 조합회는 조합의 사무에 관한 서류를 검열하고 사무 관리,
의결 집행 및 출납을 검사할 수 있다.

조합회는 의원 중에서 위원을 선거해 앞항의 조합회 권한에 속하
는 사항을 진행시킬 수 있다.

제28조 조합회는 관리자를 의장으로 한다. 관리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연장자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리한다. 연령이 같을 때는 추

참으로 이를 정한다.

제29조 관리자 및 그 위임 또는 촉탁을 받은 자는 회의에 참석해 의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의결에 참가할 수는 없다.

제30조 조합회는 관리자가 이를 소집한다. 단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의원의 의견을 듣고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이를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제31조 조합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건에 관해 임시나 시급한 시행이 필요한데 조합회가 성립되지 않을 때 또는 관리자가 이를 소집할 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관리자는 이를 전결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 학교조합령 제12조 및 앞 조에 따라 처리한 사건은 다음 조합회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33조 조합회는 의원 정수의 반수 이상 출석한 것이 아니면 회의를 열 수 없다. 단 동일 사건에 대해 소집 재회를 했지만 여전히 반수가 차지 않았을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4조 조합회의 의결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가부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합의 분합, 폐지, 조합 구역의 변경 또는 규약의 변경에 관한 의결은 의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5조 의장 및 의원은 자기 또는 부모, 조부모, 처자, 손주, 형제 자매의 일신상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조합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제36조 의장은 회의를 총리하고 회의 순서를 정해 해당 날짜의 회의를 개폐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원의 발언을 금지하고 이를 취소시키거나 회의장 밖으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전달 및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회의록은 의장 및 출석의원 2인 이상이 이에 서명할 필요가 있다. 그 의원은 조합회에서 이를 정해야 한다.

제38조 조합원 회의 및 방청인 단속에 관한 사항은 조합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제3장 조합 직원

제39조 조합의 직원은 출납담당 및 서기로 한다.

출납담당은 조합의 출납사무를 관장한다.

출납담당을 두지 않은 경우는 관리자는 서기가 출납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출납담당을 두지 않은 경우는 출납담당에 관한 규정은 이를 출납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준용한다.

제40조 관리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출납담당이 이를 대리하고 관리자와 출납담당 모두가 문제가 있을 때는 상석 서기가 이를 대리한다.

출납담당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사무를 보거나 서기가 이를 대리하도록 한다.

부의 구역을 포함하는 학교조합의 출납담당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부원은 부의 관리 또는 서기에게 이를 대리시켜야 한다.

제41조 조합 관리자 및 직원의 복무기율, 배상책임 및 신원보증에 대해서는 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조합의 재무

제42조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조합비와 기타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해서 세입세출예산을 작성하고 늦어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조합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산은 제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예산을 조합회에 제출할 때는 관리자는 함께 예산설명서 및 재산 명세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43조 관리자는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에 정한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

예산은 연도 경과 후에 추가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

제44조 계속비의 기간 및 지출 방법은 제2호를 따라야 한다.

제45조 조합회에서 예산을 의결했을 때는 관리자는 곧바로 이를 제 1차 감독관청에 보고하고, 동시에 그 요령을 고시해 예산 등본을 출납담당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46조 세입의 연도 소속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납기가 일정한 수입은 그 납기 말일이 속하는 연도
2. 임시 수입으로 납입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이를 발송한 날이 속한 연도
3. 임시 수입으로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은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단 보조금, 기부금, 기채 수입은 연도 경과 후라고 해도 출납 폐쇄 때까지는 이를 예정한 연도의 세입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 세출의 소속 연도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비용 변상, 보수, 급여, 기타 제 급여 및 고용인 비용 종류는 그 지급해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한 연도. 단 지불 기일이 정해진 것은 그 지불 기일이 속하는 연도

2. 통신운반비, 토목건축비, 물건 구입 대가, 기타 계약에 따른 지불금은 계약을 한 날이 속한 연도. 단 계약에 따라 정한 지불 기일이 있을 때는 그 지불 기일이 속하는 연도.
3. 앞 2항에 제시한 것 이외에는 모두 지불명령을 발송한 날이 속한 연도. 단 보조금, 결손 보전은 그 결정이 있었던 날이 속한 연도의 세출로 할 수 있다.

제48조 조합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관리자는 납입 의무자에 대해 납기일로부터 적어도 10일 전에 그 납금액, 납기일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49조 조합비 부과에 관한 이의는 납입고지서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이를 제기해야 한다.

영조물을 사용할 권리에 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관리자에게 제기할 수 있다.

앞 2항의 이의는 이를 조합회에 부쳐야 한다.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1차 감독관청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관리자가 이의가 있을 때도 동일하다.

제1항 및 앞 항의 규정은 과료와 사용료의 징수 또는 부역 현품의 부과에 관해 이를 준용한다.

앞의 각 항에 대한 이의 제기는 문서로 해야 한다.

제50조 각 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수입으로 이를 지변해야 한다.

연도 경과 후에 이르러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때는 조합회 의결을 거쳐 제1차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년도 세입을 앞당겨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51조 예산에 정해진 각 항목의 금액은 유용할 수 없다.

예산 각 항의 금액은 조합회 의결을 거쳐 이를 유용할 수 있다.

예비비는 조합회가 부결한 비용과 용도에 충당할 수 없다.

제52조 지출은 채주(債主)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지출할 수 없다.

제53조 출납 담당은 관리자 또는 감독관청의 명령이 있지 않으면 지불할 수 없다. 명령을 받아도 지출 예산이 없거나 예비비 지출, 비목유용, 기타 본령의 규정에 따라 지출할 수 없는 때도 동일하다.

제54조 원격지에서 지불이 필요한 경비는 현금 전도를 할 수 있다. 앞항의 현금 전도는 조합관리 이외의 자에게 할 수 있다.

제55조 다음 경비는 개산불(概算拂)²²⁵⁾을 할 수 있다.

1. 여비
2. 소송비용

제56조 관보, 기타 전금(前金)지불이 아니면 구입 또는 차입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에 한해서 전금지불을 할 수 있다.

제57조 세입의 오납과 과납이 된 금액의 환불은 각각 수입한 세입에서 지불해야 한다.

세출의 오불과 과도가 된 금액, 현금 전도, 전금 지불 및 개산지불의 반납은 각각 이를 지불한 경비의 정액에 환입해야 한다.

제58조 조합의 출납은 차년도 6월 30일에 폐쇄한다.

관리자는 출납 폐쇄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조합회의 인준에 부쳐야 한다.

결산은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이를 작성하고 예산에 대한 과부족의 설명을 붙여야 한다.

제59조 결산은 인준에 관한 조합회의 의결과 함께 이를 제1차 감독관청에 보고하고 동시에 그 요령을 고시해야 한다.

225)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한 예상경비의 사전 지급.

결산의 인준에 관한 회의에서 관리자는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출납폐쇄 후의 수입과 지출은 이것을 현 연도 세입과 세출로 해야 한다.

제57조의 불려금(拂戻金), 여입금의 출납폐쇄 후에 관련된 것도 동일하다.

제61조 각 연도 세계(歲計)에 잉여가 있을 때는 차년도 세입에 편입해야 한다. 단 조합 규약의 규정 또는 조합회의 의결에 따라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이월할 필요가 없이 지출할 수 있다.

제62조 계속비는 매년도 지불 잔액을 계속 연도의 종료 때까지 순차적으로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제63조 공사 청부, 물건 매매, 대차(貸借), 노동력 공급은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단 임시 혹은 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조합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64조 조합의 출납은 매월 1회 관리자가 이를 검사하는 동시에 매년도 2회 이상 조합회에서 호선한 2인 이상의 위원이 그 검사를 해야 한다.

제65조 조합은 그 세입과 세출에 속하는 공금의 수령과 지불에 대해 우편대체예금 법에 따를 수 있다.

제66조 조합은 현금 출납 및 보관을 위해 조합금고를 둘 수 있다. 금고 사무 취급을 맡길 은행은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정해야 한다.

제67조 금고는 출납담당이 통지하지 않으면 현금 출납을 할 수 없다.

제68조 금고 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보관하는 현금은 조합의 세입과 세출에 속하는 것에 한하고 지출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조

합은 그 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앞항의 경우 금고 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제69조 조합은 금고 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담보를 징수해야 한다. 그 종류, 가격 및 정도에 관해서는 도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정해야 한다.

제70조 관리자는 정기 및 임시로 금고의 현금 및 장부를 검사해야 한다.

부 칙

제71조 본령은 학교조합령 시행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72조 본령의 시행 시점에 수도, 도살장, 공동묘지 또는 화장터를 경영하는 학교조합은 당분간 그 경영을 계속할 수 있다.

제73조 본령 시행 전에 설립한 학교조합은 본령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합규약을 변경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항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종전의 조합규약은 학교조합령 및 본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닌다.

제74조 본령의 시행 시점에 관리자 이외의 조합직원으로서 회계담당 직책에 있는 자는 본령에 따라 출납 담당, 기타 서기에 임명된 자로 간주한다.

제75조 본령의 시행 시점에 조합회 의원 직책에 있는 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최근 정기 개선(改選) 기일에 그 직을 잃는다. 본령 시행 후 그 개선 기일 전에 선출된 보결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제76조 본령 시행 전 선거에 관한 선거인 명부 또는 선거 및 당선 의 효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77조 본령 시행 전 조합비 사용료의 부과, 징수 및 재산 또는 영

조물을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이의 제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부 록

1. 지방행정
2. 폭도
3. 지방비
4. 지방금융조합
5. 지방창고
6. 토지조사
7. 토지수용
8. 신세(新稅)
9. 토목
10. 경북의 경지
11. 국유 미개간지
12. 임업
13. 광업
14. 낙동강 발전수력
15. 경편철도
16. 민력(民曆)의 편찬·배포
17. 국어 보급
18. 변호사
19. 집달리(執達吏)
20. 민단 종료기 관아·학교
각종 통계

1. 지방행정

1908년 관찰도의 이전 및 군의 폐치(廢置)와 분합(分合)에 착수하고 1909년 6월에 행정구역 및 명칭 정리 수속의 통일을 꾀하여 칙령으로 폐치와 분합 및 명칭과 경계 변경을 결정했다.

1909년 12월말일에 경상북도의 부·군·면 수는 41군 530면이었고 당시 대구부는 여전히 군의 자격이었다.

이에 앞서 1908년 1월에 지방관 관제개정 실시에 따른 지방 행정사무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 지방관청에 일본인을 임용하는 길을 터서 서기관, 경찰부장 이하 경부 등에 일본인이 취직하게 되었다. 경상북도 관찰도청 서기관에 시오카와 이치타로(鹽川一太郎), 경찰부장에 유아사 히데토미(湯淺秀富)가 임용된 것은 이때이다.

1910년 9월에 병합 후 필연의 개정으로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제를 공포하고 동시에 부·군 개폐로 대구군은 대구부로 개편되고 경상북도는 1부 40개 군이 되었다. 이어서 1914년 3월의 부·군의 폐합을 거쳐 1부 23개 군이 되었다.

조선의 면(面)은 일본의 정촌(町村)과 같다. 면장은 종래에 민선 또는 관선이었고 각 해당 면에서 군수에 예속해 주로 세금 징수에 관여했는데 지위가 매우 낮아 직무 집행상 권위가 없었다. 신제도에서는 특히 지방관 관제 중에서 면 및 면장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부군 밑에 면을 두고 면장을 판임관(判任官) 대우로 해서 하급 행정기관으로 했다. 면의 폐합은 부군 폐합에 앞서 진행해 현재 272면이 되었다.

2. 폭도

조선 시대의 폭도는 그 세가 매우 창궐했고 특히 군대 해산 후에는 옛 병사가 참여했다. 총기 사용도 알고 있어서 이를 토벌하기가 곤란했지만 일본제국 군대가 소탕에 종사하면서 점차 진정되고 수괴와 원흉은 모두 체포·처형되었다.

폭도는 귀순 장려, 토벌기관의 통일 등 백방으로 그 진정에 힘쓴 결과 점차 침정(沈靜)²²⁶해졌는데 1909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곳 경상북도에서 다소 빈번하게 출몰했다. 무리의 규모가 왕왕 100명 내지 300명에 이르러 대구임시파견대는 헌병 및 경찰관과 협력해 그 소굴인 전라도 방면에서 대규모 토벌을 하고 그 근거지를 덮쳐서 수괴를 체포해 살육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수색, 검거, 초안(招安)²²⁷해서 경상북도 북부의 폭도는 크게 숫자가 줄었다. 그러나 평범한 양민이 선동으로 폭도에 결합하거나 폭도가 초적이 된 자 수명 내지 수십명이 소단위를 만들어 숨어 있다가 수시로 출몰한다.

1910년에 경상북도 안동 지방에는 김상태(金尙台), 정경태(鄭敬泰) 등을 두목으로 한 폭도의 출몰이 빈번해서 1911년까지 수비대 및 경무기관이 연합 토벌을 계속해 50여명을 체포하면서 해당 지방은 정밀(靜謐)²²⁸해졌다.

1912년에는 폭도의 숫자가 줄어들어 점차 모습을 감추고 다시는 비행을 하지 않는 한편 초적이 민재(民財)를 약탈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들은 폭도라고 할 수 없다. 이후 더욱 평온해져서 어떤 산간벽지에서도 편히 잠들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226) 마음이 가라앉고 조용함.

227) 불러서 위로함

228) 세상이 조용하고 태평함.

3. 지방비

1909년 조선 정부는 지방비법을 공포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청은 각 지방청에 속하는 재산 및 수입, 지방비 지면 사업에 속하는 수입, 부과금, 국고보조금으로 각 도의 토목, 위생, 자선, 권업,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면(支辨)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과금의 과목, 과율, 납기, 기타 부과와 관련해 필요한 규정은 내부와 탁지부의 두 대신의 인가를 얻어 지방관이 발령하는 것으로 했다. 병합 후 이 법규는 계속해서 효력이 인정되었고 두 대신의 인가권은 총독에게 옮겨졌다. 당시 경상북도의 지방비는 191,887원이었는데 1913년도에는 269,450원으로 증가했다.

지방비로 하는 사업은 토목, 권업, 교육, 위생 등에 관한 시설로 토목사업 및 도로, 교량, 제방의 개축과 수선, 기타 부·군·면 토목공사비의 보조 및 부군면 토공기구의 구입비로 했다. 주요 권업 시설은 임업, 묘포 및 묘장(苗場), 채종진, 잠종의 제조·배부 순회 교사, 제언(堤堰)²²⁹⁾ 건설 및 장려 등이었다. 교육은 공립보통학교의 증설, 간이농업학교의 신설에 따른 보조이고, 위생비는 도살 검사원, 종두 장려, 수질 검사, 간이 상수 경영, 공동우물 및 변소 설치 및 보조금에 충당했다.

지방비의 부과·징수는 1912년 총독부령으로 지방비 부과금 징수 규칙을 개정해 지방에 따라 우편대체예금(郵便振替貯金)으로 편리하게 납입할 수 있게 되었다.

4. 지방금융조합

지방 소농민 간의 금융을 조화롭게 하는 동시에 필요한 조합에

229) 제방이나 댐.

농업기술원을 배치해 농사개량 지도를 함으로써 지방 농업의 발달을 꾀할 목적으로 1907년 이래로 지방금융조합을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증설해 1913년에는 총 190개에 달했다. 이는 평균 2개군에 1개 조합이 있는 비율이다.

각 조합은 지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농공은행과 연락을 유지하고 지방금융의 유통, 특히 농공 자금의 산포를 꾀하는 한편 묘포, 감독전(監督田), 시험경작 종묘 배부 등의 시설을 만들고 농사 개발을 지원해 쌀농사 개량에 가장 힘을 발휘했다. 기타 저축과 부업의 장려, 대부금 사용 감독, 물자 거래 중개 등에 계속 힘썼다. 정부는 조합사무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1912년부터 간이 창고를 건설해 조합에 대여하는 동시에 조합의 창고 건설비에 상당한 보조금을 내려주었다. 경상북도의 조합수는 20개이고 조합인수는 7,434명이며 창고는 14개가 있다. 자본금이 결코 풍부하지는 않지만 빈궁한 조선인 농민에게 이런 시설은 가장 적당한 금융기관이다.

5. 지방창고

조선인은 집이 협소하고 불완전해서 부호라고 해도 온전한 창고가 없다. 서민은 평균 세 칸 가옥에서 먹고 자며, 수확한 곡물은 실내에 두고 남는 것은 처마 밑에 두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조하기로 유명한 조선의 저곡(貯穀)²³⁰⁾ 실패는 벌레 피해와 쥐 피해를 입는 동시에 눈비로 인해 습기를 머금어 마침내 부패의 징후를 드러내 그 품질이 항상 조악(粗惡)하다. 이러한 상황을 증명하는 한 예로 미곡 저장 중에 참새 피해를 거의 불가항력처럼 인정한다. 수확 전에 참새 피해를 입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피하기 힘들지만 저곡

230) 곡식을 쌓아 저장함.

이 참새 피해를 입는 것은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조선은 창고가 없기 때문에 저장 중인 막대한 곡물을 참새가 쪼아먹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 금융기관의 발달에 투자하기 위해 지방의 주요 지역에 창고를 건설해 농공은행 등에 빌려주고 동시에 각 지방에 간이 창고를 건설해 미곡을 담보로 빌려주면서 위탁판매 및 공동판매 등의 업무에 공용하게 했고 1910년부터 연차적으로 그 수를 늘려 농민을 크게 이롭게 했다.

6. 토지조사

조선의 지세 제도는 수천 년 전의 결(結) 제도를 답습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본인이 매매하는 데에 면적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 권리 관계도 착오가 발생해 왕왕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대구는 많은 경우 성 밖에 일본인 거주 시가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 지적은 대개 받아서 경계에 쟁의가 생기고 은결(隱結)²³¹⁾이라는 탈세가 있어서 불안함이 크다. 이 때문에 일본인의 토지매매는 모두 현지를 측량해 평수 혹은 단별(段別)로 환산해서 인증과 증명의 등기 수속을 밟는다. 조선 정부의 토지조사는 재정 고문 시대에 계획하기 시작했고 이후 탁지부 임시재산정리국에 토지조사과를 설치해 조사 준비에 착수해 주로 토지조사비 지면에 충당할 목적으로 1909년말 제2기업자금채(起業資金債)를 기채하게 되었지만 그 구체적인 안을 만든 것은 1909년 2월이다. 그리고 1910년 1월에 그 계획을 새롭게 개정해 같은 해 3월의 칙령으로 토지조사국 관제를 제정했다.

토지조사 방법은 주로 토지의 경계, 소유주, 지목 및 지위(地位)

231) 일부러 양안에 올리지 않고 사사로이 경작하는 은토에 매긴 결세.

등을 조사하고 그 대장을 작성해 측량부에서 대삼각·소삼각 측량 및 일필(一筆) 측량을 하는 동시에 도면을 작성해 조사 종료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권을 발급하는 것으로 했다.

토지조사 기한은 1910년 이후 8개년 계속 사업으로 그 경비 예산액은 1,412만여원으로 개정(概定)하고 그 경비 가운데 1천만원은 기업자금채에서 편입하고 잔여 경비는 지권 발급 수수료로 보충한다는 방침이었다.

대구의 조사는 최우선으로 착수했다. 1910년도에 인천부 이외 9개군과 함께 각 행정구획의 경계 답사, 경계 약도 제작, 토지신고서 수집, 토지에 관한 지방경제 및 습관 조사를 완료하고 차년도에는 측량의 기준이 될 기준선 측량을 완료했다.

대삼각 측량은 일본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쓰시마의 측량 본점에 따라 조선 전체를 15개망으로 나누고 1910년 중에 부산-대전 사이의 경상, 충청 4개도에 걸친 충청망을 완료했다.

시운의 발달에 따라 총독부는 사업을 속성으로 할 필요성이 생겼고 계속 연한을 단축해 시작 당시부터 계산해서 만 7개년에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총예산액을 15,986,202원으로 정했으며 예산연도를 다음과 같이 구별했다.

(토지조사 예산연도 분할. 단위:원)

구별	1910년	1911년	1912년	1913년	1914년	1915년	1916년
토지조사비	760,192	1,757,246	3,080,319	3,792,971	3,768,300	2,444,496	382,678

1912년 8월 토지조사령 및 토지조사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새롭게 고등토지조사위원의 권한 및 재판 수속을 규정하여 토지조사에 관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개정하는 동시에 특정 경우에는

3년 내로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기존 전답을 합쳐서 한 지목으로 한 것을 각각 독립된 지목으로 개정했다. 또한 조선부 동산등기령을 시행한 결과 지권 발행을 폐지했다.

시가지는 매년 발전하면서 토지의 매매와 이전이 빈번해졌고 토지에 관한 권리 확인이 시급하고 절실해서 시가지 토지조사를 서둘러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는 시급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1913년 4월까지 준비조사를 전부 진행하고 지적측량을 대부분 완료했다. 대구에는 임시토지조사국 출장소를 두었다.

7. 토지수용

조선 시대에는 토지수용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종래에 규정이 없었지만 미개한 전제 시대에는 지방관의 권위가 토지수용법을 능가해 임의로 토지를 징수·사용했다. 그래서 병합 후 시구개정을 각지에서 진행할 때 부당한 가격을 주장하며 당국의 교섭에 응하지 않는 지주들이 있었다. 이렇게 개량시설을 저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총독부는 1911년 4월의 제령(制令)으로 토지수용령을 공포했다. 이 제령은 주로 일본의 토지수용법에 따른 것으로 그 개요는 정부가 토지수용령을 실시해야 사업으로 1)국방 및 기타 군사 에 관한 것, 2)관청 또는 관공서 건설에 관한 것, 3)교육·학에 또는 자선에 관한 것, 4)철도, 궤도, 도로, 교량, 하천, 제방, 사방(砂防), 운하, 용악(用惡) 수로, 습지, 선거(船渠)²³², 항만, 부두,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화장터에 관한 것, 5)위생, 측후, 항로 표시, 방풍, 방화, 수해 예방 등을 정하고 공용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것으로 했다.

232) 독 dock. 선박의 건조나 수리 또는 짐을 부리기 위한 설비

토지수용을 할 때 기업자(起業者)는 관계자와 협의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지방 장관의 재결(裁決)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조선총독의 재정(裁定)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용된 토지는 사용 기간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다. 보상금은 물론 관계자에게 지불되어야 하고 만일 지불이 불가능한 때는 이를 공탁하는 것으로 했다. 대구부는 1911년 7월 14일에 토지수용령 시행구역이 되었다.

8. 신세(新稅)

조선에서 일본인은 거류민단세, 혹은 일본인회나 학교조합비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는 토지소유자가 지조(地租)²³³를 납부할 뿐이다. 이전까지 한국정부가 지조 이외에 과세한 것이 없지만 융희 3년 즉 1909년 2월에 한국정부는 술, 담배, 가옥의 신세법을 공포하고 통감부와 협의해 거류지 및 조약 상의 잡거지 이외 장소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1909년도부터 한인과 동일하게 실시·징수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대해 대구거류민단은 대표자가 부과에 대한 이의를 소네 아라스케 통감에게 진정했다. 그러나 신세는 실시되었고 일본인도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납부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인의 간접국세 납부의 효시가 되어 병합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가옥세

가옥세를 부과·징수해야 할 시가지는 조선 칙령으로 이를 지정하기로 하고 과세 가옥은 구조와 성격에 따라 갑·을 두 종류로 구분한 후 이에 더해 넓이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과세율

233) 토지세.

은 차등을 두어 석조·벽돌·기와지붕을 갑종으로 하고 기타 보통민가는 을종으로 했으며, 넓이 계산 방법은 기존 칸 수를 이용했고 6척 정방형을 1평²³⁴⁾으로 했다.

2) 주세

이전에 조선의 조세는 모두 직접세 성격이었고 주세나 담배세처럼 소비자가 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없어서 옛 조선 정부는 인민의 과세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점차 간접세를 설정하게 되었다. 술과 담배에 대한 재원 조사 사업이 대략 완료됨과 동시에 융희 3년 2월 법률 제3호 및 제4호로 주세법 및 담배세법을 공포했다. 그러나 간접세에 속하는 징세는 조선에서는 처음 창시되어 그 실시가 곤란했음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조선에서 술과 담배 제조업은 대부분 자가 용도의 유치한 상태에 있어서 아직 산업적 발달 영역에 도달하지 않아 무거운 과세는 그 부담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간접세를 부과할 때는 가능한 세율을 낮게 하는 동시에 그 산업의 개량과 발달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재원의 함양을 꾀해서 간접세의 기초를 확립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아야 한다. 주세법은 주정을 함유하는 정도와 제조 방법에 따라 종류를 양성주(釀成酒)²³⁵⁾·증류주·혼성주 세 종류로 나누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용과 자가용 구분 없이 제조소 장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에 제조할 주류 및 제조 수량을 신고하고 주류 제조장 1개소마다 제조 수량에 따라 매년 5월 및 11월의 두 시기로 나누어 주세를 납부하게 했다. 주세 세율은 양성주가 가장 소액이고 증류주, 혼성주 순

234) 1평은 가로세로 1간(間)의 넓이다. 1간이 약 6척(≈약1.82m)이다.

235) 과일이나 곡류를 발효시켜 만든 양조주로 청주, 약주, 백주, 탁주, 과하주, 기타 양성 제조한 주류.

서로 금액이 증가한다.

3) 담배세

담배세는 경작세 및 판매세 두 종류로 구별한다. 잎담배를 경작하고자 하는 자는 자가용과 판매용 구분 없이 모두 정부의 면허를 받게 했다. 경작세는 심은 갯수 900주(株) 이상과 이하 두 종류로 나누어 세액을 구분하고, 전자는 1개년 50전 후자는 2원을 매년 11월 한 번에 전납하게 했다. 판매를 하는 자도 모두 정부의 면허를 받게 했다. 판매세는 도매와 소매에 따라 이를 구별하고 전자를 제1종으로 해서 1개년 10원, 후자를 제2종으로 해서 1개년 2원으로 해서 매년 1월에 한 번에 연액을 완납하게 했다.

9. 토목

1) 국도

국비로 경영해야 할 제1기 치도(治道) 공사는 총예산 1천원을 투입해 총거리 587리(里)²³⁶⁾를 공사하도록 했고 1911년도부터 5개년 계속사업으로 했다. 1913년도 대구 지방의 공정은 상주-충주 간 폭 4간(間) 길이 22리 18정(町)²³⁷⁾ 1등 도로 공사비 291,500원, 상주-진주 간 폭 3간(間) 길이 44리 2등 도로 공사비 501,600원을 계상했다. 준공 기간은 2년 내지 3년이지만 연기할 수 있어서 지방 인사는 속성을 위해 운동하고 있다.

2) 지방도로

도로 개수는 오직 국비에만 기댈 수 없어서 병합 이후 각 지방 모두 개수에 힘써 도청이 지방비로 시행하는 것 외에 부·군에서도 지방비 보조를 받거나 부역으로 차근차근 개수를 진행하고 있다.

236) 일본은 1리가 4km, 참고로 한국은 10리가 4km.

237) 1정(町)=60간(間), 1간≒1.82m≒6척(尺).

3) 시구개정

시가지 정리는 병합 후 각 지역 모두 개선을 피하게 되었다. 이들 사업은 한편에서는 국비에 맡기거나 그에 상당하는 지방비 보조를 받아서 조성하는 방침을 취하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 경제 상황에 비추어 영원한 이해관계를 연구하고 신중하게 조사해서 총독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대구 시가지는 1909년 이후로 개량에 힘썼다. 1912년에는 국고에서 9,600원을 보조받아 공사비 20,930여원으로 4개 시내도로, 폭 4간 내지 7간(間)²³⁸⁾ 5분(分)²³⁹⁾, 총거리 968간 9분을 완료하고 위 공사 이외에 국고보조로 도청-정차장 간 길이 174간을 12간 폭으로 개수하기로 결정해 현재 관계 지주들과 교섭 중인데 일부는 이미 착수·기공했다.

10. 경북의 경지

보호정치 확립 이후 권업모범장, 도 종묘장, 기타 각종 권업기관을 설치하고 종묘, 잠종, 종축(種畜), 종금(種禽), 종란, 농기구 배부, 경작 또는 사육법 지도, 관개 설비 보급 장려 등으로 농산물의 개선 증식을 꾀한 결과 쌀, 보리, 대두 등은 모두 품질 개량과 함께 수확량이 증가했고 최근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개량에 따라 경지 면적이 증가해 경상북도는 현재 수전 117,617정(町) 2단보(段步), 밭 92,838정(町) 8단보(段步) 합계 210,456정보로 전 조선의 총경지 2,847,525정 1단보에 대해 100분의 13.5에 해당한다.

238) 길이 단위에서 1간(間)=1,818182m.

239) 길이 단위에서 1분(分)=0.303cm, 참고로 1촌(寸)=10분(分)=3.03cm.

11. 국유 미개간지

거류민단 설립 당시, 즉 1906년에 한국 정부는 ‘국유미개간지이용법’을 공포했다. 당시 한국의 미개간지는 총면적 120만 정보(町步)로 기개간지 총면적의 약 6할 6분에 상당했다. 국유미개간지란 민간소유가 아닌 들판, 황무지, 풀밭, 늪지 및 간석지로 정부는 이용 출원자에게 이를 대여하고 그 목적 사업이 성공했을 때는 거의 무상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다. 병합 후 조선총독이 대부 및 부여 권한을 갖고 그 면적이 3정보 미만인 것은 도장관에게 위임했다. 1912년과 1913년에 접어들어서는 미개간지 대부 출원이 현저히 증가했다. 그 원인은 최근 일반 경지 지가가 등귀(騰貴)²⁴⁰⁾한 것과 사업가가 미개간지 사정을 파악해 유리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용 목적은 주로 밭과 전답의 개간이고 그 다음은 식수, 목축, 어업, 염전, 과수재배, 뽕밭, 기타 택지 및 공동묘지, 연근 재배 등이다. 대부료는 1정보당 1개년 50전이다. 부여를 받아 사업이 성공한 토지의 세율은 이듬해부터 5개년 동안은 토지 소재지에서 최하급에 속하는 토지 부담의 1/3로 했다. 그리고 출원 면적의 한도는 1개 구역 100정보로 했다.

12. 임업

1910년 한국 정부는 예비비 206,000여원을 지출해서 임야 기초조사를 개시하고 전국 임야를 국유 및 개인이나 지역 부락에서 점유하는 임야(사원 임야 포함)의 두 종류로 나누고, 임상(林相)에 따라 성림(成林), 치수(稚樹) 발생 및 무입목 지역을 분명히 했으며 수종의 분포, 임야의 명칭 및 임황(林況), 구관(舊慣) 조사에 종사했다.

240) 물건값이 갑자기 많이 뛰어들음.

또한 병합 다음 해인 1911년 9월에 종래의 삼림 법규를 개정하고 삼림령을 시행해 국유임야 입회 관행은 이를 가능한 용인하고 불필요한 존치 국유임야와 그 산물은 가능한 지역 주민, 조림 독지가 또는 이민단체에 양여하는 방법을 열어 일반 인민들이 삼림의 애호·증식에 뜻을 두도록 해서 임야 정리의 완성을 꾀했다. 경상북도의 임야는 국유 임야 46만 2천정보, 사유 임야 84만 8천정보, 합계 130만 9천정보이다. 삼림령에 따르면 조선총독은 조림을 위해 국유 삼림의 대부분을 받은 자에 대해 사업이 성공한 경우 그 삼림을 양여하는 동시에 국유 삼림 보호에 관한 벌칙은 엄중히 해서 타인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자신의 삼림이라고 해도 여기에 방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물을 절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조선에서는 화전이라고 해서 벌판을 태워서 밭을 만드는 습관이 여전하다. 이로 인해 산림과 들판의 화재가 많아 단속이 필요하다. 조선과 같이 목재와 신탄(薪炭)²⁴¹⁾이 결여된 땅에서는 삼림 경영은 가장 유리한 동시에 영구적 계속사업이라서 정부는 삼림 경영 희망자를 진심으로 보호·보조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장려하고 있다.

13. 광업

조선의 광산물은 광업 발전에 따라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07년에는 총 263만여원을 산출했지만 1912년에는 664만원으로 증가했다. 주된 것은 금이 457만여원으로 제1위이고, 사금과 석탄이 그 다음이며, 은·동·철·흑연 등도 생산한다. 경상북도의 광

241) 땔나무와 숯.

구 수는 1913년도 현재 47개 광구이고 그 면적은 19,735,000평이며 광구세 9,867원, 광산물 가격 38,055원, 사광(砂鑛) 채취세 1,041원이다. 광구는 상주가 9개 광구로 가장 많고 장기군 5개 광구, 선산군 4개 광구이며 이 밖에 옛 19개 군에 산재한다.

광세는 종래의 상납금, 허가 수수료 혹은 기타 명목으로 탁지부, 내부 또는 지방 관헌이 이를 징수했는데 그 징수법과 부과율 등이 정리되지 않아 번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에 1906년 7월에 공포한 광업법 및 사광 채수법(採收法)에 따라 광구세 및 광산세, 사금 채취세를 제정해서 광업에 관한 징세를 통일하고 광구세는 광구 1천평마다 1개년 50전, 광산세는 광산물 가격의 100분의 1, 사금채취세는 채취허가구 1천평 혹은 강바닥 길이 1정(町)마다 1개년 1원을 부과한다.

14. 낙동강의 발전과 수력

총독부는 낙동강, 한강, 대동강 이외 다섯 개 수계에 관해 조사를 마치고 수력 지점 38개소, 마력수 7만2천 마력을 산정하고 선정 수력 지점 가운데 가장 유망하다고 인정되는 낙동강 수계의 3개소를 지정했다. 그리고 낙동강 중 경상북도 답사 지점은 8개 장소 9,211마력과 경상남도 답사 지점 8개 장소 11,067마력을 계량했다.

15. 경편철도

1912년 6월의 제령으로 경편철도 및 궤도 경영에 관한 건을 발표하고 주로 1900년에 제정된 제국철도경영법 규정에 따라 일본 본토법을 참작해 허가주의를 채택했다. 대구 지방은 경상남도 경편철도의 미개업 선로에 속해 동래-경주-대구 간, 경주-영일만 간 및 울

산-장생포 간 122마일(哩) 2분(分)²⁴²이다. 이를 새롭게 창립한 조선경편철도주식회사에 전부 양도하기로 결정해 새 회사는 자본금 3백만원을 건설비에 충당했다. 예상 여객 수입은 연도의 인구 522,997명이고 이 가운데 1개년의 승차 인원이 6할 즉 313,798명이다. 1인 1회 승차 마일을 평균 30마일 2전으로 60전 1개년 수입금 188,278원 정도를 계상했다. 화물은 연도의 주요 물산인 쌀, 보리, 대두, 소두, 잡곡, 잎담배, 면화, 선어, 염건어, 식염, 목탄, 고래, 종이류이고 동래 이외 10개 군 및 대구부의 산출액 194,180여톤의 2할 5부가 철도편에 의한 것이며 1개년 수송액은 123,545톤이다. 1톤을 1마일당 3전으로 책정해서 평균 40마일을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운임 수입이 148,254원이고 기타 수입이 1개년에 16,787원을 계상했다. 새로운 회사 조선경편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총대는 나카노 다케나카(中野武營), 고 세노스케(郷誠之助), 오노 긴로쿠(小野金六)이다.

16. 민력(民曆)의 편찬·배포

조선의 역법은 1896년부터 태양력을 채용하고 민간에서는 일반적으로 태양·태음 양력 대조의 역서를 편제해서 분포·보급하는 데에 노력했다. 역서 분포를 맡은 국가가 천자의 통치에 따르고자 했고 시정 상 가장 긴요한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병합 후에도 그 사업을 계승·시행해서 1911년 역부터 표호(標號)를 ‘제국연호 00년 조선력’으로 바꾸고 조선의 실상을 고려하면서 일본 본토력을 다소 참작해 편제했다. 또한 1912년 1월 1일 이후 조선 표준시 개정을 실시해 1912년부터 표준시를 일본제국 중앙 표준시와 일치시켰다.

242) 여기서 ‘분(分)’은 1/10을 의미.

17. 국어의 보급

국어(일본어)의 보급은 국민성 도야에서 매우 중요해서 병합 이후 항상 이를 실시하는 데에 힘썼고 특히 신학제 실시 후에는 각 별히 힘을 기울여 관공립학교에서 국어 교습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진보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도 점차 국어 교수를 개시하고 있고 일본인 교원을 초빙하려는 추세를 보여 1912년에는 사립학교 교과목 중에 국어과를 추가하는 곳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또한 일반 조선인들도 시운의 전개에 따라 생활상 국어의 필요성을 느껴 공립과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열심히 국어를 습득한다. 기타 경무관현, 지방관리 또는 독지가 등이 건설한 국어강습회, 야학회 등이 도회지 곳곳에 개설되었는데 모두 널리 환영받고 있다. 따라서 『국어독본』, 기타 국어에 관한 서적을 구독하는 자가 매년 늘어나 민심의 향방에 비익(裨益)²⁴³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에 총독부는 장려에 힘쓰고 있다.

18. 변호사

1909년 11월 통감부령으로 변호사 규칙을 공포해 일본제국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된 자는 물론이고 조선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조선인으로서 조선의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통감부의 판사, 검사였던 자도 통감부 재판소에서 변호사 직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인 변호사 사무는 변호사 자격자 이외에 소송 사무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사관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는데 병합 후에 1910년 제령으로 변호사 규칙을 개정해 조선에서 변호사가 가능한 자는 이를 제국변호사

243) 보태고 늘어 도움이 되게 함.

법에 의해 그 자격을 지니는 자로 한정했다. 그리고 종래에 이사관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업을 해 온 자에 대해서는 바로 금지하는 것이 불가함을 인정해 한시적으로 허가 방침을 취했다. 1911년 6월 제령으로 당분간 이사청이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구재판소에 한해 소송대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19. 집달리(執達吏)

1912년 4월의 민사령(民事令) 실시와 함께 조선인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일본 본토법을 적용받게 되었다. 종래에 민형사 소송 규칙에 따라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윤, 군수 또는 경시, 경부, 집행관리가 하고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윤과 군수가 그 임무를 담당했지만 민사령에서는 재판소 서기가 집달리 직무를 하는 동시에 재판소 및 검사국의 장은 경찰 관리 및 기타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직무를 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고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 있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한해 군수가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외에는 전적으로 집달리가 이를 취급하도록 했다. 또한 강제집행 사무의 취급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르는 것으로 새롭게 정하고 차압 물건은 모두 경매에 붙이는 것으로 개정했으며 채권증서는 기존에는 어떤 종류라도 차압할 수 있었지만 이서로 채권을 이전할 수 있는 증서에 한해 차압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당요구(配當加入)²⁴⁴는 집행력 있는 판결등본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규정상 이를 요구할 수 없었는데, 일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규정에 따라 판결등본 없이 배당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244)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상을 받기 위해 집행관의 배당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

20. 민단 종료기 관아·학교

◎ 경상북도

장관 이진호(李軫鎬), 참여관 신석린(申錫麟),

도사무관 사사키 쇼타(佐々木正太),

요시무라 겐이치로(吉村謙一郎)

(1명 결원)

도기사(道技師) 기시 히데지(岸秀次)

▲ 장관관방(長官官房)

도서기

다카다 간고(高田官棼), 다카하시 유자부로(高橋又三郎),

아리가 도요노신(有賀豊之進), 미야자키 이키치(宮崎伊吉),

백남수(白南銖), 최해익(崔海益), 노무라 겐(野村謙),

이소야 고타로(磯矢耕太郎)

▲ 내무부

부장 도사무관 사사키 쇼타(佐々木正太)

도서기

다카다 간고(高田官棼), 히구치 료(樋口亮), 타니 신지로(谷幸

次郎), 시게토미 소치(重富佐八), 가메야마 사코타(龜山佐古

太), 우시오 군타로(牛尾軍太郎), 기무라 시즈오(木村靜雄),

이토 류스케(伊藤隆祐), 이시다 쓰루조(石田鶴藏), 이승근(李承

瑾), 박광렬(朴光烈), 유하라 나오헤(湯原直平), 최병석(崔炳奭),

기무라 간조(木村寬藏)

도기수(道技手)

사토 사이이치(佐藤才一), 다니 신지로(谷幸次郎), 모리타 로

쿠오(守田六男), 도가시 고(富樫恒), 모토야 아이지로(本谷愛次

郎), 오가노 세이조(小賀野清清藏), 남기홍(南基洪), 마쓰이 요

시오(松井良雄), 오카모토 나오유키(岡本直之), 야부키 다카타로(矢吹鷹太郎), 도미타 다노키치(富田多之吉), 이시이 타로(石井太郎), 무라니시도지로(村西藤次郎), 고토리사부로(後藤利三郎)

▲ 재무부

부장 도사무관 요시무라 겐이치로(吉村謙一郎)

도서기

엔다 히코이치(圓田彦一), 후루토 오토마로(古藤音麿), 홍의식(洪義植), 다카바야시 기쿠오(竹林規矩夫), 후루카와 사다오(古川貞男), 조정환(曹正煥), 이시마루 유조(石丸優三), 이가 세이치(伊賀誠一), 이상면(李相冕), 오다기리 만키치(小田切萬吉), 오무라 가네지로(大村金次郎)

◎ 대구부

부윤 다케자키 로쿠지로(竹崎六次郎)

부서기

우에마쓰 세이치(植松正一), 사이토 히코지로(齊藤彦次郎), 기미가부쿠로 야스시(君ヶ袋康), 도다 마사시(戸田正), 김상호(金象鎬), 백낙빈(白樂斌), 조명국(趙明國), 정상진(丁尙鎭), 이종오(李鍾五), 세키 야스사다(関泰貞), 나카무라 노후(中村農夫), 니와 노리오(丹羽憲夫)

◎ 대구복심법원

관사

원장 나카야마 가츠노스케(中山勝之助)

부장 아사다 겐스케(淺田賢介)

부장

사이토 쇼자부로(齊藤庄三郎), 히라야마 간지(平山勘次), 야쓰
하시 요(八橋容), 와다 시로(和田四郎), 사이토 소시로(齊藤宗四
郎郎), 다치카와 지로(立川二郎), 야마우치 긴지로(山内銀次郎)
기토 헤이치(喜頭兵一)

▲ 감사국

검사

검사장 구로카와 죠(黒川穰), 아카이 사다요시(赤井定義),
시부야 유후(澁谷有孚)

▲ 서기과

서기장 마루야마 도시코(丸山利寅)

서기

사사가와 게지로(笹川慶次郎), 다키하라 기타로(瀧原儀太郎),
하야카와 도쿠이치(早川篤一), 고이즈미 고키(小泉弘毅), 미토
마 고타로(三笥幸太郎), 하야시 기이치로(林嘉一郎), 하나무라
게조(花村啓藏), 야마노이 린지(山之井麟治), 도키에다 마코토
(時枝眞), 노무라 미쓰테루(野村光輝), 마쓰이 마스미(松井眞澄)
통역관 히자츠키 마스키치(膝付益吉)
통역생 야마노이 린지(山之井麟治)

◎ 대구지방법원

판사

원장 야나기사와 사고로(柳澤佐五郎)

부장

쓰모리 만키치(津守萬吉), 마루야마 가타로(丸山柯太郎), 니시
야마 큐지로(西山久二郎), 도도 게키치(藤堂景吉), 야마우치

(山内公允), 스에히로 세키치(末廣清吉), 시모무라 산시로(下村三四郎)

사법관 시보 에노키 쇼(榎昌), 구마지마 에사쿠(熊島營作)

▲ 검사국

검사정(檢事正) 오무라 오시로(大村大代), 무라카미 기요시(村上清), 가와무라 세스이(河村靜水), 한용(韓溶)

▲ 서기과

서기

후쿠나가 도라시로(福永寅四郎), 하야시 다케조(林武三), 하야시 구지로(林久次郎), 조경식(趙敬埴), 가마타 고로(鎌田五郎), 아유키와 에스케(鮎川榮亮), 정규태(鄭奎泰), 아토베 기하루(跡部樹治), 와타나베 나니(渡邊七二), 김영욱(金永旭), 다카치 료키치(高知良吉), 데라다가쓰미(寺田克己), 박창현(朴昌炫), 손영(孫英)

◎ 대구감옥

전옥 스와 젠타로(諏訪善太郎)

감옥의(監獄醫) 다카토 만지(高頭萬治)

간수장 오카 도모미치(岡友道)

◎ 임시조선파견대사령부

사령관 육군소장 구노 쓰카사(久能司)

부관 육군보병소좌 혼조 요시모리(本城嘉守)

육군보병대위 도미이시 간이치(富石歡一)

육군보병대위 고 나오에(甲直衛)

삼등주계정(主計正) 야노 도오루(矢野透)

삼등군의정(軍醫正) 하야카와 (早川於都造)

◎ **임시조선파견대보병**

제2연대

연대장 육군보병대좌(大佐) 다카키 렌키치(高木鍊吉)

부관 육군보병대위 도시마 사부로(豊島三郎)

◎ **제3대대본부**

대대장 육군보병대좌 사토 사토요시(佐藤里吉)

부관 육군보병대위 야노 다메아키(矢野爲章)

◎ **제9중대**

중대장 육군보병대위 히데시마 우이치(秀島卯市)

육군보병중위 후지타 추사쿠(藤田伸作)

상동 와타나베 기요시(渡邊清)

육군보병소위 우메지마 가쓰나리(梅島勝成)

◎ **제10중대**

중대장 육군보병대위 사카이 만키치(坂井萬吉)

육군보병중위 이키 미쓰시(壹岐滿志)

상동 야마가타 요시마루(山縣義丸)

육군보병소위 사토 세이치(佐藤精一)

◎ **경성위수(衛戍)병원 대구분원**

분원장 육군1등군의 야노 다다시(矢野貞)

육군2등군의 무토 교이치(武藤匡一)

◎ 경상북도 경무부

경무부장 육군헌병중좌 사사오카 마사지로(笹岡増次郎)

경시 육군헌병중위 와키노 요시오(脇野義雄)

권중익(權重翼)

경부 나카타 텐페이(中田傳平)

기수 하야시 고스케(林廣輔)

◎ 대구경찰서

서장 경시 고무타 주타로(小牟田十太郎)

경부 다카스기 겐조(高杉権藏), 도케 가즈키요(道家一清)

통역생 우치다 마모루(内田衛)

◎ 경상북도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장 도장관 이진호(李軫鎬)

위원 도참여관 신석린(申錫麟)

도사무관 사사키 쇼타(佐々木正太)

도사무관 요시무라 겐이치로(吉村謙一郎)

도사무관 배상락(裴相洛)

도사무관 최준(崔浚)

임시위원

부윤 다케자키 로쿠지로(竹崎六次郎)

군수 최린용(崔麟溶)

오바시 마쓰타로(大橋松太郎)

이일우(李一雨)

박하래(朴夏來)

정빈호(鄭斌鎬)

김승구(金丞九)

이경(李徑)

김성제(金性濟)

이건수(李建壽)

이병재(李秉宰)

◎ 대구우편국

국장 체신사무관보 깃카와 가츠히코(橘川克彦)

체신서기 오카자키 나오(岡崎直), 유모토 간노스케(湯本鑿之助), 시마카게 아이로(島蔭愛郎)

◎ 대구역

역장 서기 가쓰라 예조(桂榮三)

사와자키 이사부로(澤崎伊三郎),

아베 기쿠조(阿部喜久造)

조역(助役) 후지사키 후사지로(藤崎房次郎)

◎ 대구기관차

기수 사쿠마 쇼지로(佐久間正次郎), 고타타 리신(木幡李清)

◎ 대구보선구(保線區)

기수 하타노 우메사부로(幡野梅三郎)

◎ 대구공립심상고등소학교

훈도(訓導)

학교장 치마 기사쿠(千葉喜作)

소 슈마(宗秀馬), 사카타 진자부로(坂田仁三郎), 혼마 신이치(本間晋一), 고가 도요에(古賀豊枝), 스에토미 마쓰타로(末富松太郎), 다케다 치세(武田知星), 노자와 요시오(野澤義男), 미요시 구니스케(三好邦助), 스에오카 요이치(末岡興一), 시노 시게오(紫野重夫), 다카다 토모(高田トモ), 아사노 유키(浅野ユキ)

◎ 대구공립농업학교

교유(教諭)

학교장 오니시 기미오(大西鬼三雄)

팽한기(彭漢基), 구니히사 사쿠노스케(國久作之助), 나이트 만지로(内藤萬次郎), 도게도노기이치(遂殿義一), 가와하라 시즈오(川原静夫), 이시카와고이치(石川好一), 이와이 노부(岩井ノブ), 후쿠토미 고유(福富こゆう), 이치노세 간조(一瀬貫三), 마쓰모토 사치코(松本祥子)

◎ 동촌공립심상소학교

훈도

학교장 야마구치 쇼헤(山口昭平)

촉탁 야마구치 미에(山口美枝)

◎ 대구공립보통학교

훈도

학교장 오히라 군지(大平郡治)

하야시 쇼토쿠(林正得), 야마다 다치조(山田立藏), 치마 기쿠요(千葉喜久代)

◎ 수창공립보통학교

훈도

학교장 도미야 나오키치(富谷直吉)

서병학(徐炳學)

부훈도 박필환(朴弼煥)

◎ 대구자혜의원

의관(醫官)

원장 육군2등군의정 마쓰모토 시게마사(松本繁正)

육군2등군의 나카지마 모토지로(中島本次郎)

육군1등군의 후지이 하루키(藤井春喜)

가쿠 소타(賀來倉太)

의원 에바 세키치(江波清吉), 가네코 예지(金子英志)

◎ 달성군

군수 이범익(李範益)

군서기 아라카와 도쿠사부로(荒川篤三郎), 허영(許永), 이필영

(李弼寧), 가와고에 쇼조(川越省三), 황영수(黃英秀),

박제윤(朴濟輪), 스키우라 이쓰키(杉浦齊), 장문원(張文

遠), 이흥기(李鴻基), 다가와 초지로(田川長次郎)

◎ 대구세관출장소

소장 가이즈 유이치(海津惟一)

감정관보 가와카미 히로이치(川上廣市)

감리 도이 효이치(土肥兵市)

[각종 통계]

(제1표) 대구거류민단 설치 당시 일본 부·현·도별 출신지 호구
(1906년 12월말)

부현도	호구수	남	여	계	부현도	호구수	남	여	계
도쿄	31	40	26	66	니이가타	9	22	10	32
교토	13	30	13	43	사이타마	6	7	10	17
오사카	40	64	43	107	군마	8	13	14	27
가나가와	8	15	5	20	치바	9	19	14	33
효고	35	69	46	115	이바라키	6	11	7	18
나가사키	57	102	59	161	도치기	4	8	4	12
나라	8	18	14	32	이와테	2	5	5	10
미에	14	28	25	53	아오모리	4	12	6	18
아이치	33	58	27	85	아키타	2	4	7	11
시즈오카	20	34	32	66	후쿠이	7	21	11	32
아마나시	2	6	1	7	이시카와	8	17	9	26
시가	19	39	29	59	후쿠야마	10	22	21	43
기후	11	23	16	39	돗토리	20	32	17	49
나가노	10	24	17	41	시마네	22	30	21	51
미야기	6	10	6	16	오카야마	53	92	95	187
후쿠시마	8	14	7	11	히로시마	48	84	73	157
아미구치	107	194	144	338	사가	32	66	48	114
와카야마	9	19	11	30	구마모토	74	103	70	173
도쿠시마	22	42	23	65	미야기	8	12	8	20
가가와	14	31	23	54	가고시마	58	93	50	143
에히메	33	54	36	90	오кина와	1	1	0	1
후쿠오카	106	173	137	310	홋카이도	3	11	6	17
오이타	30	95	62	157	합계	1,055	1,912	1,332	3,235

(제2표) 대구경찰서 관내 일본인 출신지별 호구표

(1913년 현재, 일본 본적 부·현·도별 조사)

본적	호구수	남	여	계	본적	호구수	남	여	계
도쿄	89	128	125	93	사이타마	11	23	20	43
교토	33	52	41	93	치바	30	46	41	87
오사카	96	134	142	276	이바라기	25	46	30	76
가나가와	38	47	42	89	군마	23	47	33	80
효고	49	67	64	131	이바라기	11	22	16	38
나가사키	125	218	188	406	나라	31	60	54	114
니가타	42	79	63	142	미에	21	39	32	71
아이치	68	108	101	209	야마가타	7	14	17	31
시즈오카	72	127	110	237	아키타	5	8	12	20
아마나시	21	37	26	63	후쿠이	30	47	40	87
시가	42	99	64	163	이시카와	27	56	36	92
기후	24	44	31	75	도야마	25	46	35	81
나가노	33	71	52	123	돗토리	28	54	41	95
미야기	22	43	38	81	시마네	67	109	92	201
후쿠시마	34	75	53	128	오카야마	174	272	220	492
이와테	10	24	22	46	히로시마	184	313	313	626
아오모리	8	21	17	38	야마구치	199	428	393	821
와카야마	15	35	23	58	오이타	123	185	177	362
도쿠시마	92	180	169	349	사가	104	216	182	398
가가와	101	168	137	305	구마모토	130	226	212	438
에히메	107	156	145	301	미야기	15	27	24	51
고치	34	50	46	96	가고시마	92	174	113	287
후쿠오카	314	516	499	1,015	오키나와	1	1	0	1
홋카이도	8	14	13	27	합계	2,840	4,952	4,344	9,296

비고: 앞 표는 전대구거류민단 및 민단발전구역의 합계로 새로운 부(府)로 구획된 대구부의 현재 통계는 다음과 같다.

호수 2,302 남 3,889 여 3,485 인구 합계 7,374

(제3표) 신부·군(新府郡) 면적 및 호구표 (면적 단위: 방리(方里))

부·군 통폐합 실시에 따른 경상북도 새 부군의 면적 및 인구는 다음과 같다. 달성군은 대구부에서 분리되어 현풍군을 합쳤다. 대구부는 순전히 시가지 구역이 되었다.

부·군	면적	조선인 호구수	조선인 인구	일본인 호구수	일본인 인구
대구부	0,55	5,561	23,530	2,046	8,082
달성	39,01	22,502	107,541	228	647
경산	25,60	13,502	62,189	203	663
영천	51,50	18,188	85,569	114	370
경주	64,70	25,598	121,231	210	733
영일	71,50	23,425	118,523	384	1,478
영덕	52,50	11,127	56,985	87	258
영양	37,65	6,881	34,067	11	31
청송	61,35	9,281	45,837	32	81
안동	84,60	24,068	122,987	112	33
의성	66,80	21,061	115,460	71	185
군위	30,50	9,570	51,566	22	58
칠곡	29,30	11,063	54,687	262	549
김천	69,30	20,753	102,260	301	981
상주	96,60	25,962	131,370	225	730
예천	32,90	14,491	48,917	40	118
영주	21,90	9,617	43,265	54	114
봉화	60,10	9,978	57,736	24	24
문경	45,70	17,551	71,077	28	70
성주	30,60	14,345	70,007	47	145
고령	22,30	9,368	46,821	23	59
청도	40,80	14,390	63,203	124	380
선산	35,60	11,153	58,176	77	202

(제4표) 대구 지방 중요 농산물 (1913년도)

	작부(作付) 단별(段別)	수확량	단별(段畺) 수확량		작부 단별	수확량	단별 수확량
쌀	5,380町.62	67,278石	1.石249	보리	6,030.町00	105,345石	1.石715
밀	850.00	6,925	0.750	대두	223.00	1,494	0.670
소두	168.70	840	0.500	조	80.70	1,130	1.400
교맥 (蕎麥)	18.00	92	0.505	면	152.80	12,988貫	8,500
대마	21.30貫	2,130	10.貫000	왕골	1.50	1,170	78,000

(제5표) 대구 서리와 눈 시기

	첫눈	끝눈	첫서리	끝서리
극도(極度)	1905년 11월 5일	1911년 4월 19일	1907년 10월30일	1905년 4월 23일
평균	11월 16일	3월 19일	10월 30일	4월 13일

(제6표) 대구의 기온 및 강우량 (섭씨 ▲는 빙점 이하)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연도	최저 연도
기온	37.8	▲ 11.9	12.6	1908년	1910년
	최다	연도	평균		
눈·비량	128mm(粍)2	1911년	119mm(粍)6		

(제7표) 경상북도 권업비 (1914년도 예산)

	비목	금액	비목	금액
보통 농사	종묘 장비	12,919円	과수조합보조	400円
	농업기술원비	8,458	인삼업 조합 보조	100
	해충구방(驅防) 재료 배부비	20	건시 제조전습 보조	300
	실업회, 농회 보조	400	공동 채종전 설치 보조	1,350
	농기구 배부비	3,510	수전 공동작상장 설치 보조	920
	녹비용 증자 배부비	810	발작물 증자 배부비	1,713
	가마니 제조 전습비	1,030		
산업	잠업강습소비	10,752	건고치(乾繭) 장비	8,717
	잠업 취체소(取締所) 비용	1,840	병증자 배부비	200
	치잠(稚蠶)공동사육소 보조	6,800	잠종 제조 보조	450
	잠업기술원비	14,976	양잠전습소 비용	12,305
	잠업종묘 배부비	35,100	잠업보조 비용	2,450
축산	축산기술원 비용	600	종모우(種牡牛:황소) 사육료 보조	480
	지정종우(種牛)사육보조	1,440	축산조합 보조	2,100
	대부종암소(種牝牛) 구입비	700		
제언	제언(堤堰) 조사비	5,182	제언 수축 보조	15,000
임업	임업묘포비	10,927	모범조림비	732
	수산개량비	652	어선 피난 개수비(改修費)	4,860
수산	어류 수송 시험비 보조	800	어선 개량비 보조	300
	어업 기구 배부비	2,150		
공업 기타	물산 진열 장비	306	권업 제비(諸費)	800
	기업(機業)조합 보조	1,750	제지 보조	600
	품평회 보조	500	위탁판매 및 공동구입 보조	500
	기업소(機業所) 비용	7,200	제지전습소 비용	1,375

(제8표) 저금·예금 현황 (이위:厘位)

	1913년 3월말	1914년 3월말
취급 우편국과 은행	금액	금액
대구우편국	7,778,113	8,362,890
흔마치(本町) 우편국	2,548,515	2,347,220
다츠오카초(龍岡町) 우편국	1,299,570	2,286,250
조선은행	361,721,345	253,204,280
농공은행	502,455,448	468,447,341
선남상업은행	58,394,710	80,647,347
대구은행	-	38,550,940
계	934,197,701	855,846,281

(제9표) 토지 매매 가격 (1913년도 1단보(段步) 평균)

		상등지	중등지	하등지
경상북도	논	74円,000	50円,000	31円,300
	밭	32,000	23,000	15,300
조선 전체 평균	논	75,846	41,654	20,869
	밭	34,576	20,469	9,215

(제10표) 토지 임대 가격 (1913년도 1단보 당)

		상등지	중등지	하등지
경상북도	논	7円,670	5円,290	3円,510
	밭	4,190	3,570	1,440
조선 전체 평균	논	8,311	5,616	3,181
	밭	4,404	2,637	1,287

(제11표) 대구연초제조 및 정미량 (1913년중)

공장명	사역인	품명	생산량	가격
오이시 상화 (大石商會)	824	귤런	150,000,000개	235,000円
마에조노상회 (前之園商會)	268	상등	66,250,000	112,025
가이에다상회 (海江田商會)	122	상등	26,000,000	47,620
가나모리담배공장 (金森蓆工場)	31	각낭(刻蓆) 귤런	3,780貫 21,330,000	22,562
와카마쓰상회 (若松商會)	36	정미보리	3,050	62,000
이데정미소 (井手精米所)	5	정미	500	10,100
후루야정미소 (古谷精米所)	8	상등	3,000	61,500

(제12표) 대구 최근 임금(勞銀) 구별 (△표시는 조선인)

직업	일급	직업	일급	직업	일급
집짓기(家作)	1円,350 △ 800	가구·기구공(指物)	1円,300 △ 800	창호 제작(建具)	1円,300 △ 1,000
미장이(左官)	1,350 △ 375	석공	1,675 △ 500	공사막별이꾼(土方)	800 △ 350
인력차부	1,275 △ 1,275	톱질꾼(木挽)	1,100 △ 400	지붕직공(家根職)	1,500 △ 300
기와	1,450 △ 425	벽돌쌓기	1,650 -	벽돌제조	1,650 △ 1,200
페인트칠	1,450 △ 500	짐꾼(擔軍)	- △ 350	다다미 제조(畳刺)	1,250 -
표구사(表具師)	1,325 △ 775	나무통직공(桶工)	1,300 -	차(車) 제조	1,000 -
대장장이(鍛冶)	800 △ 700	양철공(鋳力職)	1,300 -	농작부(農作夫)	325 △ 225
조각	700 △ 500	금은 세공	1,000 △ 350	염색	700 -
양복 재봉	1,000 -	한복 재봉	- △ 300	신발직공(靴職)	1,300 △
활판 식자공	1,000 -	이발사 (월)	8,000 △ 5,000	인부·짐꾼(仲仕)	800 △ 400
정원사(植木職)	1,300 -	토목건축인부 (월)	1,200 -	막일꾼(平人足)	800 △ 350
하녀 (월)	5,000 △ 2,000				

(제13표) 달성군 주요 통계

이번에 대구부에서 분리되고 현풍군을 병합해 1개군이 된 달성군의 주요통계

	원 대구(대구부를 제외)	원 현풍군
호수	17,848	5,292
인구	86,724	27,302
경작지 면적	12,585町1	3,823町7
산림 면적	27,500町	10,264町1
쌀 수확	80,516石	14,752石
대두 수확	17,710石	3,574石
보리 수확	70,639石	30,108石
밀 수확	6,195石	2,615石
조 수확	112石	1,183石
수수 수확	2,532石	2,131石

(제14표) 대구관공서 소재지

명칭	위치	명칭	위치
경상북도청	가미마치(上町)	대구부청	시노노메마치(東雲町)
대구복심법원	미나미다츠오카초(南龍岡町)	대구지방법원	미나미다츠오카초
경상북도 경찰부	가미마치	대구경찰서	아마토초(大和町)
대구감옥	미카사초(三笠町)	임시조선파견대사령부	니시키초(錦町)
임시조선파견대 제9, 10중대	가미마치	대구헌병대 본부	가미마치
대구헌병 분견소	가미마치	대구우편국	사이와이초(幸町)
경상북도 종묘장	원대동(院岱洞)	대구거류민단사무소	가미마치
경북중앙묘포(苗圃)	이부키초(伊吹町)	대구세관출장소	이부키초
대구축우소	혼마치(本町)	사세국(司稅局) 대구출장소	이부키초
대구역	니시키초	대구면사무소	서성정(西城町)

(제15표) 대국 각 학교수 및 소재지 (1913년말)

학교명	위치	직원수	학급수	이동수
공립대구심상고등소학교	미나미아사히초 (南旭町)	21	18	897
공립대구유치원	상동	2	2	64
공립대구농업학교	봉산정(鳳山町)	5	2	55
공립대구보통학교	교마치(京町)	8	6	293
사립대구협성학교	히가시혼마치(東本町)	6	3	74
사립수창보통학교	교마치	5	3	119
사립희원(喜環)학교	메이지초(明治町)	8	5	103
사립대구신명여학교	교마치	4	2	43
사립계성학교	메이지초	8	5	103
사립순도(順道)여학교	고토부키초(壽町)	5	4	59
사립성립(聖立)학교	메이지초	7	4	165
사립대구보습학교	미나미 아사히초	3	2	35
사립달서여학교	가미니시초(上西町)	6	4	72
사립달성일어아학교	야구모초(八雲町)	3	2	35

(제16표) 대구 제 단체 소재지

명칭	소재지	명칭	소재지
대구상업회의소	가미마치	조선의학회 대구지회	자혜의원 내
재향군인회지부	가미마치	재향군인분회	가미마치
대구청년회	교마치	경북교육회	공립소학교 내
대구출옥인보호회	감옥 내	대구소방조(消防組)	경찰서 내
경북실업회	야마토초	일본적십자사지부	도청 내
애국부인회지부	도청 내	대구의사회	야마토초
대구변호사회	미나미다츠오카초		

(제17표) 대구생명보험회사 대리점

명칭	대리점 설치 연월	위치	대리점
제국생명보험주식회사	1904년 10월	혼마치	다카세(高瀬) 지점
대동생명보험주식회사	1908년 4월	니시키초	구로카와 원지 (黒川圓治)
진종신도생명보험주식회사	1906년 7월	상동	사카이 만지로 (堺萬次郎)
애국생명보험주식회사	1905년 12월	상동	후루카와 후미노스케 (古川文之助)
오하라생명보험주식회사	1910년 2월	시장북동	도구라 주로쿠 (戸倉十六)
메이지생명보험주식회사	1907년 9월	모토마치	스기하라 신키치 (杉原新吉)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	동문정	오구라 다케노스케 (小倉武之助)
일본생명보험주식회사	-	모토마치	나카에 고로헤 (中江五郎平)

(제18표) 대구화재보험회사 대리점

명칭	대리점설치 연월	위치	대리점
메이지화재보험주식회사	1906년 11월	아마토초	한국은행 대구지점
일본화재보험주식회사	1908년 11월	모토마치	선남은행
도쿄화재해상운송보험주식회사	1910년 11월	혼마치	이와세 시즈카 (岩瀬静)
요코하마화재해상운송신용보험주식회사	상동	모토마치	기무라 다케타로 (木村竹太郎)
고베화재해상운송보험주식회사	1909년 9월	동문정	오구라 다케노스케
오사카화재해상운송보험주식회사	상동	시장북동	가나모리 겐지 (金森謙二)
공동화재해상운송보험주식회사	1911년 12월	동문정	와카바야시 세스케 (若林誠助)
베스터블&런던, 앤드리코프보험주식회사	1913년 2월	니시키초	사토 슈조 (佐藤周藏)

[대구민단사 서지 정보]

1915년 5월 15일 인쇄 / 1915년 5월 18일 발행 (비매품)

조선 대구부 편찬

인쇄자 가쓰마타 쇼조(勝亦省三) (東京市京橋区西紺屋町27番地)

인쇄소 주식회사 스이에샤(秀英舎) (東京市京橋区西紺屋町27番地)

[해제]

1.

『대구민단사』는 1915년 5월에 당시 대구부(大邱府)가 간행한 자료이다. 내용은 제목에 있는 ‘대구민단’, 보다 정확하게는 ‘대구거류민단(大邱居留民團)’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대구거류민단은 1906년 11월 1일에 만들어져 1914년 3월 31일까지 존재했던 대구 거주 일본인들이 조직한 공공단체이다.

대구거류민단이 1906년 11월에 만들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일본은 같은 해 2월 조선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는데 거류민단 설립은 바로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러일전쟁(1904~1905)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까지 차단한 직후 통감부를 설치해 외교권을 중심으로 조선의 중앙 정치에 간섭하기 시작하고 지방에는 이사청(理事廳)을 설치해 지방관청을 ‘감독’하기 시작했다. 거류민단은 이러한 중앙의 통감부, 지방의 이사청과 맞물려 지방 이사청 산하에 설립된 공공단체였다. 참고로 거류민단은 1906년에 우선 부산, 인천, 경성, 평양, 진남포, 군산, 마산, 원산, 목포, 대구 총 10개 지역에 설립되었는데 이들 지역은 모두 이사청 소재지이다. 대구거류민단은 1906년에 설립된 10개 거류민단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설립되었다. 이후 1907년에 용산거류민단과 1908년에 신의주거류민단이 각각 설립되어 총 12개의 거류민단이 존재했다.

거류민단이 1906년에 통감부-이사청과 동시에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이 조직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거류민단은 각 지역 단위

공공사업의 의결기관이자 집행기관으로 기능하면서 통감부-이사청 체제를 보완하고 뒷받침했다. 거류민단은 이전의 공사관 기능을 승계한 통감부와 영사관 기능을 승계한 이사청만으로 식민지 지배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단위 공공사업의 실질적 추진 주체였던 것이다. 거류민단이 관여한 부분은 러일전쟁 직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들이 자신들이 이주-정착하는데에 필요한 체제이자 사업 영역이기도 했다. 거류민단은 조선을 식민지 지배하는 과정에서 일본 관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지점이였다.

거류민단 설립 배경에는 러일전쟁 직후부터 조선 이주 일본인이 급증하는 상황이 있었다. 청일전쟁 시기에 약 1만여명이었던 재조 일본인 숫자는 러일전쟁 직후에는 약 5만명으로 늘어나고 1910년에는 약 17만명에 이른다. 참고로 1920년대 중반에는 약 40만명까지 급증하고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75만명을 정점으로 한 후 1945년 시점에 71만명의 수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 양상의 시작 지점이 바로 러일전쟁 직후였던 것이다. 통감부와 이사청은 급격히 증가하는 일본인들을 행정적으로 모두 감당하기 어려웠고, 이주 일본인들도 자신들의 이주-정착 현장의 문제를 이제 막 설치된 통감부와 이사청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거류민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탄생한 것이다.

참고로 대구의 일본인 이주 양상은 조선 전체 일본인 이주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특징적인 양상도 보인다. 1903년 시점에 76명이었던 대구의 일본인 숫자는 러일전쟁을 경유하면서 1904년에 730명, 1905년에 1,508명으로 급증하기 시작해 1907년 2,675명, 1908년 3,501명, 1909년 4,936명, 1910년 6,430명에 이른다. 이러한 가운데 1907년~1908년 기간 대구의 일본인 증가율은 당시 경

성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데 이 양상은 이후에도 지속된다. 이와 맞물려 대구의 일본인 비율은 1920년에 부산(44.8), 군산(40.0), 청진(36.7), 목포(31.6), 인천(30.9)에 이어서 경성, 신의주와 비슷한 26.7%를 보여주다가 1925년에는 부산(38.4), 군산(33.6)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30.7%를 기록하고, 1930년 시점에도 부산과 군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일본인 비율을 보여준다. 특히 해당 기간에 일본인 비율이 증가한 도시는 대구가 유일하고 다른 주요 도시는 모두 감소한다. 무엇이 이렇게 내륙도시 대구로 일본인을 유입시켰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거류민단 이전에도 재조일본인 단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894~1895년에 벌어진 갑오농민전쟁, 즉 청일전쟁을 경유하면서 일본인들의 조선 이주가 본격화되어 그 숫자가 12,000여명에 이르렀고 이주 일본인들은 각자 지역 단위 일본인 조직을 구성했다. 예컨대 대구의 경우는 1900년 11월 4일에 10명 내외의 대구 거주 일본인들이 ‘대구일본인회’를 만들었고 1904년 8월에는 ‘일본거류민회’로 개편했으며, 이 거류민회가 1906년 9월 15일의 대구이사청 개청과 맞물려 같은 해 11월 1일에 대구거류민단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1906년에 설립된 거류민단은 이전의 민간조직과 질적으로 달랐다. 그 결정적 차이점은 공식 공공단체로서 국제징수법을 적용하는 ‘거류민단제’ 징세가 가능했다는 점과 기타 사용료, 수수료, 과료, 과태금 등의 공과금을 부과하고 수납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 지배해 가는 과정에서 거류민단이라는 민간단체를 법인화해서 공공사업 부분을 추진하도록 했던 것이다.

거류민단은 1914년 4월 1일에 새로운 행정 체제인 부제(府制)가 시행되면서 역사적 역할을 다한다. 거류민단 업무는 대부분 새로운 행정기관인 부(府)가 승계하고, 교육 업무는 ‘학교조합’이 승계했다.

이렇게 보면 대구부(大邱府)가 1915년에 『대구민단사』를 간행한 것은 1910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새로운 행정체제를 시행하면서 부제 시행 이전의 과정을 정리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앞서 ‘거류민단’의 역사적 성격과 설립 배경을 개괄했는데 이어서 그 세부적인 설립 과정과 변천, 그리고 주요 활동 및 사업 영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거류민단은 1905년 3월에 일본 정부가 법률 제41호로 ‘거류민단법’을 제정하면서 공식화되었다. 거류민단법을 통해 법적 지위를 확보한 거류민단은 법인으로서 관의 감독을 받으면서 법령 및 조약 범위 내에서 공공사무와 법령·조약·관례에 따른 사무를 담당하고, 관련 관리 및 거류민회를 두어 조직·입면·선거·입기·급여·직무 권한 등에 관한 사항과 거류민단의 재산, 부채, 시설물, 경비의 부과·징수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했다. 1905년 3월 거류민단법 공포 당시에는 아직 통감부가 설치되지 않아서 외무 대신·공사·영사가 거류민단을 감독했지만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에는 당초 외무성 소관에서 통감부 관할로 바뀌었고, 1905년 12월 10일에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가 제정되면서 이사관이 거류민단의 직접 감독자로 결정되었다. 이어서 1906년 7월에 통감부령 제21호로 ‘거류민단법 시행규칙’이 발표되면서 같은 해 8월부터 1908년 2월 기간에 경성·평양·인천·부산을 시작으로 대구를 포함해 총 12개의 거류민단이 설립되었다.

거류민단은 1910년에 기존의 통감부 체제가 총독부 체제로 바뀌면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한다. 거류민단은 원래 러일전쟁 후에 거류민이 증가하면서 설립된 일본인 자치단체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한일병합’ 이후에는 지방 행정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했다. 그러나 거류민단 제도를 대신해 식민지 지배체제에 맞는 행정 제도를 갑자기 완전한 형태로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총독부는 제령(制令) 제1호로 거류민단법과 그 시행규칙은 당분간 효력을 지닌다고 인정하고 훈령(訓令) 제16호로 거류민단은 장래에 이를 대신할 지방행정제도를 완성한 후에 정리하기로 했다.

대구거류민단은 1906년 9월 15일에 설치가 결정되었다. 이날 통감부는 대구이사청에 전보를 보내 11월 1일자로 대구거류민단을 설치한다는 결정을 통지했다. 이에 부이사관 오카모토 리헤(岡本利平) 감독관이 거류민단설립위원 12명을 지명하고 가게야마 히데키(影山秀樹)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예정대로 1906년 11월 1일 대구거류민단 사무소를 열어 가게야마 히데키를 민장 대리로 하고 도구라 주로쿠(戸倉十六)를 대리 조역(助役)으로 임명했으며 12월 21일에 제1회 민회의원 선거를 진행했다. 당시 대구의 일본인 인구는 1,600여명이었기 때문에 거류민단법에 따라 법정의원 12명을 뽑아 거류민회가 성립되었다. 이어서 12월 24일에는 임원 선거를 진행해 가게야마 히데키와 도구라 주로쿠가 각각 정식 민장과 조역으로 선출되었다.

대구거류민단은 1906년 11월 1일에 설치되어 1914년 3월 31일까지 7년 5개월 동안 존재했다. 이 동안 민장은 가게야마 히데키, 와타나베 무라오(渡邊村男), 기쿠치 겐조(菊池謙讓) 3명이 역임했고 조역은 도구라 주로쿠 1명이었는데 조역은 도중에 폐지했다. 민회의장은 나카에 고로헤(中江五郎平),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마노 세이치(麻野清一), 마스다 고타(増田虎太), 이와세 시즈카(岩瀬静) 등 몇 사람을 거쳤다. 민회의원은 초창기 이래로 당선자 숫자가 총 40여 명에 달했다. 『대구민단사』에 등장하는 대구거류민단

관계자들은 달리 표현하면 1905년 이후 약 10년 동안 대구 일본인 사회의 민간 유력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구민단사』는 다른 지역 거류민단과 다른 대구거류민단의 특징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대구가 옛 도읍이나 개항지가 아니라는 점, 둘째 조선인과 잡거(雜居)하면서 밀접히 접촉한다는 점, 셋째 정치적·무역적 관계가 없이 일찍부터 일본인이 거주하려 한다는 점, 넷째 거류민이 상사(商事) 전문이 아니라 다른 실업가들이 섞여 있었다는 점, 다섯째 특히 농사 경영자가 많았다는 점, 여섯째 배후에 많은 군 단위 지역이 있어 도농 발전의 관문이라는 점”. 이러한 자료 속 서술 내용은 식민지 시기 초창기에 대구의 특징적 상황과 대구에 유입된 일본인들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할 때 참고가 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대구민단사』의 목차는 당시 거류민단의 활동 영역과 범위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조선의 일본인 거류민단체는 거류민단 설립 이전부터 자신들의 필요로 인해 공동비용을 마련해 토목, 위생, 교육, 소방 등의 사업을 펼쳤다. 초창기에는 특히 수도·우물, 병원, 신사, 공동묘지, 화장장 설치 등이 주요 사업이었는데 거류민단 설립 이후에는 『대구민단사』의 목차가 보여주듯이 폭넓은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대구민단사』의 목차는 재정, 교육, 위생, 종교, 시구개정, 교통운수, 상하수도, 금융, 권업, 농업, 공업, 상업, 시장, 공원 및 명승지, 적십자사 및 애국부인회, 상업회의소, 신문 및 통신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류민단이 지역 단위 공공사업과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참고로 『대구민단사』 제2장 본기(本紀)는 대구읍성 해체, ‘요배전(遙拜殿)’ 건립 및 달성공원 조성, 시가지 도로 정비, 민단립 소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설립, 지방

거점 재판소인 공소원(控訴院) 유치, 상업 활성화, 대구역 개축 및 순종의 남순행과 대구 방문 등을 대구거류민단 존재 시기의 주요 사항으로 꼽고 있다.

3.

지금까지는 주로 ‘거류민단과 대구거류민단’이라는 조직 자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1915년에 간행된 『대구민단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어로 옮겨놓은 해당 자료를 직접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해제 차원에서 간략하게나마 『대구민단사』의 내용에 관한 윤곽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 없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문과 부록의 항목과 순서대로 아래와 같이 각 장별 내용과 부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제1장은 거류민단 설립 이전의 대구 관련 내용이다. 1893년 9월에 대구에 처음 이주한 일본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주로 청일전쟁을 거쳐 1900년대 전반기 대구 이주 일본인들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 내용이다. 이 부분에는 초창기 대구 이주 일본인 및 관련 조직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제2장은 ‘본기(本紀)’라는 제목처럼 대구거류민단의 역사, 달리 표현하면 대구 이주 일본인들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다. 제1장에 이어서 러일전쟁 이후 1900년대 후반기 대구 이주 일본인들의 역사를 1906년에 설립된 대구거류민단 역사를 축으로 서술하고 있다. 대구 읍성 해체, 요배전(신사) 설립 및 달성공원 조성, 도로 부설, 민단립 소학교 설립, 공소원 유치, 순종 황제 대구 방문, 대구역 개축 등이 주요 사항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905년 3월의 거류민단법과 1906년 7월의 거

류민단법 시행규칙 전문이 게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법령과 시행규칙은 거류민단이 어떤 조직이었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공식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제3장은 대구거류민단의 관리 및 민회의원 관련 내용이다. 이 장에는 총 49명에 달하는 역대 대구거류민회 민장, 조역, 민회의원 정보가 간략하게나마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 이 점에서 1910년대 전반기 대구의 일본인 유력자 그룹을 파악하고자 할 때 『대구민단사』만큼 유용한 자료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일본 본토의 출신 지역과 이전 약력이 개인별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초창기 대구 일본인 사회를 파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대구의 초창기 일본인 유력자들 가운데는 그 이력이 주목을 끄는 인물들과 더불어 의외로 중요한 인물들이 대구에 거주했었다는 사실을 전해 준다. 옴킨이가 앞서 번역한 『조선 대구일반』(1911.1) 또한 1910년 시점에 출판후원자 광고 형태로 당시 대구의 일본인 관련 정보를 담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구민단사』 제3장과 부록의 다양한 인물정보를 더하면 1905년 이후 10년 기간의 대구 지역 일본인 유력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은 ‘대구관계사’라는 제목 하에 삼국시대 이후 대구 지역의 역사를 개괄하고 있는데 주로 임진왜란 시기와 1894년 동학농민전쟁 이후 시기에 초점이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장 마지막에는 역사에 이어서 대구·경북 지역의 문화와 산업을 ‘종교, 문학, 천문, 시계, 의술, 서화, 음악, 요업, 주조, 조각, 기직, 조선(造船), 우경(牛耕), 잠업, 차, 목축, 상업, 노예, 순사(殉死), 상복, 농묘, 의관’의 항목 순서로 짧게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 내지 대구·경북 지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제5장은 대구거류민단의 상급 및 관계 관청 관련 내용이다. 1910년 이전의 행정제도가 1910년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대구거류민단의 상급 및 관계 관청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구이사청, 경상북도 관찰도, 경상북도청, 대구부청’과 관련된 정보들이 서술되어 있다.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 기관별 주요 인물-임원에 관한 정보들도 담겨 있다.

제6장은 대구거류민단의 재정 관련 내용이다. 대구거류민단이 이른바 ‘민단세’ 이외에 “철도용지를 대여받아 그것을 다시 빌려주는 형태의 임대수익으로 일부 세입을 보충”했다는 사실은 대구부와 거류민단의 공조 관계를 확인시켜 준다. 또한 ‘민단비(民團費)’의 대부분이 교육비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은 초창기 이주 이후 정착 과정에서 재조일본인 사회의 현안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전해준다. 이 장에는 1906년~1913년 동안의 대구거류민단의 세출입 결산 정보가 실려 있어서 거류민단의 재정 규모와 재산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제7장은 교육 관련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은 조선인 교육기관이었던 달성학교 관련 정보가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 대목이다. 달성학교 설립 과정, 초기 교비 충당 상황, 교장·교감 및 교사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일본인 학교와 관련해서는 ‘민단립 소학교’ 설립 배경과 과정, 학교 부지 문제를 둘러싼 일본인 사회 내부의 갈등 상황 등이 실려 있고 1905년~1914년 동안의 학생수 통계가 있어서 일본인 소학교 관련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제8장은 위생 관련 내용이다. 위생 문제는 초창기 조선 이주 일본인들의 주요 공통 현안이었다. 주로 분뇨·오물 및 쓰레기 수거

와 처리 문제가 구체적인 현안이었는데 제8장에는 초창기 해당 사업 종사자와 ‘대구위생회’, ‘대구청결조합’, ‘대구위생조합’과 같은 관련 조직 변천사 등이 서술되어 있다. 특히 대구위생조합의 경우 조합장·부조합장 이하 이사들의 인명 정보가 있는데 이를 통해 이사회가 일본인과 조선인이 각각 50% 정도 비율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살장 정비 및 전염병 관련 격리병사 설립 정보 등도 주목을 끈다.

제9장은 종교 관련 내용이다. 종교와 관련해서는 불교 포교소 정보가 주를 이루고 일본기독교회 및 미국 기독교파와 프랑스 천주교 관련 내용도 짧게 실려 있다.

제10장은 시구개정(市區改定) 관련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것은 시구개정 이전에 관련 상황과 연동해 부동산 투기가 심심치 않게 벌어졌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당시 대구의 원표 위치와 1등급·2등급 도로 정보가 실려 있는 점도 흥미롭다.

제11장은 교통운수 및 상하수도 관련 내용이다. 도로 건설은 철도 다음으로 중요한 현안이었다. 왜냐하면 도로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운임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이 장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를 중심으로 도로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실려 있다. 더불어 1904년 8월 1일의 대구역 설치와 이후 1913년 12월 10일에 개축공사가 완료되기까지 대구역의 변천 정보를 담고 있기도 하다.

제12장은 금융기관 관련 내용이다. 이 부분은 초창기 대구에 어떤 근대은행들이 설립되었는지를 전해주는 동시에 개별 은행 관련 정보도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다. 해당 장에는 ‘제일은행 대구지점, 한국은행 대구지점, 경상농공은행, 동양척식회사, 선남상업은행, 대구은행, 대구지방금융조합’ 관련 정보가 실려 있다.

제13장은 권업시설 관련 내용이다. 이 장은 주로 농업과 공업 분야 장려 정책, 소작 관련 정책, 당시 대구·경북 지역의 농업 상황 및 주요 생산물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당시 조선의 소작제도, 품종개량 관련 세부 정보, 권업모범장 관련 상세 정보를 수록한 부분이 주목을 끈다. 이 밖에 '수묘양성소, 대구잡업전습소, 연초시작소, 면화시작소, 품평회 및 공진회' 관련 정보도 주목을 끈다.

제14장은 농업 관련 내용이다. 이 부분에는 조선의 '지조(地租)' 관련 정보도 실려 있고 대구·경북 지역의 토지 등급별 면적 정보도 있다. 이 밖에 총독부 설치 이후 토지세 개정 정보와 토지 등급별 토지매매 가격 정보도 실려 있다. 또한 농업의 주요 업종별 내용도 있는데 앞담배, 과수원, 양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제15장은 공업 관련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는 제연업(製筵業) 관련 내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제사업, 제지업, 제분업, 도자기 제조, 벽돌, 연초 제조 순서로 관련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총 12개 제조업별 1913년도 생산량 및 생산액, 생산 가구 정보가 수치 통계로 정리되어 있어서 1910년대 전반기 대구의 제조업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제16장은 상업 관련 내용이다. 이 부분은 조선의 전통적인 상업 관습인 5일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 시스템, 엽전 등을 소개한 후 일본인 거류민의 상업 상황 및 무역품 종류, 물가, 상업기관, 상업단체 정보 등이 정리되어 있다.

제17장은 시장 관련 내용이다. 이 부분은 대구의 양대 시장으로 동문시장과 서문시장에 초점을 맞춘 한편, 상설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시장개량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18장은 공원 및 명승지 관련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는 달성공원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공원조성 과정과 관련 주요 인물정보가

실려 있다. 이어서 대구의 명승지로는 망경루, 칠성공원, 공자묘, 영귀정(永水園), 동화사, 우록동, 용연사를 언급·소개하고 있다.

제19장은 적십자사 및 애국부인회 관련 내용이다. 두 조직은 근대 시기 일본의 중요한 민간조직이었으며 같은 맥락에서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도 중요한 조직이었다. 성별 측면에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고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재향군인회와 함께 관민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해당 장에는 일본적십자사 대구위원회(이후, 대구지부)의 창립과 변천 과정, 관련 주요 인물정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애국부인회 대구지부 관련 창립 및 임원 정보도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제20장은 재판, 경찰, 수비대 관련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는 조선의 재판제도를 소개하는 동시에 통감부 설치 이후 재판제도와 재판소 체제의 변화를 서술하면서 대구공소원 및 대구복심법원 설립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어서 경찰제도의 변천 과정과 1905년 이후 연도별 경찰 관련 주요 인물-인사 정보를 정리하고 있다.

제21장은 상업회의소 관련 내용이다. 대구상업회의소는 1906년 12월에 '대구일본인상업회의소'로 창립되었는데 1910년 한일합병 이후에는 대구상업회의소로 개칭된다. 이 장에는 창립 당시 인물정보와 그 이후 주요 인사 정보 및 회의소 이전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1907년~1913년 기간의 대구상업회의소 중요사항을 연도별·월별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임원, 직원, 사무원 정보도 매우 상세히 수록하고 있어서 상업 측면에서 당시 대구의 일본인 유력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제22장은 신문 및 통신 관련 내용이다. 대구는 1901년 이래로 신문 간행이 활발했다. 『달성주보』 이후로 1913년까지의 기간에 간행된 신문만 꼽아보아도 『조선』, 『대구실업신문』, 『대구신보』, 『대구

일일신문』, 『대구일보』, 『대구신문』, 『조선민보』가 있었다. 이 밖에 당시 경성과 부산 및 일본 본토 주요 신문사의 지국을 통해 유입되는 신문이 별도로 있었다. 해당 장에는 “일본 본토 및 만주에서 발행하는 신문 가운데 조선에 유입되는 것은 그 수가 매우 많아서 하루 평균 40종 33,800부에 이른다”고 서술되어 있다. 1910년대 전반기 신문 및 정보 상황은 현재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했고 대량의 정보가 근대신문을 매개로 대구 지역에도 유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23장은 통신기관 관련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은 이른바 ‘전신(電信)’과 우편, 전화이다. 대구의 전신 기관은 1903년 11월 1일에 부산우편국이 대구수취소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대구수취소는 이후 1905년에 부산우편국 대구출장소, 1906년에 대구우편국으로 확대-개편되었고 이에 따라 취급 업무도 우편에서 전신, 전화로 확대되었다.

제24장은 수이출입 관련 내용이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대구의 무역 관련 내용이 된다. 해당 장은 당시 조선과 일본 간의 주요 무역 품목을 소개하는 한편 1907년 7월 대구보세화물취급소 설치 이후 1910년 10월의 대구세관출장소로의 개편, 1911년 12월부터 시작된 통관사무 등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장 마지막 부분에 1909년~1913년 기간 대구의 연도별 주요 수이출입 품목과 수이출입액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제25장은 민단 폐지, 부제 시행, 학교조합 설립 관련 내용이다. 이 장은 제목에 맞게 민단 폐지 경과를 다시 한번 정리한 후 새롭게 시행된 부제와 부제시행규칙, 학교조합령 전체를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과 시행규칙은 1914년 4월 이후 새로운 행정제도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가 된다. 학교조합령이

실려 있는 것은 기존 거류민단사업 가운데 교육 업무는 학교조합이 승계했기 때문이다.

이상이 『대구민단사』 본문의 목차별 주요 내용인데 해당 자료에는 별도의 ‘부록’이 있다. 부록의 내용은 총 21개 항목에 걸쳐 당시 대구의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이 부분 또한 1905년~1914년 시기 대구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총 21개 항목은 순서대로 지방행정, 폭도, 지방비, 지방금융조합, 지방창고, 토지조사, 토지수용, 신세(新稅)와 그 종류, 토목, 경북 지역 경지, 국유 미개간지, 임업, 광업, 낙동강의 발전과 수력, 경편 철도, 민력(民曆)의 편찬과 배포, ‘국어(일본어)’ 보급, 변호사, 집달리, 민단 종료 시점 관아와 학교 관련 임원 정보가 매우 상세히 실려 있다. 항목 제목만 보아도 1910년을 전후한 시기 대구의 다양한 정보를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게재한 각종 통계 정보는 대구 일본인의 출신지별 정보, 새로운 부군의 면적 및 인구, 대구 지방 주요 농산물, 서리와 눈 시기, 1914년도 경상북도 권업 예산, 1913년~1914년 저금·예금 현황, 1913년 시점 토지 매매 및 임대 가격, 연초 제조량 및 정미량, 총 34가지 업종별 조선인·일본인 임금 비교표, 달성군 주요 통계, 대구관공서 소재지, 1913년말 시점 총 14개 대구 학교별 소재지, 대구 주요 단체 소재지, 총 8개 생명보험회사 위치, 총 8개 화재보험회사 위치 등을 담고 있다. 이 또한 본문만큼이나 중요하고도 구체적인 통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다.

4.

1915년에 간행된 『대구민단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본격화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 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

는 역사 자료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대구민단사』보다 앞서 간행된 근대 시기 대구 관련 일본어 자료 가운데 『조선 대구일반』(1911.1 간행)이 있다. 『조선 대구일반』이 근대 이후 대구를 종합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일본어 자료라고 한다면 『대구민단사』는 최초에 이은 두 번째 중요 자료에 해당한다. 그리고 두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 대구 지역이 1905년 이후 10년 동안 통감부 체제와 총독부 체제를 거치면서 어떤 변화를 겪어야만 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물론 『대구민단사』는 식민지 지배 상황에서 ‘대구부’라는 일본 주도의 지방 행정기관이 간행한 자료이고 ‘대구거류민단’이라는 일본인 공공단체, 달리 표현하면 식민지 지배 단체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료 비판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부분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엄정한 사료비판 위에서 『대구민단사』와 같은 자료의 내용을 우리 입장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는 작업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로는 당시 조선인은 공식 자료의 주체가 되기 어려웠다는 뼈아픈 역사적 상황과 더불어 식민지 상황에서 기록된 사실과 정보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지역의 근대 시기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들이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식민지 지배상황에서 기록되고 출판된 자료이기 때문에 일말의 가치가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근대 시기를 파악하고 현재 시점에서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반문을 떠올려보면 『대구민단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그 실마리가 보인다. 식민지 시기의 역사도 우리 형성의 과정으로서 대면해야 한다. 한국 사회도 이제 해당 시기 역사를 의연하게 마주하면서 역사책임 문제와 같이 대처할 것은 그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유념해야 할 것은 특정 시기 역사에 대한 회피와 공백이 오히려 왜곡을 낳

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36년의 시간’을 마주하지 않고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 단절과 공백의 자리에서 새로운 갈등이 끊임없이 싹틀 것이다.

『대구민단사』는 일본인들이 초창기 대구에 정착한 과정과 방식, 1905년 통감부 설치 이후 대구거류민단을 포함한 다양한 체제와 시설을 설립한 과정, 1910년 총독부 체제 이후의 지방 행정조직 구축 과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들은 다름아닌 식민지 지배체제 구축과정, 달리 표현하면 식민지 침략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공식적인 정보들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구민단사』에 있는 기록과 정보들은 대구읍성이 어떻게 해체되었는지, 조선시대 관유물이었던 ‘영귀정’이 어떻게 일본인에게 불하되어서 ‘도수원’이 되었는지, 시구개정이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대구의 토지를 어떻게 점유했는지, 경부선 철도 부설에 따른 철도 인근 토지가 어떻게 일본인들에게 넘어갔는지, 국유 미개간지를 일본인들이 어떻게 개간하고 불하받았는지, 1910년대 중요한 식민지 정책이었던 ‘토지조사’의 세부적인 과정과 이와 맞물린 총독부 정책은 어떤 것이었는지 등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 기록과 정보들과 별도로 일본인들이 대구에 어떤 배경과 상황 속에서 이주-정착했고 통감부 체제와 총독부 체제를 거치면서 어떤 명분과 논리로 식민지 지배체제를 확산시켜 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준다는 점도 중요할 것이다. 이 밖에 『대구민단사』 본문 및 부록과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각종 통계자료는 식민지 상황 속에서 대구 지역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기존의 특징이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혹은 식민지 시기 산업정책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특징이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데이

터를 제공한다. 식민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이어지는 대구의 특징 가운데 그 역사적 기원이 『대구민 단사』가 기록한 시점에 있는 경우가 의외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도 식민지 시기 지역 관련 주요 일본어 문헌은 향후 지속적으로 번역되어 보다 많은 연구자와 시민들이 지역사회 형성의 다양한 측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될 필요가 있다.

2020년 12월
옴긴이 최범순

인명 색인어

가게야마 히데키(影山秀樹)	구보타 루이코(久保田類子)
가나모리 리쿠사부로(金森力三郎)	기도 다다지로(城戸唯次郎)
가메야마 사코타(龜山佐古太)	기무라 다케타로(木村竹太郎)
가미모리 겐자부로(神守源三郎)	기무라 마사코(木村満佐子)
가미야 도요노리(神谷豊功)	기무라 산시로(木村三四郎)
가사오카 마스지로(笠岡増次郎)	기무라 시즈오(木村静雄)
가사오카(笠岡) 소와	기시 히데지(岸秀次)
가와이 아사오(河井朝雄)	기쿠이케 우메코(菊池梅子)
가와이 치카코(河井チカ子)	기쿠치 겐조(菊地謙讓)
가와카미 쓰네테오(川上常郎)	기쿠치(菊地) 연대장
가츠라 요시코(桂ヨシ子)	기쿠카와 게이운(菊川溪雲)
가토 이치로(加藤一郎)	기타무라 고시치로(北村五七郎)
고다마 소시코(児玉ソシ子)	기타무라 미츠코(北村光子)
고다마 이타로(児玉伊太郎)	김상태(金尙台)
고라이 히데타로(戸來秀太郎)	김직현(金稷鉉)
고레사와 신이치로(是澤真一郎)	김충선(金忠善)
고무로 류노스케(小室竜之助)	깃카와 가츠히코(橘川克彦)
고무타 고토코(小牟田琴子)	깃카와 쓰네테오(橘川ツネ子)
고무타 주타로(小牟田十太郎)	나가시마 이와오(永島巖)
고미야 히코지(小宮彦次)	나카이 고타로(永井幸太郎)
고이케 쇼자부로(小池鐘三郎)	나가타니 다카시(永谷隆志)
고타마 이타로(児玉伊太郎)	나카니시 기쿠오(中西喜久男)
구노(久能) 소장	나카야마 가츠노스케(中山勝之助)
구로다 후쿠마쓰(黒田福松)	나카에 고로헤(中江五郎平)
구로카와 조(黒川穰)	나카에 도미주로(中江富十郎)
구로카와 엔지(黒川圓治)	나카오지 마사오(仲大路正雄)
구리타 에자부로(栗田英三郎)	나카자와 텐노스케(中澤傳之助)
구마이 하루오(熊井晴雄)	나카지마 소메코(中島そめ子)

나카하라 후사이치(中原房一)
 노무라 겐(野村謙)
 노세 다츠고로(能勢辰五郎)
 니시모토 다미시로(西本民城)
 니시자와 사토시(西澤智)
 니시자와 아사코(西澤あさ子)
 다니 리마코(谷リマ子)
 다도코로 유키에(田所幸衛)
 다무라 겐조(田村權藏)
 다무라 도미조(田村富藏)
 다부치 쇼헤(田端正平)
 다카 구마오(高熊男)
 다카다 간고(高田官吾)
 다카다 요시코(高田芳子)
 다카라 쓰네코(高羅恒子)
 다카야나기(高柳) 대위
 다카하시 유리코(高橋ゆり子)
 다카하시 유자부로(高橋又三郎)
 다케가와 세지(武川盛次)
 다케무라 미사오코(竹村ミサヲ子)
 다케우치 간타로(竹内卷太郎)
 다케자키 로쿠지로(竹崎六次郎)
 다케자키 쿄코(竹崎郷子)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도구라 주로쿠(戸倉十六)
 도이 요타로(土井庸太郎)
 도쿠라 다미코(戸倉民子)
 도쿠히사 요네조(徳久米藏)
 마노 세이치(麻野清一)
 마루야마 도시코(丸山利寅)

마스다 고타(増田虎太)
 마쓰다 만로쿠(松田萬六)
 마쓰모토 기로쿠(松本喜六)
 마쓰모토 세이치(松本誠一)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泰輔)
 마쓰시타 나오미(松下直美)
 마에다 아쓰시(前田篤志)
 마에조노 간자에몬(前之園基左衛門)
 마에카와 도모지(前川知二)
 마유미 마코토(眞弓忠)
 마츠모토 사다코(松本貞子)
 마츠모토 시게마사(松本繁正)
 마츠시타 나오미(松下直美)
 마치다 규고(町田久吾)
 마키노 슈(牧野周)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
 모리나가 소이치(守永宗一)
 모리시마 미즈코(森島美津子)
 모리시마 야시로(森島弥四郎)
 모리타 로쿠오(守田六男)
 무로(室)
 무카이자카 쇼키치(向坂庄吉)
 무토 분고(武藤文吾)
 무토 예즈코(武藤悦子)
 미야자키 이키치(宮崎伊吉)
 미와 조테쓰(三輪如鐵)
 미우라 나오지로(三浦直次郎)
 미우라 쇼이치로(三浦庄一郎)
 미즈하시 에타로(三橋栄太郎)
 미카지리 추고(三ヶ尻忠吾)

박강자(朴康子)	스와 겐타로(諏訪善太郎)
박광렬(朴光烈)	스와 후미코(諏訪フミ子)
박기둔(朴基燉)	시게토미 세키코(重富セキ子)
박성환(朴星煥)	시게토미 소치(重富佐八)
박준효(朴準孝)	시로타 신스케(白田新助)
박중양(朴重陽)	시마다 분노스케(島田文之助)
백남수(白南銖)	시마다 후미노스케(島田文之助)
사사오카 히사노코(笹岡ヒサノ子)	시모다 고키치(霜田語吉)
사사키 사치코(佐々木幸子)	시모야마 마사코(下山昌子)
사사키 쇼타(佐々木正太)	시모즈 사부로(下津三郎)
사이토 레조(齋藤禮三)	시부사와 슈조(澁澤周藏)
사이토 요시조(齋藤芳造)	시오카와 고고(鹽川幸吾)
사이토 이와오코(齋藤いほ子)	시오카와 이치타로(鹽川一太郎)
사카모토 슌스케(坂本俊資)	신석린(申錫麟)
사카모토 준(坂本淳)	신타니 마쓰스케(新谷松助)
사카이 만지로(堺萬次郎)	신태휴(申泰休)
사키사카 쇼키치(向坂庄吉)	쓰네요시 다다미치(恒吉忠道)
사토 겐쇼(佐藤玄性)	쓰쓰미 야스시(堤保)
사토 슈조(佐藤周藏)	쓰지 원지로(辻圓次郎)
샤쿠오 슌쵸(釋尾春仍)	쓰치야 히코타로(土屋彦太郎)
서병규(徐丙奎)	아라카와 구니코(荒川くに子)
서병오(徐丙五)	아리가 도요노신(有賀豊之進)
서병조(徐丙朝)	아리마 나루코(有馬ナル子)
서상규(徐相奎)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
서주원(徐周原)	아마노 쇼시로(天野章四郎)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아사다 기쿠코(浅田キク子)
슈도 시즈야(首藤静也)	아오키 시게노부(青木重信)
스기하라 신키치(杉原新吉)	아카이 유에코(赤井由恵子)
스기하라 히사코(杉原ひさ子)	아코 기요키(赤穂清喜)
스다 산페이(須田三平)	아코 하루이코(赤穂はるい子)

안도 쇼지로(安藤正次郎)
 야나기사와 사고로(柳澤佐五郎)
 야나기사와 테이코(柳澤テイ子)
 야마모토 간자부로(山本勘三郎)
 야마모토 데루코(山本照子)
 야스마쓰 구마키치(安松熊吉)
 야스카와 와사부로(安川和三郎)
 야스카와 나나코(安川七代子)
 에사키 쓰네토(江崎恒人)
 엔다 긴코(円田銀子)
 오가노 세이조(小賀野清藏)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오노 미네지로(大野峰次郎)
 오무라 오시로(大村大代)
 오사카 쇼헤(麻坂正平)
 오자키 시즈오(尾崎鑑雄)
 오츠키 미마로(大槻三磨)
 오키다 기하치(岡田喜八)
 오키다 센쥬(岡田宜壽)
 오키다 요시카즈(岡田宜壽)
 오키모토 리헤(岡本利平)
 오키모토 스테코(岡本ステ子)
 오쿠보 하루노(大久保春野)
 오쿠보 후사코(大久保フサ子)
 오키타 스테지로(沖田兼次郎)
 와게 헤지로(和氣平次郎)
 와카바야시 세스케(若林誠助)
 와키노 요시오(脇野義雄)
 와타나베 무라오(渡邊村男)
 와타나베 히사(渡邊比)

요시다 사시치(吉田佐七)
 요시다 주이치로(吉田壽一郎)
 요시타케 기네오(吉武甲子男)
 요시다케 모토코(吉武ト子)
 요시무라 겐이치로(吉村謙一郎)
 요시무라 다에코(吉村玉枝子)
 요시무라 치요코(吉村知世子)
 요시키 도시조(吉木利造)
 우메자키 다다부미(梅崎忠文)
 우시오 군타로(牛尾軍太郎)
 우에다 겐스케(上田謙助)
 우에마츠 사에코(植松覺栄子)
 우에마츠 세이치(植松正一)
 우지노 도쿠타로(氏野徳太郎)
 우치다 로쿠로(内田六郎)
 우타바라 코(歌原恒)
 유아사 히데토미(湯浅秀富)
 유타라 나오헤(湯原直平)
 윤필오(尹弼五)
 윤현(尹濼)
 의양군(義陽君)
 이근호(李根濬)
 이나모토 신민(稲本新民)
 이노 에스케(井野英助)
 이노우에 다츠지로(井上達次郎)
 이노우에 소노스케(井上宗之介)
 이노우에 쓰네타다(井上常直)
 이병학(李柄學)
 이석진(李錫珍)
 이소야 고타로(磯矢耕太郎)

이승근(李承瑾)	이토 도시오(伊藤敏生)
이시구로 다다노리(石黒忠恵)	이토 레조(齋藤禮三)
이시다 쓰루조(石田鶴藏)	이토 류스케(伊藤隆祐)
이시이 미츠오(石井光雄)	이토 쓰네조(伊藤恒藏)
이시이 소좌(石井少佐)	이토 진자부로(伊藤甚三郎)
이시하라 지로(石原次郎)	이토 테즈코(伊藤テツ子)
이와사키 다미야(岩崎田實也)	이현영(李憲永)
이와세 시즈카(岩瀬靜)	장상철(張相轍)
이완용(李完用)	장우근(張宇根)
이용익(李容翊)	정경태(鄭敬泰)
이용직(李容直)	정남표(鄭藍表)
이유인(李裕寅)	정재학(鄭在學)
이윤용(李允用)	정해봉(鄭海鵬)
이이다 아키라(飯田章)	조병호(趙秉鎬)
이즈미 겐타(飯泉軒太)	조승원(趙承遠)
이일우(李一雨)	진희규(秦喜葵)
이종국(李鍾國)	최린용(崔麟溶)
이종면(李宗勉)	최만달(崔萬達)
이중하(李重夏)	최만달(崔萬達)
이즈미 겐타(飯泉軒太)	최병석(崔炳奭)
이즈미 스에지(泉末治)	최숙자(崔淑子)
이즈카 쇼이치(飯束昇一)	최정덕(崔廷德)
이직현(李稷鉉)	최중윤(崔鍾允)
이진호(李軫鎬)	최혜익(崔海益)
이충구(李忠求)	치바 기쿠요코(千葉久代子)
이케가미 시로(池上四郎)	치바 호지로(千葉包次郎)
이케다 가키치(池田嘉吉)	타니 신지로(谷幸次郎)
이쿠하시 요네지로(生橋米次郎)	하라다 다카히로(原田隆弘)
이토 겐타로(伊藤謙太郎)	하라다 후지로(原田フジ子)
이토 기치자부로(伊藤吉三郎)	하시모토 추조(橋本丑三)

하야시 다케조(林武三)
하야시 세사쿠(林清作)
하야시 진시치(林甚七)
하야카와 도쿠이치(早川篤一)
하타모토 기헤(畑本儀平)
하타모토 잇페이(畑本逸平)
한진창(韓鎭昌)
핫토리 유키(服部友規)
후루쇼 미키노리(古莊幹實)
후루카와 분노스케(古川文之助)
후지나와 분준(藤縄文順)
후지나와 아에코(藤縄八重子)
후지이 유지(藤井勇次)
후지타 히데아키(藤田嗣章)
후카와 히로데즈(府川広哲)
후쿠나가 도쿠지로(福永徳次郎)
후쿠치 기사쿠(福地義作)
히구치 도미코(樋口とみ子)
히구치 료(樋口亮)
히라노 세키조(平野石造)
히사미즈 사부로(久水三郎)
히자쓰키 마스키치(膝付益吉)